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외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04-0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이환성, 박영선, 이은주, 신희진, 임다희, 조철민, 김소연, 오현순, 박수정, 김유한, 백재환		
주관 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이은종 전문연구원 유미현 행정원 김유한 연구보조원 백재환 연구보조원
협력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이영재 연구교수	박영선 연구교수 이은주 대표 (로컬+협치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김성진 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임다희 연구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철민 연구위원		
	시민사회현장 연구자모임 들파	김소연 대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오현순 전문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 제 출 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



# 국문요약

## 1. 서론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는 공익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둘째,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와 플랫폼 우수 운영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의 요구,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목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추진과제별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개념, 공익활동의 논거,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시민사회의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기본계획 관련 유사사례, 플랫폼 및 민관협력 체계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착안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와 FGI를 통해 시민사회 주

# 국문요약

요 이슈와 정책수요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참여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 2.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시민사회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 감시자, 시민의식 구축 등이며,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NGO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상필, 2013: 473-477). 시민사회의 법률적 정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및 개별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중앙부처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나 민관협의체 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구축 등 시민사회 기반구축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종합」

주관기관	지원 정책	보조금 및 내용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25개 단체, 9개 영역, 71억 지원('19)
	2020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	- 민간위탁 활성화, 협치형 모델 확대 - 예산국민참여단, 갈등관리 기본법 제도 -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 구성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 대한민국 열린 정부 포럼(민관협의체) - 정책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 생산을 목표로 함
	자원봉사진흥국가 기본계획('18-'22)	- 시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화 도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립('20.7)
외교부	정부-파트너십 기본정책('19)	- 국제개발 협력의 개발 효과성 제고와 정책 수립 - 시민사회와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제도화
	공공외교 네트워크	-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17-'21)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실현 위해 민관협력 제도화
여성가족부	성 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780만 원('20.8월) - 성 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연계프로그램 발굴과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주관기관	지원 정책	보조금 및 내용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협력 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법인 사업별 최대 2천만 원, 2개 이상 연합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농림축산 식품부	로컬 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 활동 지원 - '19년 우수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 선정 및 지원
해양수산부	한국 어촌공단, FiPA 시민참여혁신단	-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자문단 출범(시민 6명, 공단 직원 2명)
	국민참여예산	- 시민에 의한 사업 개선 사항 및 사업제안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22년까지 6만 4천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기업 종사자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연대기금' 모금 및 지원 - 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을 통한 연대사업 발굴 -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현재 규모 2배 확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 노·사·민·정이 각자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일자리 모델 확산 -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회 심의 및 의결 - 현재 광주, 구미, 군산, 대구, 밀양, 부산형 일자리모델 시행 중

출처: 저자 작성

정부와 시민사회간 민관협력 현황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내실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의 구체화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등이 모호하며,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국문요약

## 3.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 1)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로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검토결과 첫째,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 이슈 및 현안 발생시 소통협력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착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검토결과 첫째, 시민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해당 재원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도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시민소통 채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도 계획안 구성 및 홍보, 협치 전담 지구 및 인력확보 필요성 강조 등 국가기본계획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확산되기 위한 지원을 고려한다. 넷째,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 풀(pool) 지원, 교육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높은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초기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후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검토결과 첫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역할 확대, 온라인 포털(플랫폼)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영역별 활동가와 수요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이용자 참여코너 확대 등을 고려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경력·성장단계별로 구분한 콘텐츠가 필요하며, 교육 영역으로는 시민사회의 가치에 관한 영역,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 영역, 시민사회 영역 등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혁신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단위에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착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 2)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로 '광화문 1번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온·오프라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플랫폼을 구성하여 시간·공간의 제약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제안, 정부의 검토 및 정책연계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착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와 '자원봉사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를 참여자들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검토한 결과 첫째, 참여주체의 가치공유 필요성, 둘째, 제도화를 위해 법·제도 근거 마련의 필요성, 셋째, 소통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착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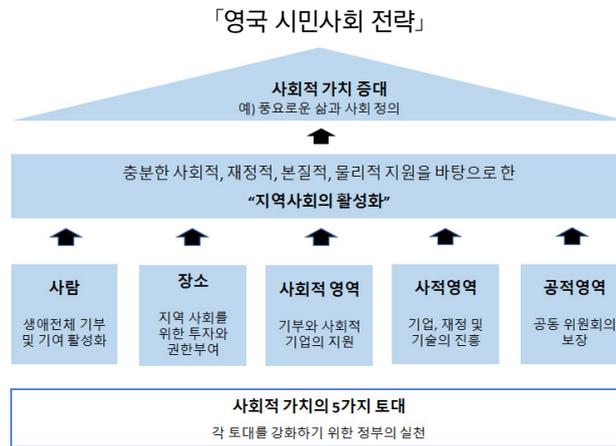
자원봉사 민관협력 체계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순수성 확보문제,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 등 급속한 제도화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을 경계해야 함을 착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 4)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영국 시민청(Office for Civil Society)을 중심으로 기능, 역할, 지원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5가지 영역의 장점과 역할을 정립해,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다른 영역 혹은 정부에 의해 보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통 기회 증대, 공론화 및 토론을 위한 중립적 공간 제공, 매뉴얼 및 의견 제시 과정·절차를 통한 정보 공개, 시민사회 인재양성 등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국문요약



자료: 영국 시민사회전략 (2018: 19) 재편집

## 4.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 1) 기본계획 마련의 필요성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 여성, 소비자, 지역공동체, 국제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난 30년 사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규모 있는 대변형(advocacy) 시민운동단체로 대표될 수 없을 정도로 그 폭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최근에는 활동주제와 방식에 있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거나, 또는 최근까지도 시민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인식과 낡은 관행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왔다.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철학, 인식, 기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자체와 개별 정책을 통한 정책 추진은 혼선을 일으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5월 26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고 범정부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2)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및 기본계획(안)의 개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 주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문헌검토를 통해 기본계획 검토안 비전, 가치 및 추진원칙, 정책목표, 추진과제 형태로 마련하고 그 세부내용을 FGI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마련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추진원칙, 3대 전략목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	
비전	활력있는 시민사회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가치	추진원칙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책임성, 포괄성, 연계성, 실효성, 지역성
3대 전략목표	추진과제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출처: 저자 작성

## 5.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 1)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상시적 소통협력 체계 활성화, 비상시적 위기 소통협력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열린정부 본

## 국문요약

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2)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역협치는 지역사회 의제발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3)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

국내·외적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를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소통·협력,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힘을 튼튼히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를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시민사회 관련 연구가 본격화 된지 30여년이 경과하면서 나름의 분화·발전을 이뤄왔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지식생산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연구소나 학회들이 창립돼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거뒀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와 재정으로 인해 활동을 근근이 이어 나가고 있어 연구의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지식의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 관련 대학 학제 미비, 시민사회 연구자들의 진로 불투명,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투자부족이라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향후 시민사회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정책·실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생산하는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3)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정책 칸막이로 인한 민간 칸막이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생태계 형성을 시민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형성은 긍정적이지만 단체별·영역별 경계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협치정책 영역의 확대에 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별·영역별 시민사회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4)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는 공공정책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등 공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에 상응하는 공적재원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공공혁신의 공동행위자이자 감시자로서 시민사회가 자율성, 독립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국문요약

### 5)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20년 출범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여러 당면과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방안, 지표 논의, 환류와 적용 및 개선을 담당할 수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존 광화문 1번가와 지자체의 플랫폼 운영에서의 시행착오와 미흡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시민사회 통통' 플랫폼의 기능고도화와 운영 활성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로 사무국 신설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와 보상의 방안으로 시민활동가에 대한 시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7.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1)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이자, 직면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수혜적 접근의 '수동적 시민'이 아닌 '적극적인 시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인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초·중·고의 진로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고, 지역사회 또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시민교육 활성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공익활동도 효과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는 정부·시장영역에

비해 늘 자원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시민사회조직 운영과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소외된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공익활동 자원 개발 활성화 지원을 이행과제로 제시하였다.

## 8.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한 이행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처가 상이하며, 모두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과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이행과제는 총 31개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가 23개 이행과제, 국무총리실이 19개 이행과제의 주관부처이며, 이 외에도 교육부가 3개 이행과제, 외교부가 2개 이행과제,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1개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추진주체가 될 이행과제들이 다수 나타난 것을 감안해도 두 곳의 중앙행정기관에 이행과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행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업해야 할 경우 주관부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과제별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과제	주관부처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행정안전부	

# 국문요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과제	주관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외교부, KOICA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국무총리실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무총리실·법무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관리 부처, 광역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과제	주관부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 성화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국무총리실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국무총리실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 활동 참여 촉진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시민사회조직의 지속 가능성 촉진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출처: 저자 작성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이나 업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이행과제의 주관 부처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에서 발굴한 이행과

## 국문요약

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이행과제 작성양식을 배포하여 이를 조사·분석한 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를 활용한 성과관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 시민사회, 공익활동, 기본계획, 민관협력, 생태계 기반

# Abstract

## **A Study on 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adjustment to a pluralistic society increases the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various areas unaffected by the government when providing public service. Despite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there is no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so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support effective policies suitable for civil society rea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national plan for developing civil society and promot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collaborated to conduct the study.

First, this study identified Korean civil society's problems and related government policies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t was used to set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plan to develop civil society and promote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the future. Second, it derived the ideas for developing a national plan through case analysis, such as similar civil society plan cases, excellent operation cases of the platform,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collaborative network, and overseas government policy cases. Third, this study presents a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are presented through research on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basic plan, civil society's needs, the vision, values, goals, policy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tasks. Fourth, the researchers discovere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project. Finally, the implementation plan suggests ways to reflect in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To further strengthe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ocial solidarit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ortified the communication cooperation system, revitalized regional cooperation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civil society), and fou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project. To create an ecosystem foundation to revitalize civil society, it suggested prepared and improved legislation, established civil society knowledge, strengthened cooperation and foundational local

# Abstract

civil society, and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committee's role. To strengthen civil society's capabilities and support growth, it proposed expanding civic education, promoting participation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promoting sustainabil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dentifying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project. The implementation tasks proposed by this study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tasks. For the national plan to reflect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policies or tasks, it is necessary to gather opinions on the feas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tasks found in this study. Therefore, a separate form of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tasks shall be distributed to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national plan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 Additional efforts should also be conducted to secure implementation, such as periodically check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with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Committee at the center and reviewing performance management measures using government work evaluations.

**Keywords :** Civil society, Public interest activities, National plans, Public-private cooperation, Ecosystem-based

## 정책 제안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비전, 가치, 추진원칙,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

비전	활력있는 시민사회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가치			추진원칙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책무성, 포괄성, 연계성, 실효성, 지역성
3대 전략목표	추진과제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출처: 저자 작성

-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위한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전략목표 1: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3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추진과제 1)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 (추진과제 2)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

# 정책 제안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강화]의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

추진과제	이행과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출처: 저자 작성

- 전략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 (추진과제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추진과제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 (추진과제 3)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 (추진과제 4)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 (추진과제 5)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조성]의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

추진과제	이행과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추진과제	이행과제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정보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출처: 저자 작성

- 전략목표 3: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추진과제 1)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 (추진과제 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의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

추진과제	이행과제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출처: 저자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 내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목표, 추진과제,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각 주관 부처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에서 발굴한 이행과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 정책 제안

-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31개 이행 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는 분기별 이행상황을 국무총리실에 제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상 이행과제의 이행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상정
- 정부업무평가를 활용한 성과관리방안 검토. 10개 추진과제와 31개 이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를 활용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이 경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자체 평가결과를 특정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민관협치와 관련한 성과평가를 지표화해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확산을 유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0
제3절. 연구방법 .....	11

**제2장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제1절.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 .....	15
1. 시민사회의 개념 .....	15
2. 시민사회의 법률적 정의 .....	18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	20
제2절.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22
1. 시민사회 현황 .....	22
2.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26
3.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직제규정 현황 .....	28
제3절.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	32
1. 행정안전부 .....	32
2. 외교부 .....	37
3. 여성가족부 .....	38

## CONTENTS

4. 국무총리(국무총리비서실) .....	40
5. 농림축산식품부 .....	40
6. 해양수산부 .....	41
7. 관계부처 합동 정책 .....	42
8.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종합 .....	43
<b>제4절.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b> .....	<b>46</b>
1. 행정안전부 .....	46
2. 기획재정부 .....	4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9
4. 국민권익위원회 .....	49
5. 국방부 .....	50
6. 여성가족부 .....	50
7. 정보통신위원회 .....	51
8. 관계부처 합동 .....	51
9.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종합 .....	53
<b>제5절. 소결 및 시사점</b> .....	<b>56</b>
1.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56
2. 현황 분석의 시사점 .....	57

## 제3장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b>제1절.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b> .....	<b>61</b>
1.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61
2.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	67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	73
<b>제2절.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b> .....	<b>79</b>
1. 플랫폼의 개념 .....	79
2. 플랫폼 사례(광화문1번가) .....	80
3. 시사점 .....	87

제3절.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8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89
2. 자원봉사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101
제4절.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110
1. 영국 시민청(Office for Civil Society)	110
2. 영국 시민사회 전략(2018)과 관련한 지원 정책 및 사례	111
3. 시사점	115

## 제4장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119
1.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와 기대	119
2.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조직 형태의 변화	121
3.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 기초와 한계	122
4.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부 기본계획 수립 의무	124
제2절.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127
1. 정책요구 조사방법과 사례 검토	127
2. 정책요구의 종합, 구조화	131
제3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140
1. 비전	141
2. 가치, 추진원칙	142
3. 정책목표	144
4. 추진과제	145
제4절. 기본계획(안)의 개요와 향후 수립과제	149
1. 기본계획(안)의 개요	149
2.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향후 과제	151

## 제5장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	157
1. 상시적 소통협력 체계 활성화 .....	157
2. 비상시적 위기 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	162
3.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의 이행과제 .....	163
제2절.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	167
1.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	167
2.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	168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	170
4.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171
5.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의 이행과제 .....	172
제3절.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	181
1.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 .....	181
2.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목적 .....	182
3.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 .....	183
4.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의 이행과제 .....	183

## 제6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제1절.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191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과 법제도의 역할 .....	191
2.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관련 주요 법제도 마련 및 개선 방향 .....	195
3.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의 이행과제 .....	197
제2절.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	212
1. 시민사회 지식생산의 흐름과 현황 .....	212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	213
3.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의 이행과제 .....	214

제3절.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	222
1.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 .....	222
2.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 .....	223
3.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	224
제4절.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	234
1.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필요성 .....	234
2. 시민사회의 안정적 재정구조 구축 필요 .....	235
3. 시민사회의 재정안정성을 위한 정책 수단 .....	236
4.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의 이행과제 .....	237
제5절.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	248
1. 새로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과 당면과제 .....	248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	249
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 .....	252

## 제7장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제1절.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	265
1.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의 필요성과 의미 .....	265
2. 정책동향과 추진방향 .....	266
3.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의 이행과제 .....	269
제2절.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282
1. 시민사회조직의 의미와 현실 .....	282
2. 시민사회조직 정책적 지원 과제 .....	283
3.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의 이행과제 .....	285

**제8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제1절. 시민사회 발전 정책 추진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 297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 내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방안 ..... 300

■ 참고문헌 ..... 302

## 표 차례

〈표 1-1〉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	5
〈표 1-2〉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	5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2-1〉 비정부조직에 대한 용어 및 개념 .....	17
〈표 2-2〉 공익사업 유형 .....	21
〈표 2-3〉 유형별 사회단체참여율 .....	24
〈표 2-4〉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현황 .....	25
〈표 2-5〉 유형별 지원현황 .....	25
〈표 2-6〉 중앙정부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26
〈표 2-7〉 시·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	27
〈표 2-8〉 시·도 NGO지원 관련 조례 .....	28
〈표 2-9〉 시민사회 관련 중앙부처 직제 현황 .....	28
〈표 2-10〉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및 분야 .....	34
〈표 2-11〉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종합 .....	45
〈표 2-12〉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종합 .....	53
〈표 3-1〉 도전, 한국 진행절차 .....	86
〈표 3-2〉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기관 비교 .....	107
〈표 4-1〉 시민사회 분야 기본계획(국내 사례) .....	128
〈표 4-2〉 영국 시민사회전략의 5대 미션과 정부역할 .....	129
〈표 4-3〉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전략계획 2017-2022 .....	130
〈표 4-4〉 시민사회 분야 기본계획 목표의 구조와 내용 .....	132
〈표 4-5〉 목표 관련 주요 의견 .....	134
〈표 4-6〉 영국 사회협약 목표와 약속: The 2010 Compact .....	135
〈표 4-7〉 가치, 추진원칙 관련 주요 의견 .....	137
〈표 4-8〉 과제 관련 주요 의견 .....	138
〈표 6-1〉 현재 운영 중인 시민사회 관련 대학 교육과정 .....	212
〈표 8-1〉 이행과제별 중앙행정기관 .....	298
〈표 8-2〉 주관 부처 이행과제 작성양식 .....	300

## 그림 차례

[그림 2-1] 제3섹터 모델 .....	15
[그림 2-2] 한국 NGO 개념틀 .....	16
[그림 2-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	22
[그림 2-4] 비영리민간단체(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록 추이 .....	23
[그림 2-5] 사회단체참여율 .....	24
[그림 2-6] 대한민국 열린 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TF 구성안 .....	36
[그림 3-1] 분야별 추진과제 .....	62
[그림 3-2]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요 내용 .....	64
[그림 3-3]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66
[그림 3-4]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69
[그림 3-5]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정책영역 .....	74
[그림 3-6] 광화문1번가 CI .....	80
[그림 3-7] 혁신제안특 현황 .....	82
[그림 3-8] 협업이음 진행절차 .....	82
[그림 3-9]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절차 .....	83
[그림 3-10] 국민참여진단 점검 절차 .....	84
[그림 3-11] 현장소통 관련 홈페이지 정보 .....	85
[그림 3-12] 참여정보 관련 홈페이지 정보 .....	87
[그림 3-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 .....	92
[그림 3-14] 하나센터 전달체계 .....	97
[그림 3-15]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구조 .....	101
[그림 3-16] 자원봉사업무 추진체계 .....	104
[그림 3-17]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추이 .....	106
[그림 3-18] 영국 시민사회 전략 .....	113
[그림 4-1] 정부와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흐름도 .....	126
[그림 4-2] 기본계획의 가치와 운영체계 .....	127
[그림 4-3]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체계도(검토안) .....	139
[그림 4-4]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1안) .....	149
[그림 4-5]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2안) .....	150
[그림 4-6] 기본계획 전후의 시민사회 정책 비교 .....	152



# 서론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고경훈 외, 2015: 3).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규정 재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관련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제3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함

-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8.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시민사회 관련 현황, 정책수요, 현 정책의 문제점 등의 파악을 통한 정책추진방안 마련이 필요

□ 국정과제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음

-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임
  -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설치, 민주시민 교육체계 수립 등
-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정과제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국정과제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국정과제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이 있음

□ 정부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의 다양한 형태·특성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더욱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 현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의 어려움, 체계적인 분석 부재로 정책효과를 살펴보는데 한계 존재함. 더불어 시민사회의 요구와 발전 방향,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추진 정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상이한데,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은 14,699개로 2019년 3분기 대비 124개 증가.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단체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4분기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는 1,685개로 2019년 3분기보다 5개 증가

〈표 1-1〉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4	15	2	8	7	7	23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187	173	12	36	261	178	43	12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통계청
183	47	106	10	31	3	1	1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8	5	18	2	1	1	12	9

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19년 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8&nttlId=78390). (검색일: 2020.07.30.)

- 2019년 4분기 시·도 비영리민간단체는 13,014개로 2019년 3분기 대비 199개 증가

〈표 1-2〉 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2,190	845	441	695	632	577	366	3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74	344	478	445	945	584	807	755	379

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19년 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8&nttlId=78390). (검색일: 2020.07.30.)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확인이 어려움.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통계를 통해 시민사회의 규모와 증가추이를 예측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등록 수 보다 현저히 많으며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보다 시민사회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

- 시민사회 현황, 정책수요 등의 파악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정책추진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정책추진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필요.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과 시민사회 현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추진체계,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 2. 연구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 시민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시민사회와 공익증진에 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 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목표 설정 및 추진과제 제시
- 정부-시민사회 간 상시 협력체계 마련 및 실질적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시민사회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도모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시민사회와 관련 선행연구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정책방향', '책임성 향상, 지원체계 마련, 성과분석' 등으로 구분됨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 시민사회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박영선 외, 2019)

- 한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들을 파악하여 향후 시민사회 공익 활동 지원제도 개선안 논의(조철민, 2015b)
  - 민관협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연구(장수찬 외, 2015)
- 책무성 향상, 지원체계 마련, 성과분석 등에 대한 연구
-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 방향 재설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제시 및 지원사업 관리체계 확립(고경훈 외, 20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반적 평가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김동춘 외, 2014)
  -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모델 개발(박상필, 2013)
  -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 방안 제시(임승빈, 2009)
- 본 연구는 연구내용 및 방법론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님
- 연구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추진정책의 종합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시민사회 현황·문제점·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분석, 정부-시민사회 간 상시 협력체계 마련,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마련 등에서 차별성을 지님
  -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명: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방향: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박영선·정병순, 2019)</li> <li>- 연구목적: 시민사회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실태분석</li> <li>- FGI(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요 행위자 유형별)</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GI를 통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조감도 확보</li> <li>- 새로운 공익활동 사례분석을 통한 공익활동 주체별 정책 수요 파악</li> <li>-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심층 평가 및 분석</li> <li>- 정책 환경 변화 분석</li> <li>- 정책 방향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명: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실태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관련 논의를 3가지 영역으로 분</li> </ul>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p>지형(조철민, 2015b)</p> <p>- 연구목적: 한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들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개선안 논의</p>		<p>석(기존 제도의 개선, 민관 관계 방식의 개혁, 지원 거버넌스의 혁신) 및 향후 논의의 전략 제언</p>
	<p>- 연구명: 지방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장수찬 외, 2015)</p> <p>- 연구목적: 민관 협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연구</p>	<p>- 문헌조사, 정부 및 시민사회 모니터링</p> <p>-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관련 현황 분석</p> <p>- 중간지원기관의 이론적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화</p>	<p>-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정책 분석</p> <p>- 중간지원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한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제시</p> <p>- 대전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문제점 파악 및 지원방향·목표 제시</p>
	<p>- 연구명: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박상필, 2013)</p> <p>- 연구목적: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에 대한 연구모델 개발</p>	<p>- 문헌연구, 실태분석</p> <p>- 전국 80개 도시의 시민단체(NGO) 활동가 심층인터뷰</p>	<p>- 시민사회 현황 파악을 위해 5개 변수로 유형화 및 정리(형성·구조·가치·자원·활동)</p> <p>- 한국 시민사회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p>
	<p>- 연구명: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임승빈, 2009)</p> <p>- 연구목적: 현재 한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 파악,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p>	<p>- 문헌조사, 실태조사</p> <p>- 서울시 소재 938개 시민사회단체 대상 의식 설문조사(전화조사 중심)</p> <p>- 설문자료에 대한 빈도분석</p>	<p>-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실태 분석 및 정부 재정지원 방향 제시</p> <p>-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방향 제언</p>
	<p>- 연구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고경훈 외, 2015)</p> <p>- 연구목적: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 방향 재설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제시 및 지원사업 관리 체계 확립</p>	<p>- 문헌조사, 실태조사</p> <p>- 사업유형별 단체 대상 설문조사</p> <p>- 사업추진 단계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실무자 중심 설문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사업의 타당성 평가</p> <p>- 설문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단계 중 가장 보완이 시급한 단계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p> <p>- 해외사례(미국, 영국, 일본) 분석</p>	<p>-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해외사례(관련법령 등) 파악</p> <p>- 행정자치부 '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집행자치의 적정성 고려</p> <p>-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발전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p>
	<p>- 연구명: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p>	<p>- 문헌조사</p> <p>- 설문 및 면접조사</p> <p>- 해외사례 조사 분석(영국, 미</p>	<p>-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분석</p> <p>- 1999년 이후 행자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 조사분석</p>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p>연구(김동춘 외,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전반적 평가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li> </ul>	<p>국, 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토론회 및 민간단체 활동가 간담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및 기대수준 조사 분석</li> <l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발전 방안 제안</li> </ul>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추진정책의 종합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마련</li> <li>- 시민사회 현황, 문제점,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목표 설정</li> <li>- 정부·시민사회 간 상시 협력 체계 마련 및 실질적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li> <li>-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현황조사</li> <li>- 사례연구</li> <li>- 전문가 인터뷰 및 FG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li> <li>-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 및 문제점 분석</li> <li>- 시민사회의 정책수요 조사</li>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li>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 발굴</li>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안) 마련</li> </ul>

## 제2절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함. 더불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하도록 함
  -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와 플랫폼 우수 운영사례,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해외 정부정책 사례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의 요구, 기본계획의 비전, 가치, 목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함
  -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함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함
  -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로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제시하고 각 추진과제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함
  -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제3절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
-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 검토
  - 문헌연구를 통한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의 논거,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검토
- 현황조사를 통한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정책 종합
  - 시민사회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한 시민사회의 구조 파악 및 종합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조사를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기본계획 관련 유사사례 연구, 플랫폼 및 민관협력 체계 사례연구, 해외 정부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정책수요 발굴
  - 시민사회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와 FGI 그리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책수요를 조사하고 주요 이슈와 문제점 도출
- 현황 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책 방향과 전략목표, 추진과제 도출
  - 연구의 종합을 통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기본계획(안) 수립
  -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제시
  - 추진과제 및 이행과제 도출





##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제1절

##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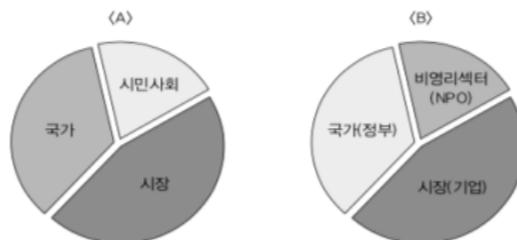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1. 시민사회의 개념

## □ 사회구분 모델을 통한 시민사회의 정의

- 시민사회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수적임(박상필, 2013: 473-474)
  -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는 시민(시민사회를 표상), 다양한 결사체를 포함
- 사회구분 모델은 이분모델(국가-시민사회)과 삼분모델(국가-시장-시민사회)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삼분모델이 주로 지지를 받고 있음(박상필, 2013: 472)
  - 삼분모델은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로 구분되며 시민사회를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라 불리기도 함
- 국가와 시장 이외의 영역을 시민사회로 접근하는 방식과 비영리 섹터로 접근하는 방식은 그 속성에서 차이 존재
  -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의 견제, 공론장의 형성,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집단 간의 갈등, 공공업무에 대한 시민참여 등을 강조. 반면 비영리섹터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자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체성이 강함(박상필, 2011: 92-92)

[그림 2-1] 제3섹터 모델



출처: 박상필(2013: 473)

-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는 접근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점, 범위, 목적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최근에는 NPO라는 용어도 NGO, 제3섹터조직, 시민사회단체 등과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음 (박영선, 2015: 5)

[그림 2-2] 한국 NGO 개념틀



출처: 박상필(2011: 138)

- 비영리민간단체(NGO)를 포함하여 비정부조직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적 정의는 다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비영리단체(NPO),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PO), 비영리법인(Incorporated NPO),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CMO: Civil Movement Organization), 관변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음(고경훈 외, 2015: 11-12)
-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NGO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박상필, 2013: 477)
  - NGO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 회원가입의 비배타성, 자원 활동에 의해 공익 추구(박상필, 2013: 478-479)

〈표 2-1〉 비정부조직에 대한 용어 및 개념

구분	개념
비영리민간단체(NGO)	-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한 사적영역에 이어 제3섹터
비영리단체(NPO)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준 공공 및 민간조직 - 배분금지계약은 받는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 포함
민간비영리단체 (Private NPO)	-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민간에 의해 운영 및 재원이 조달되는 단체
비영리법인 (Incorporated NPO)	-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된 공식(허가) 비영리조직
공익법인(PIC)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학술, 자선 및 학문연구를 위한 재원조성(장학금 및 연구 프로젝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재단, 연합회 - 또는 상속세법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추구 조직'
시민사회단체(CSO)	- 공익추구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조직 - 민주화단체 및 신념에 근거해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 등을 포함한 advocacy 조직,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권익보호 집단 등
시민운동단체(CMO)	- 19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에 경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 - advocacy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관변단체	- 국가와 긴밀하고 매우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출처: 고경훈 외(2015: 11-12)

## □ 시민사회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Rachel Cooper, 2018: 4-5)

- NGO, CSO 및 비영리단체 등은 조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활동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등록된 단체
- '조직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물리적, 법적 또는 재무적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는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온라인 집단 또는 활동
- 집단행동
- 종교 지도자, 신앙 공동체 및 신앙 기반의 조직
-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위해 혁신 또는 시장 지향적 접근방식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가
- 지역 단위의 풀뿌리 협회 및 활동
- 협동조합
- 유소년 클럽

- 독립 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인쇄 및 전자 매체)
  - 이웃 또는 지역사회기반 연합
  - 학술 및 연구기관
-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Rachel Cooper, 2018: 2)
- 서비스 제공자(예: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
  - 옹호자(예: 환경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또는 기업에 표명)
  - 감시자(예: 정부의 인권조약 모니터링)
  - 시민의식 구축(예: 시민 참여 동기부여, 지역 및 국가 거버넌스 참여)
  - 국제적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참여(예: 세계은행 기후 투자 기금의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 시민사회는 지역, 국가 및 국제수준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를 동원 및 조직을 결집하여 집단행동을 수행

## 2. 시민사회의 법률적 정의

- 시민사회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및 개별법」, 「공익법인법」으로 구분됨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목적)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의미(제2조 정의)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해야 함

#### 나. 민법 및 개별법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명시되어 있음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개별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 「개별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법인성격에 따라 다양함

####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법」(약칭) 제1조(목적)에서는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공익법인법」상 적용범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제2조 적용 범위)
- 제4조 ‘설립허가 기준’에 따라 다음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함
-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

- 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
-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다음의 분야에서 지원 받아 수행 중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주)더브릿지컨설팅, 2020: 3)하여 다음의 유형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사업 지원유형은 매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복지증진, 시민사회, 자원봉사·기부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공익사업 지원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 안전, 국제교류협력으로 구분
    - 2019년 공익사업 지원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 안전, 국제교류협력으로 구분
    - 2018년 공익사업 지원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 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으로 구분

〈표 2-2〉 공익사업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과 복지증진</li> <li>2. 선진 시민의식 함양</li> <li>3.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li> <li>4. 환경보전과 자원절약</li> <li>5.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li> <li>6. 국제교류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과 복지증진</li> <li>2. 선진 시민의식 함양</li> <li>3.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문화발전</li> <li>4. 환경보전과 자원절약</li> <li>5.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증진</li> <li>6. 국제교류 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 증진</li> <li>2. 사회복지증진 및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li> <li>3.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li> <li>4. 국민안전 확보</li> <li>5. 민생경제 발전</li> <li>6. 문화·관광 발전</li> <li>7. 환경보전과 자원절약</li> <li>8. 국가안보 및 평화 증진</li> <li>9. 국제교류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li> <li>2. 사회복지</li> <li>3. 시민사회 활성화</li> <li>4. 자원봉사·기부문화</li> <li>5.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li> <li>6. 생태·환경 분야</li> <li>7.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li> <li>8. 사회 안전</li> <li>9. 국제교류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li> <li>2. 사회복지</li> <li>3. 시민사회</li> <li>4. 자원봉사·기부문화</li> <li>5.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li> <li>6. 생태·환경</li> <li>7.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li> <li>8. 사회 안전</li> <li>9. 국제교류협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통합</li> <li>2. 사회복지</li> <li>3. 시민사회</li> <li>4. 생태·환경</li> <li>5.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li> <li>6. 사회 안전</li> <li>7. 국제교류협력</li> </ol>

출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업유형 및 분야별 예시”.  
 (<https://npas.mois.go.kr/nsbms/hmp/bsnsInfo/sotBsnsTyRamEx/sotBsnsTyRamExR.do>). (검색일: 2020.08.14.)

## 제2절

#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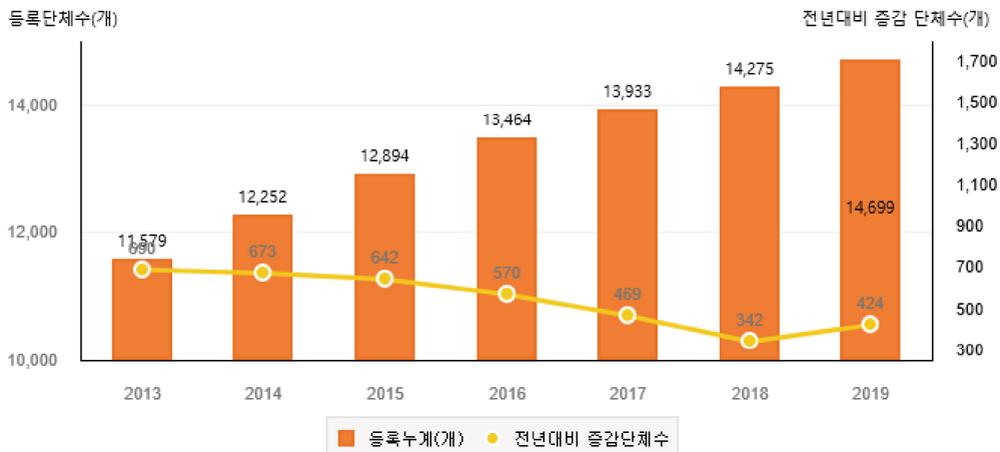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1. 시민사회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19년 기준 14,699개이며, 매년 등록단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규 등록단체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2018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됨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단체이며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합산할 경우 단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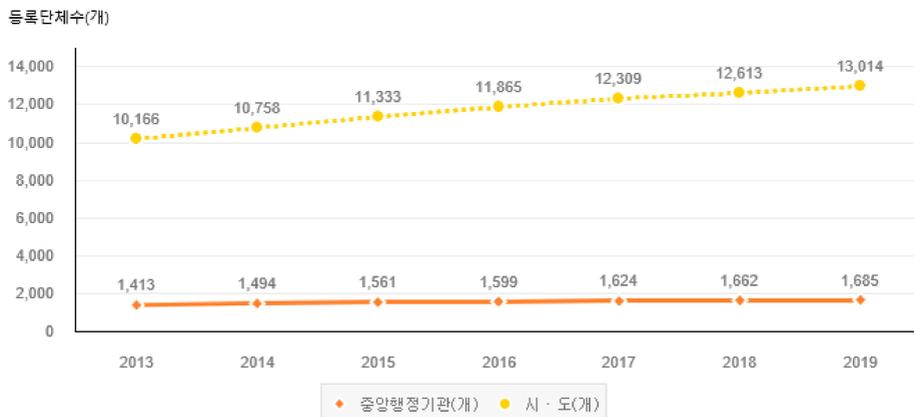
출처: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검색일: 2020.08.10.)

##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별 등록추이는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증가 추이가 중앙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남
-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시도의 현황이 높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보다 시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4] 비영리민간단체(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록 추이



출처: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검색일: 2020.08.10.)

## □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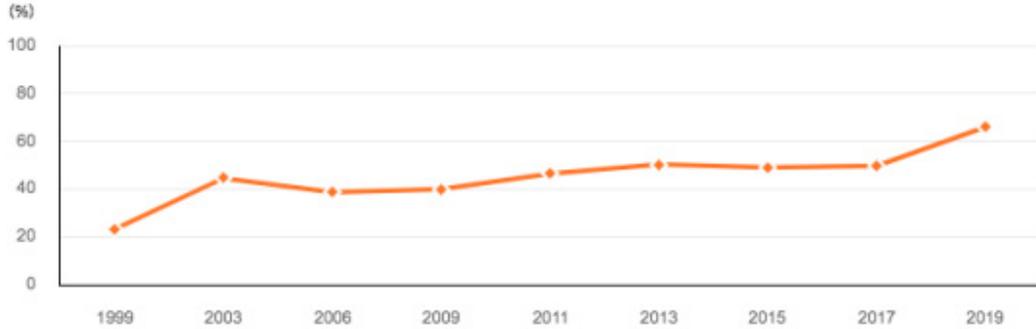
- 국민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급진적으로 증가<sup>1)</sup>

1) - 사회단체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대상

- 2017년까지는 3순위까지만 응답, 2019년은 참여한 모든 단체에 응답하도록 조사문항 구성이 변경됨

[그림 2-5] 사회단체참여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사회참가단체참여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0>). (검색일: 2020.08.14.)

- 유형별 사회단체참여율은 친목 및 사교단체가 가장 높음.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율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9년 1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임

<표 2-3> 유형별 사회단체참여율

구분	1999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참여율(%)	23.1	44.8	38.8	39.8	46.6	50.1	48.9	49.7	66.1
친목 및 사교단체	63.2	82.5	78.7	77.8	73.1	75.3	75.6	78.2	77.4
종교단체	21.6	20.2	21.7	28.9	28.7	26.4	27.2	28.2	28.7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용단체	21.2	28.6	27.9	30	34	32.8	35.2	43.6	47.3
시민사회단체	9.7	9.9	10.8	12.9	11	11.3	9.4	8.4	12.6
학술단체	1.8	4.4	3.8	5.1	4.7	4.6	5.3	5.6	7.6
이익단체	2.6	3.5	3.4	3.4	2.5	2.1	2.5	3.8	4.3
정치단체	1.3	0.8	1.1	0.9	1	0.7	0.6	1.3	1.7
지역사회모임	-	-	-	-	10.1	8.9	9.2	10.4	11.5
기타	0.8	0.5	0.4	0.5	0.7	0.3	0.1	0.1	0

출처: 국가지표체계. “사회단체참여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0>). (검색일: 2020.08.14.)

- 시민사회 공익활동 유형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4〉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현황

(단위: 원)

년도	건수	예산	교부액	집행	잔액
2017년	198	6,359,000,000	6,328,400,000	6,093,738,815	234,661,185
2018년	210	6,792,000,000	6,783,000,000	6,383,714,653	399,285,347
2019년	219	6,918,000,000	6,877,000,000	6,612,495,621	264,504,379
합계	627	20,069,000,000	19,988,400,000	19,089,949,089	898,450,911

출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연도별 사업정보”.

(https://npas.mois.go.kr/hmp/infoPblntf/yearSbsidyBsnsSitu/yearSbsidyBsnsSituList.do) 재편집.

(검색일: 2020.08.13.)

○ 공익활동 유형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5〉 유형별 지원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유형	건수	교부액 (천원)	유형	건수	교부액 (천원)	유형	건수	교부액 (천원)
사회통합증진	22	732,000	사회통합	26	815,000	사회통합	27	875,000
사회복지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24	790,000	사회복지	21	689,000	사회복지	32	991,500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23	719,000	시민사회 활성화	17	511,000	시민사회 활성화	19	572,800
국민안전확보	14	502,000	자원봉사 ·기부문화	9	249,000	자원봉사 ·기부문화	6	187,000
민생경제 발전	6	165,400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13	403,000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15	483,000
문화관광발전	11	321,000	생태·환경 분야	19	605,000	생태·환경 분야	20	619,300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15	529,000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32	1,159,000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36	1,128,400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38	1,220,000	사회안전	28	916,000	사회안전	31	957,000
국제교류 협력	45	1,350,000	국제교류 협력	45	1,436,000	국제교류 협력	33	1,063,000
계	198	6,328,400	계	210	6,783,000	계	219	6,877,000

출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연도별 사업정보”.

(https://npas.mois.go.kr/hmp/infoPblntf/yearSbsidyBsnsSitu/yearSbsidyBsnsSituList.do) 재편집.

(검색일: 2020.08.13.)

## 2.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sup>2)</sup>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아직까지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넓으며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원법률은 영리목적인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한정지를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판단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 지원, 공익사업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이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조세감면이 있음

〈표 2-6〉 중앙정부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법률	적용대상	지원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보조금 지원(제6조) - 공익사업 지원(제7조) - 조세감면(제10조) - 우편요금 지원(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조세감면 등(제1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20설립·운영에%20관한%20법률/\(15149,20171212\)](http://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20설립·운영에%20관한%20법률/(15149,20171212)))/  
([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7374,20200609\)](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7374,20200609))). (검색일:2020.08.12.)

□ 지방정부의 법제도(조례) 현황<sup>3)</sup>은 다음과 같음

- ‘공익활동’에 대한 시도의 조례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도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기초자치단체 포함)이 가장 많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충남의 경우에도 본청과 더불어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2) 이외에도 개별법 및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 시민사회에 대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검색어인 ‘공익활동’으로 조례제정 현황을 대신하였으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 입법예고 등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례는 제외하였다.

〈표 2-7〉 시·도 공익활동 관련 조례

시도	시군구	조례명
서울	본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본청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남	본청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아산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남	순천시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본청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김해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음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전북, 경북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재편집. (검색일: 2020.08.18.)

○ 'NGO'에 대한 시도의 조례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도 NGO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 대전, 충북, 천안(충남)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음.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NGO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표 2-8〉 시·도 NGO지원 관련 조례

시도	시군구	조례명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	본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북	본청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남	천안	천안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재편집. (검색일: 2020.08.18.)

### 3.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직제규정 현황

□ 중앙부처 조직의 시민사회 직제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44개 부처 중 시민사회에 대한 직제가 규정되어 있는 부처는 27개 부처로 확인됨
  - 36개 중앙부처에 시민사회가 등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처가 존재
  - 또한, 다수의 부처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직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직제규정은 각 부처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 지원,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임. 하지만 다수의 부처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직제규정 마련 미흡으로 추후 해당 부처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책(지원)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 부처의 시민사회 관련 직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영리'와 관련되어 시민사회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9〉 시민사회 관련 중앙부처 직제 현황

부처	조직	직제	직무범위(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6조의2 통합고용정책국	-	⑩의10.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공정거래위원회	제9조 경쟁정책국	-	⑤의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조 기획조정실장	-	⑨의19.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처	조직	직제	직무범위(직제 시행규칙)
	제10조 네트워크 정책실	-	⑩의1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 및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⑰의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
	제19조 중앙전파 관리소	-	④의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검사 및 감독
	제21조 전파관리소	-	⑥의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부	제9조 평생미래교육국	-	⑤의2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⑦의23. 이력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운영·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국가 보훈처	제4조 기획조정 실장	-	⑥의10. 처 내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 ⑦의 6.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및 관리
	제8조 보훈선양국	-	④의10.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관리·감독
	제13조 제대군민국	②의 11. 제대군인 등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 지원 등	-
	제10조 제대군민국	-	④의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감독 ⑤의 6. 6·25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지원 및 관리·감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제2조 직무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국민권익 위원회	제4조의2 기획조정실장	-	④의32.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국토교통부	제9조 기획조정실장	③의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사무의 총괄·지원	-
	제11장 국토지리 정보원	13.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제5조 기획조정실장	-	⑥의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제7조 국토도시실	-	⑦의18.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부처	조직	직제	직무범위(직제 시행규칙)
	제8조 주택토지실	-	⑭의15.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⑯의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기상청	제9조 기상서비스진흥국	-	③의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제14조 국고국	-	⑩의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감독
문화재청	제4조 기획조정관	-	⑤의13.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문화체육 관광부	제8조 문화예술정책실	-	⑬의6. 도서관 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 미디어정책국	-	⑤의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방송통신 위원회	제5조 기획조정관	-	④의14.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15.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방송정책국	-	④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⑤의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법무부	제9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⑬5.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4조 기획조정관	-	⑥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병무청	제9조 운영지원과	②의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보건복지부	제6조의2 기획조정실장	-	③의13.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제3조의2 기획조정실	-	⑪의10.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소방청	제2조 기획조정관	-	③의28. 소방 관련 단체·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소방정책국	-	③의14.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7조 기획조정관	②의1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 업무 총괄	-

부처	조직	직제	직무범위(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	⑤의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
여성가족부	제5조의2 기획조정실장	③의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제3조의2 기획조정실장	-	⑤의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외교부	제28조 공공문화 외교국	-	③의7.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제24조 공공문화 외교국	-	⑤의6.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조정
인사혁신처	제5조 기획조정관	-	④의15. 처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
조달청	제4조의4 기획조정관	②의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제4조 기획조정관	-	⑤의8.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중소벤처 기업부	제2조 통계정책국	-	③의7.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관련 업무
특허청	제6조 기획조정관	-	⑤의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해양수산부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③의19.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업무의 총괄·지원	-
	제5조 기획조정실장	-	⑥의6. 해양수산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
행정안전부	제14조 지방자치 분권실	③의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 기획조정실장	-	⑩의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지방자치 분권실	-	⑪의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직제규정 없음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출처: 저자 작성

## 제3절

#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행정안전부

- 사회·지역 문제해결에 있어 시민참여를 제고하여 이를 통한 정부 혁신을 이루고, 지역혁신포럼, 주민 자치화 모델 등 민관협력에 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사회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sup>4)</sup>
- 각 영역에서의 비영리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진 법에 따라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함
- 특정 단체 혹은 분야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에 관련한 지원법 내용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음<sup>5)</sup>
  - 현재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업소개”.

(<https://npas.mois.go.kr/nsbms/hmp/comn/cntsMng/14/845/none/cntsMngR.do>). (검색일: 2020.08.12.)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호, 2020.06.09., 일부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 비영리단체)」 제2조에 의거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에 발전을 위한 정책 혹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 및 자발적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함
-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제 4조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지원받은 이후 법에 규정된 비영리단체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하게 되어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관리 정보시스템 운영(NPO Public Activity Support System: NPAS)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특정 분야 및 단체에 있어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함
  - 2017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단순한 사업비 보조 방식을 탈피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장기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으로 영역 확대하고자 함<sup>6)</sup>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과정을 모두 전산화하여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원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정책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6조에 의거하여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사업 선정을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함

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10.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UoiOaadEmyQ5asyo0Dxn8oXxGPTOJEwvU0PrWuh2n7yEIItd9SekHOUDchd8iJaY.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5987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UoiOaadEmyQ5asyo0Dxn8oXxGPTOJEwvU0PrWuh2n7yEIItd9SekHOUDchd8iJaY.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5987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검색일: 2020.10.11.)

-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 단위의 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됨
- 2020년 2분기 기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 및 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 안전과 국제교류협력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중앙행정기관에 1,725개, 지방자치 단체에는 13,221개가 등록되어 총 14,946개의 비영리단체가 등록되어 있음<sup>7)</sup>

○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의 지원이 10조와 11조에 의해 이루어짐

〈표 2-10〉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및 분야

공익사업 유형	공익사업 지원 분야
사회통합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노인층 스마트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용직 고용안정
사회복지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치매 예방교육지원, 고령자·느린 학습자 학습 지원, 소외계층 복지·인권 증진, 자원봉사(의료, 재능, 사회봉사 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사회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 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환경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방, 보훈, 국토보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세계평화 증진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나라 사랑 활동
사회안전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 확산, 사회 안전 및 국민안전
국제교류협력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 교류,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 국제개발 및 구호 사업 지양

출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현황”. (<https://npas.mois.go.kr>). (검색일: 2020.08.18.)

#### 나. 2020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

- 국민참여와 민관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혁신 추진계획 발표(행정안전부, 2020d: 1-51)
- 공적 활동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특정 분야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협치형 모델 확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이루고자 함

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관리정보시스템(NPAS). “등록단체 현황”. (<https://npas.mois.go.kr/nsbms/hmp/nfvnzBsisStat/nfvnzRegSituFnd/nfvnzRegSituFnd.do>). (검색일: 2020.08.18.)

-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 분야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사회적 경제와 복지서비스 등에 있어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협치형 모델 확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가 목표임
    - 이 과정을 아래의 3가지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원하는 협업 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과 관리를 하고자 함
  - 참여예산 부문: 기존 국민참여 예산 규모의 확대와 예산 국민 참여단을 상설화하여 예산 분야에 있어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상시화하고 반영률을 높이고자 함
  - 정책평가 부문: 정책 이행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에서 국민의 추천 및 심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개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피드백 강화 추진하고자 함
  - 갈등관리 부문: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갈등관리 제도 및 공론화 방식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갈등관리 해결방안을 확산하고자 함
- 집단 지성 “도전·한국”: 사회문제에 있어 ‘국민참여형’ 해결 사업을 진행함
  -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 주도로 도전적인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공공정책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장 마련함
-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구 지역혁신포럼의 전국적 확산)
  - 시민사회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업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각자가 가진 역량을 모아 사회혁신전문위원 선정, 이를 기반으로 의제 해결팀을 구성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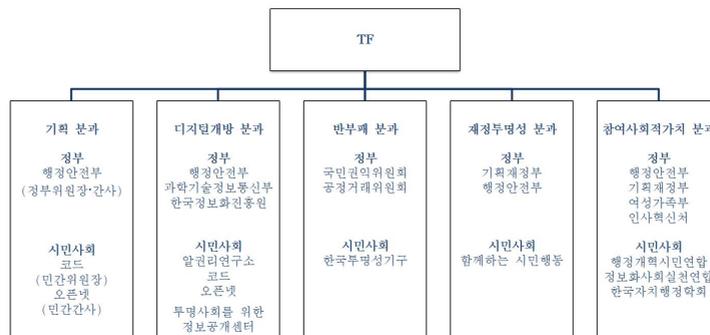
#### 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국가 실행계획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성을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정책의 전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하고자 함
- 기존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반면, 제5차 국가계획(‘20.9 ~ ’22.8)에서는 정책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분과별 TF팀을 구성, OGP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sup>8)</sup>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9월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출범한 다자협력 사업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 투명성과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치 모델을 촉구하는 국제 협의체
  - 우리나라는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활동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의장국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
- 제4차 OGP 국가실행계획(18.9월 ~ '20.8월):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일정 마련에서부터 최초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 또한 함께 창조
- 제5차 OGP 열린 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20.9월 ~ '22.8월):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 정부 포럼」 수립, 기획 분과를 포함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 투명성 그리고 참여 사회적 가치 등 4개 분과별 TF팀 출범
  - 기존 열린 정부가 정부-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나, 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sup>9)</sup>고 언급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의사를 표현
  - 2020년 3월 정부 및 국민제안 공모하여 1,130건의 제안 검토,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의 과제 최종 선정. 9월에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치를 통해 최종 확정 및 과제 국가실행계획을 제출 예정

[그림 2-6] 대한민국 열린 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TF 구성안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6.21.).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계획 만드는 속의 시작한다.” 인용.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034). (검색일: 2020.08.22.)

8) 열린 정부 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검색일: 2020.08.17.)

9) 열린정책신문. (2020.06.22.).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계획 만드는 속의 시작한다.”  
 (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0). (검색일: 2020.08.24.)

## 라. 자원봉사 진흥 국가 기본계획 2018~2022<sup>10)</sup>

-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 심화와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참여계층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이루고자 함
-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사회적 가치 증진에 따른 국정과제 ‘자원봉사 활성화’와 연계
  - 자원봉사의 가치 중 시민성과 공공성 강조, 시민사회 내의 자원봉사 역할 심화가 목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모델 발굴 및 확산, 참여계층 확장
  - 재난,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부처별 특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 확대
- 시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화 도모
  - 부처별 운영 중인 자원봉사 포털을 하나의 아이디(ID)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수요와 공급 매칭 서비스 구축계획

## 2. 외교부

-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인정하여, OECD의 권고를 따라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함
- 공공외교 및 ODA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민간협력을 제도화 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2019년 1월)

- 2019년 1월 15일,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9: 1-1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가 2017년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검토 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10) 행정안전부, 20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pp.1-59.

- 동료 검토 권고사항 12항에 “한국 정부는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 협력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9: 2).”라고 평가함.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 주체로 보고, 상호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위한 기본정책 마련
- 정책협의회와 시민사회협력사업 실무협의회의 정례화
  - 국제개발 협력의 개발 효과성 제고와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의 이해와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그에 수반되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취약 층에 대한 포용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상호 협력과 파트너십을 제도화 하는 데 동의함

#### 나. 공공외교 네트워크 출범

- 공공외교법(2016년 8월 시행)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조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 제도화 도모
  - 공공외교 추진 경과와 분야별 활동 현황의 공유,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활용을 제고하고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 민간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 외교부 주관 정례 간담회와 민간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민관협력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공유 및 점검,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도모

### 3. 여성가족부

-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민간단체의 기존 역량을 활용하고 향후 강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부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
- 개발도상국의 여성·아동 등 인권 및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 활동에 비영리조직과 같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 가. 성 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 민·관 협력 차원의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해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연계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
- 2014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 51조(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의 지원)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20개의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함
- 2020년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 및 사회안 전망 강화라는 3개 유형의 공모사업 운영

## 나.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sup>11)</sup>

### □ 2020년 8월, 정책 토론회 개최

- 민·관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형 홍보 및 캠페인 추진으로 성 평등 문화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그 목적인

## 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협력 사업 공모<sup>12)</sup>

- 양성평등 문화 확산 혹은 여성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신청 가능하며, 법인(민간단체)의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형태로 응모 가능
- 북경 행동강령' 채택은 성 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9월 국제회의를 통해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고 미래 전략 모색 예정

11) 여성가족부.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2020.08.1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 (검색일: 2020.08.24.)

12) 여성가족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협력 사업 공모".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jsessionid=684Khrdm4KAjUfrGhHEdgvTg.mogef21?mid=news400&div1=16&bbtSn=707212](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jsessionid=684Khrdm4KAjUfrGhHEdgvTg.mogef21?mid=news400&div1=16&bbtSn=707212)). (검색일: 2020.09.01.)

## 4. 국무총리(국무총리비서실)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 제정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출범함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2020년 8월)<sup>13)</sup>
  - 2020년 5월,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을 근거로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사회의 국제협력을 주된 역할로 하는 위원회 출범
  - 정부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였고, 관련 정부 부처의 수도 6개에서 9개로 확대
  -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이며 민간위원은 여성 12명, 청년 3명 신규 참여를 통해 진보·보수·중도를 포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5.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농축산물 판로 및 소비를 위한 사회적 활동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회적 모델 발굴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로컬 푸드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사업<sup>14)</sup>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관련 다양한 사회적 활동 지원
    - 예시: 로컬 푸드 행복도시락 사업(치매 센터와 연계 치매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아열대 채소농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아열대 채소 재배, 조리법 만들어 친환경 학교 급식 납품으로 다문화 여성의 고향 먹거리 제공과 문화 알리기)
  - 2019년에는 우수(직접)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

13) 정책브리핑. (2020.08.07.)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56>). (검색일: 2020.08.10.)

14) 관악사회적경제. (2019.05.02.).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공고”.

(<http://gase.kr/web/notice/6492>). (검색일: 2020.08.24.)

- 로컬 푸드, 지역 푸드 플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사업)을 하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농장,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
- 2~5천만 원 사업경비 지원과 올해(2020년)부터는 해당 사업의 홍보와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지원도 병행하여 지원, 참여단체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정부위원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였고, 정부 부처 수도 6개에서 9개로 확대

## 6. 해양수산부

- 예산운영과 기관 혁신을 위해 주로 산하단체의 연관업무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제안을 받아 이를 정책화하고자 함

### 가. 한국어촌공단, FiPA 시민참여혁신단<sup>15)</sup>

-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자문단 출범
  - '19년 7월 공단 혁신계획 모니터링, 정책 제언 등을 위해 시민참여 혁신단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시민 6명, 공단 직원 2명)
  - 공단 혁신계획 모니터링, 정책 제언 등 공단 혁신의 전 과정에 시민 의견수렴

### 나. 해양환경공단, 2022 회계연도 국민 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sup>16)</sup>

- 시민에 의한 사업 개선사항 및 사업제안
  - 신청자격은 전 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와 기존 사업 개선사항에 있어 우수 제안 선정 시 중앙부처 검토 및 예산 국민 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

15) 한국어촌어항공단. (2020.08.31.). "한국어촌어항공단, 제2기 FiPA 시민참여혁신단 출범". ([https://www.fipa.or.kr/sub3/index.php?mode=view&number=5125&page=1&b\\_name=newsrelease&mn\\_idx=0003\\_0041\\_0043\\_&dp1=3&dp2=2&dp3=2](https://www.fipa.or.kr/sub3/index.php?mode=view&number=5125&page=1&b_name=newsrelease&mn_idx=0003_0041_0043_&dp1=3&dp2=2&dp3=2)). (검색일: 2020.09.02.)

16) 해양환경공단. (2020.07.29.).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https://www.koem.or.kr/site/koem/ex/board/View.do?cbldx=236&bcldx=29486>). (검색일: 2020.08.24.)

## 7. 관계부처 합동 정책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여를 이루고자 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유지 정책,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서의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 제안과 참여 등을 통해 민관협치를 이루고자 함

### 가.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2020년 8월)<sup>17)</sup>

- 사회적 경제 코로나 19 대응본부 조직, “고용조정 제로(0)” 선언
  - 사회적 경제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연대기금’ 모금 및 지원, ‘다 함께 위기극복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긴급 자금 및 제품 및 서비스 선구매 지원
- 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을 통한 연대 사업 발굴 및 영세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협동조합의 경우 우선 출자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성장 지원 특례보증 지원

### 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2019)<sup>18)</sup>

-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일자리 발굴
- 기재부·고용부·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의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 노·사·민·정이 각자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역할 규정하고 이행 보장
  -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
  - 현재 광주형, 구미형, 군산형, 대구형, 밀양형,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시행 중

17)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0.08.13.).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88&call\\_from=rsslink](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88&call_from=rsslink)). (검색일: 2020.08.24.)

18) 정책브리핑. (2019.02.21.).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99>). (검색일: 2020.08.24.)

## 8.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종합

□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민간단체에 집중적인 정책, 사회적 경제 혹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은 지역에 치중되어 있음
  - 정해진 법에 따라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각 영역에서 비영리단체의 활동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함
  - 특정 단체 혹은 분야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제기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나 통합적인 매뉴얼과 소통 네트워크·공론의 장 부재
  - 시민사회 발전 및 존립에 필요한 근거 지원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의 정의를 내리고, 참여 대상의 구체화 및 지역-주민, 중앙-지역, 중앙-주민을 상시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문제 발굴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위한 의제화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토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문화가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청소년기 때부터 지역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토론 바탕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공론화를 위한 NGO운영 등을 통해 성숙된 공론과 토론 문화를 이끌어어나가고 있음
  -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필요, 예상치 못한 혹은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슈 및 현안의 발생 시 영국의 Policy Lab in a day와 같은 빠른 해결 방식의 필요성 제기,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협치 활성화 방안의 부족
- 시민사회의 자립도 및 지속적인 생태계 증진 보다는 아직은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존립을 위한 사회적 모델 혹은 사회적 인식의 제고 필요함
  - 신설되는 시민사회의 경우 기존 관련 분야 시민사회의 선례와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누적 자료와 경험치 차이 등) 완화를 위한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시민사회의 중요도,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 감소와 적극적인 시민사회 활동가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기본안 마련 및 교육과정의 설치를 통해 시민사회의 전문성 제고, 시민사회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행-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시민사회 활동이 봉사 혹은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원봉사와 기부 문화 구축 등 연계 활동 및 법령의 필요성 제기
- 시민활동을 통해 그동안 시민활동가들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미흡했으므로, 공익활동가 처우 및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정적·물리적 자원의 취약성에 의해 공익을 위한 활동·참여·지속성 유지 등이 어려웠고, 부족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로 인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가 약해지거나 소실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영국의 Point of Light 와 같은 자원봉사 혹은 공익활동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이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의 사회적 동기부여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참가 의식을 고무하여야 함
- 생애주기별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발전과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교육과 해당 연령별로 적합한 공익활동 증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함
  - 비영리 일자리 제도화 및 지원의 활성화 필요성 제기, 정책형성과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과 지역 시민사회의 연계와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 공유 등으로 청년인구의 지역유입(인구분산) 증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청년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확산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음

〈표 2-11〉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종합

주관기관	지원 정책	보조금 및 내용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25개 단체, 9개 영역, 71억 지원('19)
	2020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	- 민간위탁 활성화, 협치형 모델 확대 - 예산국민참여단, 갈등관리 기본법 제도 -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 구성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	- 대한민국 열린 정부 포럼(민관협의체) - 정책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을 목표로 함
	자원봉사진흥국가 기본계획('18-'22)	- 시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화 도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립('20.7)
외교부	정부-파트너십 기본정책('19)	- 국제개발 협력의 개발 효과성 제고와 정책 수립 - 시민사회와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제도화
	공공외교 네트워크	-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17-'21)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실현 위해 민관협력 제도화
여성가족부	성 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780만 원('20.8월) -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연계프로그램 발굴과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협력 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법인 사업별 최대 2천만 원, 2개 이상 연합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 지원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농림축산 식품부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 활동 지원 - '19년 우수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 활동 지원 등 3개 분야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 선정 및 지원
해양수산부	한국 어촌공단, FiPA 시민참여혁신단	-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자문단 출범(시민 6명, 공단 직원 2명)
	국민참여예산	- 시민에 의한 사업 개선 사항 및 사업제안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22년까지 6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기업 종사자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연대 기금'모금 및 지원 - 협동조합 간 연합회 구성을 통한 연대사업 발굴 -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현재 규모 2배 확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 노사민정이 각자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일자리 모델 확산 -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회 심의 및 의결 - 현재 광주, 구미, 군산, 대구, 밀양, 부산형 일자리모델 시행 중

출처: 저자 작성

## 제4절

#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행정안전부

#### 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sup>19)</sup>

-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 재난안전법 제12조의 2-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4에 의거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4명을 포함, 민간위원 31명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함
  - 자원봉사지원·관리 분과, 의료·방역서비스, 시설복구, 구조·구급 분과로 나누어 재난긴급대응단을 구성, 재난 발생 시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민관협력 활동 사업 실시

#### 나.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20.5.)<sup>20)</sup>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출범
  - 지역혁신을 위해 공동체, 마을기업, 디지털 지역혁신, 지방 행정혁신 등 지역혁신을 위한 분야 전문가 중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지역·현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

19)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018.12.28.).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5&nttlId=68067](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5&nttlId=68067)). (검색일: 2020.11.01.)

20) 정부 24 보도자료. (2020.05.15.).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 출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djOkkr30t+qPp3m-it9iHhqB.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7216&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djOkkr30t+qPp3m-it9iHhqB.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7216&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검색일: 2020.11.03.)

- 1차 회의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를 함
-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혁신역량 제고', '주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업을 통해 구성하고자 함

#### 다. 민관 핵심인재양성<sup>21)</sup>

- '2020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개최(20.9)
  -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모 과정을 거쳐 총 21개 팀을 선정
  - 행정기관별 정책 실행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의 민관통합 역량을 증대하고 독자적 정책설계와 실행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마련
  - 교육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무원 2명, 민간 활동가 2명이 한 팀으로 구성. 신청과정부터 과제 선정까지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과제 수행. 대상 지역의 문제 상황 및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팀별 학습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21개 팀을 선정하여, 3회의 온·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집합 교육 사이에 3차에 걸친 현장코칭이 이루어질 예정임

#### 라.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sup>22)</sup>

-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로 실패 박람회, 국민참여 협업프로젝트, 민간역량 강화지원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
- 2019년 90.4억 지원(실패 박람회 16억 원, 국민참여 협업프로젝트 33억 원, 민간역량 강화 지원 41.4억)

2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9.17.). "지역별 현안 해결 위한 민관 핵심인재 키운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9990](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9990)). (검색일: 2020.10.28.)

2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추진과제. 지역혁신 선도사업 추진". ([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 (검색일: 2020.11.01.)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을 위해 유휴·저활용 되는 시설과 공간들을 지역별로 특화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
  
- 디지털 지역사회 혁신 공모사업 추진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데 수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와 지원
  - 주민참여를 통한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지원단(자문 및 멘토링을 위해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 및 개선·해결

## 2. 기획재정부

- 국민참여예산 제도<sup>23)</sup>
  -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예산사업 직접제안 가능
  -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재정 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관한 토론 참여 및 의견 개선 가능
  -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을 통하여 활동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제안형과 토론형 두 가지로 운영
    - 제안형은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인 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하여 예산에 반영
    - 토론형은 주요 재정 관련 사회현안 등에 관한 논의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에 반영

23)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https://www.mybudget.go.kr/systemIntrcn/systemIntrcnMain>). (검색일: 2020.10.28.)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 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운영<sup>24)</sup>
  - 2020년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착수
  - 정부 주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지역 현안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문제 등을 해결·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ICT를 활용해 구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임
  -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기술 및 서비스, 디지털 활용 사회·경제적 기반 강화 3개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안을 개선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
  - 공공, 민간, 학계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멘토단 구성, 'ICT 착한상상' 외에도, 지속가능한 DS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및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이행할 계획임

### 4.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sup>25)</sup>
  - 반부패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부패 문제 의제화 및 공론화
  - 제1회 협의회는 지난 2년간 총 100여 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8건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제안함
  -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인사 30명으로 구성
    - 의장은 민간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동
  - 총괄분과, 정치·행정 분과, 경제 분과, 교육 분과, 지역 분과, 공정·신뢰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
  - 2018년 국무총리 훈령 중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정된 이후 연 4~5회 정기 협의회 개최

24) 뉴시스. (2020.06.19). “과기부-NIA, 디지털 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본격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9\\_0001066230&cid=13001](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9_0001066230&cid=13001)). (검색일: 2020.09.18.)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 제1회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pp.1-81

- 2020년 2월부터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위원 수 증대
- 분과별로 제안된 의제가 선정되면, 제안을 구체화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의 답변을 받아 보고서 제작

## 5. 국방부

-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 운영<sup>26)</sup>
  - 국방 부문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공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시민단체·군납업계·방산업계·예비역단체·건설업계·법조계·학계·예비역단체 등 민간부문 대표 21명 등 총 24명이 참여 협력
  -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청렴 경영 실천 및 문화 확산, 청렴 실천과제 마련 및 이행에 대한 점검을 협의회를 통해 실현

## 6. 여성가족부

-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협의회<sup>27)</sup>
  - 여성 친화 도시
    - 여가부와 지자체가 협약하여 정책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일자리, 안전한 환경, 돌봄과 관련한 정책 및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로써 양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정책,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체계
    -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9년 말, 전국 92개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9조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됨

26) 뉴스임팩트. (2019.03.22.). “국방부,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 출범”.

(<http://newsimpact.co.kr/View.aspx?No=1059296>). (검색일: 2020.10.02.)

27) 여성가족부 네이버 블로그. (2020.08.12.). “성 평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협의회’”.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gefkorea&logNo=222058504191>). (검색일: 2020.10.23)

## 7. 정보통신위원회

가. '2020년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 30명 출범<sup>28)</sup>

-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은 방송 통신 정책 과정에 시민과 관련된 정책수요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직임
- 국민 정책참여단은 방통위 정책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 불법 스팸 방지 규제 개선과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제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30명의 위원단으로 구성되어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혁신을 위한 국민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 등을 진행

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20.4)<sup>29)</sup>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2019)'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 '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전문가, 이용자, 정부 총 30명이 참여, 이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 정립 및 의견 논의를 활동의 목적으로 함

## 8. 관계부처 합동

가. ODA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 국제 개발 원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 및 민관협력 사업 증대(국제개발 협력위원회, 2020: 5)

28) 정부24. (2020.05.01.). "2020년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 30명 출범".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6935>). (검색일: 2020.10.25.)

29)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2020.04.2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https://blog.naver.com/kcc1335/221926156268>). (검색일: 2020.11.01.)

- 국제 개발 원조 관련 사업의 심의와 모니터링에 있어 민간 참여 등 협력 채널 확대
  - 국제개발 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19년 1월에 수립

#### 나.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sup>30)</sup>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중앙행정기관·유관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
    - 외교부(운영총괄), 통일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이상 간사기관), 국무총리비서실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평화·환경·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기업계, 언론계 전문가들로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공외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출범
  - 공공외교법과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1)에서 강조하는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공외교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함
- 간담회를 통해 공공외교 추진 경과와 분야별 공공외교 활동 현황을 공유하며 네트워크가 공공외교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평화, 인권, 환경, 글로벌 보건 등 세계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와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등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의 활용 제고 및 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통해 공공외교를 강화·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

30) 외교부 보도자료. (2020.07.15.).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출범"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47](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47)). (검색일: 2020.08.27.)

## 9.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종합

□ 정부와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12〉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종합

주관 기관	위원회 혹은 정책명	목적	구성 및 임기	기능 및 운영
행정 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법 제12조의 2-3,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 3·4에 의거</li> <li>- 당연직 정부위원 4명을 포함, 민간위원 31명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지원·관리 분과, 의료·방역서비스, 시설 복구, 구조·구급 분과</li> <li>-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민관협력 활동 사업 실시</li> </ul>
	민간핵심 인재양성교육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과제 수행 대상 지역의 문제 상황 및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팀별 학습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p>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모를 거쳐 총 21개 팀을 선정</p>	교육 대상 선정을 위해 공무원 2명, 민간 활동가 2명이 한 팀으로 구성 신청과정부터 과제 선정까지 함께 진행함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정책 추진	공동체, 마을기업, 디지털 지역혁신, 지방 행정혁신 등의 분야에서 지역·현장 전문가 26명으로 구성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업을 통해 비전 및 핵심전략,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실패 박람회, 국민참여 협업프로젝트, 민간역량 강화
기획 재정부	국민참여 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li> <li>-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예산사업 직접제안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을 통하여 활동</li> <li>-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형: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하여 예산 반영</li> <li>- 토론형: 주요 재정 관련 사회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 반영</li> </ul>

주관 기관	위원회 혹은 정책명	목적	구성 및 임기	기능 및 운영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디지털 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운영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착수	공공, 민간, 학계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멘토단 구성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지역의 현안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문제 등을 해결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반부패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부패 문제 의제 및 공론화	-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 회, 언론·학계를 대표하 는 인사 30명으로 구성 - 의장은 민간대표와 국민 권익위원회 연 4~5회 정 기 협의회 개최 - 2020년 2월부터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위 원 수 증대위원장 공동	총괄분과, 정치·행정 분과, 경제 분과, 교육 분과, 지역 분과 공정·신뢰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
국방부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 운영	국방 부문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공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위사업청 차장)과 시민단체·군납 업체·방산업계·예비역 단체·건설업계·법조계 ·학계·예비역단체 등 민간부문 대표 21명 등 총 24명이 참여 협력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청렴 경영 실천 및 문화 확산, 청렴 실천과제 마련 및 이행에 대한 점검을 협의회를 통해 실현
여성 가족부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협의회	양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정책,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제 39조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됨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9년 말, 전국 92개 지정
정보통신 위원회	2020년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	2020년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 '30명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2019)'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0.4)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형성 및 의견 논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전문가, 이용자, 정부 총 30명이 참여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

주관 기관	위원회 혹은 정책명	목적	구성 및 임기	기능 및 운영
관계부처 합동	ODA 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	국제 개발 원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 및 민관협력 사업 증대	국제 개발 원조 관련 사업의 심의와 모니터링에 있어 민간과 시민사회 참여	국제개발 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2019년 1월에 수립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대한 토론	중앙행정기관·유관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을 활성화

출처: 저자 작성

□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내실화 필요
  - 부서이동, 명칭 변경 후 이전의 위원회 업무들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 이슈화되는 문제해결만을 위한 일회성의 위원회 운영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장기적 관점의 민관협치 체제 구축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 또는 매뉴얼 작성 필요
-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의 구체화 및 방향성 제시 필요
  - 현재 민관협력 관련 정책 및 위원회 운영은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상설 소통체계와 정책 방향성의 부재로 민관협력 관련 정책의 종합지원 및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
  -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혹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 소통 매뉴얼 작성 필요
  - 위원회의 정례화와 내실화를 통해 과도기 단계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방향성 정립 필요
- 민관협력 관련 정책과 정보 습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
  - 부처별, 지자체별 위원회 모집 공고 혹은 민관협력 정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각 부처 홈페이지, 지역 신문, 정책브리핑, 정부 24등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 플랫폼 구축 후 적극적인 홍보와 기능고도화를 통해 이용 활성화 필요
  - 불필요한 기존 플랫폼의 정리와 통합을 위한 민관협력 도모와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 제5절

### 소결 및 시사점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중앙부처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225개 단체에 약 71억 원을 지원
  -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연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간단체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2020년 9월 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별 최대 2천만 원(2개 이상 연합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함
  - 다부처 합동 정책으로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
-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최근 국제적으로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열린 정부 파트너십 국가실행계획(민관협의체 구성), 2020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민간위탁 활성화, 협치형 모델 확대,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 구성 등)
  - 외교부는 정부-파트너십 기본정책(2019년)을 수립하여 시민사회와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제도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제도화함
  -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2020년 8월 발족
  - 다부처 합동 정책으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체계 구축

## 2. 현황 분석의 시사점

-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이 지원 또는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사회 역량 강화, 생태계 구축 등 시민사회 기반구축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
  - 사회문제(지역사회문제 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정부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사회문제 해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하지만 아직 시민사회의 전문성 향상, 전문가 양성, 시민사회의 풀(pool)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기반마련, 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 확장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개인·소수의 역량에 의지한 채 정부 정책에 참여해왔음. 이에 시민사회 성장 및 정부 정책참여에서 시민사회가 담당하는 역할에 한계로 작용.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지원 필요
  
-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나 통합적 매뉴얼이 부재.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직제규정 역시도 관리·감독·지원 등 소극적이고 통제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시민사회와 관련된 부처별 산발적인 형태의 지원은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으로 작용.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시민사회와 관련된 현재의 정책은 일회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비교적 지속적이지만 공익활동 유형이 매년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유형에 속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 존재
  - 보조금 지급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집중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 시민사회의 자립도 및 지속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립 필요





##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제1절

##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가.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과제

-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계획임
  -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참여 중심의 정부 운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국민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같은 성과가 발생한 반면 다양한 국민 참여 통로가 마련되었으나 참여 효능감이 낮다는 점, 기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되기에는 미흡했다는 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 합동, 2020b: 5)
  - 정부는 이상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핵심적 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질적 측면에서 상호협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10년을 대비해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이를 위해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관계부처 합동, 2020b: 6)
- 동 계획의 역점분야는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관계부처 합동, 2020b: 7)
  - 참여 분야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협력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강화
  - 서비스 : 범정부 협업을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 및 제공,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일하는 방식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시민사회 기본계획은 독자적인 기본계획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는 내용들도 고려돼야 할 것임. 따라서 분야별 추진 과제 중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획기적인 국민 참여,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 3-1]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참여	<b>①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b> ◦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 '도전 한국(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사업)' 추진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
	<b>②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b> ◦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 민간-정부 인적교류 기반 강화 ◦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b>③ 발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b> ◦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범정부 확산
서비스	<b>④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 맞춤형 안내 및 제공</b> ◦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 제압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 디지털 약자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제고
	<b>⑤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b> ◦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충·개선 ◦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b>⑥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b> ◦ 적극행정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 ◦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
	<b>⑦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b> ◦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일하는 방식	<b>⑧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b> ◦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 마인드 제고 ◦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혁신 사례의 공유 및 확산
	<b>⑨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b> ◦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b: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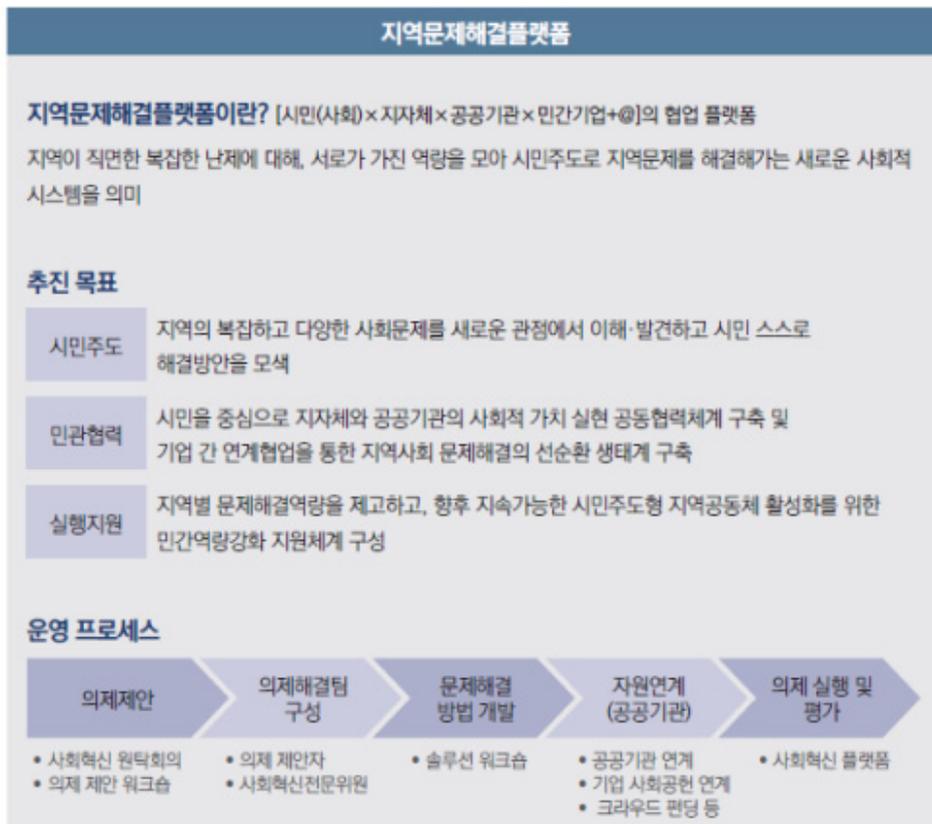
## 나. 시민사회 관련 추진과제 검토

###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7과 맥락을 같이하는 추진과제임
-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의견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참여의 효능감 증진을 위해 예산 및 성과평가 등 정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0)
- 동 추진과제는 참여기반, 집단지성, 지역혁신과 같은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참여기반의 경우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 예산, 정책평가, 갈등관리, 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0)
  - 참여예산 : 예산국민참여단 상설화를 통해 주기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참여의 실질적인 상시화 등을 통해 국민제안 반영률 향상
  - 정책평가 : 성과평가 등에 공개평가 방식으로 국민 추천·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피드백 강화
  - 갈등관리 : 갈등관리제도 및 공론화 방식 제도화(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선정된 지자체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 공공기관 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관리체계 및 혁신성과 평가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
- 둘째, 집단지성의 경우 그 동안의 사회문제 해결은 예산·인력 등의 투입을 수반하는 기존 정책경로에 머물러 있었으며, 소수의 전문성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탈피해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0-11)
  - 도전 한국 :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과감한 보상과 정책화를 지원
- 셋째, 지역혁신은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함(관계부처 합동, 2020b: 12)
  - 자치기반 :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 사업에 확대 활용

- 지역문제해결 :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구 지역혁신포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리빙랩 등 사업을 확산하는 내용 포함. 세부적으로는 지역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민 스스로 모색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그림 3-2]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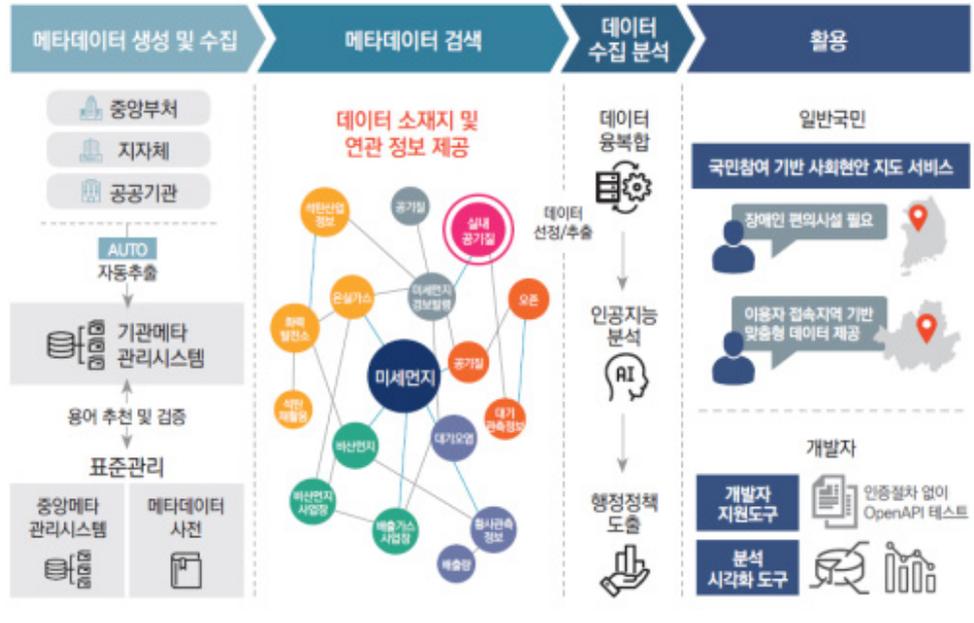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b: 12)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6,7과 같은 맥락을 같이하는 추진과제임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는 민간의 노하우, 전문성, 네트워크를

- 정부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보조금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추진과제는 민간위탁·보조금, 인적교류, 자원공유와 같은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위탁·보조금은 시민사회 협력 제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3)
    - 민간위탁 : 협치형 민간위탁(가칭)의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유연화와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 이를 위해 계획·예산·경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기반 평가와 보상제도 확립을 도모
    - \* 협치형 민간위탁 : 사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신뢰와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해 위탁사무를 공동생산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영방식
    - 보조금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기준 및 정산 절차 등 개선
  - 둘째, 인적교류는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채용과 교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3)
    - 채용 :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인재 채용(개방형) 시 역량평가제도 보완 등 민간 인재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실시. 이는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역량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임
    - 교류 : 민간과 정부 간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상시적 교류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며, 문화콘텐츠·사회적경제·환경·인권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 공무원 단기 현장 교육 추진. 한편 시민사회의 경우 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방문과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체계화
  - 셋째, 자원공유는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 간 데이터의 연계 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b: 14)
    - 데이터 연계·공유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매개로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도 확대. 예를 들어 부처 정보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민간주도형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활용

[그림 3-3]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b: 14)

#### 다. 시사점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이행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집행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성된 민관협력 체계 내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임. 정부는 중앙과 지방으로 영역을 나눠 각 영역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 이슈 및 현안 발생 시 소통협력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앙단위에서 국민참여의 실질적 상시화를 위한 예산국민참여단 설치, 국민 아이디어 정책화를 넘어 실질적 예산지원으로 체감 협업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지역단위에서

- 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민간과 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 둘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호 간에 이해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과 시민사회 이해를 위한 공무원 교육은 확대하지만 정책 과정에 참여할 시민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추진방안에 대표사례 선정 후 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정부는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협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 가.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과제

- 인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으로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 등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sup>31)</sup>

31) 경인부. (2020.10.22.).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인천”.  
(<http://www.giview.co.kr/news/article.html?no=42345>). (검색일: 2020.11.02.)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2019.7.17.제정)를 마련함
-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마련해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인천시 공무원과 각계각층 시민 38명으로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해 민관협치 확장을 도모해 왔음. 민관동행위원회는 제도개혁, 교육, 사업 등 3개 분과를 통해 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인천시에 권고하는 등 민관협치 구조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sup>32)</sup>

\* 2019년 12월 3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시민청원 플랫폼(인천은 소통e가득)에 온라인 토론장 '토론 talk talk'을 신설해 2020년부터 본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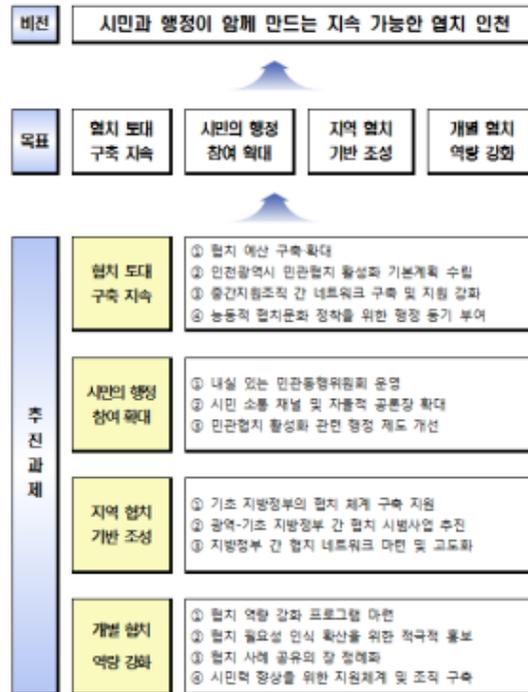
□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에 나타난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인천시, 2020: 6)

- 비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협치 인천이며, 목표는 협치 토대 구축 지속,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임
- 추진과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제3조의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제3조의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제3조의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32) 뉴스로. (2019.11.29.). "인천시 소통행정, 시민과 함께 행정장벽 극복하는 '민관동행위원회' 출범".

(<https://www.newsro.kr/%EC%9D%B8%EC%B2%9C%EC%8B%9C-%EC%86%8C%ED%86%B5%ED%96%89%EC%A0%95-%EC%8B%9C%EB%AF%BC%EA%B3%BC-%ED%95%A8%EA%BB%98-%ED%96%89%EC%A0%95%EC%9E%A5%EB%B2%BD-%EA%B7%B9%EB%B3%B5%ED%95%98%EB%8A%94-%EB%AF%BC%EA%B4%80%EB%8F%99%ED%96%89%EC%9C%84%EC%9B%90%ED%9A%8C-%EC%B6%9C%EB%B2%94/>). (검색일: 2020.11.03.)

[그림 3-4]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출처: 인천시(2020: 6)

#### 나. 시민사회 관련 추진과제 검토

- 추진과제의 수는 총 14개로, 이 중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들을 고려해 검토하였음

#### □ 협치 예산 구축·확대

- 인천시는 주요 시민 참여형 예산 지원 사업에 속의 과정 체계화 등 협치 원리를 도입하고,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운영, 시민참여형 예산지원 사업의 통합적 재구조화, 협치 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인천시, 2020: 7)
- 이 중 시민참여형 예산 지원 사업의 통합적 재구조화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등 시민 또는 시민단체 직접 예산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동하고 시민 속의 과정 등 협치 원리에 기반한 '협치 예산' 제도로 재구축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인천시, 2020: 8)

#### □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상호 업무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약하고, 집적화를 통한 역량 극대화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인천시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통합·융합·신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인천시, 2020: 10)
- 이 중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은, 우선 시 관할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적 네트워크 구축 후 지역 단위로 설치·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인천시, 2020: 11)

#### □ 내실 있는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 인천민관동행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근거해 마련한 기구로, 인천시 민관협치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임. 동 기구는 제도 개선과 협치 정책의제의 설정, 시범사업 추진 등 행정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 극대화과 실제 실행력 담보를 목적으로 함(인천시, 2020: 13)
- 인천시는 행정·제도상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구체적 협치 활성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성격을 넘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협치기구화를 위해 시민 합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단계적 추진)임(인천시, 2020: 14)

#### □ 시민 소통 채널 및 자율적 공론장 확대

- 인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촉진을 위해 기존 소통 채널은 강화하는 한편 상호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활용하고, 중장기 과제로 권역별 시민 공익활동 거점 공간 마련, 양방향 소통형 시민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임(인천시, 2020: 14)
- 양방향 소통형 시민 온라인 토론장의 경우 시민과 행정이 상호 정책제안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플랫폼으로서 정책 토론을 넘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임(인천시, 2020: 15)

####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제도 개선

- 인천시는 시민들의 보다 원활한 시정 참여를 위해 위원회 제도, 시민 공모형 사업 등 복잡한 사업양식을 점검해 개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프로세스 개선, 위원회 인력풀 확대와 담당자 교육·워크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인천시, 2020: 16)

#### □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 체계 구축 지원

-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 체계 구축 지원은 협치 원리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시정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의 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초 지방정부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협치 전담 기구와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인천시, 2020: 18)
- 구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의 표준 조례안 구성 및 홍보, 협치 전담 기구 및 인력 확보 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협치 플랫폼 구축 지원 등 인천시 단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관련 계획을 기초 지방정부 단위 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인천시, 2020: 19)

#### □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 민관협력은 관 뿐만 아니라 시민 역시 충분한 협치 역량이 보유될 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확장적인 협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인천시, 2020: 22)
- 인천시는 관내 교육관련 기관을 활용해 협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선 구축 후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강사풀(pool)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개선하고자 함(인천시, 2020: 23)

### 다. 시사점

-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
  - 제3조의6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협치 예산 구축·확대, 제3조의3인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 내실 있는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시민 소통 채널 및 자율적 공론장 확대가 있음
  - 제3조의7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 체계 구축 지원,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치 시범사업 추진, 지방정부 간 협치 네트워크 마련 및 고도화, 제3조의4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과 관련한 착안사항임. 인천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등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협치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임. 또한 이렇게 정의한 협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역시 시민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해당 재원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도들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과 관련된 착안사항임. 인천시는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시민소통 채널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의한 각자의 영역에서 시민사회 상호간에 업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또는 권역단위로 연계와 협력 모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음. 이상의 플랫폼은 시민사회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민관간에 상시적인 소통채널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시민사회간, 시민사회와 시민간, 시민사회와 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 소통 채널을 강화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인천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유사한 청원채널을 운영 중이며, 3천명 이상 동의시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심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 모두 소통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본계획에서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인천시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관련 계획을 기초 지방정부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도계획안 구성 및 홍보, 협치 전담 지구 및 인력확보 필요성 강조 등 국가기본계획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확산되기 위한 지원사항들이 무엇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임. 인천시는 관내 교육기관들을 활용해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기관을 매개로 한 협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이상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풀 지원, 교육기관 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높은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초기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후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 가.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과제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하 자원봉사 계획)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섹터간 분화·융합,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수립된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20a: 1-2)
  -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화에 따른 정부 주도의 한계가 나타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원봉사가 자선·이타적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시민의식의 실천 등으로 역할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었음
  - 시민사회 역시 사회적경제·비영리영역 등 유사 섹터와 연계·융합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으로 역할을 확대하였음
  - 과거의 자원봉사가 비공식적·주변적 영역에서 자선적·개인적 행위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시민적 자율성에 기초한 상호 호혜성·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를 향한 발전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정부는 자원봉사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추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인프라 강화 및 인적자원 육성,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도과 인프라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기능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음(관계부처 합동, 2020a: 11)
  - 수립방향 측면에서는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내실화와 더불어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영역으로의 확장이 요구됨
  - 수립방법의 측면에서 정책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5개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이행 가능한 정책과제 중심의 구성을 도모함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비전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며, 목표는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임
  - 정책과제의 수는 총 17개로, 이 중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6조)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그림 3-5]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정책영역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11)

## 나. 시민사회 관련 추진과제 검토

### □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 강화 방안

- 자원봉사 계획 중 ‘자원봉사 공적 지원기부 정비’의 세부과제인 ‘국가·지역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고도화’,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혁신’의 경우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에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국가·지역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고도화’는 범부처 총괄기구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법정 심의사항 처리 중심에서 실질적 정책 심의·조정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영역에 따른 위원회 참여부처 확대를 통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밝히고 있음. 또한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26)
- 또한 지자체별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역 자원봉사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관련 주체들이 활발히 참여·숙의하는 플랫폼으로서

가능함으로써 국가진흥위(국가기본계획 심의)와 지역진흥위(지역기본계획 심의) 간의 효과적인 연계·협업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26)

- '자원봉사 포털의 기능혁신'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포털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임. 포털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화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등 협업 연결망 구축에의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 참여코너를 확대해 수요처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협업 연결망 내 참여자들의 수요에 대응함(관계부처 합동, 2020a: 29-30)

####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 자원봉사 계획 중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과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는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에의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특수 사회영역 자원봉사 기반 구축'은 부처별·분야별 특화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치안), 국립공원 환경정화·보존 자원봉사단체(환경), 문화·관광·예술분야의 통역·안내·보존 자원봉사단체 등을 구성해 해당 영역에의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pool 마련 및 멘토로 활용(특강 및 상담 등), 교육·심포지엄 개최, 성공사례 공유 등을 지원한다는 점은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등에 활용할 만한 착안사항이 될 수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18-20)
-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는 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전환과 전국 센터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센터 간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해당 센터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장·직원 전문 자격요건 강화와 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을 지원함. 또한 센터별 서비스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강점센터 벤치마킹 및 취약센터 대상 주제별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함. 나아가 권역별·직책별·영역별 센터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센터 운영 관련 수시교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27-28)

####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 먼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실행체계 고도화'와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제시하고 있음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실행체계 고도화’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고도화의 내용으로 단순 관리업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시민성과 공공성 등 자원봉사의 가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역량 등의 내용을 교육 콘텐츠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부처별 특수성을 감안한 연수과정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행안부는 재난자원봉사, 여가부는 청소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부처가 축적한 전문성을 교육대상자들에게 지원함(관계부처 합동, 2020a: 32)
  - 또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안정적·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 민간자격 운영기관과 교육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해당 교육기관은 전국센터 및 유관 수요처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관계부처 합동, 2020a: 32)
  - ‘자원봉사자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은 자원봉사자의 경력·성장단계별로 분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과정 및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일반소양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욕구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주요 교육기관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신설함(관계부처 합동, 2020a: 34)
  - 다음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을 목표로,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참여·개최하는 날을 지정해 일시에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분야별(사회복지, 교육 등) 주무부처를 통해 박람회 개최 및 표창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22)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과 성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다양한 매체와 차별화된 형식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 브랜딩 확산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23)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 ‘공공부문 자원봉사 확대’, ‘지역특화형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의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공공부문 자원봉사 확대는 지자체·관공서와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함으로써 민원안내 및 상담,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동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20a: 21)

- 지역특화형 및 혁신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혁신 목적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변화 우수사례를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하고 수상자 풀(pool)을 만들어 전문가 및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단위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함(관계부처 합동, 2020a: 38)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단순 국제대회 참가가 아닌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국내 및 해외 자원봉사센터 간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섹터별 경험의 환경과 공유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외연 확장과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47)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계획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학술역량을 고도화하고, 자원봉사 통계·기록물의 축적 및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제반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태 파악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실성 있는 평가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39)
  -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정책연구 기능 고도화, 자원봉사 연구개발을 통한 학술콘텐츠 고도화, 3년 단위 전국·지역단위 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 통계정보 및 기록물 발행 등을 제시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a: 40)

## 다. 시사점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마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범부처 총괄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중요한 것은 법정 심의사항 처리 중심에서 실질적 정책·심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임. 한편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포털 구축을 검토할 수 있음. 해당 포털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시민사회 영역별 활동가와 수요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이용자 참여코너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업 연결망을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부처별·분야별 시민사회 풀을 구성해 해당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축 후 특강이나 상담 등 멘토로 활용하고, 교육·심포지엄 개최, 성공사례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역별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 셋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임. 자원봉사 계획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의 세분화를 제시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경력·성장 단계별로 구분한 콘텐츠가 필요하며, 교육 영역으로는 시민사회의 가치에 관한 영역,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 영역, 시민사회 영역 등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법으로는 먼저 부처별 특수성 및 전문성을 활용한 콘텐츠, 주요 교육기관과 연계한 콘텐츠, 향후 시민사회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이후에는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교육전문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체계적 교육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중심으로 각 분야 교육운영기관과 콘텐츠를 개발·공유하는 등 교육전담체계 구축을 실시해야 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의 착안사항임.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시민사회 협업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혁신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단위에서는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1. 플랫폼의 개념

#### □ 플랫폼의 개념

- 플랫폼은 ‘구획된 땅’을 의미하는 ‘plat’과 ‘형태’를 의미하는 ‘form’의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sup>33)</sup>
  - 플랫폼은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 지워지면서 계획에 따라 집과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
  -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함
  - 플랫폼의 역할은 이용자와 사용자 간 다양한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 □ 소통플랫폼의 개념

- 소통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생각, 경험을 통해 정보를 창출, 공유, 재가공, 확산하는 등 참여, 소통, 공유 기반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공감장 및 공론장 의미(이동기, 2018: 6)
  - 일방적인 정보전달, 의견 수렴 방식 등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참여, 정보의 생산 및 확산, 이용자-사용자, 이용자-이용자 간 소통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 최근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연결을 다양하고 용이하게 만들

33) 윤상진. (2019.05.02.). “승강장에서 SNS까지,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27534>). (검색일: 2020.10.07.)

## 2. 플랫폼 사례(광화문1번가)<sup>34)</sup>

### 가. 광화문1번가 운영 배경 및 방향

- 광화문1번가는 2017년 5월 설치 및 운영된 홈페이지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로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그림 3-6] 광화문1번가 CI



출처: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검색일: 2020.10.07.)

-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행정안전부, 2019a: 12-13)
  - 첫째, 국민과 함께 만들
    - 국민의 참여로 공감하는 주제를 도출. 정부혁신 국민포럼 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토론의 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 운영
  - 둘째, 서울과 세종에 열린소통포럼 운영
    - 서울열린소통포럼과 정부세종청사에 포럼 공간 설립 및 서울-서종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적 한계 극복. 세종시에 소재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이외 거주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추구
  - 셋째, 온·오프라인 연계 국민정책참여 공론의 장 운영

34) 광화문 1번가에 대한 내용은 광화문 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참고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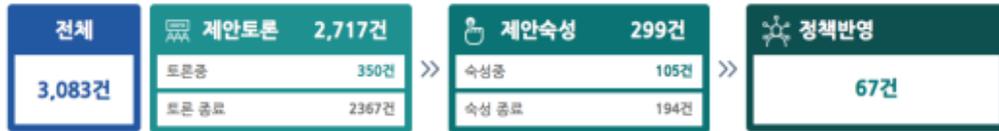
-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와 SNS로 중계. 포럼 주제에 맞는 사전 의견 수렴 및 실시간 온라인 토론 기능을 탑재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국민정책참여 공론의장 운영. 서울열린소통포럼-세종열린소통포럼을 연결하여 이원생중계 추진
- 넷째, 포럼 운영과정의 온라인 공개
  - 부처의 내실 있는 국민제안 검토 및 국민 소통을 위해 포럼 주제 선정부터 사전토론, 발표, 정책 제안과 검토, 반영에 이르는 포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
- 다섯째,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포럼 개최
  - ‘찾아가는 열린소통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공감과 논의의 장, 지역주민 간 정보공유 기반 마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
- 여섯째, 민·관 협력으로 국민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국민 인식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열린소통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광화문1번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참여의 편의성 증대, 지역적 한계 극복, 참여자 의견의 적극반영, 정부와 시민 간 적극적 소통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나. 홈페이지 구성

-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 도전·한국, 참여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제안에는 혁신제안톡, 협업이음터, 협업아이디어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혁신제안톡은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sup>35)</sup>에서 제안을 하고, 국민의 제안 중 30일 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의 경우 정부혁신 국민포럼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후 정책으로 이어짐
  - 현재까지 3,083건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 중 2,717건은 제안토론, 299건은 제안숙성을 거침. 혁신제안톡을 통해 정책에 반영된 제안은 2020년 10월 까지 67건임

35)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혁신제안톡은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기타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 3-7] 혁신제안특 현황



출처: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특”.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ListPage.do?menu\_id=383).  
 (검색일: 2020.10.16.)

-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 민간-공공의 협업상 대방을 찾아 이어주는 ‘열린 협업 공간’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협회, 기업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플랫폼
  - 협업이음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그림 3-8] 협업이음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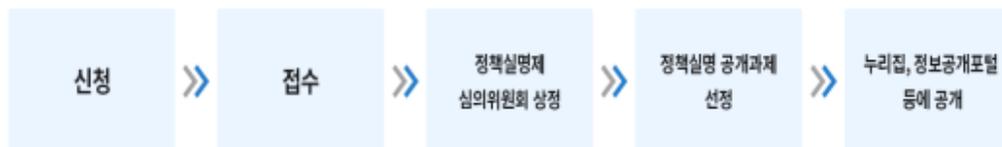


출처: 광화문1번가. “협업이음터”.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tching/matchingListPage.do?menu\_id=440). (검색일: 2020.10.16.)

- 협업이음터는 협업 기관 간 이음 뿐만 아니라 협업 이음 수요 과제를 주제별·대상별로 묶어 주기적으로 ‘협업이음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협업이음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281개의 기관이 협업 이음에 등록하였으며, 이음 중은 163건, 이음 종료 79건, 이음 성사(이음종료) 20건, 이음 성사(추가 이음 희망) 19건으로 확인됨
- 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일상 속 국민의 불편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민간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임
  -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책으로 추진되며, 제안자에게는 포상
  -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협업 아이디어 메뉴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808건으로 확인됨

- 정책참여는 국민심사, 설문참여, 공모참여,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조직진단 참여, 국민디자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심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서비스 우수사례 심사에 직접 국민이 심사하는 것임
    - 광화문1번가 정책참여에서 국민심사 메뉴에서 진행 중인 심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음. 정부 부처에서 실시 중인 공모전, 경진대회, 선호도 조사, 우수사례 등에 참여. 단,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참여 가능
  - 설문참여는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의견을 객관식·주관식 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을 통해 수렴
  - 공모참여는 국민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 및 참여를 위한 것으로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에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를 확장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임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에는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공개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실명 공개과제 신청 가능.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그림 3-9]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절차



출처: 광화문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olicyRn/policyRnMainPage.do?menu\\_id=458](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olicyRn/policyRnMainPage.do?menu_id=458)). (검색일: 2020.10.16.)

-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제도 (행정안전부, 2019b: 1-9)
  - 조직·인력운영, 업무처리 방식 및 절차 등을 국민이 직접 점검 후 결과를 조직관리에 활용
  - 2019년 기준 18개 중앙행정기관 1,086명의 참여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대~6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

[그림 3-10] 국민참여진단 점검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9b: 6)

-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제도(행정안전부, 2020a: 1-77)
  - 2014년도부터 2020년 10월 기준으로 누적사례 204건

□ 현장소통은 열린소통포럼과 소통공간 신청으로 구성됨

-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으로 국민이 제안한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완성해 각 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열린소통포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온라인 운영을 강화하여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
  -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열린소통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 우리지금만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참여가능
- 소통공간 신청은 정책을 토론향하는 공론의 장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임
  - 자리배치는 토론 및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림 3-11] 현장소통 관련 홈페이지 정보

[열린소통포럼 신청 홈페이지]



[소통공간 정보]

주소	상세정보	이벤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10월 26일 ~ 11월 6일</li> <li>세부가능 분야: 정책참여 1차, 2차, 3차</li> <li>유관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기금</li> <li>이벤트: 10월 26일 ~ 11월 6일</li> <li>행사: 정부서울청사 10층 1001호 (10월 26일), 서울특별시청 4층 401호 (11월 6일)</li> <li>문의: 182-12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링크</li> <li>문의 사항</li> <li>행사 정보</li> </ul>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10월 26일 ~ 11월 6일</li> <li>세부가능 분야: 정책참여 1차, 2차, 3차</li> <li>유관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기금</li> <li>이벤트: 10월 26일 ~ 11월 6일</li> <li>행사: 정부서울청사 10층 1001호 (10월 26일), 서울특별시청 4층 401호 (11월 6일)</li> <li>문의: 182-12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링크</li> <li>문의 사항</li> <li>행사 정보</li> </ul>

출처: 열린소통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 우리지금만나”.  
 (<https://www.openforum2020.com/>).  
 (검색일: 2020.10.18.)

출처: 광화문1번가. “소통공간 신청”.  
 ([https://www.gwanghwamoon1st.go.kr/forumSpce/forumSpcePage.do?menu\\_id=425](https://www.gwanghwamoon1st.go.kr/forumSpce/forumSpcePage.do?menu_id=425)).  
 (검색일: 2020.10.18.)

- 도전·한국은 시민들이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임. 대한민국 국민(국민, 전문가, 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
- 진행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제 발굴 단계에서는 과제를 공모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과제 선정 및 과제별 포상금 규모 확정
  -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단계에서는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과제별 포상 규모 확정
  - 아이디어 숙성 지원 단계에서는 선정된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 또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검증 및 정책 환류 연계사업 추진을 지원
  - 정책환류 단계에서는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유관부처와의 연계사업을 통해 정책으로 환류

〈표 3-1〉 도전, 한국 진행절차

단계	내용
<b>문제발굴</b> : 과제공모(정부 부처 및 국민) : 전문가 검토(행정연구원 등)	<b>도전할 문제 공모</b> - 정부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1차 후보과제 선정. 추가과제 등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 과제 심의위원회(부처 및 전문가)에서 15개 내외 과제 및 과제별 포상 규모 확정
<b>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b> : 해결방안 공모(국민 누구나) : 심사 및 시상(포상)	<b>해결방안을 공모하고 과감한 보상 지급</b> - 정부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1차 후보과제 선정. 우선순위 및 추가 과제 등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 과제 심의위원회(부처 및 전문가)에서 15개 내외 과제 및 과제별 포상 규모 확정
<b>아이디어 숙성 지원</b> :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전문기업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등)	<b>아이디어 숙성 지원</b> - 선정된 해결방안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유관부처협의회를 통해 저작권 검증 및 정책환류 및 연계사업 추진 지원
<b>정책환류</b> : 정부정책 반영 : 유관부처 연계사업 추진 지원(R&D, 시제품, 창업 등)	<b>정부정책 반영 및 유관부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으로 환류</b> -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아이디어(캠페인, 제도개선 등)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곧바로 정책에 반영 - 완성도 있는 제품 형태의 아이디어(스마트폰 앱 등)는 조달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개척 지원 - 추가적인 연구나 개발이 필요한 경우(친환경 기술 등 R&D, 시제품 개발 등)는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연계사업 추진 지원

출처: 광화문1번가. “도전·한국”.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4d3b72d0209481e80050b34d7269ee7&amp;menu\_id=408). (검색일: 2020.10.18.)

## □ 참여정보는 국민참여 일정과 참여 창구 모음으로 구성됨

- 국민참여 일정은 월별 국민참여로 추진되는 다양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해당 일정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
- 참여 창구 모음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국민참여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시민 눈높이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어려운 정부정책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구성(설문, 포스터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 향상)
- 시공간의 제약을 감소시키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온·오프라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플랫폼을 구성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오프라인 소통공간 마련을 통해 공간적 제약의 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
  - 온라인 운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접근 편의성 높이고자 노력

## 제3절

#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의 구조

- 정착지원 체계 마련의 배경과 정착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법’(1962년 제정)이 있었음. 동 법률은 북한에서 귀순한 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귀순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제공한 바 있음. 당시 지원 내용은 정착수당, 주거지원, 교육 보호, 취업 알선 등으로 냉전 시대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된 법률이었음 (류지성, 2016: 37)
  -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관할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귀순자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류지성, 2016: 38),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2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sup>36)</sup>
  -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법률 제4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고(법률 제6조),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법률 제15조의2)가 북한이탈주민 특성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률 제30조)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고 있음(통일부, 2019: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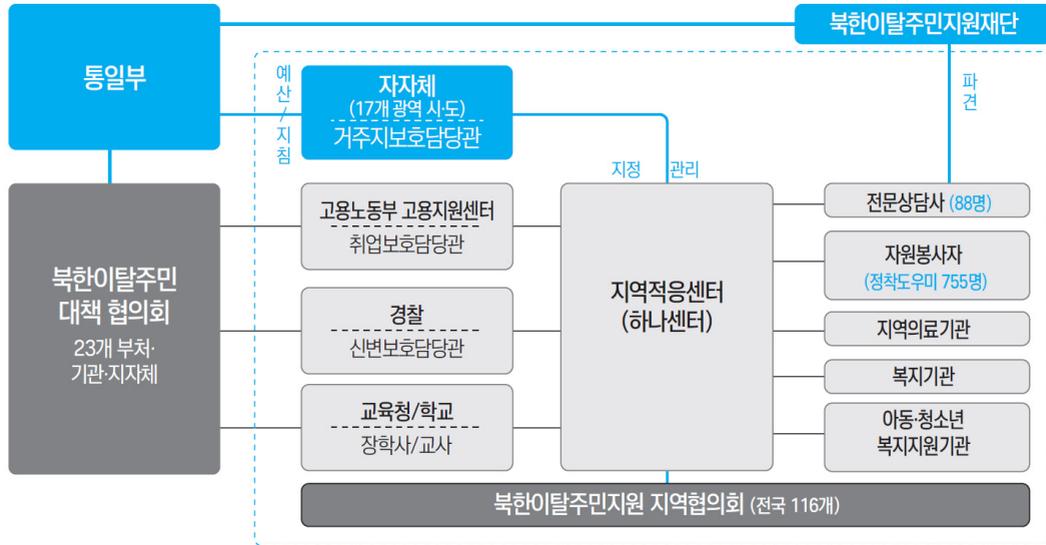
-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진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고려한 것이며, 둘째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임(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13-19)
  - 현재 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후 거주지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음. 민간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높은 이해에 각 단체가 지닌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정리하면 통일부는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지방자치단체에는 하나센터 운영지원 등 향후 역할 확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전국하나센터협의회, 2019: 13-19)
  -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고용노동부, 경찰, 교육청,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민관협력과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전제로 한 운영체계라 할 수 있음

□ 정착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비되었음

- 201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4조의 3)에 따라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마련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분야별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탈북민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해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동법 제4조의3은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의료지원과 생활보조, 정착지원시설 운영과 주거지원, 사회통합과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통일부, 2018: 3)
- 1차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긴밀한 협업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중복 지원,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통일부, 2014a: 5)
-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중앙단위의 정책조정 강화, 하나센터 재편을 통한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중복지원 방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 차원의 연계망 강화, 탈북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하나원 교육의 내실화, 정착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정책개발을 위한 탈북민 실태조사 체계적 실시 등이 있음(통일부, 2014a: 1-13을 참고하여 정리함)
- 2차 기본계획(2108~2020) 역시 협업체계 정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대책 협의회에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인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음(통일부, 2018: 27)
    - 1차 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조정능력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앙과 민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 1차 계획 기간 지역협의회가 88개에서 116개로 확대되어 지역 차원의 협업체계 강화를 도모하였고, 교육·의료·법률 등의 영역에서 탈북민 지원 민간기관 간 연계망이 강화되었음(통일부, 2018: 6)
  -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 협업 강화, 탈북민 관련 민간·지자체의 역할의 단계적 확대 등과 같은 인적·제도적 협업기반 강화가 있음. 또한 민간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를 위해 탈북민 지원 민간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별 자원지도를 구축해 정부복지포털 '복지로'에 노출시켜, 탈북민의 수요에 따라 하나센터가 서비스를 연계 하도록 하였음(통일부, 2018: 12-26)
  -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 협의회 구성·운영(2019년 12월 기준 전국 118개), 시도 및 시군구 거주보호담당관 운영(224명)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정부-지자체-민간의 협업 강화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추진사업 현황 공유와 협업 방안 모색, 민간단체 실무자와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간 실무협의 간담회 운영(상·하반기) 등을 지속하고 있음(통일부, 2020: 34)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착지원 체계를 그림으로 구성하면 [그림 3-13]과 같음

[그림 3-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



출처: 전국하나센터협회(2019: 33)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의 구성요소(역할과 기능)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내부의 연결망을 구분하면, 중앙정부-지역사회-민간기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서는 중앙정부, 지역사회, 민간기관 영역별 주요 구성요소(참여자)와 각 참여자의 권한과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1) 중앙정부

- 통일부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보호 대상)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통일부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착지원과로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통일부 정착지원과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북한이탈주민

- 과 관련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음<sup>37)</sup>
- 통일부는 집행기관을 보유한 부처가 아니므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사업 진행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32-34)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담당 하지만 집행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 전달체계)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집행조직을 갖춘 부서가 담당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3개 부처·기관·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sup>38)</sup>
  -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시행령 제2조)
- 민관협력 체계 관점에서 보면 지역과 민간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아젠다가 통일부 정착지원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대책 협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

37) 통일부. “조직과 기능”.

([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organization/community\\_based/#org\\_tab4](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organization/community_based/#org_tab4)).  
(검색일: 2020.10.18.)

38) 법제처.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EB%B3%B4%ED%98%B8+%EB%B0%8F+%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paras=1&docType=&languageType=KO&joNo=#>). (검색일: 2020.10.18.)

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활용해 유관 부처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정착지원 정책을 집행하도록 협의·조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부처들은 각자의 영역,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취업보호), 경찰(신변보호), 교육청(장학사, 교사) 등을 하나센터와 연계시키고 있음

## 2) 지역사회

###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정착지원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단위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32-34)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이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예산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센터를 지원·관리하도록 체계를 설계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 단위의 민간부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착지원 정책과 관련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음(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90-116)
-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센터의 지정·운영에 협의에 관한 권한(지정 권한은 통일부 장관, 이를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하나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지정된 하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정착지원 사무가 지방자치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는 낮은 편임(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90-116)

###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에 정착지원 정책의 전달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지역자원(기관 및 인력)을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치된 기구임(시행령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제2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의 장, 정착도우미 기관의 장, 지역내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의 수는 상이(제주도 15인 내외, 서울시 20명 내외 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과 인식개선, 지역 적응기반 강화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협의회(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연결하고, 지역 내 중복지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90-116)
  -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권고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광역 시·도 16개와 시·군·구 102개 등 총 118개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sup>39)</sup>
-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동 예산으로 지역협의회 운영과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 등의 집행을 지원하고 있음
  -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여부(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따라 운영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3) 민간기관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초기정착과 생활안정 지원, 정부와 민간의 접점역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통일부의 출연금을 통해 출범한 재단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주요 기능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재단의 출범은 민간화를 위한 재정지원,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발굴 등을 위함임
  - 중앙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한 발 벗어나 있으므로, 정착지원 체계를

39) 통일뉴스. (2020.09.01.). “통일부 내년 예산, 일반회계 0.5% ↓ 기금 3.1% ↑”.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91>). (검색일: 2020.10.16.)

구성하는 각 참여자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역할도 일부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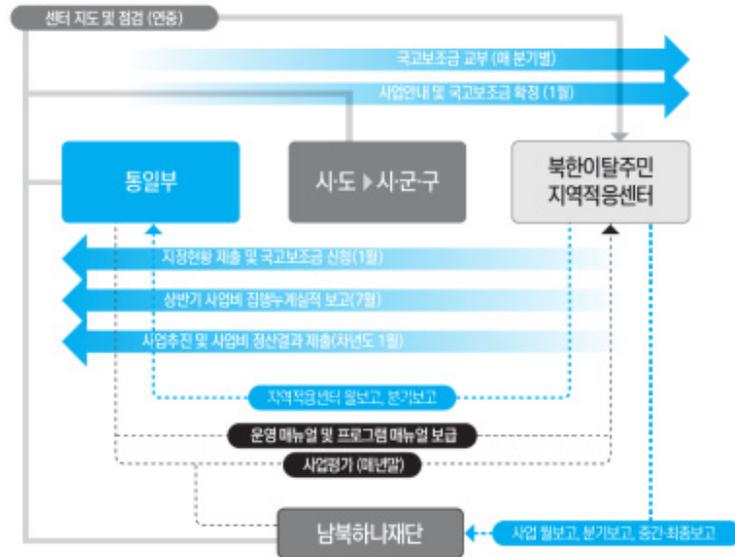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통일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지만 하나센터의 상위기관 지위를 갖고 있음. 이로 인해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능 외에 민간부문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

□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하나센터는 200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15조의2, 거주지 적응교육 조항)을 통해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추진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를 추천하고 통일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결정되었음(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16)
- 통일부는 2009년 하나센터 시범 운영 후 점진적 확대를 계획했지만, 시범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1년 만에 30여 곳으로 확대 추진하였음<sup>40)</sup>
- 이러한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지역 내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가 이미 존재함)하고 있었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연결망을 통해 일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한 상태로, 4개의 분과(지역복지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정착지원분과, 해외분과) 중 지역복지 분과에 속한 단체들이 하나센터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 연대에 속한 70여 개 기관들은 기존의 자발적 연대를 유지하되, 하나센터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로 전환 운영하게 됨
-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점점 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하나센터 중심으로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3-14]와 같음

40) 당시 강원도는 관할 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2개 법인이 지정되어 실질적으로는 31개 센터가 출범.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한국적십자총연맹, 자유총연맹,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성격의 민간법인이 하나센터로 지정되었다(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48).

[그림 3-14] 하나센터 전달체계



출처: 전국하나센터협회(2019: 36)

- 민간단체인 하나센터 역시 단계별로 고도화 작업을 거침. 1기(2010-2012년)의 경우 각 단체들의 역량 차이(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접근방식, 인력 등), 단체별 상이한 보고체계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유동적으로 운영되던 점을 일원화하기 위한 시기임. 통일부는 이를 위해 합동워크숍과 업무매뉴얼 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각 하나센터들은 전국하나센터협회를 창립해 상호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와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건의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44-63)
- 2기(2013-2015년)는 ‘하나센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통일부b, 2014)’에 일반 지역 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접근성 제고, 지역 내 정착지원 허브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한 시기임. 3기(2016-2018년)의 경우 3개 센터를 윈스톱서비스센터로 지정 후 허브화 도모, 남북하나재단 직영 센터 설립 등을 도모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일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다. 소결 및 시사점

##### □ 참여 주체의 가치공유 필요

- 정착지원 체계는 외형적으로 볼 때 참여자, 참여자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등이 잘 마련되어 있고(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각종 단체, 하나센터와 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지역 내 각종 단체와 촘촘히 협업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음

- 정착지원 체계는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한 체계로, 각 참여자들이 지닌 역량, 조직, 전문성에 차이를 보완하고,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들이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한 이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치(인식)공유가 필요함
  -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공공부문의 영역에 위치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참여도와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갖는 가치 공유 필요
  -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자·부서 지정 여부, 예산, 협의회 운영 횟수,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노원구의 경우 단체장의 관심으로 복지정책과가 북한이탈주민 사무를 담당하고 공적급여 연계(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취업지원(일자리경제과)을 주도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민관협력 체계일수록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완화하고,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민관협력 체계가 갖는 필요성,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강제력이 낮고, 민관 간의 연결망이 약한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인식공유, 각 참여자 내·외부 구성원의 지지 획득 여부는 매우 중요함

#### □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민간이 스스로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한 후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통일부에 정책제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착지원 체계는 이를 감안해 설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부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게 함. 또한 하나재단을 설립하고, 민간영역을 하나센터로 지정하여 하나센터가 지닌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단체의 전달체계 속에서 정착지원 서비스가 전달하도록 설계하였음
- 다양한 참여자가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만큼, 각 참여자의 권한과 역할은 물론이

- 고, 부처 간-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소통기구의 역할과 소통횟수까지 법률, 시행령,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역시 제도화를 위해 법·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총리 훈령에서 진일보해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20.05.26)을 마련했지만, 부처들의 참여도 증진과 실질적 집행을 위해 법률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체계 내 참여자들에 대한 역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에는 시민사회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강화,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누구를 참여시킬지, 중앙단위 또는 지방단위의 상시 소통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기본계획 마련 단계에서 일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시 참여자들의 권한과 역할, 체계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제도에 근거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 체계 또는 협업 연결망에 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내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착지원 체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적 권한의 공백 등이 있음.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 여부에 따라 예산과 조직에 차이가 나타남.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위한 지원사무를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소통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정착지원 체계는 정착지원 정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행령)는 모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법 제6조)에 소속되어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협의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부처들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한편 지역사회와 민간 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시행령 제42조의2)를 통해 지역사회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내 중복지원 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협력 연결망 확대를 위한 참여자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결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기획·집행 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소통과정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사회와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나아가 소통의 결과는 정책반영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함
  - 중앙정부 영역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sup>41)</sup>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전체위원회 개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 지역 단위 소통창구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수는 총 35명으로 구성됨. 따라서 현재 참여부처 9곳, 민간위원 26명은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분기별로 전체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성화 도모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정착지원 체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 부처의 차관급을 간사로 지정·운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시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처 실무자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지역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지역단위의 상시소통 창구로서 기능하며, 민·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채널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착지원 체계의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기능 등에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시·도지사 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시 지역사회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별 상시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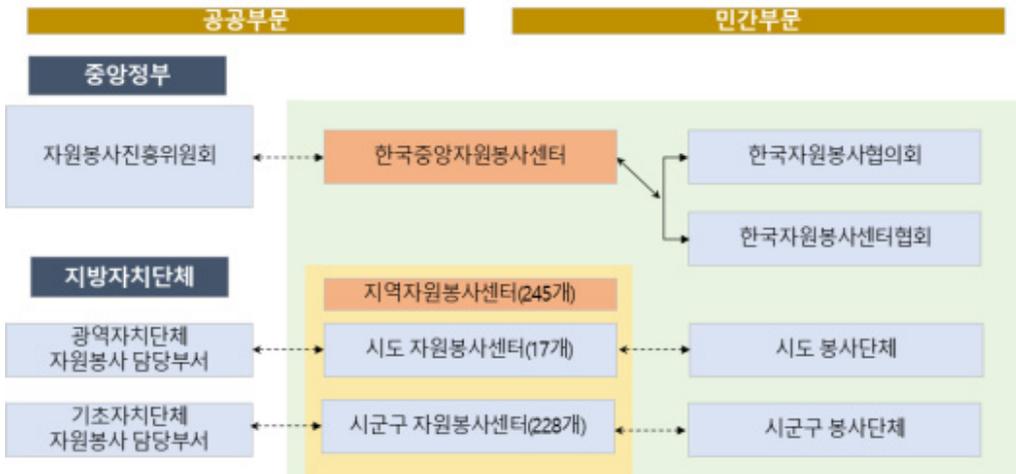
4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08.07.).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56>). (검색일: 2020.10.07.)

## 2. 자원봉사 민간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 가.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구조

-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sup>42)</sup>
  -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 2017.07.26.)’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며(제2조), 자원봉사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제9조)
  - 동 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제8조),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9조)
  - 또한 민간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중간지원조직인 자원봉사센터로 거버넌스의 축을 형성토록 하고 있음

[그림 3-15]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구조



출처: 서종희 외(2019)를 참고하여 정리함

4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중앙정부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자원봉사진흥실무위원회가 있으며, 행안부가 설립한 지원기구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네트워킹 등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자원봉사 담당 부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자원봉사센터 지원기능을 수행함
- 민간단체로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모임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변화를 위해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며, 공통적으로 수평적인 민관협력 관계를 통해 자원봉사 각 주체들간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자원봉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의 낮은 대응성으로 인해 자원봉사체계의 형식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변화를 담은 개정 발의안들이 나온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에 예측된 자원봉사체계가 구축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 (정진경, 2018: 102)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2016.10)은 현재 자발적으로 시간·노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의 경우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제공, 온라인 자원봉사 포함'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 장려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벌 감경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시 비영리법인 위탁이나 법인 설립 후 지자체 직영방식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도록 하고, 지자체도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외에도 한국자원봉사협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서종희 외, 2019: 16-17)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안(2017.01)은 제19조 ①항에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를 삭제하고 ② 항을 삭제함으로써 비영리단체 즉 자원봉사센터를 민영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서종희 외, 2019: 16-17을 참고하여 정리함)

제 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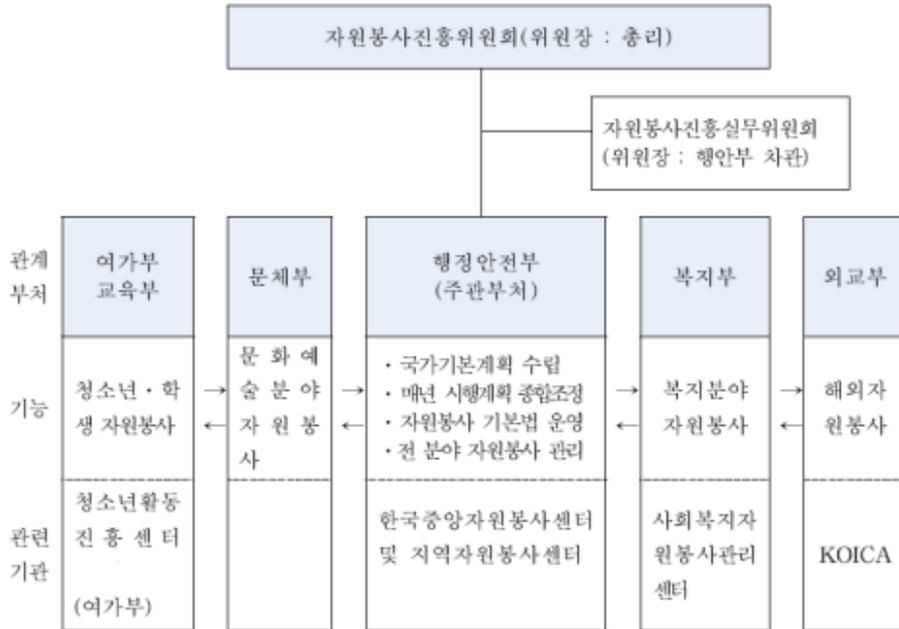
-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안(2017.03) 역시 자원봉사센터 민영화를 위해 직영방식을 폐지하고, 비영리 법인 위탁 및 법인 등의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는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지자체는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이 외에도 한국자원봉사협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서종희 외, 2019: 16-17)

#### 나.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구성요소(역할 및 기능)

#####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됨.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됨(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하며,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함.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며, 민간실무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그림 3-16] 자원봉사업무 추진체계



출처: 서종희 외(2019: 29)

□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센터는 중앙자원봉사센터,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자원봉사센터로 나뉘며, 각각의 역할이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 중앙자원봉사센터는 1.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2.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조사, 연구, 4. 지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 및 정보교류, 5. 자원봉사 정책 지원 및 협조, 6.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홈페이지(www.1365.go.kr) 운영, 7. 그 밖에 국가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광역자원봉사센터(특별시/광역시/도)는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기초자원봉사센터(시/군/자치구)는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동법 제19조 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임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의 활성화 등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주요 기능은 센터 간 연계협력, 자원봉사수요에 대한 컨트롤타워(재난시 조정 기능 등), 자원봉사 정책개발 등이며, 이에 맞춰 주요 사업으로 문화와 확산, 인프라와 관리, 연구와 평가를 수행 중임<sup>43)</sup>
  - 문화와 확산은 안녕캠페인, 자원봉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재난 현장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 등이 있음. 안녕 캠페인은 전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자원봉사자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새로운 자원봉사 운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함. 자원봉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적 홍보콘텐츠를 생산·보급하는 사업이며, 재난 현장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는 재난재해 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sup>44)</sup>
  - 인프라와 관리는 자원봉사 종합보험,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 자원봉사 현장연계,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장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sup>45)</sup>
  - 연구와 평가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구축, 자원봉사 정책개발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sup>46)</sup>

4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기관소개”. (<http://www.v1365.or.kr/new/introduce/02.php>). (검색일: 2020.11.30.)

44)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문화와 확산”. (<http://www.v1365.or.kr/new/business/01.php>). (검색일: 2020.11.30.)

45)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인프라와 관리”. (<http://www.v1365.or.kr/new/business/02.php>). (검색일: 2020.11.30.)

4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연구와 평가”. (<http://www.v1365.or.kr/new/business/03.php>). (검색일: 2020.11.30.)

□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를 의미함. 2019.12 기준 총 245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음

■ 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19조 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함. 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기에 초기에는 직영의 수가 많았지만 점차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추세임(행안부 &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0: 13을 참고하여 정리함)

[그림 3-17] 연도별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2020: 13)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자원봉사센터가 가입한 협의체임.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기반구축(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연대와 협력(자원봉사센터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자원봉사 홍보 등이 있음<sup>47)</sup>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전국자원봉사단체들의 총괄대표기구임. 125개 회원단체와 250여 개 협력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모든 시민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자원봉사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확대,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sup>48)</sup>

□ 자원봉사 관련 기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 관련 주요기관으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있음. 이들 각각의 설립근거는 법률에 따르며, 설립주체와 설립형태, 주요 기능 역시 상이함

〈표 3-2〉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기관 비교

구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근거법률	자원봉사진흥법 제19조	민법 제32조	자원봉사진흥법 제17조
설립주체	행안부	민간자원봉사단체	민간자원봉사단체
설립형태	민간위탁 → 2020년 재단법인 전환	사단법인	사단법인
지원형태	직접지원	간접지원	간접지원
민관협력	정부의 지도·감독	민관 협력	민관협력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시군구 센터와 네트워크구축 협력</li> <li>•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li> <li>•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회원단체 간 협력 및 지원</li> <li>•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li> </ul>

47)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특별사업”. ([http://www.kfvc.or.kr/contents/sub03/sub03\\_05.html](http://www.kfvc.or.kr/contents/sub03/sub03_05.html)). (검색일: 2020.11.30.)

48)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인사말”. ([http://www.vkorea.or.kr/contents/company.html?sm=1\\_1](http://www.vkorea.or.kr/contents/company.html?sm=1_1)). (검색일: 2020.11.30.)

구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원 • 자원봉사센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자원봉사센터 관련 정책 개발, 조사·연구 •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관리 등 • 정부 자원봉사정책지원·협조·기타 행안부 지시사항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사업 • 자원봉사활동 계몽 및 홍보사업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 개발, 조사·연구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출처: 서종희 외(2019: 31) 재구성

#### 다. 소결 및 시사점

##### □ 급속한 제도화와 수평적이지 않은 민관관계

-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체계가 정비되었음. 행안부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침 및 지원조례 준칙 등을 마련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였음
  - 봉사활동시간 인증제 등은 자원봉사 활동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사례의 대응성은 약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지만 급속한 제도화로 인해 보완할 점들이 있음.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이상적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 직영으로 운영되는 지역자원봉사센터의 문제 등 수평적이지 않은 민관관계의 여지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직영이 122개로 전체의 50% 가량이 관 주도 형태를 갖고 있으며, 민간에 위탁한다 해도 관리자의 경우 공무원이 센터 직원으로 파견된 형태가 존재하는 등 종속적 형태를 강화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의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다수 등장하였음. 이들 민간단체들의 순수성 확보문제,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 등 급속한 제도화로 인해 미비한 영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부문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의 역할 중복 및 주체들 간의 협력 미약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은 자원봉사정책을 주관하는데, 다수의 관계부처들은 자원봉사 관련 부서와 기관을 가지고 있어 역할이 중복된다는 평가가 있음. 이 외에도 부처 또는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국단위 기구의 부재로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체계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서종희 외, 2019)
- 한편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차례 서면을 통해 개최되어 왔으나, 2016년 이후 4년 만에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활동이 부진함. 이는 당연직 위원인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잦은 회의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관급이 대리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조정하는 등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제4절

###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영국 시민청(Office for Civil Society)

-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청 단위로 독립 및 확대
  - 100여 명의 인원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정책 이행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
-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와 시민사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명시한 ‘시민사회 전략’을 2018년 제작 및 배포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이행을 위한 영역별 전략을 제시하여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기반 마련
- 영국 시민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49)</sup>
  - 다양한 시민사회의 반영 및 협력 도모를 위한 기구로서 지역 사회 활성화를 통해 영국 사회 전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 도모
    - 청(소)년, 국민, 자원봉사, 자선, 사회적 기업,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며 시민사회, 지역사회, 사기업, 투자자와 모든 정부의 파트너십 도모
    - 2016년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서 현재 디지털, 문화, 방송 및 스포츠 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산하로 개편
  -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이에 대한 대응(고독, 코로나 블루 등)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까지도 담당하고 있음

49) 영국시민청. “About u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civil-society/about#our-responsibilities>).

(검색일: 2020.08.16.)

□ 영국시민청의 주요 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음<sup>50)</sup>

- ‘영국 시민사회 전략집(UK Cabinet Office, 2018)’을 이행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문제 발견
- 탄탄한 기반의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sup>51)</sup>을 통해 강한 규제력을 지닌 환경 형성
-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이행
- 외로움(고독)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사적 투자,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투자 촉진, 공공서비스의 전달, 사회적 기업과 이와 관련한 책임 있는 비즈니스 영역의 창출 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경제(inclusive economy) 시행을 통한 사회적 대안과 모델 강구
- 생애주기별 사회적 행동 장려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Point of Light 수여 관련 영국 수상에 대한 협조

## 2. 영국 시민사회 전략(2018)과 관련한 지원 정책 및 사례

- 2018년 영국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을 위한 국가의 전략을 담은 ‘모두를 위한 미래 세우기 - 시민 사회 전략(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이라는 제목의 전략 출간<sup>52)</sup>
-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협력 전략 제시
  - 시민사회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경제 및 공유 경제 등 광범위한 부분을 시민사회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5가지 영역(사람, 장소, 사회적 영역, 사적영역, 공적 영역)을 구분하여 정부가 어떻게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시민사회를 지지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50) 영국시민청. “Our Responsibiliti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civil-society/about#our-responsibilities>). (검색일: 2020.08.16.)

51)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비영리·자선 단체를 관리 감독 및 총괄하는 위원회이며, 장관이 없고 의회에 책임이 있는 독립적인 부서임. 자선 관련 정보(등록, 관리, 재정정보, DB통계분석 등)를 다루며, 4개 지사에 350여명 근무함

52) HM Government. 2018.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ociety-strategy-building-a-future-that-works-for-everyone>). (검색일:2020.08.23.)

□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

- 전략 내에서 자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시민사회는 ‘비정부기구, 무역 노조, 사회적 운동, 시민사회 단체(grassroots organization), 온라인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그리고 종교단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직적인 혹은 유기적인 그룹’들로 정의함(Cooper, 2018: 5)<sup>53)</sup>
  - 이러한 정의의 모호함과 광범위함으로 인해 시민사회로 정의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제시된 시민사회의 역할로는 서비스 제공자, 사회 운동에 대한 옹호자 및 지지자, 정책에 대한 감시자, 활동적인 시민의식 고양,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의 참여라고 설명
- 본 전략에서 제시하는 시민사회란 ‘정부의 관리로부터 독립적인 사회가치 창출을 주된 목표로 행동하는 개인 혹은 조직’이라 정의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개념

-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모두를 위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 사회적 가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번영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높은 재정자립도, 물질적·본질적 자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강한 연대(연결)에서 비롯된다 생각

□ 풍요로운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공적 자금 지원, 사적 투자와 커뮤니티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내포해야 하며, 함께할 수 있는 조직과 파트너십의 공동 창출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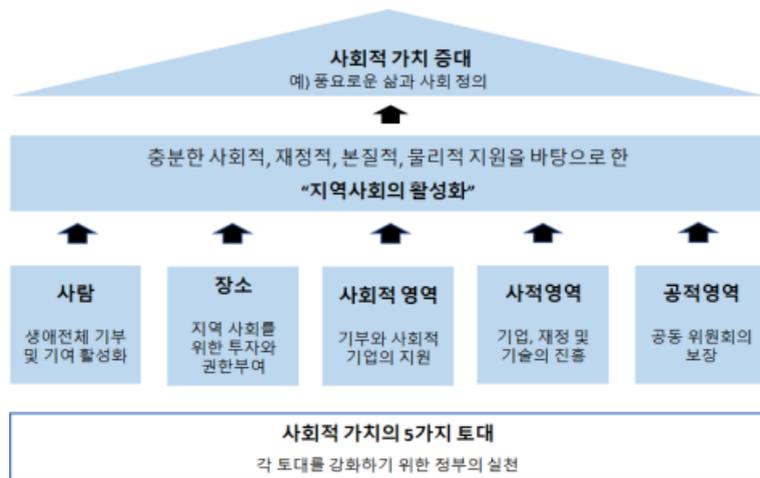
□ 기존처럼 각 영역의 개별 행동보다 5가지 영역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 사람: 복권기금과 함께 ‘지역기반 사회적 행동(Place Based Social Action)’ 프로그램 시행, 정부는 커뮤니티들이 지역의 공적·사적 영역의 조직들과 함께 공유된 비전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2020년까지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 사람들과 지역의 소리를 듣고 연계하는 조직을 위한 3,500명의 시민 전문가 양성
  - 9천만 파운드를 청년 육성에 지원할 계획 등을 밝히고 있음
- 장소: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투자와 역량강화를 위해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한 책임과 연대감 조성의 중요성 강조함

53) Rachel Cooper, 2018, “What is Civil Society, its Role and Value in 2018”, Helpdesk Report.

- 정부는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민주적 접근방식의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들을 발굴하고, 지역 재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 영역: 기부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식과 문제 제기들을 의사결정자와 소통하게 함
  - The Principles of the Compact를 개정. 이는 정부와 사회적 영역 사이의 관계에서 협력과 기여에 대한 내용들을 정한 문서로 시민사회가 정책 형성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
  - 자선위원회와 영국 커뮤니티 재단(UK Community Foundations)을 통해 2년간 최소 2천만 파운드 지원 예정
- 사적 영역: 기업, 재정, 기술의 발달을 위해 사회적·환경적 공헌을 하는 기업 육성을 장려
  - 복권기금과 함께 5천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적·사회적 영역의 파트너 발굴 도모
- 공적영역: 협력적인 위원회의 보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여 위원회 결정에 참여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2012(Public Service-Social Value-Act 2012)를 개정하고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있어 근거법으로 활용
  - 정부의 모든 지출과 의사 결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

[그림 3-18] 영국 시민사회 전략



출처: 영국 시민사회전략집 (2018 : 19) 재편집

#### 가. 국가 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sup>54)</sup>

- 미래의 시민사회 지도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 교육 활성화 강화
  - 16~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독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를 돕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토론, 인종과 사회계층 차이로 인한 다양성 수용 및 지역 문제 발견, 환경 보전, 직업 연계 등 미래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봄, 여름, 가을에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른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토론을 통해 리더십 및 소통 기술 함양 목적
    - 이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직업 훈련, 해당 지역의 청년 위원회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sup>55)</sup>
- 청소년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에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토론과정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동시에 이루고 있음
-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시민사회전략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토론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위원회 활동 및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미래의 인력 양성 가능

#### 나. 자원봉사의 활성화-포인트 오브 라이트(Points of Light)<sup>56)</sup> 수여

- 지역 커뮤니티 발전과 변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긍정적 인식 제고. 시민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지역사회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 2014년 시작하여 Points of Light를 지정
  -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기금마련, 사회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 사회적 인식 고취, 돌봄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상자 선정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히고,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도모

54) 영국 정부. "National Citizen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get-involved/take-part/national-citizen-service>).

(검색일: 2020.09.23.)

55) 영국 NCS. "Do More With NCS". (<https://wearencs.com/after-programme>). (검색일: 2020.09.23.)

56) 영국 포인트 오브 라이트. "Points of Light". (<https://www.pointsoflight.gov.uk>). (검색일: 2020.09.23.)

#### 다. 자금 운영: 복권기금(2018-2019)<sup>57)</sup>

##### □ 시민사회 활성화 기금 중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금

- 지역 단체에서 제출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안건을 제시하게 하는 원동력
- 2019년 총 26,988개의 프로젝트에 기금 지원. 이는 모든 지역 자치단체에 최소 한 건 이상을 지원한 것이며, 교육, 장애인 지원, 영유아·노인 복지, 기술 발전, 고용, 지역발전 등의 프로젝트에 하루 평균 140만 파운드를 지원. 2020년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에 7백만 파운드 지원하고 있음
-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혹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3. 시사점

##### □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궁극적 목표 제시 및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을 통한 방향 제시

-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사회의 5가지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며 방향성 제시
  - 사회의 5가지 영역의 장점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다른 영역 혹은 정부에 의해 보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에서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통 기회 증대, 공론화 및 토론을 위한 중립적 공간 제공

- 정부가 발굴하지 못한 측면에서 시민사회 문제를 찾기 위해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통의 기회 증대, 공론화 및 토론을 위한 중립적 공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론 방식, 토론 주관 기구들을 제시 및 활용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소통의 장 마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토론문화 형성이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및 정부의 소통 방안 마련 필요

57) 영국 정부. "복권기금 연간 보고서 2018-2019(The National Lotte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8-20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ational-lottery-community-fund-annual-report-2018-to-2019>). (검색일: 2020.09.23.) / Community Fund, 2019, 「The National Lotte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8-19」, pp. 1-75.

□ 매뉴얼 및 의견 제시 과정·절차를 통한 정보 공개

-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 정책의 편향성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명확한 매뉴얼 및 의견 제시 과정·절차들을 사전에 마련하여 공개하여 공개하고 있음

□ 시민사회 인재양성

- 별도의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지역사회와 토론문화 형성. 미래의 시민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 제1절

##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1.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와 기대

-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 여성, 소비자, 지역공동체, 국제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음
- 시민사회가 주도해 만들어낸 사회변화는 남녀고용평등법·부정부패방지법·기초생활보장법 등 공공성을 제도화하는 영역에서부터 교육·건강·안전·재난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장애인·난민·노숙인·성소수자 등과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영역, 마을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경제 등 대안 사회를 구축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음<sup>58)59)60)</sup>
- 감염병의 확산,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운영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데 있어 시민사회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시민사회는 ① 방역 지침에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정부 협력의 역할, ② 재난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투입·배분하는 역할, ③ 재난대응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④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 ⑤ 비대면 사회에서 상호연대와 협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음(김소연 외, 2020a: 135)
- 세계경제포럼,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변화와 대형 자연재해를 경고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외 전문가(박진희, 2015; 안희경, 2020)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시민들의 공익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촘촘히

58)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임팩트 스토리”.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story](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story)). (검색일: 2020.11.11.)

5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2차전문가컨설팅의 날”.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community/read.asp?idx=1270&sigungu=&category=&searchVal=&pageno=2>). (검색일: 2020.01.03.)

60)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 “ARCHIVE MOON”. (<http://herstory.xyz/>). (검색일: 2020.10.28.)

하며,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사회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미 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등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해 시민사회를 사회운영의 주요 섹터로 공식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헝가리,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시도되었으며, 정부가 시민사회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연방정부의 사회협약과 램베스 자치구의 협동조합형 지방의회 혁신네트워크, 일본과 헝가리의 1% 시민활동단체 지원제도, 프랑스와 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등<sup>61)</sup>
  - 국내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12년 이후 시민참여, 협치, 혁신 등을 기조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친화적인 행정체계 도입과 혁신을 꾀함
    - 민관협력을 시민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맥락에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2019년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지난 2020년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2)」를 마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
-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19)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시민단체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보여줌(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 조사에 참여한 시민의 과반수인 50%와 전문가 62%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여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 비율인 23%, 20%보다 긍정 응답율이 30-40% 포인트 정도 높음
  - 시민과 전문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4-67%의 응답자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55-62%의 응답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61) 각국 사례는 오관영(2015), 오현순·송주영(2018), 주성수(2020: 212-230) 참조

## 2.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조직 형태의 변화

-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난 30년 사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규모 있는 대변형(advocacy) 시민운동단체로 대표될 수 없을 정도로 그 폭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
- 지난 30여 년간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흐름과 주체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 30여 년간 한국의 시민사회는 ‘대항’, ‘호혜’, ‘자율’, ‘문제해결’의 4가지 흐름을 형성하며 분화 발전해왔음(조철민, 2017).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허약했을 때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항’하고 서로 돕는 ‘호혜’ 적 활동에 집중했다면, 민주적 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부터는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등 ‘자율’과 ‘문제해결’을 통한 대안 사회 구축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 공익활동의 주체와 조직 방식에서도 큰 흐름의 변화가 포착됨(박영선·정병순, 2019). 공익 활동에서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담론에서 출발해 종합의제를 다루는 규모화 된 단체가 흐름을 주도했다면, 그 이후에는 개인적 필요와 관심에서 시작해 단일의제를 다루는 작은 모임, 느슨한 네트워크, 온라인모임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국가와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은 시기별로 사회운동조직(SMO),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의 정체성을 주요하게 드러냄(박준 외, 2020: 16-18)
  - 절차적 민주화 이전(1970~19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도전, 변화, 갈등 전략을 견지하는 운동성이 강한 사회운동조직(Social Movement Organization, SMO)의 형태를 띠었음
  - 절차적 민주주의가 달성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시민사회조직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공공선(public good)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비정부조직(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적 특성이 부각됨
  - 이후 1990년대 말부터는 시민사회조직 활동의 급속한 분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 옹호·견제,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제공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며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 NPO)의 특성이 두드러짐
- 실제로,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활동주체와 방식에 있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직이 다수를 차지함(김소연 외, 2018: 84-96)

- 활동 주제군으로 보면, 1990년부터는 복지, 인권, 보건, 자원봉사 분야의 단체가, 그리고 2000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단체의 설립이 증가함
- 활동방식에서, 시위·집회·항의·서명운동(11.3%)보다 상담·교육·인력양성(45%)과 네트워크·협업(40.6%),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조직(39.3%) 방식이 높음
- 조직 규모 면에서, 회원 숫자가 101~150명(19.2%), 예산은 5천만 원 미만(30.5%), 상근활동가는 2-5인(42.0%)가 다수를 차지함

### 3.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 기조와 한계

- 그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거나, 또는 최근까지도 시민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인식과 낡은 관행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왔음
- 반공 이데올로기와 ‘한강의 기적’ 신화를 앞세운 과거 독재정권은 시민과 단체의 사회활동을 억압하고, 정권의 개입으로 만든 이른바 ‘관변단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음
  - 1990년대 초까지도 정부는 시민들의 결사<sup>62)</sup>와 기부<sup>63)</sup> 활동을 국가 권력 아래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함
-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0년에 이르러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시민사회발전 10대 과제’ 발표 등 일련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시민사회는 자체적인 자원과 역량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유지·강화됨
  - 정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인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치가 매우 자의적으로 왜곡되어 적용됨. 예를 들어, 일반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공모 사업유형에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그 공익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원받은 사업비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여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 없음

62) 박정희 군사정권은 쿠데타 성공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를 통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해체를 명령. 1962년 시행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은 사회단체를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정의함. 국가가 시민사회 활동 전반을 통제, 규제하겠다는 의도는 이후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 등의 사례에서도 나타남

63)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원은 1949년 제정된 「기부통제법」으로 거슬러감. 이후 「기부금 모집금지법」(1951),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5)을 거쳐 현행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부를 촉진하기보다는 관리, 통제의 기조가 깔려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촛불시위 단체명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 사이에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
- 국가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 10여 년이 시민사회의 암흑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국제개발협력의 사회 의제화를 이루었고, 같은 시기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민관협력,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서 얻은 자산을 제도화하는 진전이 있었음
-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정책은 퇴행하고, 일부 정치적 성향에 맞는 보수단체는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함. 그러나, 시민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01.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01.25.), 「협동조합기본법」(2012.01.26.) 제정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국가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철학, 인식, 기초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자체와 개별 정책을 통한 정책 추진은 혼선을 일으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계점에 다다랐음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의지를 밝혔으나, 임기 종료 1년 5개월 정도를 남긴 현시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기부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지원체계 개선 등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포함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은 시민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제도개혁과제로, 기본법은 정권에 따라 특별법, 개별법으로 특정 영역과 개별 단체를 육성하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를 사회의 주요 축으로 공식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책무와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제안됨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내에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분과 운영, ‘기본법 제정 민관공동 TF’ 구성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지만, 제20대 국회의 파행을 돌파하지 못함
- 그나마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시민사회발전규정)의 제정은 ‘마른 논바닥에 한줄기 단비’ 같은 성과라 할 수 있음

## 4.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부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2020년 5월 26일 제정), 국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고 범정부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 2020. 5. 26 제정, 시행
- 목적(1조):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기본원칙(2조):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 보장, 시민공익활동의 가치 존중,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등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3-4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정부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
- 시도계획(5조):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 기본계획 수립, 정부 기본계획 반영과 보고 요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6-9조):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35명 이내)
- 시도시민사회발전위원회(13조): 조례에 따른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분과위원회/전문위원(10조), 관계부처 협의회(11조), 관계행정기관 협조(12조), 포상(14조), 운영세칙(15조) 연구기관의 지정운영(16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3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6조제2)

### 〈참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기본계획 수립 규정

- 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8.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함(제4조)

<참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계획 규정

-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지자체에 정부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5조)

<참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시도계획 규정

-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처럼, 시민사회발전규정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시도계획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계획과 시도계획의 통합성과 연계를 위한 실행방안을 두고 있음

[그림 4-1] 정부와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흐름도



출처: 정란아(2020: 3)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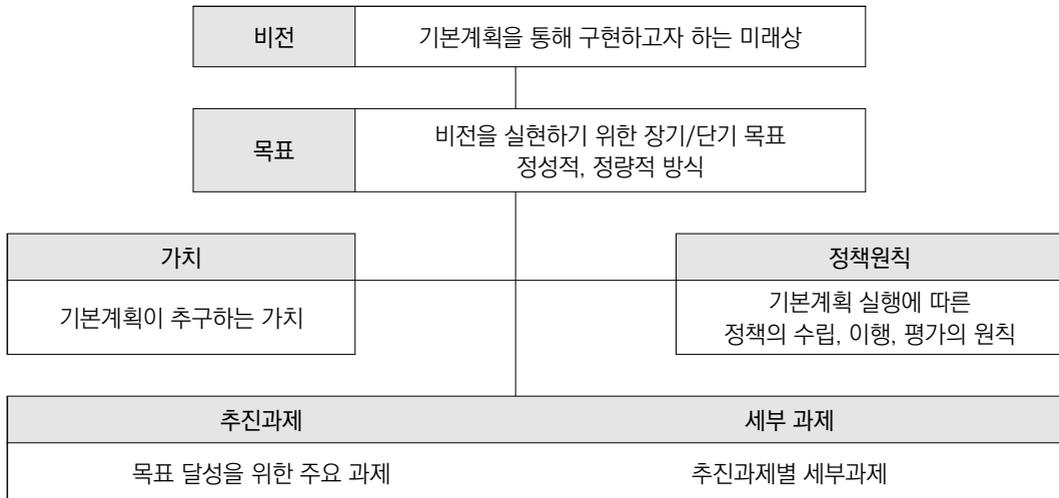
#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 1. 정책요구 조사방법과 사례 검토

-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 주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한적이거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정책요구를 파악함. 향후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함
- 유사한 취지로 선행문헌을 분석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연구(김소연 외, 2019: 119-138)’를 기초로 하여, 이후 발간된 정책보고서, 공론장 논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논의자료를 추가 검토함
- 기본계획의 가치와 운영체계(value and management system)[그림 4-2]에 대입하기 위해 도출한 정책요구를 비전, 목표, 가치, 정책원칙, 추진과제로 분류

[그림 4-2] 기본계획의 가치와 운영체계



출처: 저자 작성

-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계획으로,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수립되는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관련 국내 계획사례를 검토함.<sup>64)</sup> 더불어 해외 유사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음
- 우선 국내에선,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정의되는 ‘시민사회’의 발전 또는 활성화의 목적에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었음
  -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시민사회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중(2021년 상반기 예정)
  - 시민사회 개별 영역의 법정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국가계획, 사회적기업육성계획, 협동조합촉진기본계획 있음
  -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표 4-1〉 시민사회 분야 기본계획(국내 사례)

분야	비전	목표	전략/과제
서울시 기본계획(안) (3년 계획)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시민사회, 활력있는 서울 (2021년 상반기예정)	- 시민공익활동 확대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강화 - 시민사회의 성장생태계조성	4대 영역 15개 전략과제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계획 (5년 계획)	자원봉사 국가-행복한 사회 (1차, 2008~2012)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국민문화의 확산 -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30%, 주당 3시간 봉사 활동 참여	5대 영역 13개 과제, 39개 세부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2차, 2013~2017)	- 성숙한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 생애주기별 시민참여확대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5대 영역 15개 과제, 41개 세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3차, 2018~2022)	-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확장 -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5대 영역 17개 과제, 36개 세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5년 계획)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 (3차, 2018~2022)	-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4대 영역 16개 과제
협동조합 기본계획 (3년 계획)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1차, 2014~2016)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 조합을 육성 -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 명 달성	4대 영역: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64) 20대 국회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안」의 제2조 2항에서 정의한 조직유형에 따라 사례의 범위를 설정함

분야	비전	목표	전략/과제
	2차: 1차와 동일 (2017~2019)	-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
	COOP 2.0 시대로의 도약 (3차) (2020~2022)	-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과 정체성 강화 - 성과지표(평균출자금, 평균매출액, 취약계층 고용비율,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5대 전략: ①확장 ②연대 ③지역사회 ④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⑤교육/홍보내실화 14개 정책과제

출처: 김소연 외(2019), 행안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해외사례론, 영국의 시민사회전략과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의 전략계획이 있음
  - 영국 정부는 2018년도에 시민사회 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시민사회전략: 모두를 위한 미래 만들기(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수립
  - 시민사회전략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과 공정한 사회’를 비전으로 5대 영역(사람, 장소, 사회영역,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 15개 항목의 영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함

〈표 4-2〉 영국 시민사회전략의 5대 미션과 정부역할

영역	미션(Mission)	정부 역할
사람 (People)	○ 일생에 걸친 사회적 기여 복돋우기 미션1: 연결되고, 풍족한 사회 미션2: 책임 있는 사람 미션3: 청년을 위한 기회	- 훈련된 공동체조직가(community organizer)를 2020년까지 3500명 양성: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를 연결 - 15~17세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전국시민봉사신탁(National Citizen Service Trust) 설립: 시민사회 조직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 및 진로 지원
장소 (Places)	○ 지역 공동체를 위한 권한 이양과 투자 미션4: 임파워먼트 미션5: 투자	-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마련 - 주택부서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공간을 만드는 협업 - 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한 지역 자산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갖도록 유도 -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모금 모델 개발
사회영역 (Social Sector)	○ 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미션6: 시민사회의 목소리 미션7: 사회영역의 자금조성과 출자 미션8: 리더십, 지원, 그리고 규제 미션9: 디지털에 자신감을 갖는 사회영역	- 사회협약의 발전 - 시민사회의 발언력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외적인 방안 모색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부자 풀(pool) 구축 및 기부활성화 - 사회영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민간영역 (Private Sector)	○ 공공선을 위한 사업, 금융, 기술의 촉진 미션10: 책임 있는 기업 미션11: 공공선을 위한 금융 미션12: 기술의 역할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포용적인 경제 파트너십의 발전 - 금융적인 배제 없이 독립적인 조직들이 파트너들과 일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Lottery Fund)과 협력

영역	미션(Mission)	정부 역할
공공영역 (Public Sector)	○ 협력적 수탁 (collaborative commissioning)의 보장 미션13: 협력적 권한위임을 위한 프레임 미션14: 공공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자금 조성 미션15: 사회적 가치를 위한 수탁	-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자 전달자로서 시민사회 인식 -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역 조직들과 상 호협력 - 공공조달 구매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촉진(사회적 가치법에 근거) - 정책결정 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적용되도록 함

출처: 영국 시민사회전략(2018) 인용

- 전 세계 시민사회조직의 연합체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2017년 세계 시민행동과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정부 계획은 아니지만, 세계적 맥락에서 시민 사회를 둘러싼 환경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전략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표 4-3>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전략계획 2017-2022

항목	내용
사명(Mission)	전 세계의 시민행동과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비전(Vision)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응전에 관여하는 유식하고, 탁월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전세계적 공동체
도전 (Challenges)	1. 연합(unite): 우리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를 통해 활동하기 2. 책임요청(demand accountability): 의사결정자들이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3. 주창(advocate):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공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4. 동원(mobilise): 시민행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5. 혁신(innovate): 전환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실험하고 혁신하기 6. 언행일치(walk the talk): 투명하고 책임 있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조직과 운동으로, 시민 사회 안의 권력불균형에 문제제기 하기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1. 시민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의 수호 2. 조직하고, 동원하고, 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 3. 더 책무성 있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시민사회 강화
지원 (Support Civil Society)	1. 시민사회의 '역량'과 '회복력' 강화 2. 시민사회간,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이슈와 지역, 조직모델을 넘어서 '연결' 3. 시민사회의 동향에 관한 '사고리더십'(Thought Leadership) 제공 4. 시민사회를 위한 '자원' 동원 5.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국제적 운동에 '영감'과 '힘'을 불어넣기 6.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방어를 위한 '주창'(Advocate) 7. 지구적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며, 특히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시각 '옹호'(Amplify) 8.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복돋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인큐베이트(Incubate)

출처: CIVICUS(2017)<sup>65</sup>, 김소연 외(2019: 53) 재인용

## 2. 정책요구의 종합, 구조화

### 가. 비전 관련 제안

- 비전은 흔히 '바람직한 미래상' 또는 '장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으며,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 관련 기본계획의 비전 문구

- 서울시기본계획(안):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시민사회, 활력있는 서울
-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
- 협동조합촉진기본계획: COOP2.0 시대로의 도약
- 영국시민사회전략: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과 공정한 사회
- 세계시민단체연합: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응전에 관여하는 유식하고, 탁월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들의 전 세계적 공동체

- 비전과 관련된 제안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 가능함. 하나는 '시민사회' 그 자체의 모습, 다음은 시민사회 활성화나 발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에 해당함

- 시민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시민(시민성·시민권)·참여, 열린문화·다양성·공론장, 결사·사회변화, 연대·공동행동, 협력·신뢰·협치 등임

-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미래상은 정의로운 사회, 시민주권시대, 포용 사회, 행복한 시민, 풍요로운 사회적 역량 등임

※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로 정의(「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 키워드를 조합한 비전 문구(안)

- 참여하는 시민, 활력있는 시민사회, 풍요로운 공동체
- 강한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 증대, 더 나은 대한민국
- 시민이 만드는 더 나은 사회

65) CIVICUS. 2017. "CIVICUS STRATEGIC PLAN 2017-2022".

([https://www.civicus.org/documents/strategic-plan/civicus-strategic-plan-2017-2022\\_en.pdf](https://www.civicus.org/documents/strategic-plan/civicus-strategic-plan-2017-2022_en.pdf)).

(검색일: 2020.10.28.)

-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 시민공익활동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
-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로 풍요로운 사회
- 공공성과 연대로 활력 있는 시민사회

나. 목표 관련 제안

- 목표는 비전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추진 및 이행과제 수립의 방향을 제공함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목표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식을 선택함
  - 서울시, 자원봉사(2, 3차), 협동조합(2차): 정성적인 가치 지향적 방식
  - 자원봉사(1차), 사회적기업(3차), 협동조합(1, 3차): 정성과 정량적 방식의 혼합
  - 영국, 세계시민단체연합: 전략(strategy) 또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용어 사용

<표 4-4> 시민사회 분야 기본계획 목표의 구조와 내용

구분	횟차, 방식	목표
서울시 기본계획(안)(3년)	4개 정성/가치	- (시민참여) 시민공익활동 확대 - (결사)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협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강화 - (기반) 시민사회의 성장생태계조성
자원봉사활동 진흥 기본계획(5년)	1차(2008~201년) 2개 정성/정량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국민문화의 확산 -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30%, 주당 3시간 봉사활동 참여
	2차(2013~2017) 3개 정성/가치	- 성숙한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 생애주기별 시민참여확대 -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3차(2018~2022) 3개 정성/가치	-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확장 -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5년)	3차(2018~2022) 2개 정량/성과	-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 -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협동조합육성 기본계획(3년)	1차(2014~2016) 1개 전략/성과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조합을 육성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 명 달성)
	2차(2017~2019) 1개 정성/가치	-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3차(2020~2022) 1개 정성, 4개 성과지표	-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과 정체성 강화 - 성과지표(평균출자금, 평균매출액, 취약계층고용비율,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구분	횟차, 방식	목표
영국 시민사회전략 (2010)	5개 전략/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일생에 걸친 사회적 기여 복돋우기</li> <li>- 장소: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한 이양과 투자</li> <li>- 사회영역: 민간단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li> <li>- 민간영역: 공공성을 위한 사업, 금융, 기술의 촉진</li> <li>- 공공영역: 협력적 수탁의 보장(공공영역)</li> </ul>
세계시민단체연합 (2017-2022)	3개 전략/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의 수호</li> <li>- 조직하고, 동원하고, 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li> <li>- 더 책무성 있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인 시민사회 강화</li> </ul>

출처: 김소연 외(2019), 행안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4대 요소를 시민참여, 결사, 협력, 기반으로 설정. 이에 조응해 정책목표를 ①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 ②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③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④ 시민사회의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제시

<참고>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4대 목표

1.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
  - 시민이 주권자로서 공공의 문제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행정을 개방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공익활동가와 단체들이 견제와 비판, 돌봄과 호혜, 사회혁신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 사회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정부는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4.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가 시민사회 생태계에 축적, 순환, 지속되어 건강한 시민사회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

출처: 김소연 외(2019: 168-169)

□ 본 계획의 목표와 관련한 주요 의견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5〉 목표 관련 주요 의견

키워드	내용
시민사회, 가치, 존중	호혜/연대 등 시민적 가치 확산,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 존중/인정/보상
민주시민, 주권, 행정 개방	민주시민의식 고양, 시민주권 회복·강화, 시민역량 강화,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생활 조건 개선, 시민참여의 일상화/확대를 위한 행정/시스템 마련
단체, 활동가, 안전망, 지속가능성	비공식모임/풀뿌리/당사자모임 등 활성화, 단체 자립 여건 조성, 시민단체 활동가의 안전망 확보, 활동가 후속세대 양성, 활동가 교육/재충전기회 확대
민관협력, 협치, 소통	민간과 행정의 관계 재정립,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협치, 거버넌스) 강화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 증진
자원연계, 공동성과	시민-단체 활동연결, 시민사회단체/영역 간 상호협력, 공동성과 창출
법제도, 추진체계	시민사회의 공식화, 불합리한 요소 제거, 법제 근거 마련, 통합조정 기구 설립

출처: 저자 작성

□ 주요 키워드와 의견을 5개 분야의 정책목표로 분류함

- 첫째, 시민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존중
- 둘째, 시민사회조직의 지속성과 역량 강화
- 셋째, 시민공익활동의 자원연계와 협력 촉진
- 넷째, 시민사회-정부 간 상호소통과 협력 증진
- 다섯째,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 다. 가치와 기본원칙

- 기본계획에서 가치는 ‘계획이 추구하는 지향’을 담으며, 기본원칙은 ‘계획 실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수립, 이행, 평가 등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에 해당함
  - 시민사회발전 규정은 기본원칙을 제2조에 명시함

##### 〈참고〉 시민사회발전 규정의 기본원칙

제2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 3.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
  - 4.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제1항 각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정책 추진의 8대 원칙을 제시함(김소연 외, 2019: 170-172)

- ① 시민사회의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존중
- ②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 ③ 시민사회 성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인식
- ④ 공익활동의 다양성 보장과 사회적 인정
- ⑤ 시민사회조직들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⑥ 서울 시민사회의 역할 존중과 지역성 강화
- ⑦ 자치구 시민사회 생태계 존중과 활성화 지원
- ⑧ 시민사회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

□ 영국 연립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2010년 맺은 사회협약(The Compact)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공동비전을 위해 정부와 단체가 지켜야 할 원칙과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1998년 첫 협약체결 후 2010년 발표된 수정협약은 5개 목표를 제시. ① 강력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 ② 정책, 프로그램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고안 및 개발, ③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위한 확실한 준비, 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상술한 5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임무를 상호약속으로 명시

〈표 4-6〉 영국 사회협약 목표와 약속: The 2010 Compact

목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임무	
목표 1. 강력하고, 다양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	정부	1.1. 재정적 관계 혹은 그 외에 존재할 수도 있는 <b>어떠한 관계에 상관없이</b> 시민사회단체의 <b>독립성 존중 및 지지</b> 1.2. 정부 협력 시 시민사회단체를 <b>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b> 1.3. 시민사회단체를 돕기 위한 자원 필요에 대한 내각의 <b>종합적 인식 확보</b> 1.4. 시민사회단체의 데이터 및 정보 접근 향상을 통한 <b>투명성 보장</b>

목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임무	
		1.5. 국가 소유의 부동산 및 자원 접근성 증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b>다양한 지원방법</b> 모색 1.6. 자원봉사자들의 <b>정보의 무료 접근, 절차 간소화</b> 노력
	시민사회단체	1.7.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지지 활동할 때 확고한 근거 제공 노력 1.8. 재정적 또는 그 외 정부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명분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인 활동
목표 2. 정책·프로그램·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투명한 고안 및 개발	정부	2.1. <b>사회·환경·경제적 가치</b> 에 바탕을 둔 정책·프로그램·서비스(이하 '정책 등')의 표준 개발 2.2. 정책 등 <b>사회적 행동장려와 지역사회 권한 부여에 미치는 영향</b> 고려 등 2.3. 정책 등 고안 <b>최초단계</b> 에서부터 <b>시민사회단체와 협력</b> , 초기 참여 개방, 단체기여 차단 여지가 있는 <b>장벽의 제거</b> 2.4. 서비스 사용자, 수혜자, 단체 구성원의 대응 <b>준비시간 보장, 사전고지</b> 2.5. 정책 등 설계와 개발에 있어 반영한 <b>근거 제시</b> 2.6. 공무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입법 및 지침이 시민사회, 특히 <b>소규모 단체에 미치는 영향</b> 평가
	시민사회단체	2.7. 해당하는 경우, 정부와의 협의 추진 및 그에 대한 대응 2.8. 정부 건의시, 단체 관여자의 관점에 따르며, 그 대표성과 근거 제공 2.9. 아이디어 제시할 때 긍정결과에 대한 증거기반 해결안 집중
목표 3.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부	3.1. 단체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b>신시장개방, 위탁환경 개선</b> 3.2. 보조금, 계약, 대출금융, 부동산의 활용 등 단체에 <b>자금 또는 자원 제공의 다양한 방법</b> 고려. <b>정부자금 접근 장벽 제거</b> 등 3.3. 모든 자금 관련 결정에 대한 <b>명확한 근거 제공, 투명성 보장</b> 3.4. 성과 소요기간 동안 자금조달 약속, <b>소요시간 산출 결정 근거 제시</b> 3.5. 목적과 성과 달성에 적합한 관리되고 <b>투명한 입찰 절차</b> 마련 3.6. 성과의 <b>가치 평가, 관리 감독 방법 등 단체와 합의</b> 등 3.7. 계약 입찰시, 보고 및 모니터링 합의 등 모든 부문에 <b>동등한 처리</b> 3.8. <b>단체 보조금에 교육·자원봉사자 참여 비용, 간접비용 포함</b> 가능 인지 3.9. 주계약업체와 외주업체 간 협약서의 원칙 준수, 위험 부담 등 3.10. 적절한 자금 및 자원 조달 모델, 지출 전 지급 등 사례별 고려 3.11. 모든 관련 기관의 본 협약서 준수 의무 등 3.12. 유럽의 자금 배분 시 본 협약 내용 적용 노력 3.13. 정부와 단체 간 파트너십의 실효성 등 피드백 권장
	시민사회단체	3.14. 자금 활용 전 자금제공의 적합성 보장, 성과 달성 방식 명료화 3.15. 자금 사용 시 자금 제공자에게 상황변화 사전고지, 위험 관리 등 3.16. 내외부 모니터링,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고 3.17. 해당 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 입증 3.18. 사용자, 지역사회가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독려 3.19. 정부자금을 받는 사실에 대한 대중 공개
목표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변경 관리를 위한 확실한 준비	정부	4.1. 문제로 인한 재정 관계의 종결 이전 <b>성과 향상 조치 일정을</b> 단체와 합의 4.2. <b>자금감축, 자금제공 종결 결정 전 파생 영향</b> 및 다른 조직으로 자금 재할당 필요 평가 4.3 미래 자원의 제약·변화 발생 시 단체와 논의하여 관련 <b>단체의 대응기회 제공</b> , 최종 결정 전 분야별 전문성에 따른 대응 고려 4.4. 자금제공 등 변경 시 <b>최소 3개월 전에 서면 고지, 분명한 이유 제공</b>
	시민	4.5. 수혜자·단체에 미칠 부정영향의 감소를 위한 자금종료대비 계획 수립

목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임무	
	사회 단체	4.6. 프로그램 및 자금제공에 대한 긍정적 검토 4.7. 자금 제공변경이 미칠 영향의 감소방안에 대한 정부 자문
목표 5.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정부	5.1. <b>사회 소외약자 대변, 지원 등을 하는 단체와 협업</b> , 수요, 영향 평가 5.2. 특정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사회와 지역사회의 통합증진에 기여하며, <b>국가 자금을 동등하게 접근해야 함</b> 을 인지 5.3. <b>불법적인 차별 철폐, 평등 증진,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 이행</b>
	시민사 회단체	5.4. 정부기관 자금 제공받을 경우, 단체수행업무가 해당 기관의 평등증진, 차별철폐의 임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입증 5.5. 불법적인 차별철폐, 기회의 평등증진, 강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입찰 등의 실질적인 조치 수행

출처: 영국사회협약(2010) 인용

- 문헌과 공문장에서 제시되는 요구는 가치와 추진원칙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 구분하지 않고 정리하면, 포괄성, 책무성, 자율성, 독립성, 현장성, 다양성, 연계성으로 압축할 수 있음

<표 4-7> 가치, 추진원칙 관련 주요 의견

키워드	의미	내용
포괄성	시민사회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전환	- 시민공익활동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 - 단기성과 중심의 공모사업에서 탈피해 기반 구축으로 전환
책무성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 - 시민 공익활동 제약 요소제거, 촉진하는 제도적, 사회적 여건 마련
자율성	시민사회 특유의 활동방식, 조건의 존중	- 시민사회 특유의 활동방식, 조건 등 존중, 보장, 지원 - 시민사회가 잘하는 분야와 방식에 대한 이해와 지원
독립성	국가 권력과 시장 자본의 통제력 차단	- 시민사회를 사회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인 섹터로 존중 - 외부적 힘과 자원이 시민사회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지
현장성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변화와 현장 수요 반영	-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변화, 특징 생태계 반영 - 현장의 긴급성, 실효성 등 필요에 조응한 정책에 우선순위
다양성	다양한 영역, 주체 시민공익활동의 성장 지원	-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 소수자의 권리 증진 - 정권 목적에 따라 차별 없이 다양한 분야와 주체의 공익활동 지원
연대/협력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변화, 공공성 확대	- 분야/이슈/지역 등 공익활동의 연계와 협력 촉진 - 지자체, 행정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정책과 사업의 연계

출처: 저자 작성

라. 전략과제와 세부과제

□ 과제 관련한 제안을 키워드로 분류하면 10개의 전략과제 분야로 분류 가능함<sup>66)</sup>

〈표 4-8〉 과제 관련 주요 의견

추진과제	과제 관련 키워드
1. 시민참여 확대와 공익 활동 증진	민주시민의식강화(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민주적 역량,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보상, 시민기초사회참여증진(기부/자원봉사), 정책참여통로확대, 일상적/생활권/민간주도 공론장 확대
2. 시민사회조직의 지속 가능성 촉진	시민친화적지원제도, 공익단체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 기부/회원확대지원, 공익활동가 노동/복지/경력, 공익성과 인정/보상, 공익활동가양성/비영리일자리, 공간지원, 설립/운영 관련 규정/법 개선, 컨설팅, 인프라 지원
3.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자원의 연계촉진	공익활동플랫폼, 영역간협력, 중간지원조직역할 제고(연계, 공동비전설정), 시민사회-학교, 기업 등 연계, 기업사회공헌 확대, 행정간막이해소, 통합정책
4. 정부-시민사회간 협력·소통체계 강화	시민참여제도개선, 시민에게 권한 이양, 시민제안의 정책화, 정책실험 지원, 민관신뢰/사회협약, 정책참여자대표성부여, 열린소통포럼, 시민사회-지자체협력거버넌스, 중앙-지자체상호협력, 공무원 교육
5.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시민주도문제해결형공론장, 협력활동거점공간, 지역기반협력지원활동가/청년인턴십, 지역포럼, 지역정책연구소/아카이빙/평가지표, 시민공간자산화, 지역공동체순환경제기반 구축, 지역자원연계(학교, 기업, 시민사회 영역, 주체)
6. 시민사회 주도 국제협력 활성화	공공외교 통한 NGO국제협력지원(협력거버넌스구축, 이슈별 협의강화), 개발협력NGO협력파트너십 강화, 국제개발협력 활성화(제도적기반강화, 시민사회역량강화, 사업참여기회확대, 국제회의참여)
7.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활성화법제도적근거마련, 주요법제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공모사업혁신, 민관위탁/위원회제 혁신, 보조금/재원사용 규정 합리화/시스템개선, 중간지원조직제도적지원기반조성/협력적관계정립
8.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시민사회기초조사, 아카이브, 시민사회민간연구기관협력체계구축, 시민주도/현장연구지원, 시민사회도서관설립
9.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기금조성(정부출연기금, 민간주도기금), 공공재정사용배분개선
10.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시민사회정책전담실행기구(통합/조정역할), 정책거버넌스 역할과 기능 강화(총괄기구, 연계/협력, 실행체계, 대표성, 현장과의 연계성 등), 시민사회청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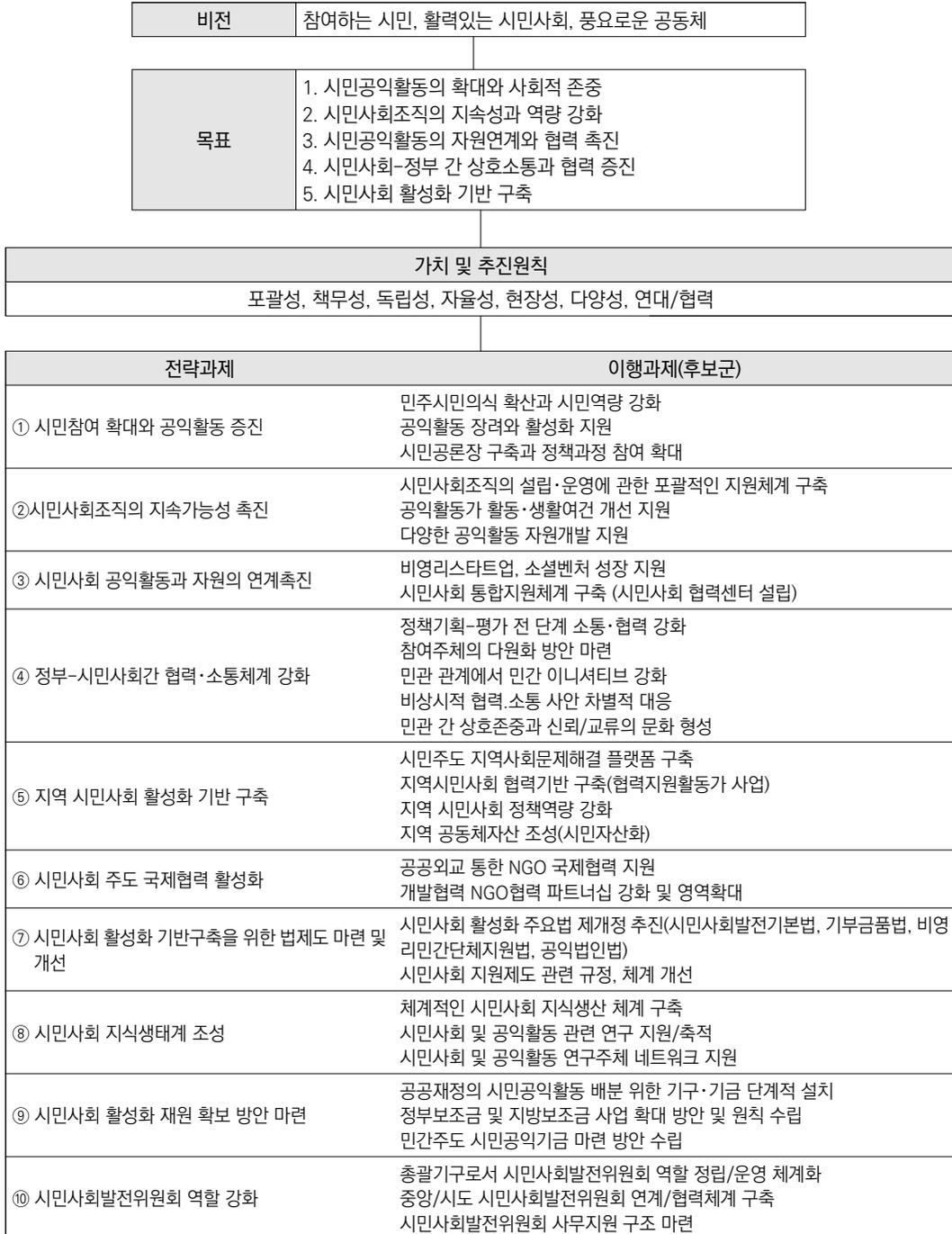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이상의 검토사항을 체계도에 배치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전략과제는 연구 과업의 과제 고려
- 이행과제(후보군)는 협동연구 참여 외부 집필자의 의견 반영

66)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의견, 연구주관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설계(착수보고자료)를 고려하여 추진과제 분류

[그림 4-3]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체계도(검토안)



출처: 저자 작성

## 제3절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 기본계획(검토안)의 세부사항을 FGI와 자문 회의를 통해 검토, 속의 조정
  - 기본계획은 제4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총리실)의 주관으로 2021년 상반기 수립예정
  - 본 연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적 논의의 성격을 지님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개요
  - FGI는 시민사회 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2차례 진행함
    - 영역별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sup>67)</sup>의 추천을 받아 자원봉사, 마을, 국제개발, 사회적경제, 애드보커시, 공익활동가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6명이 참여<sup>68)</sup>
    - 지역별로는 한국시민센터협의회<sup>69)</sup>의 추천을 받아, 대구, 충북, 전남, 부산, 광주, 서울, 6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의 중견 활동가 각 1명씩, 총 6명이 참여<sup>70)</sup>
  - 사전에 참여자에게 앞서 2절에서 제시한 기본계획(검토안)을 기본계획의 수립근거규정, 사례, 선행문헌에서 도출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 6개 항의 질문에 따라 검토를 요청함
    - 질문1. 1차 시민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질문2. 기본계획의 비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키워드를 말씀해주십시오.
    - 질문3. 기본계획을 통해 성취해야 할 주요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제시된 10대 전략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 질문5. 이행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추가·삭제, 우선 과제, 주무 부처 등).
    - 질문6. 시민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67) 지난 2016년 이래 지역·영역별 시민사회 주체(주로 네트워크)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공동과제로 삼아 조직한 범시민사회 네트워크임.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연대회의가 공동사무국을 맡음

68) 2020년 11월3일.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회의실. 대면 FGI. 권미영(한국자원봉사센터), 박태영(서울마을센터법인), 신재은(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협회 KCOC), 여진(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재찬(한국사회경제연대) 참여

69)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전국 광역, 기초 중간지원조직과 모법인의 네트워크조직

70) 2020년 11월5일. 줌(ZOOM) 통한 온라인 FGI. 공정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류지봉(충북NGO센터), 임현택(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최철원(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안형수(광주NGO센터), 정란아(서울NPO지원센터) 참여

- 자문회의는 1, 2차 FGI 이후, 4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 분과위원이 참여하였으며, FGI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자문토론을 진행함

## 1. 비전

- 1, 2차 FGI에선 ‘참여하는 시민, 활력있는 시민사회, 풍요로운 공동체’ 안을 두고 토론함. 다음은 주요 의견임
  - 단절되지 않으면서 역동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
  - 시민사회가 활성화됐을 때 대한민국(우리 공동체)이 어떻게 된다는 식의 논리 구성
  - 미래 사회 모습에는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 공동체 실현’이 다수 의견
    - 정의, 공정 등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에 대한 의견이 다수.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정의, 공정 등의 개념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우려
    - 시민성, 시민주권, 민관 대등한 관계 등 시민의 주권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
  - 기본계획과 관련해 시민, 시민사회 개념, 그리고 정책에 포함되는 범위 설정 필요
- 자문회의에선 FGI의견을 반영한 ‘튼튼한 시민사회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활력있는 시민사회로 만드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안을 두고 논의함
  - ‘튼튼한’을 ‘건강한’ ‘활력있는’ 등으로 변경
  - 비전, 핵심가치는 정책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제공, 사회적 합의와 설득력이 있어야 함

### 〈참고〉 비전에 대한 참여자 의견

- 1차 FGI
  - 시민사회가 활동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불평등 완화, 시민참여의 일상화, 시민의 권한 확대
  - 시민과 시민사회 개념문제. 시민사회 범위에 마을, 사경도 포함되는지 정책적 정의와 범위 명확히.
  - 제안 용어: 시민성/시민자산, 정의로운 사회, 불평등 완화, 시민주체/주민 결정권한, 협치 없이 주민자치 없다,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 실현, 공정/평등/정의, 민주주의 사회 실현, 민주적 공동체 실현
- 2차 FGI
  - 국가계획이므로 시민사회 성장이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표현, 시민사회의 힘/기반 위에서 국가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성

- 분절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상을 보여주는 표현
-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파트너적 관계, 대등한 관계, 협력적인 관계 용어
- 제안 문구: 시민사회 활성화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튼튼한 시민사회 따뜻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활성화로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

○ 자문회의

- 비전, 핵심가치, 목표에 대한 설득력과 합의 필요,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검토 필요
- '튼튼한'은 건강한, 활력있는 등으로 단어 변경, 대한민국 어색

## 2. 가치, 추진원칙

□ FGI, 자문회의에서 포괄성, 책무성, 독립성, 자율성, 현장성, 다양성, 연대/협력의 개념을 두고 논의함

○ 포괄성, 책무성, 자율성, 다양성에 대한 이견 없음

○ 연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림

- 다수 참여자가 사회구성원과 각 부문이 공익을 위해 상호 존중·신뢰하며, 연결되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등 다중의 의미에서 연대 강조(시민-시민단체, 시민단체 간, 시민사회 영역 간, 시민사회-정부, 지역시민사회-기업/대학 등), 특히 산발적, 개별화된,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정부 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연계성을 강조
- 일부 참여자는 연대는 시민사회 활동의 당연한 원리로 기본계획의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

○ 현장성과 관련해서도 강조 맥락이 다름

- 공익활동 지형의 변화, 조건,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방안 수립 강조
- 또는, 지역(지자체, 지방 의미)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강조

○ 독립성은 자율성과 의미가 분리되지 않다는 일부 의견 있었음

○ 공공성, 민주성, 시민성, 지역성,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추가 의견

□ 의견을 반영해 이를 기본계획의 '가치'와 '정책원칙'으로 분류

○ 기본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가치에는, 정책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배치하고, 여기에 다수가 제안한 '공공성' 추가

○ 정책원칙에는, 실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포괄성, 책무성을 배치하

고, 연대·협력은 '연계성'으로 용어 변경, 현장성은 '지역성'과 '실효성'으로 의미를 분리하여 배치

〈참고〉 가치, 추진원칙에 대한 참여자 의견

○ 1차 FGI

-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과 인식 부족이 정책의 가장 근본 문제
- 비영리, 비정부조직보다는 '시민사회' 라는 용어 적합, 포괄적인 정의 동의
- 시민사회 '육성'이 아닌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 보조금 프로그램, 개별지원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친시민사회정책 기조
- 시민사회를 국가운영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
-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독립성, 다양성 보장
- 시민사회 영역, 활동의 횡적, 종적인 연결, 실천 활동의 협업 관계 촉진, 구조 마련
- 시민사회 영역 간 연결 보장(예: 시민단체가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 상호관계유지)

○ 2차 FGI

- 공공성 창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 인정, 존중
- 국가운영에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영국 사례), 새로운 공공성 창출 협력(일본 사례)
- 민-관: 대등한, 파트너적, 협력적인 관계 중요
- 시민사회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 핵심
- 지역성: 지역사회의 특수성, 조건 반영
- 자율성 보장, 다양한 활동과 시민사회의 활동방식에 대한 이해와 인정

○ 자문회의

-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지원과 기본계획상의 정부 지원의 차이가 드러나야 함
- 시민사회를 육성, 동원하는 접근에서 자율성, 다양성 중요
- 다양성에 공감. 거대시민단체 위주에서 다양한 단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
- 시민사회가 본래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대를 가치로 설정하는 것에 의문 vs.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단체 간, 시민사회와 정부 간 연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연대 중요
- 시민성, 전문성, 신뢰성 등 추가 의견

### 3. 정책목표

- FGI, 자문회의에서 5대 목표 ① 시민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존중, ② 시민사회조직의 지속성과 역량 강화, ③ 시민공익활동의 자원연계와 협력 촉진, ④ 시민사회-정부 간 상호소통과 협력 증진, ⑤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안으로 하여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표현
  - 시민성·시민참여·시민력·시민권 확대, 민관 파트너십·대등한 관계, 연계협력, 법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의견 다수
  - 목표를 3개 정도로 축소하자는 의견, 제안 아이디어 ① 시민사회 위상 향상과 지위 인정, ② 시민사회 역량 강화, ③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 문구변경 의견: ① 시민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존중(추상적) → 시민공익활동의 촉진과 확산 ② 자원연계와 협력 → 사회적자본과 시민공익활동 연계촉진 등

#### 〈참고〉 목표에 대한 참여자 의견

- 1차 FGI
  - 시민성의 확장을 통해 개인, 동아리로 확장되고 점이 선이 되는 연결과 확장 관점
  - 시민자산 창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이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활동가들임. 법적 테두리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 연결, 연대: 개인과 단체, 단체와 사회적기업, 영역 간 연결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제화
  - 시민사회와 정부 간 상호소통과 협력 증진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제시.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상력 강화 표현이 적절
- 2차 FGI
  - 목표를 3개 정도로 축소: 시민사회 위상·지위 인정, 시민사회 역량 강화, 시민사회 지원
  - 시민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존중은 추상적임. 대신 공익에 참여하는 시민의 확산과 확대, 시민공익활동의 촉진과 확산. 시민참여·시민력·시민권 표현 사용
  - 자원연계는 사회적자본과 시민공익활동 연계촉진이라는 식으로 변경
  -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당장 시급한 목표가 필요. 불합리한 법제도, 관행 제거가 가장 핵심
  - 파트너십, 대등한 관계가 매우 중요, 목표로 분명하게 명시
- 자문회의
  - 비전, 가치, 목표가 하나의 틀 안에서 연계돼야 함
  - 기본계획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정부가 시민사회 성장의 주체는 아님. 지원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자생력 증진 방안 제시
  - 육성의 관점이 아닌 시민사회에 활력과 변화를 주는 관점에서 접근
  - 제시된 안은 전반적으로 참여(거버넌스)와 협력이 강조되고, 시민사회 생태계구축 등이 취약
  - 첫 3개년 계획이기 국민에게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 4. 추진과제

- FGI에서 논의한 전략과제 ‘검토초안’과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변경안’
  - 1,2차 FGI에서 2절에 기술한 바대로 10대 전략과제(검토 초안)를 두고 토론함
    - ① 시민참여 확대와 공익활동 증진, ②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③ 시민사회 공익 활동과 자원의 연계촉진, ④ 시민사회-정부간 협력/소통체계 강화, 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⑥ 시민사회 주도 국제협력 활성화, ⑦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⑧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⑨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방안 마련, ⑩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 자문회의에서는 1, 2차 FGI 의견을 반영해 검토 초안의 전략과제 ③과 ⑤를 조정. 전략과제 ③은 ‘시민사회-기업간 협력강화’로, ⑤는 ‘지역시민사회 협력생태계 구축’으로 변경하여 자문토론 진행
  
- FGI와 자문회의에서 모두 구조, 배치 관련해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배치, 사업과 추진체계의 구분, 전략과제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목표와 전략사업의 연결하자는 의견
  - 정책사업과 추진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
  - 전략과제를 줄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구성
  - 전략과제, 이행과제의 층위 조정
  
- 전반적으로 제시된 전략과제와 이행과제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음. 논점이 있는 과제는 주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1, 2차 FGI에 ⑤번 과제로 제안)과 ‘시민사회-기업간 협력 강화’ (FGI의견 반영해 자문회의에 ③번 과제로 변경 제안)임
  - ‘지역시민사회’ 관련 의견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 해석할 수 있음
    - 하나의 견해는, ‘지역’을 ‘광역’, ‘기초’, ‘생활권’ 등 층위(규모, local scale)의 의미로 사용. 정책이 실제로 집행, 실행되는 현장이 ‘지역’ 이므로 ‘지역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은 별도의 과제가 아닌 전체 전략과제에 걸쳐 있는 정책의 원칙에 해당. 정책이 생활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함을 강조. 또한, 현재 시민사회 정책 칸막이가 현장의 칸막이로 확대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므로 주요 전략과제를 공익활동의 연계를 강조한 ‘지역시민사회의 협력생태계 구축’으로 변경하자는 제안. FGI 1차와 연구진 회의에서 주로 제기됨
    - 또 다른 견해는, ‘지역’을 중앙과 대별되는 ‘지방(province, region)’ 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municipality)’의 의미에서 사용.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정책여건이나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정책도 중앙의 관점에서 수립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 따라서 지방이 특수하게 겪고 있는 시민사회의 자원, 인력, 민관협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2차 FGI와 자문회의에서 주로 제기됨.

- ‘시민사회-기업간 협력강화’는 2차 FGI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어 자문회의에서 논의하였으나 시민사회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제기됨
  -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해 시민사회, 국가, 시장이 공동협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시민사회 영역으로의 새로운 자원유입의 방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연결한 시너지 전략 등의 차원에서 2차 FGI에서 ‘시민사회-기업간 협력강화’가 독립된 전략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후원을 준조세처럼 강제했던 전례가 많았고, 기업자본이 시민사회 생태계의 자율성,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전략과제보다는 이행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됨

#### 〈참고〉 전략과제에 대한 참여자 의견

##### ○ 1차 FGI

- 추진사업과 체계로 구분 (SDG 체계 참조)
- 목표 아래 전략과제를 넣는 방안 vs 전략과제가 여러 목표 실현에 중복해서 걸쳐 있는 문제
- 법제도, 재원마련, 위원회는 추진체계로 배치
- 전략과제마다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명시
- 전략과제③과 ⑤ 조정. ‘지역(생활권)’ 관점은 모든 과제에 다 필요
- 지역 단위에서 시민사회 주제간 협력, 시민협력플랫폼 구축

##### ○ 2차 FGI

-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배치
- 압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과제 설정, 이행과제 중복 조정, 재배치, 구체화
- 지역시민사회 기반조성, 자산화, 인재지원, 지역기업과 지역시민사회 연결 등 활성화 전략
- 외부 자원을 시민공익활동과 연결하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가치추구활동과 연계, 민간 투융자기금 연계, 비영리지원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 ○ 자문회의

- 전략과제를 4~5개로 축소, 국제개발, 위원회는 협력 분야로 배치
- 국제협력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측면에서 국경을 넘어선 연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
- 전략과제③시민사회와 기업간 협력은 전략과제⑨ 이행과제로 포함
- 전략과제⑤지역 시민사회 협력생태계 구축은 ‘지역시민사회 강화’로 명칭과 내용 변경
- 전략과제⑥국제협력, 전략과제⑩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체계(층위) 조정

<참고> 이행과제에 대한 FGI 참여자 의견

전략과제명	1차 FGI 주요 의견	2차 FGI 주요의견
① 시민참여 확대 & 공익 활동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을 평생교육, 청소년 교육과 연결하여 기존 프로그램 개선, 접근성 확대</li> <li>- 시민참여 정도가 아닌 행정에 시민참여 강제하는 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확대</li> <li>- 시민력, 시민권의 고조. 그 힘에 의해 이끌어지는 사회</li> </ul>
② 시민사회 조직의 지속 가능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촉진이라는 용어 변경 고려</li> <li>- 다양한 공익활동 자원개발 지원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사업 보조하는 게 아닌 조직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li> <li>- 다른 분야(소상공인)와의 차별 철폐</li> </ul>
③ 공익활동과 자원의 연계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과 시민을 구분하는 문제 해결</li> <li>- 주민활동을 시민사회 의제·활동으로 연결</li> <li>- 공익활동이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태계 조성</li> <li>- 지역 내에서 (정책) 실천활동의 협업구조</li> <li>- 제도권(정책지원영역)과 비제도권의 연계와 협력</li> <li>- 공정한 자원배분(예: 공동모금회, 구호협회, 적십자회 등 모금을 다양한 분야로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활동의 다양성 확대, 시민사회 활동으로 연결</li> <li>- 외부 자원을 시민공익활동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중심으로 과제 선정필요</li> <li>- 제안: 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②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 연계 ③ 민간 투융자기금연계 ④ 비영리지원산업 활성화 지원 ⑤ 법정기금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등)의 지원대상에 NPO포함</li> </ul>
④ 민간 협력/소통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인식변화 교육 필요</li> <li>- 일상적 정례협의회, 관계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예: 국제개발협력분야, 코이카)</li> <li>- 시민사회와 정부간 협상력 강화</li> <li>- 우선순위: (1)정책기획-평가단계의 소통/협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의 '대등한' 관계</li> <li>- 이행과제5: 파트너십 존중 중요</li> <li>- 공무원 교육: 영국과 같이 시민사회 인식, 태도 관행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li> </ul>
⑤ 지역시민사회기반 활성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기반', '생활기반'은 기본 정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된 과제는 모든 전략과제에 녹아 있어야 함</li> <li>- 정책 실현의 공간에서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요청: 이행과제1→전략과제1, 이행과제2→전략과제3, 이행과제5→전략과제3</li> <li>- 지방보조금, 법제도, 평가시스템 개선</li> <li>- 지역 공간지원 자산화: 통합관리 필요</li> <li>- 기업이 지역시민사회에 기부했을 때 가점, 경영상 인센티브</li> <li>- 시민사회 지역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li> <li>- 제안: ①지역대학NGO학과개설/광역별 거점대학의 시민사회관련학과개설/지역인재지원, ②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지방정부평가지표로 반영, ③도농 시민사회 교류지원, 지역 시민사회 거점조성(연수원, 교육원, 숙박시설), ④지역기업과 지역시민사회 연결(기부)</li> </ul>
⑥ 시민사회 주도국제협력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연(연구주관처)에 별도 의견 개진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하지 않음</li> </ul>

전략과제명	1차 FGI 주요 의견	2차 FGI 주요의견
⑦ 기반구축 법제도 마련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에서 지방재정법이 가장 걸림돌</li> <li>- 시민 공익활동 관련 쉬운 규정 해설서 필요</li> <li>- 시민사회 분야, 지역에 걸쳐 법·규정의 일관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법안개선 포함해 시민사회 생태계 변화, 사회환경변화를 반영 못 하는 불합리한 관행, 정책, 제도 개선</li> <li>-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지원체계 개선</li> </ul>
⑧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영역별, 지역별 표준화된 통계, 분류체계 필요</li> <li>- 과제명 변경: 체계적인 시민사회 지식생산체계 구축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사회 정책역량 강화</li> <li>- 시민사회 관련 기록, 아카이브, 체계적 관리</li> <li>- 시민사회 관련 기초통계 구축</li> <li>- 연구기관들의 허브, 교육 기능</li> </ul>
⑨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자산, 시민공익활동가 기본소득제</li> <li>- 민관공동협력 통한 '시민공익활동기금' 조성</li> <li>- 기금조성외에 시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마련 필요</li> <li>- 자조기금 조성(예: 동행/사회적경제활동가 인센티브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법정기부금 모금기관 설립</li> <li>- 개인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li> </ul>
⑩ 시민사회 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추천, 대표성 획득 문제</li> <li>- 영국 시민사회청과 같은 위상, 권한을 가진 행정기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발위 독립성, 권한 문제</li> <li>- 독립행정위원회 필요</li> </ul>

출처: 저자 작성

##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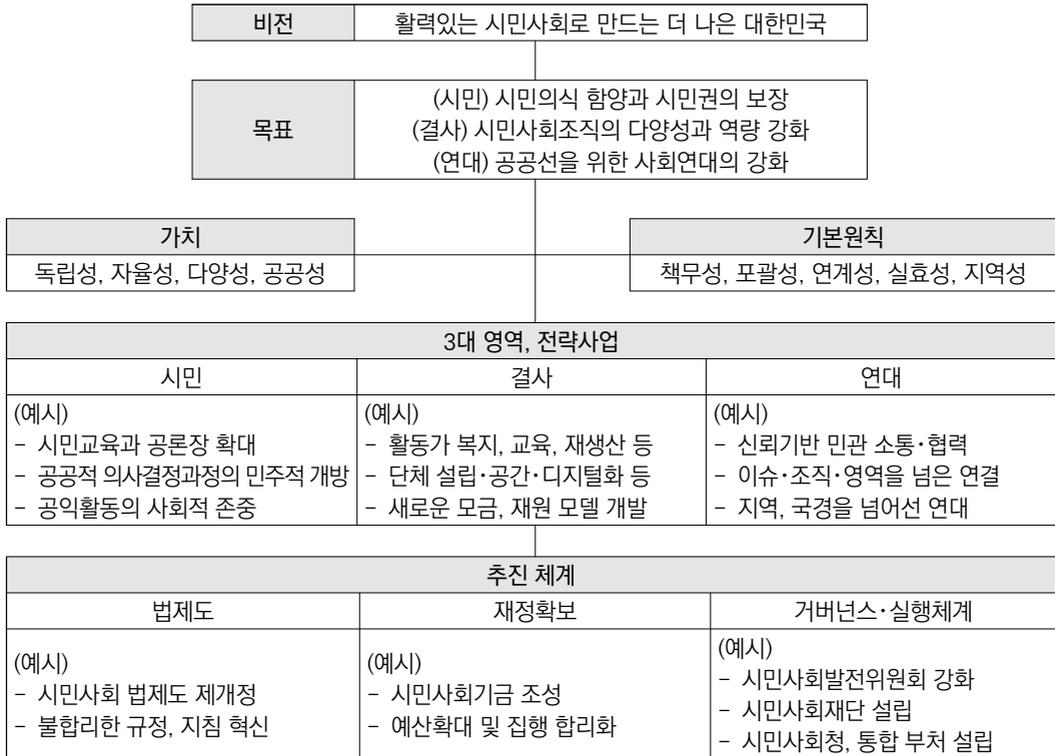
# 기본계획(안)의 개요와 향후 수립과제



### 1. 기본계획(안)의 개요

- 문헌 검토, FGI,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사업과 추진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 반영
  - 비전, 목표, 전략사업의 연결에 대한 의견 반영

[그림 4-4]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1안)



출처: 저자 작성

□ 가치와 추진원칙

○ (가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 독립성: 시민사회를 사회의 공식 섹터로 인정하고 고유성에 대한 존중
- 자율성: 시민사회 특성과 호흡에 맞는 자율적 활동에 대한 보장
- 다양성: 이슈·분야·지역에 걸쳐 다양한 공익활동의 조화로운 발현과 성장
- 공공성: 상호호혜에 바탕을 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

○ (추진원칙) 책무성, 포괄성, 연계성, 실효성, 지역성

- 책무성: 시민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증대
- 포괄성: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정부 전략 마련
- 연계성: 범정부 국가정책으로 지역, 영역, 주체 간 연계를 촉진하는 통합체계 구축
- 실효성: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정책 집행
- 지역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정책 추진

□ 본 용역연구의 과업을 추진과제로 반영한 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4-5]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제안(2안)

비전		활력있는 시민사회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	
가치		추진원칙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책무성, 포괄성, 연계성, 실효성, 지역성	
3대 전략목표	추진과제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li> <li>◆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li> <li>◆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li> </ul>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li> <li>◆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li> <li>◆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li> </ul>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li> <li>◆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li> </ul>		

출처: 저자 작성

## 2.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의 전환

-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범정부계획임
-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중앙 행정부처 이행계획의 수립,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방향, 원칙, 범위를 알려주는 가이드 기능을 함
- 문헌, FGI,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와 중요성에 반해 시민사회 정책 철학의 부재
  - 시민사회 정책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기초조사, 통계자료 등의 부재
  - 시민사회 정책 대상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국한하는 등 협소한 인식
  - 시민사회의 '회복' '활성화'가 아닌 개별 영역, 단체의 '육성'에 초점을 둔 정책
  - 변화된 시민사회 생태계와 공익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부족
  - 변화된 지자체의 제도적 여건과 정책을 쫓아가지 못함
  - 개별화, 흩어진, 칸막이 정책이 시민사회 연계·협력, 공동실천에 장애
  - 분야·지역·부처·부서별로 제도, 정책, 지침 등의 적용에서 일관성, 형평성 없음
  - 단기실적 위주의 지원으로 시민사회 토대구축에 효과 낮음
  - 실질적,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문구로 존재하는 정부 지원
  - 민관협력에서 기울어진 권한과 자원, 행정 편의에 따른 임의적·기계적인 집행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상에 맞는 권한, 예산, 실행력 부재
-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중앙 행정부처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정책은 이전과는 그 기초, 정부 역할, 수단, 주체, 범위, 수준 등에서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함

[그림 4-6] 기본계획 전후의 시민사회 정책 비교

구 분	기 준	변 경
정책 기초	시민사회 정책 비전의 부재로 실무적인 사업 배치	시민사회 성장을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 설정
정부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를 시민사회 자체 문제로 간주, 정부는 관리자, 보조자 역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님
근거 제도	개별법, 특별법, 조례 중심, 제도마다 관점, 규제, 지원의 비일관성, 정당성 부족	관련 제도의 일관성, 연계성, 형평성, 실효성 획득
정책 수단	공모사업, 일부 보조, 단기실적 또는 특별 대우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다양한 수단
실행 주체	행정 부서 차원의 결정, 일부 단체와 개인 의견청취, 정책 정당성 획득에 동원	민관이 함께 결정·실행 및 평가 하는 소통채널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확보
정책 범위	비영리·마을·사경·자원봉사 등 영역 또는 지역별 개별 정책	전 분야 통합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융합적 정책
정책 수준	중앙부처-지자체 간,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 기초와 사업	국가 기본정책으로서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의 이해관계와 일관성 있는 사업

출처: 저자 작성

## 나. 기본계획 수립의 과제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와 수립절차를 분명히 해야 함
  - 현재 대통령령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정부'로 하고, 심의 권한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명시하였으나, 그 외 주무 부처, 관계중앙행정기관, 수립기간, 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대통령령의 제정 당시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된 바 있으나 시행규칙(안)은 실제 제정까지 이르지 못함. 당시 공고된 시행규칙(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3조), 변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5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수립 주체가 '정부' 인지 '위원회' 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하고,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
    - 정부의 주무 부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설정해야 함

### 〈참고〉 시행규칙(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시책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영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내용의 반영, 사업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7094>). (검색일: 2020.11.03)

- 둘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인력, 재정, 조직 등 실행체계를 갖춰야 함
  -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전 과정(수립, 변경, 조정, 평가 등)을 주관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별도의 사무국이 없음
  - 또한, 위원회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총리실의 시민사회비서관실은 말 그대로 비서실로 정책 실행에 맞는 권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범정부계획으로써 범부처를 조정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권한 부여와 사무역량의 배치가 필요함
- 셋째,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 충분한 조사연구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
  - 이번 용역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로 기본 계획 수립이 아닌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충분치 않음
  - FGI와 자문 회의에서 누차 언급됐듯이,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가치, 전략과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책 철학과 개념 정의가 뒷받침되어, 또한 시민사회의 실태, 활동방식, 정책적 수요 등의 조사분석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야 함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 이해, 수요를 반영하는 숙의 과정이 수반되었을 때 수립된 계획의 설득력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음
- 넷째,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간에 위상을 정립하고 연계전략이 필요함
  -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외에도 개별 법령, 정책에 따른 기본, 종합계획(예: 자원봉사활동촉진,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촉진)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과 마을공동체 관련 계획 등도 수립될 가능성이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수립 완료할 계획에 있음
  - 시민사회 관련 개별 계획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연계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계획 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제1절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1. 상시적 소통협력 체계 활성화

### 가. 총론

- 상시적인 민관 소통협력 체계의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상호 협업과 협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민관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들 간 다양한 이념적 정치지향적 스펙트럼을 치우침 없이 반영하고 실천하는 방안, 상호존중과 신뢰와 포용의 문화 형성의 필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OECD는 2021년부터 '열린정부'의 핵심의제로 공공 소통을 채택하였음. 정부신뢰, ICT 융합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가 중요 요소로 꼽혀오기도 함. 이런 가운데 그 구현을 위한 시민의 주도성 강화가 주요 병행 보완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중심의 소통, 민관협력의 혁신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기도 함. 국민참여와 소통 콘텐츠의 생산, 소비, 창출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자연히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담당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중심의 조직기능 조정 노력 나아가 민관 소통협력의 자세변화와 방식과 여건의 개선 노력도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음
-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국민포럼, 열린소통포럼(광화문1번가),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OGP),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각 부처의 국민생각함, 국민제안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그 대부분이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임(조세현, 2018: 16). 민관공동생산의 원칙은 선언의 수준일 뿐 실질적인 실천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여전히 민관이 함께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이행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은 아님

## 1) 참여의 다양화

### □ 참여 소통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시민사회, 민간의 개념 설정'을 공익활동가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사회단체로 좁게 한정해온 데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할 때라는 일각의 지적도 유념해볼 만함.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제 시민단체들의 분화와 다양화 속에 일반 시민과 지역주민의 공공관련 참여 소통 협력도 시민사회의 범역 안으로 끌어들여 그 바람직한 개선과 공조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인 가시적 성과와 추동력 추구 대신 지속성 신뢰성 민주성 탈 정파성 탈 이익결사적 성격의 유지 또는 회복 등을 위해서도 그러한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근래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도 주목하여 참여 소통 협력의 다양화에 집중할 때임. 시민사회단체들은 Advocacy형 활동에서 나아가 사회적 기업·국제협력·민간공익재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환원형 봉사형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인적자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 적정 대처를 서둘러야 할 때임. 여러 현실적인 제약요건이나 당면과제의 추진에 치중한 나머지 지레 시민사회의 개념을 협의로 정의하여 현실대응과 미래준비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참여 소통협력 면에서 빈틈이나 사각지대가 많아질 것으로 예견됨
- 차후, 민관 협력소통 체계만이 아닌 전체 '시민사회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사회 논의 자체의 지평과 범역을 넓혀야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의 확보 그리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커질 것임. 정권 변화와 별 무관하게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을 확대 강화하게끔 하여 그 지속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시민사회와 관련한 이 같은 개념설정에 이어 우선 '참여의 다양화'에 진력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의 활동영역과 대상이 우리 삶의 총체적 부면에 걸쳐 있는 만큼, 특정 몇몇 분야를 중심으로 해온 참여와 소통협력 또한 이제는 달라질 때임. 더욱이 사회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져,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존 대응력과 대응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착안점이 밀려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비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만 아니라, '참여'와 '소통 협력'에서도 다양화와 다원화는 필수요건으로 꼽힘. 이상적으로는 'N 분의 1 정신'과 'One of Them Mode'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 내 상호존중과 배려가 그 출발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음(서영복, 2015: 1-3)

- 시민사회의 다양화, 그 활동의 다양화 추이와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참여, 소통 협력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으려면 우선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입안단계부터 다양화를 실천해야 할 것임. 즉,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 5. 26.)에 따라 수립하는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안’의 준비과정 그리고 그 이전 그 심의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구성부터 전체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이 점부터 점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임. 그래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전 국민적인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의 수용도와 실효성과 효능감을 높이고, 법률이 아닌 규정 수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추진력과 파급력과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 세부 이행과제 예시

-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참여 확대 다양화
  -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 폭넓고 심도 있으며 상당 시간을 투입하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특히 담당 기구나 유관 조직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추진으로 자칫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참여의 다양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병행과제 방안
  - 제1차연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내 ‘(시민사회) 다양성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제2차연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다양성 분과위원회’로 발전적 전환하여 실천 본격화
  - 제3차연도 범국민적, 초 정권 초 정파적 지지와 협조 속에 참여, 소통 협력의 다양성 수준 확보
- 기대효과
  - 소통협력의 정례화 일상화 문화화, 참여 인프라 구축의 완성도 제고, 소통협력 역량의 강화, 갈등 해소 사회통합, 포용사회 구현, 민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생산의 성숙화, 공동체성 복원, 사회적 효율성 제고

#### 2)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 □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개관

- 민간의 참여와 소통 협력 또는 민관 거버넌스에는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가 있을 것임. 어쨌든 정책, 행정의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 있는 참여를 강조하고 또 요구하고 있음. 정부도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역설하고 있기는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재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임
- 정책 전 단계에 걸친 참여와 소통협력은 자칫 요구와 지지의 분출로 이어지기 십상이지만 오히려 민관의 사안에 대한 적시 선제적 대응이나 적정성 추구에 더 중점을 뒀야 할 것으로 보임. 이로써 정부와 시민사회는 협치에서 민주성 투명성 대응성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의 소지까지 줄여 결국엔 효율성까지 제고하게 될 것임. 포퓰리즘이 아닌 집단지성까지 잘 발휘된다면 민관 거버넌스의 합리성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임
  - 거버넌스의 정책 전 단계 확대 강화와 심화발전을 꾀하되, 그 규모의 적정화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임. 사전 협업과 사안 단계별 협업 등으로 불요불급한 행정수요, 거버넌스 수요를 줄여가는 데 진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단순 거버넌스 수요대응, 권한·조직·예산·반대급부의 증대 욕구, 즉물적 현실추수적 사후약방문 격 ‘공급관리’ 등에 급급해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거니와 중요한 국력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민관 거버넌스도 일을 예방하고 줄이면서 ‘선제적 대응’ 수준만이 아닌 거버넌스 전 과정에 걸쳐 ‘수요관리’에 들어가야 할 서임. 이를 위해서도 행정절차 준수, 정보의 공개·공유, 민주성·투명성의 제고, 상호 존중과 신뢰 등은 필수임(서영복, 2015: 1-3)

#### 나.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 민간의 주도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이 노력해야 할 선결 병행과제로 꼽을 수 있는 요목들이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먼저 민이 정부와 공무원들로 하여금 거버넌스에 대한 소극성과 거부감을 줄이고 ‘거버넌스의 효용’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게끔 노력해가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관을 대하는 행태를 가다듬으면서 주의주장이나 이익의 표출만이 아닌 대국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법규, 조직의 질서와 관행, 행정문화, 책임성의 틀 안에서 정형화되고 고착된 관(공무원)에게 새로운 통찰·아이디어·지식 정보 경험·양식 있는 시민적 요구·일의 효과성 등을 보태줄 수 있어야 할 것임.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일반 시민의 삶의 일부, 일상의 과외활동이 되기를 바라듯이 거버넌스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게끔 민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그래야 시민 역시 거버넌스의 효능감을 키우고 그 실질적인 주체로서 주도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임
- 앞의 제1절에서 강조하여 제시한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 전 단계에 걸친 소통협력’을 민간의 주도성 제고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전방위적’ ‘전천후적’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정책 수준, 행정계층 레벨(level)별 다양한 참여, 소통 협력 관련 장치,

기제, 채널, 가용자원의 mapping→공지(公知)→지속적인 정보자료 보완 (upgrade)과 공유 (共有) 공동활용 그리고 이에 비춘 민간영역의 자기계발과 역량 증진 노력 유도

- 관의 형식적, 시혜적, 일방향적, 책임회피용, 공급자 중심적, 불가예측적, 관성적인 특정 직업집단 일변도, 줄 세우기식, 밀어붙이기 동원용 참여와 소통협력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준비된 상태에서 민간의 주도성을 키워갈 수 있음

### 1) 민의 책임성 확보와 자정 노력으로 위상과 공신력 제고

- 위탁·수행기구형, 실행형 거버넌스의 경우 운영의 전문기술성과 예산집행·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음.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과 관련한 국회 쪽 입법 움직임도 있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적 기계적 형식주의적 관리 감독과 과도히 경직된 회계 처리 기준 적용 등은 협업의 비효율성 나아가 또 다른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으면 함(서영복, 2015: 1-3)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도 시민 주도성, 민간 이니셔티브의 가능성과 범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할 만함. 이는 참여의 다양성 확대만이 아닌 민관관계 공동생산 협치 관련 각종 규율에서 나아가 자율화, 공동 운영관리 영역의 확대 등을 기대할 만한 과제로 평가됨

### 2) 공직사회의 자세 문제, 현황과 개선과제

- 정부·공무원·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자세의 개선은 여전히 숙제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무엇보다 '전문지식 제공형, 심의의결 자문형' 거버넌스의 경우, 지연·학연 등에 매몰되는 연고주의, 이해관계에 의한 주고받기식 일처리와 참여 소통대상 선정, 후일 도모형 배려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중론임
- 여기에, 건수 중심의 성과주의, 시간에 쫓기는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 무탈 안전 위주 민관협력 소통이 형식적이고 획일화되고 편벽되고 소수에 집중되는 참여를 낳고 다양성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됨. 여기에서도 행정절차법 준수, 갈등 예방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그 개선 노력이 필요함. 기관 특성별, 참여내용별 거버넌스 접근 같은 차별적 맞춤형 대응 노력 또한 미흡한 실정임(정정화 외, 2014: 162)
- 소통 협력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도 각별하고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국가인재개발원, 지자체별 인재개발원, 지자체의 NGO 중간지원조직, 민간재단 등을 통한 공무원 교육훈련, 질적 심화, 체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만함. 일단 제1차연도에는

기존 커리큘럼 실태조사와 설강(設講)과 함께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의 강사 참여 확대도 시범적으로 시도할 만함. 제2차연도에는 각급 행정기관에 교육훈련 확대, 질적 심화, 가능하면 사후관리까지 검토했으면 함

## 2. 비상시적 위기 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 □ 총론

-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 같은 전 사회적 전 지구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신뢰 기반의 범정부적, 범사회적인 소통대응이 중요함. 팬데믹의 불가예측적 특성으로 정보의 속도, 정확성 간 상충이 발생함. 정확한 정보균형을 위한 범정부적 조율과 공조도 중요함
- 코로나 19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기후변화 등 비상시적 상황이나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민관 간 협력과 소통의 틀과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근래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재해구호, 자원봉사 같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해오고 있기는 함, 하지만 더욱 입체적이고 신속 탄력적이며 촘촘한 연계와 시너지 확보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공유하는 공동 인프라와 문화의 형성이 긴요함. 특히 비대면 참여와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인프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문화 형성이 전면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당장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현황조사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과 시민사회조직의 피해현황과 지원수요를 파악할 필요도 있음
- 일반적으로는, 민관 모두 갈등관리 거버넌스만이 아닌 안전관리 같은 생활밀착형, 미래준비형, 총력대응을 통한 협업·공동생산형 거버넌스 유형 등에도 더욱더 초점을 맞춰가야 할 상황임
-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소통 체계 전반에 해당하는 요목이겠으나, 특히 비상시적인 위기대응 협력과 소통에서 정교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즉, 각종 활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임. 사안별, 시기별, 기관유형별, 정부계층별, 지역별, 대상집단별, (전달·교류·커뮤니케이션 등의) 수단 방법별, 협치 성격 유형별 거버넌스 등에 대한 한층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 파악과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열개 마련에 나섰으면 함. 그러면서 특히 비상시적 위기대응 거버넌스와 관련한 조사연구, 거버넌스 행동강령, 매뉴얼, 모델과 변용, 실천 로드맵과 안전망 유관 작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의 이행과제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의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 1: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 이행과제 2: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 이행과제 3: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 이행과제 1: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과제명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5호 정부혁신추진계획의 핵심과제 '참여와 협력'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현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제안, 민원 수준의 참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 방식을 개편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참여와 협력'의 정부혁신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정책이행 단계의 소통과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음</li> <li>○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의 수준이 아직도 미흡.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방식의 구체화와 정교화, 참여의 다원화 요구 증대</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성과공유, 공동책임의 민관 공동생산의 원칙과 패턴의 재정립으로 정책·예산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 전 단계에 걸친 협력 소통을 강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혁신평가의 국민참여, 민관협치 분야 평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부의 민간 소통협력과 관련한 성과평가 방식 개발</li> <li>○ 소통과 민관협력 교육, 민관협력의 사안별, 정책 단계별, 행정계층별, 지역별 '행동준칙'(code of conduct)과 매뉴얼의 작성</li> <li>○ 민관 거버넌스 참여주체들 간 이념적, 정치지향적 스펙트럼의 다원화 실천방안, 사회 취약계층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견 상호존중과 포용, 신뢰의 문화 형성, 행동변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내 '(시민사회) 다양성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li> <li>○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li> <li>○ 정부-시민사회 간 상시 협력체계 마련과 실질적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체계 마련</li> </ul>

추진 일정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민간 소통협력 성과평가 방식의 개발
	2023년	◦ 민관협력 교육, 시안별, 정책단계별, 행정계층별, 지역별 '행동준칙'과 매뉴얼 제정 운영지원
	2024년	◦ 평가와 환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수 위주의 민관 간 협력소통에서 나아가 전방위 전천후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li> <li>◦ 파당적 부분적 참여를 지양하면서 협력소통의 개방성, 다양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지속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임</li> </ul>	

## 이행과제 2: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과제명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국가인재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함.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 지원 차원의 민관협력 조직체계와 인사운영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열린정부를 위한 OECD의 '공공소통에 관한 국제보고서'는 시민과의 정보공유, 양방향 소통을 위한 시민, 기업,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li> <li>데이터중심, 디지털중심의 소통, 민관협력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음. 국민참여와 소통 콘텐츠의 생산, 소비, 창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담당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중심의 조직기능 조정노력이 필요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으로는 정보공개, 공유의 충실성 제고, 의사결정 내용과 회의결과에 관한 신속 정확 충실한 환류, 회의공개법 제정, 국민참여 관계법 보완 노력</li> <li>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의 디지털 소통체계 강화</li> <li>민관협력 담당인력의 배치, 인사 순환주기, 전문보직경로제, 업무별 맞춤형 공무원 소통협력교육 등 인사제도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li> <li>관리, 통제, 지원 중심의 민관협력 조직을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열린정부를 본격 추진</li> <li>관련 연구원 내 정책소통협력 연구센터 등 기구 설치를 통한 환경변화 대응 연구지원</li> <li>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li> </ul>	
추진 일정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회의공개법 제정, 국민참여 관계법 보완 노력, 디지털 소통체계 강화
	2023년	인사제도, 조직 재구조화 개선방안 마련
	2024년	평가와 환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식이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민관 동반자 관계형성과 공동생산을 위해, 진일보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 형성을 기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li> </ul>	

### 이행과제 3: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과제명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절차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비드 19 위기관리를 위해 일관성 있는 신뢰기반의 범정부적, 범사회적인 소통대응이 중요. 팬데믹의 불가예측적 특성으로 정보의 속도, 정확성 간 상충이 발생함. 정확한 정보균형을 위한 범정부적 조율과 공조 중요</li> <li>갈등, 예측 불가 사안 발생 시 소통협력 방식과 체계 설계 필요. 정부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게끔 노력하고 있으나 예방적 차원의 갈등관리는 여전히 미진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의 경우 중앙정부에 새로운 소통 구조(코로나 소통 허브)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문가(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행동변화전문가, 디지털 문화, 음악, 스포츠, 보건, 마케팅 등)의 실질적인 참여, 외부 파트너(협력기관)의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가능하였음<sup>71)</sup></li> <li>핀란드의 경우 시민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시민의 반응을 조사하고 ‘Finnish National Dialogue’를 재무부가 지원하고 다이얼로그 아카데미(시민단체), 타임아웃 재단(핀란드 혁신기금이 만든 재단)이 실행함.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해하기 쉬운 시민대화를 조직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공공소통을 통해 이를 강화함. 위기 소통협력에서, 정보교환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음<sup>72)</sup></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다한 비일상적 거버넌스의 속익성, 쌍방향성, 전문성, 행·재정적 효율성, 책임성 등에 걸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 도출과 행정절차법 등 유관법제 개선</li> <li>위기 시 정책이 너무 복잡하거나 국민의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검증위원회, 시민감수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명확하게 대중이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li> <li>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소외계층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책소통랩을 운영</li> </ul>	
추진 일정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소통을 위한 시민검증위원회, 시민감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방적 갈등관리</li> <li>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랩 운영</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절차법 등 유관법제 개선</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대화 프로그램의 시행</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일상적 소통협력과 위기대응의 수준 제고를 위해, 문제접근과 정책의 적시성, 대응성, 수용성, 책임성, 윤리성, 효율성 등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li> </ul>	

71)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하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 국제화상토론회 개최”. (검색일: 2020.12.09.)

72)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하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 국제화상토론회 개최”. (검색일: 2020.12.09.)

## 제2절

##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 지역협치는 지역사회 의제발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역협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역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민관협치위원회로 환경 기본조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민관협력위원회임. 동 위원회는 기후변화와 대기 질에 대응한 거버넌스적 컨트롤 타워로 자문기능 뿐만 아니라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 제시, 서울행동21의 이행상황 점검, 시민과 기업과의 협력사업 개발·지원, 시민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함(서울시, 2017b)
  -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켜 주요 시정과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위원회임. 동 위원회는 민선 6기 공약 이행 평가와 정책과제별 환류, 과제별 시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등을 수행함<sup>73)</sup>
- 위원회 형태의 민관협치는 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문 및 조정 기능 외에 필요한 자원과 조직을 동원하는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가져야 함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와 인프라 속에서 시민사회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지방정부가 예산 및 지도감독 성격을 갖고 있어 대등한 관계 형성은 어려울 수 있음(조성호 외, 2018: 50-51)
  -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특정 이슈를 주제로 한 위원회가 아닌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하는 형태의 위원회지만 시장 직속이라 제도적 근거가 취약함

73) 수원. 좋은시정위원회.

(<https://mayor.suwon.go.kr/sw-mayor/sw-mayor-04/sw-mayor-04-03/sw-mayor-04-03-03/sw-mayor-04-03-03-01.jsp>). (검색일 : 2021.01.04.)

- 실질적인 지역 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협치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지지,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의 혁신과 협업, 지역협치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확산되어야 할 것임

## 2.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 행정을 유도할 유인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동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등 상위계획이 마련되었지만,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자체별로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확산이 더딘 상황임(2020.12월 기준 36개 지자체)<sup>74)</sup>
  - 이에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였으나(2021.01.08)<sup>75)</sup>, 17개 광역시도에 배포된 표준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동안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어려운 점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시민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익활동이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유일한데 이 또한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례와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이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역NPO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등의 경우 지원근거가 주로 시정계획에 의한 것으로 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협치사업의 경우에도 제도적 근거가 약하다 보니 결국 참여예산 체계를 통해 진행하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 결여와 절차의 복잡성을 갖게되었습니다. 관변단체의 경우는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적 기반이 대체로 취약해 공간비용 부담이 큰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상 특례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쉽지 않고, 보조금제도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책정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지만 법제도 개선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통제와 제약이 많아 시민사회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서울시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15%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완화하였으나 임직원은 여전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7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자치법규 등록 기준). (검색일 2020.12.31.)

7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01.15.).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4119>). (검색일: 2021.01.15.)

재난 발생시 어려움을 겪는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에는 협력요청만 하고 정작 지원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서울시의 경우는 금년에 공익활동가 긴급대출, 공익활동가 뉴딜일자리 등을 추진하였음)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 담당 공무원, 2020.11.23.~12.4. 서면인터뷰)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사례집), 예산지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협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표준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등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조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표준조례안의 확산을 지원
  - 인천 동구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부결(2020.06.)<sup>76)</sup>되었고, 서울 서대문구의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역시 상정 3번 만에 통과(2017.06.)<sup>77)</sup>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음
  - 정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 배포 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시 유의사항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에는 제도의 개요,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기타 사항(조직유형 및 운영방법 선택 등)을 포함함으로써 조례 제정 절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음
  - 표준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활용을 위한 내용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표준조례안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에게는 혁신과 협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점, 시민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사례집)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내실 있는 지역협치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76) 인천일보. (2020.06.02.). “인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의회문턱 못 넘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832>). (검색일: 2021.01.10.)

77) 서대문사람들. (2017.06.02.). “민관 협치 기본 조례안 상정 세번만에 통과(<http://www.esdmnews.com>). (검색일: 2021.01.10.)

###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정부로 하여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sup>78)</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평가결과는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부처 정책 환류 등으로 구성되며(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 정부는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음<sup>79)</sup>
  - 민관협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이므로 지역 민관협치 성과를 합동평가의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 제1항)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을 통해 지역협치 성과 지표가 반영될 경우, 합동평가 결과 환류 과정에서 제공되는 행정 컨설팅,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되면서 지역협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 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특히, 인구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함

7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14839.20170726>). (검색일: 2020.12.31.)

79)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치단체 평가”,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 (검색일: 2021.01.14.)

- 지역 민관협치 성과의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위해서는 평가지표개발추진단에 지역 민관협치 성과 평가지표 접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 수립시 반영,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민관협력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역 민관협치 기반 조성,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협치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 민관협치 기반 조성(지표명) : 기초자치단체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협치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지역협치 활성화 계획, 협치 플랫폼 구축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지표명) : 민관협치 위원회, 민관협치 시범사업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협치역량 강화(지표명) : 협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준으로 평가

#### 4.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합동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마련해도 지역협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군·구, 마을 단위까지 포괄하는 협치 네트워크 구성에는 추가적인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임
-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지역협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수평적 참여와 같은 실질적 협치를 달성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일 예로 서울시는 분야별로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설치해 민관협력 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수가 300여 개에 달하고, 운영횟수가 연간 2~3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
- 중간지원조직(NPO지원센터 등)을 통해 행정의 시민친화적 전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행정을 지원하는지, 시민을 지원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평가도 존재하며(고경훈·이병기, 2017), 서울시 민관협력 조례 제정 당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생태계 조성단’을 활용하는 등 더 효율적인 민관협력 대안 모색을 검토한 바 있음(서울시의회, 2016)

- 즉 지역협치는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복지 등의 영역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각각의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지역협치를 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이 취약한 상황임
  - 한편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치 과정에서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존재함.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사업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이 경우 광역-기초 협의체 구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의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적극적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협치 활성화 성과 창출을 도모해야 함
-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시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치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축 주선,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내 시민사회조직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5.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의 이행과제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 이행과제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 이행과제3: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이행과제 1: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과제명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13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등 상위계획이 마련되었지만,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지역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자체별로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확산이 더딘 상황임 (2020.12월 기준 36개 지자체)<sup>8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광명시, 부산시 등이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등을 실시 후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체 지자체 대비 약 16%에 그치는 상황임(정병순 외, 2017; 김찬규, 2018; 고경훈·이병기, 2017)</li> <li>- 광역(6개) :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시, 광주시</li> <li>- 기초(30개) : 서울(23개), 경기(6개), 강원(1개)</li> </ul> </li> <li>◦ 이에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였으나 (2021.01.08)<sup>81)</sup>, 17개 광역시도에 배포된 표준조례안이 실제 조례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인천 동구는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가 부결(2020.06.)<sup>82)</sup>되었고, 서울 서대문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역시 상정 3번 만에 통과(2017.06.)<sup>83)</sup>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음</li> <li>※ 동구의 경우 조례에 포함된 동구민관행동위원회 구성 절차를 이유로 부결되었고, 서대문구의 경우 「민관협치 기본 조례」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음</li> </ul> </li> <li>◦ 따라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가 지자체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의 적극적·선제적 행정을 유도할 유인책 등 확산 지원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표준조례 확산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sup>84)</sup> 표준조례안 확산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제5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설치(제12조)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과거 정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 배포 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시 유의사항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한 바 있음<sup>85)</sup></li> <li>-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제도의 개요,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기타 사항(조직유형 및 운영방법 선택 등)을 포함함으로써 조례 제정 절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의제발굴 및 지역복지 사례 발굴 등 지자체 단위 지역협치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이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지역협치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li> <li>◦ 정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속한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확산 지원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li> <li>◦ 또한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강화에 목적이 있음</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조례 제정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조례안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등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 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조문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항들을 점검</li> <li>- 표준 조례안 제5조, 제9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문을 구성해야 할 사항들의 경우 유사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사례를 취합(2020.12월 기준 36개 지자체)·정리해 제시</li> <li>※ 예를 들어 표준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관한 여건 진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이 외의 사항으로 민관협력 체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방안,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방안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구성토록 제시하고 있음. 표준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사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조례 및 가이드라인<sup>86)</sup></p> <p>가이드라인은 제도의 필요성, 상위법이 규정한 사항을 고려한 지역단위 제도 운영, 조례 제정시 사전준비사항 등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제1장) : 필요성, 개념 및 기능, 설립·운영 원칙</li> <li>■ 부패방지법상 지방옴부즈만 제도(2장) : 지방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옴부즈만 조례 제정(3장) : 사전준비 유의사항 및 조직유형·운영방법 선택시 참고사항, 조례 제정(절차, 표준조례안의 활용)</li> <li>■ 지방옴부즈만 위촉 및 사무국 구성(4장) : 지방옴부즈만 위촉(위촉체계, 추진방향 및 위촉 절차), 사무국 및 자문기구 설치 등(사무국 및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옴부즈만 홍보 방안)</li> <li>■ 지방옴부즈만 운영(5장) : 고충민원의 개념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지방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간 연계·협력</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에게는 혁신과 협업,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지지, 국민에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li> <li>-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활용해 지역협치 우수사례 발굴. 또는 서울시, 충남도 등 지자체 단위로 발간한 지역협치 우수사례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li> <li>- 사례집에는 해당 사례의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향후계획 외 민관협치 사례를 국민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게 스토리 텔링화하여 게시. 또한 지역협치 참여자, 사례작성 담당자 정보를 포함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구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사례: 행정안전부 「협업우수사례집」, 기획재정부&amp;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서울시 「서울, 아름다운 동행」(행정안전부, 2017a; 기획재정부 &amp;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서울시, 2017a)</p> <p>민관협치는 민관협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형식적 민관협치 등을 예방하고, 내·외부지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이나 단체장 교체에</p> </div>

	<p>다른 리더십 변화 상황에서도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집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 우수사례집 : 협업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협업 과정에서 나타날 모호성을 완화하기 위해 협업 사례집을 발간</li> <li>■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 공공기관 협업은 낮은 관심과 공감으로 초기 운영시 정보제공 수준의 단순협조가 주를 이룬 바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협업 영역의 확대, 협업 과정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li> <li>■ 서울, 아름다운 동행 : 서울시는 민관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시정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li> </ul> <p>◦ 예산 지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협치 지원 - 내실 있는 지역협치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p> <p>사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민관협력 조례 제정시 예산지원</p> <p>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 3년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sup>87)</sup>, 서울시 협치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민관협치 활성화, 민관협치 역량강화, 민관협력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협치자문관 도입 등을 실시</li> </ul>								
<p>추진 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배포</td> </tr> <tr> <td>2023년</td> <td>◦ 지역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td> </tr> <tr> <td>2024년</td> <td>◦ 예산지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 민관협치 지원</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배포	2023년	◦ 지역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	2024년	◦ 예산지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 민관협치 지원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배포								
2023년	◦ 지역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전파								
2024년	◦ 예산지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 민관협치 지원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협치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적 근거 마련</li> <li>◦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확산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협치 실시</li> <li>◦ 지역사회 의제발굴 및 지역복지 사례 발굴 등 지역협치의 긍정적 성과 확산</li> </ul>								

8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자치법규 등록 기준). (검색일 2020.12.31.)

8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01.1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4119>). (검색일: 2021.01.15.)

82) 인천일보. (2020.06.02.). “인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의회문턱 못 넘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832>). (검색일: 2021.01.10.)

83) 서대문사람들. (2017.06.02.). “민관 협치 기본 조례안 상정 세번만에 통과”. (<http://www.esdmnews.com>). (검색일: 2021.01.10.)

8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01.14.).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4119>). (검색일: 2021.01.15.)

85)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표준조례 및 운영가이드”.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1002>). (검색일: 2021.01.15.)

8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음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1002>). (검색일: 2021.01.15.)

87) 서대문사람들. (2017.06.02.). “민관 협치 기본 조례안 상정 세번만에 통과”. (<http://www.esdmnews.com>). (검색일: 2021.01.10.)

이행과제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2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정부로 하여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li> <li>-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li> <li>-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li> <li>-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li> </ul> </li> <li>○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sup>88)</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8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중앙의 주요 국정 시책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어떻게 주민에게 전달되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도구임(이광희 외, 2012: 72)<sup>90)</sup></li> <li>- 합동평가는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매년 실시되고 있음</li> </ul> </li> <li>○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평가결과는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부처 정책 환류 등으로 구성되며(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 정부는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음<sup>91)</sup></li> <li>○ 또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는 점<sup>92)</sup>에서 지역 민관협력에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지지 확보와 민관협력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li> <li>○ 합동평가의 절차는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및 보고, 평가결과 활용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sup>93)</sup>되어 있음</li> <li>○ 2020년 합동평가 지표는 총 122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같은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는 정량평가 부문 87개 지표, 정성평가 부문 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보훈정신 확산, 4차 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과 관련된 지표</li> <li>-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와 관련된 지표</li> <li>-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과 관련된 지표</li> <li>-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지표</li> <li>-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 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li> </ul> </li> </ul>

	<p>안정과 관련된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지표(사회성과보상사업 기반 조성 우수사례)의 경우 민관협력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만 지역 민관협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지표는 부재한 상황임</li> <li>민관협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이므로 지역 민관협치 성과를 합동평가의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정부업무평가법 제21조 제1항)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p>추진 필요성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합동평가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점검하는 정책수단으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 인식개선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li> <li>지역 민관협치 성과 관련 지표를 개발해 합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행정역량 강화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안부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경제 육성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 및 지방분권 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규제개혁, 중소·벤처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 지표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사물인터넷(IOT)·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구현 등 미래 사회 선도지표를 개발해 합동평가에 활용하고 있음<sup>94)</sup></li> </ul> </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민관협력 활성화의 경우 국정과제 전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지표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민관협력 성과를 별도의 지표로 반영하기는 곤란할 것임</li> <li>지역 민관협치 성과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 지표체계 중 어디에 반영할 것인지, 지역 민관협치 성과와 관련된 지표로 적절하지, 지자체의 민관협력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지를 검토해야 함</li> <li>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 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특히, 인구 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하므로, 지역 민관협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을 실시</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b></p> <p>민관협업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및 협조체계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지표 등이 일부 존재. 예를 들어 지역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를 통한 발굴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식임. 현재의 지표체계가 평가 기준을 통해 민관협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지역 민관협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목표)-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국정전략)-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국정과제)-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평가지표) : 해당 지표는 자치단체 노력도, 창의성, 연계 및 협력성,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li> <li>■ 더불어 잘 사는 경제(국정목표)-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국정전략)-사회적 경제 활성화(국정과제)-사회성과보상사업 기반 조성 우수사례(평가지표) : 해당 지표는 정성지표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공동된 사회문제 정리, 주민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청취, 민간투자자·운영기관·수행기관 발굴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li> <li>■ 더불어 잘 사는 경제(국정목표)-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국정전략)-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국정과제)-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지표) : 해당 지표는 사전컨설팅 감사 건수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민관협력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역 민관협치 기반 조성,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협치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li> <li>※ 지역 민관협치 기반 조성(지표명) : 기초자치단체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협치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지역협치 활성화 계획, 협치 플랫폼 구축 등을 기준으로 평가</li> <li>※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지표명) : 민관협치 위원회, 민관협치 시범사업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평가</li> <li>※ 협치역량 강화(지표명) : 협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준으로 평가</li> <li>○ 지역 민관협력 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li> <li>- 평가지표개발추진단에 지역협치 성과 평가지표 접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 수립 시 반영,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협치 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li> <li>○ (지역협치 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위한 합목적적 지표 개발 검토)</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민관협력 성과지표 반영</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환류(행정 컨설팅,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지원</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li> <li>○ (지역협치 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위한 합목적적 지표 개발 검토)</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민관협력 성과지표 반영</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환류(행정 컨설팅,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지원</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li> <li>○ (지역협치 성과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을 위한 합목적적 지표 개발 검토)</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민관협력 성과지표 반영</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환류(행정 컨설팅,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체계성 확보</li> <li>○ 지역협치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지지 확보와 민관협력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확산</li> <li>○ 평가결과 환류에 따른 지역내 민관협력 고도화</li> </ul>								

8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14839,20170726\)\)](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14839,20170726))). (검색일 : 2020.12.31.)

89)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합동평가”. (<https://lairs.go.kr/lips/uev/eis/unionSummaryView.do>). (검색일: 2021.01.04.)

90) 이광희·김정해·정지점·조세현·서재호·이화진, 2012,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9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치단체 평가”,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 (검색일: 2021.01.14.)

9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7.02.).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8269](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8269)). (검색일: 2020.12.30.)

9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치단체 평가”,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 (검색일: 2021.01.14.)

94) 행정안전부, 2020b,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pp.1-311.

## 이행과제 3: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과제명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진동력을 마련한다 해도 지역협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군·구 또는 마을 단위까지 포괄하는 협치 네트워크도 고려돼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정과 민관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치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수평적 참여와 같은 실질적 협치를 달성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li> <li>-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분야별로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설치해 민관협력 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수가 300여개에 달하고, 운영횟수가 연간 2~3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함</li> <li>- 중간지원조직(NPO지원센터 등)을 통해 행정의 시민친화적 전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과 시민사이에서 행정을 지원하는지, 시민을 지원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평가도 존재하며(고경훈·이병기, 2017), 서울시 민관협력 조례 제정 당시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생태계 조성단'을 활용하는 등 더 효율적인 민관협력 대안 모색을 검토한 바 있음(서울시의회, 2016)</li> </ul> </li> <li>◦ 즉 실질적으로 지역협치는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복지 등의 영역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각각의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지역협치를 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이 취약한 상황임</li> <li>◦ 한편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치는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존재함.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사업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이 경우 광역-기초 협의체 구축이나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내 협치 네트워크 연계 강화 필요</li> <li>◦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치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협치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동력 확보</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협치 전담기구 및 협치 전담인력 확보 지원</li> <li>-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30개 지역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li> </ul> </li> <li>◦ 광역-기초 지방정부간 협치 시범사업 추진 지원(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치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li> <li>-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축 주선, 컨설팅 제공 등 지원</li> </ul> </li> <li>◦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시민사회조직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li> </ul> </li> </ul>

	<p><b>사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b></p> <p>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 단위에서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통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li> </ul>								
<p><b>추진 일정</b></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8 711 546 762">연도</th> <th data-bbox="546 711 1258 762">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8 762 546 808">2022년</td> <td data-bbox="546 762 1258 808">◦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td> </tr> <tr> <td data-bbox="348 808 546 889">2023년</td> <td data-bbox="546 808 1258 889">◦ 광역-기초 지방정부간 지역협치 시범사업 추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장)</td> </tr> <tr> <td data-bbox="348 889 546 935">2024년</td> <td data-bbox="546 889 1258 935">◦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023년	◦ 광역-기초 지방정부간 지역협치 시범사업 추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장)	2024년	◦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역협치 전담기구 및 지역협치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023년	◦ 광역-기초 지방정부간 지역협치 시범사업 추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장)								
2024년	◦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와 마을 단위까지 포괄하는 협치 네트워크 구축</li> <li>◦ 시민과 지역사회 시정참여라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li> <li>◦ 지역 내 민관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민관협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동력 확보 지원</li> </ul>								

## 제3절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1.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

-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국내외적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17~'21)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하에 공공외교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20년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공공외교 분야에서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OECD DAC는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이행 시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명확화 및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9: 2). 또한, DAC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정책·전략문서를 제정하고 있음(한재광 외, 2019: 20—21)
  - 공공외교·국제개발협력 등 국제사회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향후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각국의 다양한 요구는 정부 역할 이외에도 거버넌스와 같은 형태에서 다양한 기구/조직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정부-민간 간 협력 이외에도 민간 간 협력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지니는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수행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가 큼

## 2.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목적

### □ 시민사회의 참여 및 다양성 확대

- 국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국제협력에서 시민사회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정부(중앙 및 지방)가 수행하는 국제협력 사업(공공외교·국제개발협력 등)에 보조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중심의 시민사회 참여가 아닌 시민사회 중심 또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더욱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특정영역이나 분야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 국제협력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 발굴

- 시민사회는 활동 분야, 역량, 규모 등에서도 시민사회 간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국제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참여 독려가 아닌 역량과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 풀(pool)을 확보 및 구축하는 것이 중요
  - 이를 통해 각 이슈에 따라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확보 및 시민사회의 역할 발굴 가능
- 또한, 국제협력 사업의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스스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참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 국제협력에서 사업의 제고

-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의 효과성, 신속성, 다양성 향상
  - 국제협력 사업은 문화적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상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민간 중심의 접근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사업이나 교류의 목적에 따라 참여 주체나 주관의 변화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신속성,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보다는 유연성 있는 접근이 가능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될 때 국제협력에서 사업의 효과, 성과, 국제사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음

### 3.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의 주요 내용

-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
  -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 가능한 시민사회를 발굴하고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가능성 있는 분야 발굴
    - 시민사회 참여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외교 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및 상시화
    -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및 영역을 발굴하고,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 참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인 파트너십 규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문서 마련
    - 시민사회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 예를 들어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에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 및 기획에서 시민사회 참여 보장, 국제협력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등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및 개최 지원

### 4.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의 이행과제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이행과제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 이행과제 1: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과제명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관련 부처	외교부
관련 법령 (근거)	공공외교법 제4조, 제6조, 제9조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17~'21)에서는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비전하에 공공외교에서 국민의 참여 강조</li> <li>◦ '20년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가 출범되었으며, 공공외교 분야에서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 및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자 노력<sup>9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14에 출범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에서는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과제로 ▲평화, 인권, 환경, 글로벌 보건 등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 공공외교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강화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 해외진출 우리 기업 등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의 활용 제고 및 활동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li> </ul> </li> <li>◦ 공공외교는 외교부 재외공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김영미·정성화, 2017: 1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재외공관은 현지상황에 따라 관심을 갖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되는 사업이 동일한 시민들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14~'16년까지 공공외교 사업은 확산효과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지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li> </ul> </li> <li>- 중앙정부는 부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는 ODA사업을 통한 지원교류, 교육부는 한국어, 한국학을 통한 한국알리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류, 스포츠 활동 교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li> </ul> </li> <li>-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을 가진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국가에 따라 상호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상대국가의 이념, 가치, 관습, 역사, 문화, 언어 등을 토대로 공공외교 추진.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프라 구성을 통해 외교정책의 성과 및 효과 높이고자 노력. 양국가 간 국민들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한 교류(ex: 전라북도의 재외공관/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세계문화엑스포사업, 인천시의 도시교류,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유치사업, 서울시의 서울발전경험 공유, 국제리더십 제고 등의 공공외교 사업 추진)</li> </ul> </li> </ul> </li> <li>◦ 공공외교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외교부 재외공관 포함)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됨. 추진기관 특성에 따라 현지 상황,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외교는 정부 차원의 교류와 더불어 민간 간 교류 역시도 중요하며, 문화, 언어 교류 등은 민간 간 교류를 통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의 공공외교는 민간주도가 아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음</li> <li>- 공공외교가 문화교류 및 친선, 네트워크 구축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관주도적인 협력보다는 민주주도적 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음. 현지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 사업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민간중심 교류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수반될 때 친밀도가 높아지고 현지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의 구축 가능</li> </ul> </li> <li>◦ 민간을 통한 외교 유형의 효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문화 전달을 통한 외교, 지식전달을 통한 외교, 기술 전달을 통한 외교 순으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영미·정성화, 2017: 5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더 효율적, 민간의 참여가 더 자유롭고 적극적,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순으로 나타남</li> </ul> </li> </ul>

- 공공외교 영역의 확대 필요
  - 개발협력과 달리 인권/여성/평화노동 등 일반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은 아직까지 초기수준에 있음. 공공외교 영역을 다양화 및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지원 필요
  -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외교 분야 확대와 시민사회에 역할 부여를 통해 공공외교의 참여 활성화 필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의 역할 부여와 더불어 예산 지원 필요
  - 여성부('18년, 국제포럼 지원 4천만 원), 인권위(인권단체 협력, 2억 원), 환경부(관련 예산 없음) 등(시민사회수석실, 2019: 18)

- 공공외교 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
  -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인권, 여성, 평화, 노동 등 일반 공공외교 분야는 협력의 수준과 횟수가 초기수준에 있음(시민사회수석실, 2019: 18)
  - 이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가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의 다양성 확보와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 제공
  -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공공외교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외교 분야 발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대 및 강화
- 시민사회의 참여가 특정 분야(영역)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 확장 방안 마련 필요
  - '19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의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는 총 21개 팀(KF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10개, KF청소년공공외교단: 11개) 선발<sup>96)</sup>
  - '15년과 '16년 기준 지원받은 단체는 주로 대학의 연구소, 연구회, 포럼, 협회 등으로 구성됨(김영미·정성화, 2017: 44).부서에 따라 지원 단체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
- 시민사회 주도의 공공외교 확대를 통해 공공외교의 효율성 증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위상 제고, 국내외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확대 등 구축
  - 21세기 신공공외교는 정부-민간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평적·쌍방향적·대칭적 관계를 맺고 있음<sup>97)</sup>
  - 이에 정부 간 공식적 외교 뿐만 아니라 정부-시민사회, 시민사회-시민사회 간 영역에서도 외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외교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 지원,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
- 「공공외교 개념의 변천사」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자국민 불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 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정부 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01.22.)

<p><b>주요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에 참여 가능한 시민사회 발굴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분야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역량 있는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 분야별(예: 인권, 여성, 평화, 노동 등) 역량 있는 시민사회 풀(pool)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 21세기 신공공외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정립과 콘텐츠 개발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참여유형 분류를 통한 공공외교 사업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 정부-시민사회 공동 주관형 등 유형분류를 통한 지원방안 제시</li> </ul> </li> </ul> </li> <li>◦ 시민사회의 참여 가능한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지원</li> <li>◦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정례협의체 운영</li> <li>◦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제시</li> <li>-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가 공공외교에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li> </ul> </li> </ul>								
<p><b>추진 일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여 공공외교 사업 확대방안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에 역량 있는 시민사회 풀(pool) 구축</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 경험, 국제사회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풀(pool) 구축</li> </ul> </li> <li>◦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정례협의체 운영방안 제시</li> <li>◦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시민사회의 역할, 참여 가능한 공공외교 사업, 정부지원 방안(인력, 예산 등) 제시</li> </ul> </li> <li>◦ 시민사회 중심의 공공외교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 실행계획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여 공공외교 사업 확대방안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에 역량 있는 시민사회 풀(pool) 구축</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 경험, 국제사회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풀(pool) 구축</li> </ul> </li> <li>◦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정례협의체 운영방안 제시</li> <li>◦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시민사회의 역할, 참여 가능한 공공외교 사업, 정부지원 방안(인력, 예산 등) 제시</li> </ul> </li> <li>◦ 시민사회 중심의 공공외교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li> </ul> </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 실행계획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 추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여 공공외교 사업 확대방안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에 역량 있는 시민사회 풀(pool) 구축</li> <li>- 공공외교 사업 참여 경험, 국제사회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풀(pool) 구축</li> </ul> </li> <li>◦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정례협의체 운영방안 제시</li> <li>◦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마련</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시민사회의 역할, 참여 가능한 공공외교 사업, 정부지원 방안(인력, 예산 등) 제시</li> </ul> </li> <li>◦ 시민사회 중심의 공공외교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콘텐츠 개발</li> </ul> </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 사업 확대 실행계획 마련</li> <li>◦ 공공외교 사업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유형 및 유형에 따른 지원 추진</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외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확대</li> <li>◦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국내외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강화</li> </ul>								

95) 공공문화외교국 보도자료. (2020.07.15.).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715051325111.hwp&rs=/viewer/result/202101>). (검색일: 2020.12.19.)

96) 한국국제교류재단. "KF 국민공공외교사업". (<http://www.kf.or.kr/?menuno=5084&kflnbindex=>). (검색일: 2020.12.30.)

97)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01.22.)

## 이행과제 2: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과제명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관련 부처	외교부, KOICA
관련 법령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14조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DAC는 2017년도부터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이행 시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명확화 및 심화 필요성 강조(관계부처 합동, 2019: 2)</li> </ul> </li> <li>○ DAC 회원국 다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정책 또는 전략문서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성함(한재광 외, 2019: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2019년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을 마련하였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이 미흡한 수준에 있음</li> <li>- 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정책문서 부재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li> </ul> </li> <li>○ 한국은 OECD DAC 가입 후 민관협력을 위한 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KOICA 민관협력사업 규모는 정체추세에 있음(시민사회수석실, 201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5('16)→329('17)→329('18)→347('19)→345('20 정부안 기준)</li> </ul> </li> <li>○ OECD DAC 회원국들은 시민사회에 자국의 원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회원국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기준으로 DAC 평균 15%, 스페인 46%, 아일랜드 38%, 스위스 34%, 미국 24%, 한국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한재광 외, 2019: II)</li> </ul> </li> <li>○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KOICA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에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KOICA와 유기적인 연계협력 필요. 하지만 KOICA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수동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개발협력에 참여할 역량, 의지가 있을 지라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li> <li>-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시민사회, 정부, KOICA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의 마련 필요</li> </ul> </li> <li>○ 정부-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한국 내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수원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고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원국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논의는 미흡</li> <li>- 수원국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 발굴 필요</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에서 차별화된 기여 강화</li> <li>○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역할 또는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이외에도 시민사회가 정부 의존 수준을 낮추고 예산의 자율성을 갖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 마련 필요(예: 시민사회, 정부와의 매칭펀드 등)</li> <li>- KOICA 민관협력사업 규모가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시민사회 스스로 국제개발 협력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제시</li> <li>◦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 규정 정책문서 마련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인 파트너십 규정 필요</li> <li>◦ 시민사회의 협력 및 참여의 질적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및 수원국의 취약층 지원 강화</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에서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분야·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다양화 방안 마련</li> <li>- 국제개발협력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및 시민사회 발굴</li> </ul> </li> <li>◦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 파트너십 규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문서 마련</li> <li>◦ 시민사회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에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기획에서 시민사회 참여 보장, 국제협력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참여 등</li> </ul> </li> <li>◦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및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다자회의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li> <li>- 정부 개최 국제개발협력 국제회의에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 확대방안 제시</li> </ul> </li> </ul>								
<p>추진 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0 919 525 963">연도</th> <th data-bbox="525 919 1258 963">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0 963 525 1104">2022년</td> <td data-bbox="525 963 1258 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참여(예: 글로벌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 발굴 및 방안 제시</li> </ul> </li> <li>◦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 파트너십 규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문서 제정</li> </ul> </td> </tr> <tr> <td data-bbox="350 1104 525 1449">2023년</td> <td data-bbox="525 1104 1258 14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분야(국가) 발굴 및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역량 및 경험을 갖춘 시민사회 발굴</li> <li>-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보 방안 마련</li> <li>- 국제회의 및 행사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li> </ul> </li> <li>◦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시민사회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유형, 특성에 따라 정부중심 지원, 시민사회 자체재원, 정부와 시민사회 간 매칭펀드를 통한 자원 확보 등의 방안 마련</li> </ul> </li> </ul> </td> </tr> <tr> <td data-bbox="350 1449 525 1469">2024년</td> <td data-bbox="525 1449 1258 1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지원 확대 로드맵 구축</li> <li>◦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수원국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참여(예: 글로벌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 발굴 및 방안 제시</li> </ul> </li> <li>◦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 파트너십 규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문서 제정</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분야(국가) 발굴 및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역량 및 경험을 갖춘 시민사회 발굴</li> <li>-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보 방안 마련</li> <li>- 국제회의 및 행사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li> </ul> </li> <li>◦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시민사회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유형, 특성에 따라 정부중심 지원, 시민사회 자체재원, 정부와 시민사회 간 매칭펀드를 통한 자원 확보 등의 방안 마련</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지원 확대 로드맵 구축</li> <li>◦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수원국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참여(예: 글로벌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 발굴 및 방안 제시</li> </ul> </li> <li>◦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식적 파트너십 규정을 위한 정책 및 전략문서 제정</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분야(국가) 발굴 및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의 참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 역량 및 경험을 갖춘 시민사회 발굴</li> <li>-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국가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보 방안 마련</li> <li>- 국제회의 및 행사 등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li> </ul> </li> <li>◦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시민사회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유형, 특성에 따라 정부중심 지원, 시민사회 자체재원, 정부와 시민사회 간 매칭펀드를 통한 자원 확보 등의 방안 마련</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지원 확대 로드맵 구축</li> <li>◦ 우리나라 시민사회와 수원국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ul>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에서 정부-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li> <li>◦ 시민사회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신속성, 다양성 향상</li> <li>◦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li> </ul>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제1절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과 법제도의 역할

#### 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권력감시 및 시민권 옹호,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 시민권의 신장과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확대로 시민사회는 공공영역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주체로 부상. 나아가 시민사회는 '사회혁신의 실행 주체와 네트워크 촉진자, 공론화의 선도적 주체,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라는 새로운 역할(정병순, 2019: 49) 정립을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가며 시대적 과제에 도전
- 시민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근간이었지만, 정부 정책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 최근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부 정책은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사회의 기초를 굳건히 하거나,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민 참여에 필요한 개방적 구조를 갖추는 등 시민 지향성과 같은 요소도 정치적 민주성, 투명성, 정부 효과성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행동을 촉진하며(김민경·윤여창, 2018), (지방) 정부의 여론 수렴과 같은 역할도 시민단체의 교육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여 시민 참여를 제고(송용훈·정문기, 2018)하는 등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전망위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National Citizen Service, EU의 The Europe for Citizens Programme, European Solidarity Corps<sup>98)</sup>과 같은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시민 참여, 시민사회

의 자원적 공익 추구 활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발적인 시민 활동이 활성화된 국가나 도시의 지방정부는 시민의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enabling authority’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김희연 외, 2014: 18)

-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및 시민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민 참여 및 시민사회조직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온 영국이나 EU의 사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시민사회를 민주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자체로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EU는 역동적이고 다원적이며 유능한 시민사회에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조직 간의 건설적인 관계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EU는 국제사회가 시민사회조직과 개인 모두를 위한 시민 공간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맥락에서 파트너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시민사회의 중요성 및 시민사회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2; European Commission, 2020)
- 정부의 시민사회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서구 선진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에스토니아의 경우 ESTONIAN CIVIL SOCIETY DEVELOPMENT CONCEPT를 통해 EKAK라고 알려진 시민사회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수행. EKAK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는 정부의 시민사회 기금 지원 절차 개선, 제3섹터 관련 통계의 체계화, 공공의 정책 의사결정의 참여 문제, 제3섹터 영역에서 공공자원 활용과 같은 것이며, 이런 논의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는 에스토니아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양자를 동등한 자격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게 되고, 제3섹터 영역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지라도 독립된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sup>98)</sup>
- 세르비아 정부는 2011년, 세르비아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사회협력청(The Office for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을 설립, 의사결정 단계

98) 유럽연합 Europe for Citizen.

([https://eacea.ec.europa.eu/europe-for-citizens\\_en](https://eacea.ec.europa.eu/europe-for-citizens_en)). (검색일: 2020.12.01.)

99) 에스토니아 시민. “ESTONIAN CIVIL SOCIETY DEVELOPMENT CONCEPT” .

(<https://heakodanik.ee/en/estonian-civil-society-development-concept/>). (검색일: 2020.12.01.)

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한 절차와 관련한 기준 확립과 정부와 시민사회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전개 중임<sup>100)</sup>

- 슬로베니아에는 행정안전부(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MPA)와 행정부담 경감 및 규제 개선 부서(The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and Better Regulation Unit)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참여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규제 개선 부서에서는 각종 법률 및 규칙 등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방안을 고안하며 공무원을 위한 시민 참여 매뉴얼,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훈련 프로그램 제공. NGO청(The Office for NGOs)에서는 지역 허브와 의제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CoE, 2020)
- 국내외 다양한 시민사회 활성화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첫째,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정 둘째,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무 인식 셋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넷째, 시민사회의 독립성·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 다섯째, 시민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 수단의 다각화 여섯째, 시민사회의 공공재정 사용에 대한 전환적 인식(김소연 외, 2019: 28-34)으로 종합할 수 있음

#### 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역할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소통·협력,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힘을 튼튼히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시민사회가 경기장이라면, 환경은 경기장의 규모, 범위, 기능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음 (CIVICUS, 2003: 5). 시민 참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조직의 활동과 역량은 정치적·정책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과 정책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100) 세르비아 시민협력청. “Informator o radu”.

(<http://www.civilnodrustvo.gov.rs/home/home.1.html>). (검색일: 2020.12.01.)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은 법적 근거를 통해 수립되며 집행되고 있음.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조건을 가능케 하는 많은 요소 중 법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
  - 시민사회에 친화적인 법제도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시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Heinrich and Shea, 2008: 255). 법제도는 시민사회의 존재에서부터 운영, 사업 및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가하거나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는 시민권에서부터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음
  - 법제도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근거를 확보. 때때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거나, 시민사회와 갈등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환경의 구축은 필수적임
  -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중, 법률적 환경은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 CSI)<sup>101</sup>측정에서 중요한 요소임. 시민사회지표 중 법률적 환경은 시민사회조직의 등록, 권익 주창 정치 활동 허용, 면세 혜택, 기부금 세제 혜택 등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정도와 법률의 존재 여부로 파악(Heinrich and Shea, 2008: 261; 조영재, 2006: 134-137)
  - CSI에 이어 세계 각국 시민사회의 법률·규제 및 정책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시민사회 환경에 대한 국가평가(The Enabling Environment National Assessment, EENA)'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필수적 요건의 제거,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notification) 채택,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신고 없는 자유로운 집회 및 행사, 시민사회의 등록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시민사회 관련자가 포함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 제도 등 기부 활성화 환경 조성,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구조화되고 규칙적이며, 투명하고, 광범위한 참여 공간 확보 등을 권고하고 있음(CIVICUS: 2019)
  -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조직의 구성 및 운영, 활동의 촉진, 공공영역에서의 참여 및 영향력 확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토대이자 기반인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101) 시민사회를 환경, 구조, 가치, 영향 네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여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성숙 정도와 특성을 비교 조사. 시민사회조직연합체인 CIVICUS가 주도하여 개발했다.

## 2.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관련 주요 법제도 마련 및 개선 방향

### 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주요 법제도 추진현황 및 정책 동향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법률의 제·개정 관련한 입법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특정 조직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나 시민사회 특정 영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졌음(박영선·정병순, 2019: 15).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책대상별로 조직구성 및 운영을 규율하는 분산적 법체계의 특징도 관찰됨
  - 중앙부처 외 지자체에서도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추구하려는 동향이 파악되지만, 모범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되어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정책 집행 및 그 효과성이 제한적임
  - 2020년 제정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과 그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입법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외에,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했던 민간위탁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집행지침이 제한적이지만 개선되었음
- 시민사회 역시 198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의견서를 제출한 이래 꾸준히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사회 개별 영역을 뛰어넘어 전 부문적 요구를 포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에 대한 대안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시민사회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도개선 활동을 살펴보면, 2016년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이후 ‘시민사회활성화3섹터네트워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같은 연대조직을 만들어(김소연 외, 2020b)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서부터 보조금제도 혁신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법제 개선 6대 우선 입법과제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기부금품법, 시민공제회법, 민주시민교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위원회법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 진행 중

#### 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주요 법제도 마련 및 개선 방향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가치와 원칙, 정부의 역할을 담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실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제공할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추구된다면,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강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시민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
- 정부의 역할을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자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즉 기존의 관리감독자라는 역할에서 규제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법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익증진이라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 및 여건의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함
-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핵심가치와 원칙을 법제화하여 일관성이 있는 시민사회 정책의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이란 관점에서 시민사회 전 부문을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형평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도록 함
- 그동안 시민사회 정책에서 초점을 두었던 시민사회조직 외에 새롭게 공익활동 생태계에 등장한 자율적 시민과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생태계의 다양성 고려, 새로운 시민사회 정책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의 시민사회와의 소통 협력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의 제·개정 이전에 집행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가능한 예도 있으므로, 정책 세부 지침의 혁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령의 제·개정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정비가 지체되어 정책 효능감이 떨어지고, 정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후속 지침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
- 법제도의 제·개정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음.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범정부 간 정책조정을 비롯하여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이를 위해 시민사회

제도개선을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제도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이행 촉진,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지방정부 정책 전달 체계화, 법제 추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방안이 필요함

### 3.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의 이행과제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 이행과제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 이행과제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이행과제4: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이행과제5: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이행과제 1: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과제명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은 이른바 국민운동단체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 활동영역별로 개별법들이 입법화되어 추진되어왔음</li> <li>◦ 특별법을 통한 시민사회 정책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해 특별법 폐지 주장을 비롯하여 지속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음</li> <li>◦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전략적 구상을 갖지 못한 채 개별법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 영역과 부문에 대한 정책요구에 대응한 결과, 시민사회는 내적으로 이질성이 강화되고 분절성이 심화되어 시민사회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li> <li>◦ 그 결과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미치지 못하여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법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li> <li>◦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및 공익활동 촉진에 기여</li> </ul>
법제도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li> <li>◦ 2017년 6월, '시민사회발전TF' 및 'TF실무작업반' 구성,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마련</li> <li>◦ 2018년 3월, 진선미 의원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대표 발의</li> <li>◦ 2019년 1월, 권미혁 의원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대표 발의</li> <li>◦ 20대 국회 2건의 입법 제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li> <li>◦ 2019년, 정책기획위원회 '시민사회의제TF' 구성,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제안</li> <li>◦ 2020년 5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 제정</li> </ul>
주요 내용	<p><b>(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의의,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li> </ul> </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원칙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수평적 파트너십</li> </ul> </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3년)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정기적 보고</li> </ul> </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심의의결기구 설치</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li> </ul> </li> <li>◦ 실행기구 및 정책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차원의 실행기구 설치</li> <li>- 시도 및 시군구 정책전달체계 설치</li> </ul> </li> <li>◦ 시민사회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공익활동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기초 조사 및 학술 연구 진흥</li> <li>-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 훈련 지원</li> <li>- 공유재산 활용 등 행·재정적 지원 등</li> <li>◦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기금</li> <li>*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시민사회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본법 체계에서 담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와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 않음</li> <li>- 주무부처</li> <li>*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의 이원화된 체계가 제안되고 있음</li> <li>- 실행기구 및 정책전달체계</li> <li>* 시민사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전달체제로 중앙 차원 중간지원조직 및 시도,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하나,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다양한 성격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격 및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법안 검토 및 입법 발의</li> <li>-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및 입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법안 검토 및 입법 발의</li> <li>-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및 입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추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에서 제시한 법안 검토 및 입법 발의</li> <li>-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및 입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추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정책의 방향 및 기본 원칙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li> <li>◦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의 보편성 확보</li> </ul>						

## 이행과제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과제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시민사회조직은 그동안 과거 사회단체신고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등록 단체의 경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li> <li>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이라는 애초 법률 취지는 최근 시민사회의 내적 구성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규율하는 법에 머물러있음</li> <li>3대국민운동단체지원법 등 기존에 입법화된 특별법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 등과 비교했을 때 지원의 정도가 매우 낮아 시민사회조직의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li> <li>특히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는 조항(6조②)에 대해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가 높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2000년 촛불 이후 공식적이고 전문화된 시민사회조직의 회원 활동에서 나아가 스스로를 조직하여 온라인이나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자원적·자생적·자율적 개인과 네트워크가 증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내적 주체의 변화상 반영</li> <li>공익활동 사업에 투입되는 활동가의 인건비 사용이 제한되는 등 직·간접 지원의 효과성이 낮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사회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li> </ul>	
법제도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국회에서 총 13건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발의, 임기만료 자동 폐기</li> <li>21대 국회에서 3개의 개정안 발의, 소관위 심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개정안 3건은 모두 야당에서 발의되었으며,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 등을 명분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li> <li>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핵심 취지에는 공감대 형성. 다만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는 등록 단체에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외 전반적인 회계 사항을 정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벌칙 강화 개정에 대해서도 처벌 이전에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이 우선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li> </ul> </li> </ul>	
	「21대 국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발의안 현황」	
	제안자 (일시)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정운천 2020.0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li> <li>재무·회계관리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li> <li>공익사업보조금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li> </ul>
	김예지 2020.0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 마련</li> <li>결산서 제출 의무 신설, 결과 공개</li> </ul>
김정재 2020.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li> <li>국민의 알권리 충족</li> <li>공인회계사 작성한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벌칙 강화</li> </ul>	
출처: 국회정보시스템. ( <a href="https://likms.assembly.go.kr/">https://likms.assembly.go.kr/</a> ). (검색일: 2020.12.10.), 저자 재구성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정의 중,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과 같은 조항은 새롭게 등장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 주체들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li> </ul> </li> <li>◦ 비영리민간단체 상시 구성원 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단체와 새롭게 공익활동에 등장하고 있는 신생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성장을 위해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 조항을 30명 이상으로 완화.</li> <li>※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5인 이상 설립 신고 가능(제15조)</li> </ul> </li> <li>◦ 인건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를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음</li> <li>- 시행령(2조)에서는 사업비를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인적 경비를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로 한정하여,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li> <li>※ 지방재정법(32조의2)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공익활동 수행 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운영비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임</li> </ul> </li> <li>◦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로 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조항 삭제</li> <li>◦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보조금 지원 외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에 관한 지원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시민사회의 활동 기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li> <li>- 3대국민운동단체지원법 등 법정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협치 등 시민사회 개별 영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타 법령에 비해 지원 내용이 협소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li> </ul> </li> <li>◦ 현행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지원 외에 종합적인 시민사회 지원방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행정기관 설립</li> <li>- 공익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li> <li>- 정보 인프라 조성 및 통신 요금 감면</li> <li>- 불합리한 행정 관행 개선 및 행정적 지원</li> <li>-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li> <li>- 회계·세무·법률·경영 컨설팅</li> <li>- 최근 코로나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긴급 지원 등</li> </ul> </li> </ul>						
<p>추진 일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사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 명실상부한 시민사회지원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수행</li> <li>◦ 종합적인 시민사회지원정책을 통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li> </ul>						

### 이행과제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기부금품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연원을 두고 있는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기부문화를 위축하고 시민의 나눔과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li> <li>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기부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 최근 기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기부 환경 및 시민의 기부 참여 행태를 반영하여 기존의 비합리적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법제도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li> <li>관계부처 합동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추진(관계부처합동,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라는 정책 목표하에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5개 과제, 기부촉진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5개 과제, 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4개 과제 등 총 3대 방안 14개 과제 제안</li> <li>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과제 중, 규제 중심에서 허용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기부금품 개정 내용 제시</li> <li>사후 등록 및 사후변경등록 허용,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율 상향 조정,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 등</li> </ul> </li> <li>20대 국회에서 총 26건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임기만료 자동 폐기</li> <li>21대 국회에서 16건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2건 대안반영폐기, 나머지 14건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대 국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한정애 의원안을 제외하고, 주로 특정 단체의 회계 논란이나 이영학 사건 등을 배경으로 하여 투명성 강화에 대한 입법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란 취지에서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의무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있음</li> <li>알권리를 포함한 기부자의 권리 증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대라는 주요 취지에 대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모집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자율성을 침해하여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요소들이 있음. 현행 기부금품법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환경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현실적 적용에서도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sup>102)</sup></li> <li>현재 제출된 개정안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신탁, 유증, 기부연금 등 기부제도 및 조세감면 등의 제도개선, 기부 문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투자 등에 관한 내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 행정 합리화나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희소한 편</li> <li>다만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외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청했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업 범위의 원칙적 허용 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최소한의 균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li> </ul> </li> </ul>

「21대 국회 기부금품법 발의안 현황」 <sup>103)</sup>	
제안자 (일시)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한정애 2021.0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책무 규정 및 기부주간 운영</li> <li>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업 범위 확대, 사후등록 허용 등 모집자 편의성 확대</li> <li>기부동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부자 모집 정보 요청시 공개 의무 등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li> </ul>
정운천 2020.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li> <li>예외 법률에 &lt;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gt;을 추가하여,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함</li> </ul>
권명호 2020.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li> </ul>
윤창현 2020.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 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함</li> <li>기부금단체국민참여확인제도 도입, 소액 및 실명확인 불가능 경우에 익명영수증 발급, 120만원이하 기부자미공개, 120만원 초과고액기부자 공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조항 신설</li> </ul>
전재수 2020.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 규정</li> </ul>
정춘숙 2020.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gt;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 배제,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병길 2020.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의 불법 모금 및 사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기부금품불법모집·사용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불법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특례 규정</li> </ul>
한무경 2020.0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선임</li> <li>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 제출 및 검사에서 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모집자의 회계 책임 강화</li> </ul>
조경태 2020.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li> <li>반환 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는 기부금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함</li> </ul>
김정재 2020.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 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 첨부</li> <li>감사보고서 첨부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 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 강화</li> </ul>
유상범 2020.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ul>

	<p>송언석 2020.06.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목표액 10억 초과시, 1회 이상 검사</li> <li>• 미등록 모집자 기부금품 기부자 반환 의무 신설</li> <li>• 기부금품모집 등록 모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li> </ul>
	<p>윤재욱 2020.06.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 포함</li> <li>• 필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li> <li>•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li> </ul>
	<p>정운천 2020.06.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기부금품 사용</li> <li>• 기부자의 정보공개요청 시, 결과 공개</li> </ul>
	<p>안병길 2020.06.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 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li> <li>• 벌칙 법정형 일괄 상향 조정</li> </ul>
	<p>이개호 2020.06.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lt;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gt;제정, 기부금품법에 적용 예외 규정 마련</li> </ul>
<p>출처: 국회정보시스템. (<a href="https://likms.assembly.go.kr/">https://likms.assembly.go.kr/</a>). (검색일: 2021.01.05.) 저자 재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20.7.7.)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 강화와 기부자의 알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 정보 홈페이지 게시 기간 14일에서 30일로 연장</li> <li>*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정보 분기별 공개</li> <li>*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 공개 요청 조항 신설</li> </ul> </li> </ul> </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모집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제 구호, 재난, 자선 사업 등 11개 항목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있음</li> <li>- 기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참여 행위 중 하나이므로 기부행위를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민 기부행위의 자발성 및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모집행위도 행동자유권에 의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임<sup>104)</sup>. 따라서 사기 등 불법적 행위가 아닌 경우 법적 규제를 통해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치적 목적과 영리 추구 목적, 종교활동 목적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허용</b></li> </ul> </li> </ul> </li> <li>• 모집 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기부 환경은 전통적 모금 방법이 퇴조하고 클라우드펀딩, 포털의 기부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에 기반을 둔 모금 방안이 주류화되고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법은 최근 기부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행 서신·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집, 방문, 대면 접촉 등의 방법 추가</b></li> </ul> </li> </ul> </li> <li>•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 요건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은 1천 만 원 이상으로, 이 조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법으로 전면 개정된 2006년에 신설된 것으로서 그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음</li> <li>-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모금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모집자의 규모가 매우 다양한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1천만 원 이상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음</li> <li>-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1천만 원 이상 모집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 모집 등록 신청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칙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의 벌금)이 과다하여 시민사회조직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위축시키는 문제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 <b>현행 1천만 원 이상을 상향 조정</b></li> <li>→ <b>혹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b></li> <li>◦ 모집비용비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부금품 모집 비용은 기부금품의 금액의 15%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집비용에 대한 규정이 사업 수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포괄적 비용으로 이해되어 실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모집자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li> <li>- 이에 대해서는 모집 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모집자 및 모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모집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측면에서 대안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li> <li>→ <b>현행 15%의 모집 비용을 30%로 상향 조정하거나 모집 비용 제한 조항 폐지</b></li> <li>→ <b>기부금품 모집에 사용되는 금액과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항 신설</b></li> </ul> </li> <li>◦ 벌칙 규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칙 규정이 매우 과도함</li> <li>-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기부금품 강요, 기부금품 미승인, 기부금품 목적 외 사용, 모집금품 비율 초과 사용, 공개의무 미이행, 감사보고서 및 모집 관련 보고서 미제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li> <li>- 기부금품 위반 시, 위반 행위자 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도 있음</li> <li>→ <b>형벌과 양벌 규정 삭제</b></li> <li>→ <b>형벌로 규정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b></li> </u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접수 제한 규정 삭제</li> <li>- 모금 사용 기한 연장, 사후등록 및 변경등록 허용</li> <li>- 공익법인과 행안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금품 특례조항 신설</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되어 있는 기부금품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기부금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되어 있는 기부금품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기부금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발의되어 있는 기부금품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새로운 개정안 마련</li> <li>◦ 기부금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추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부금품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기부 행위를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시민사회조직의 재정적 안정성 및 독립적 재정 구조 마련에 기여</li> </ul>						

102) 제382회 국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0, 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03) 전재수, 이개호 의원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

104) 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5(1998.5.2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정”.

([https://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https://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검색일: 2020.11.01.).

#### 이행과제 4: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제명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법무부	
관련 법령 (근거)	공익법인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공익법인은 개별 부처별 관리·감독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기준하에 효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 발생. 운영 체계상의 비합리성은 행정의 자의적 개입과 특혜 시비를 낳게 되어 공익법인의 지대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기업의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도구로 공익법인을 인식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li> <li>○ 공익법인은 복지나 학술, 장학 사업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해 공익법인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음. 이에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의 운영 합리화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익법인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li> <li>○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공익활동 및 기부 활동 촉진</li> </ul>	
법제도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li> <li>○ 2018년~2019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검토</li> <li>○ 2018년~2019년,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TF운영 및 법무부 개정안 논의</li> <li>○ 2020년 10월 21일, 법무부 공익법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핵심적인 반대 사유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공익위원회의 위상때문임. 시민사회는 공익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경우 공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외 시민사회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 벌칙 규정 조항에 비해 법무부 전면개정안에 담긴 기부금품 모집 등록 특례 조항을 비롯한 조세감면 등의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이 유인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개진<sup>105)</sup></li> </ul> </li> </ul>	
	「법무부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구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2) 공익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3) 공익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4) 공익위원회의 기타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
제3장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	1) 공익법인의 인정(안 제21조) 2) 공익법인의 인정 취소(안 제25조, 안 제27조) 3)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감독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4장	1) 공익법인 지원 규정(안 제31조)	

구성	주요 내용
공익법인의 지원	2)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 규정(안 제32조) 3) 조세 감면 혜택 규정(안 제33조)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2) 공익법인 합병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1) 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상 비밀누설 시 벌칙 규정 (안 제18조, 제48조제1항제1호) 2)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안 제23조, 제48조제2항제1호) 3)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 규정 (안 제36조, 제48조제2항제2호) 4)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출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20-301호)<sup>106)</sup> 요약, 재구성

- 21대 국회에서 총 7건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소관위 심사 중.
  - 공익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실시, 공익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의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의 입법 조치는 공익법인 기부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많은 공익법인들이 외부 감사인의 회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벌칙 수준이 상향되는 등 과도한 벌칙 규정은 공익법인의 운영 활성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됨. 또한, 공익법인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주관청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주주부처 별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영의 비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우려가 있음.
  - 이외 공익법인 내부의 보수 지급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대한 입법적 대안 제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며,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현실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음.<sup>107)</sup>
  - 윤호중 의원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현재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통한 기부 촉진이라는 입법 제안과 동일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21대 국회 기부금품법 발의안 현황」<sup>108)</sup>

제안자 (일시)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이양수 2020.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li> <li>• 공시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주관청의 감독 강화 및 거짓 공시 법인에 대한 벌칙 부과</li> </ul>
김정재 2020.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회계사 검사, 결산보고서에 감사증명서 첨부</li> <li>•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 상향</li> </ul>
김도읍 2020.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li> <li>• 결산보고서 공개</li> <li>•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 선정</li> </ul>

박용진 <sup>109)</sup> 2020.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법인의 금지행위 신설(비상근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법인카드 제공 금지, 부당한 금전적 이익 수수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이용행위 금지, 인사운영 준수 의무 및 공익성 저해행위 금지)</li> <li>조세감면 근거 규정 정비</li> </ul>
박용진 <sup>110)</sup> 2020.0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li> <li>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 기준 마련</li> </ul>
윤호중 2020.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공익위원회 제도 도입</li> <li>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li> <li>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 설치</li> <li>*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li> </ul>
정운천 2020.0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li> <li>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 의무 사용</li> </ul>

출처: 국회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2020.12.10.)저자 재구성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익법인법의 적용 범위인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음.</li> <li>- 시대적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반영하여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을 개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b>공익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를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b></li> <li>※ 법무부 개정안은 열거주의 채택. 공익 목적사업을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지급 및 학술 문화 예술 증진, 인권 옹호 및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및 지원, 피해자 지원, 환경 보전 및 위생·보건·복지 증진, 경제민주화 및 소비자 이익 증진, 교육·스포츠 및 아동·청소년 육성, 남북 통일, 평화 구축, 국제개발협력, 생활안정, 시민교육 등 10개 사업과 공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의(안 제2조 2.)</li> </ul> </li> <li>시민공익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익법인의 운영 시스템에서는 주무관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공익법인 설립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고, 일관된 기준하에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공익법인 활성화도 지체되고 있음</li> <li>→ <b>시민공익위원회 설치</b></li> <li>-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지원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기구</li> <li>- 독립된 행정위원회 위상</li> <li>-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 부여,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등의 기능 수행</li> </ul> </li> <li>공익법인 활성화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익법인법이나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공익법인으로 등록,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공익활동 및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효과가 크지 않아 공익법인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li> <li>→ <b>공익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화</b></li> <li>- 지방세 감면 등 조세 감면 혜택 강화</li> <li>-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및 사용료 감면</li> <li>- 공익법인 회계 등 업무 관련 교육·훈련 및 컨설팅</li> <li>-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특례 강화 등</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공익위원회의 위상과 기능<sup>111)</sup></li> </ul> </li> <li>* 영국의 자선위원회 혹은 호주의 자선 및 비영리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서부터 공익성 심사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일본 (이순태, 2013: 53-55)처럼 등록청과 별도의 공익인정등 위원회 혹은 도도부현 설치 합일제 기관과 같은 자문위원회를 두고 공익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가 주요한 쟁점</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82-83)</li> <li>*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의견 제시</li> </ul>	
추진 일정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전면개정안 및 의원발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검토.</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및 시민사회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정 내용 검토, 개정안 마련.</li> <li>◦ 공익법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입법 추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의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주무관청의 자의적 행정 관행을 해소하고, 공익법인 운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li>◦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공익활동 확대 및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li> </ul>	

- 105)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2020.11.27.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의견서를 제출해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공익위원회의 법무부 설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외 공익법인 등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핵심 지원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특례조항 확대·강화, 공시업무 간소화 규정, 비영리 고용지원 규정,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급 법적 근거의 마련을 제시했다. 더불어 과도한 벌칙 조항의 개선도 요구했다.
- 106) 법무부 공고. (2020.10.2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140>). (검색일: 2020. 11.20)
- 107) 제38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6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년 7월.
- 108) 전재수, 이개호 의원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
- 109) 의안번호 제576호
- 110) 의안번호 제573호
- 111) 제38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3호)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0년7월

이행과제 5.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과제명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매년 발표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li> <li>특히 2020년에는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li> <li>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주요 입법과제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적이거나 성과를 거둔 제도 혁신안은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정책 효능감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li> <li>이는 현재 시민사회 발전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실이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기능상 한계에 기인함</li> <li>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관련 법제를 논의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그 위상이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에서 불과해 실제 정책 반영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음</li> <li>(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어떤 정부에서보다도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 관련 논의만 무성한 채, 전담 체계의 미비로 인해 실제 정책의 집행이 지체되는 등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불신 및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에 중요한 법제도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담부서를 설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성과 창출에 기여</li> <li>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민사회와의 정책 대화 및 부처 별 정책 조정 등을 보다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진행</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도 마련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민사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실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그 위상과 기능상 한계가 있음</li> </ul> </li> <li>국무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 제도 개선 전담 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 입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정 및 지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정책 과제 이행</li> <li>-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제도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li> <li>-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 및 조정, 입법화 추진</li> <li>- 시민사회 요구 수렴 및 정책 대화</li> <li>- 지방 정부 시민사회 정책 전달체계 마련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베니아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부서 중 하나로 '행정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부서'를 두고 각종 법률 및 규칙의 개선 도모</li> </ul> </li> <li>- 시민사회의 책임성, 투명성, 윤리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점검 업무 수행</li> </ul> </li> </ul>

	연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여론 수렴</li> <li>◦ 시범적으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실 내 제도개선TF 설치 혹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의 상설 운영 방안 마련</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 운영 및 성과 평가</li> <li>◦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예산 확보</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설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적인 전담 체계 구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할 수 있어, 정부 부처 및 시민사회에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li> <li>◦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 도출에 기여</li> <li>◦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li> </ul>	

## 제2절

#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1. 시민사회 지식생산의 흐름과 현황

□ 시민사회 지식생산 여건의 형성과정

-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1990년대 들어 본격화 됐음(박태규 외, 2016: 38)
- 주요한 흐름으로 먼저 시민사회 관련 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들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음
  - 주로 1990년대말 2000년대 초 설치가 활성화되다가, 상명대, 명지대, 서강대, 경산대, 경남대, 상지대, 그리고 최근 한일장신대(학부과정) 등은 관련 과정이 폐지됐음

〈표 6-1〉 현재 운영 중인 시민사회 관련 대학 교육과정

	과정	대학	학과	설치년도
학부	독립학과	경희대학교	NGO사회혁신학과	2001
	연계전공	이화여자대학교	NGO연계전공	2000
		성공회대학교	NGO연계전공	2001
대학원	독립대학원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1999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2002
	세부전공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1999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2005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NGO학과	2001
		경북대학교	사회정책 및 NGO 전공	2000
	협동과정	부산대학교	학과간 협동과정 NGO전공	-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2001

출처: 한국NGO학회(2014) 수정 인용

- 최근 들어서는 국제개발이나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별 대학 교육 과정 개설이 활성화되고 있음
  - 가장 유력한 분야는 사회적 경제로, 관련 대학원 과정은 14곳, 학부과정은 7곳이 설치·운영 중임(박유진, 2019)
- 아울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와 학회가 설립돼 활동을 이어지고 있음
- 이후 희망제작소(2006)와 같은 민간 시민사회 싱크탱크나 (사)협동조합연구소(1994)나 한국 자원봉사학회(2000) 등 시민사회 부문별 연구소·학회가 창립돼 활동 중에 있음

## 2.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 □ 시민사회 지식생산의 한계

- 시민사회 관련 연구가 본격화 된지 30여년이 경과하면서 나름의 분화·발전을 이뤄왔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지식생산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다양한 연구소나 학회들이 창립돼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거뒀지만, 많은 경우 영세한 규모와 재정으로 인해 활동을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어 연구의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지식의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연구소·학회간 교류·협력의 부족으로 상승효과(synergy)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 관련 대학 학제 미비, 시민사회 연구자들의 진로 불투명, 시민사회 연구에 대한 투자부족이라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됨
  -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 관한 인식부족, 개념과 관점상 오해나 혼란, 공익활동 현장에 필요한 지식 부족 현상이 나타남
  - 이는 다시 시민사회에 관한 불필요한 갈등유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공익활동 현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짐
-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조직이나 공익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기초통계 조사 부재한 상황임
  - 최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정책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책이 입안·실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필요

- 향후 시민사회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정책·실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생산하는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이 요청됨
- 시민사회 지식생태계는 단지 학술적 연구주체 뿐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 현장의 연구활동가, 관련 담론을 생산하는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이론과 실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면서 다양한 연구주체간 연결 허브 구축과 다양한 시민사회 지식생산 주체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

### 3.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의 이행과제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 이행과제2: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 이행과제3: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 이행과제 1: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과제명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한 기초통계 관련 현황(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9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개념과 대상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통계자료 부재하고, 각 부처별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 어려움</li> </ul> </li> <li>◦ 시민사회 관련 독립적인 통계 계정체계 필요(김혜련·임경민, 2012: 16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 나라는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통계를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제도부문별로만 설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움</li> <li>- 시민사회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연합(UN)은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설정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15개국이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 독립의 위성계정 운영 중</li> </ul> </li> <li>◦ 시민사회 기초조사에 대한 투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 센서스(전수조사)'를 설정한 바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음(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 자문위원회, 2012)</li> <li>- 시민사회 기초조사는 1997년 발간이 시작된 '비영리민간단체총람'을 비롯해 주로 민간·학계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지속성과 체계성에서 한계를 나타냄.</li> <li>-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은 시민사회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책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실행하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92)</li> <li>- 시민사회에 관한 기초통계와 함께, 정부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현황,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관련 정책과 공익활동의 지식·정보 기반 구축</li> <li>◦ 시민사회·공익활동 관련 통합적인 기초통계 체계 마련</li> <li>◦ 시민사회·공익활동 관련 주기적인 기초조사 실행</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통합 기초통계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관련 기초통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원봉사, 기부, 단체참여 등 시민참여 현황 등은 기초통계에 포함이 돼 있지만,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기초통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법 등 법률과 부처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li> </ul> </li> <li>- 독립적인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신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와 영역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시민사회조직들에 관한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계정 신설 필요</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례: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통합적 기초통계</p> <p>미국의 경우 연방노동통계국과 존스 홉킨스 대학 시민사회연구소가 협력해 2007년부터 비영리 부문 고용·임금 통계를 제공하는 한편, 비영리 부문이 창출하는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사회적 기여</p> </div>

	<p>를 조사해 발표하는 '비영리 경제 데이터 프로젝트'(Nonprofit Economic Data Project) 운영 중(박준 외, 2020: 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기적인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관련 백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부문과 지역을 아우르는 시민사회 기본현황과 변화동향, 주요과제에 관한 연간 기초조사 실행</li> </ul> </li> </ul> <p><b>사례: 시민사회 기초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IVICUS)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민사회연구소(CCSS)는 공동으로 국가별 시민사회의 조직, 참여, 영향력, 환경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를 개발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li> <li>■ 한국의 경우 1998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3~2005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가 이 국제적 조사에 참여해 한국의 시민사회 기본현황을 조사한 바 있고(박태규, 2000: 48; 주성수, 2006)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2003)와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연구소는(2014~2016)는 시민사회지표를 응용해 한국 시민사회 현황을 비교연구 한 바 있음(이남주 외, 2005; 이남섭 외, 2020)</li> <li>■ 하지만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사주체도 계속 변경되면서 지속성, 체계성, 책임성을 갖춘 기초조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위원회 임기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간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백서'를 연간 체제로 전환하고, 연간 백서를 통해 연간 시민사회 기초조사 결과 종합·공개</li> </ul> <p><b>사례: 평생교육백서(년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백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해 매년 발간됨.</li> <li>■ 백서는 총론, 법령 및 전달체계, 평생교육 개요(기초통계), 영역별·지역별·대상별 평생교육 현황, 평생학습 지원체제, 평생학습 문화조성, 평생학습 전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및 백서발간을 위해 연구기관 지정·운영 및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행과제3 연계)</li> </ul>								
<p><b>추진 일정</b></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2 1372 471 1419">연도</th> <th data-bbox="471 1372 1265 1419">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1419 471 1528">2022년</td> <td data-bbox="471 1419 1265 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체계 구축 준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제도적 근거 모색</li> <li>- 지정 연구기관을 통한 기존 통계체계 점검 및 기초조사 기반구축</li> </ul> </td> </tr> <tr> <td data-bbox="342 1528 471 1568">2023년</td> <td data-bbox="471 1528 1265 1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지속적 추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신설 추진</li> </ul> </td> </tr> <tr> <td data-bbox="342 1568 471 1641">2024년</td> <td data-bbox="471 1568 1265 1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기초조사 및 (가)시민사회백서 발간 추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체계 구축 준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제도적 근거 모색</li> <li>- 지정 연구기관을 통한 기존 통계체계 점검 및 기초조사 기반구축</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지속적 추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신설 추진</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기초조사 및 (가)시민사회백서 발간 추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체계 구축 준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제도적 근거 모색</li> <li>- 지정 연구기관을 통한 기존 통계체계 점검 및 기초조사 기반구축</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조사 지속적 추진</li> <li>- 시민사회 통합 통계계정 신설 추진</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기초조사 및 (가)시민사회백서 발간 추진</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관련 기초통계·조사를 통한 공익활동 실천 및 유관 정책 추진에 긴요한 지식·정보 생산</li> <li>◦ 생산된 시민사회 관련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li> </ul>								

## 이행과제 2: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과제명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경우 시민사회·공익활동은 주변화된 연구과제로 인식되고 있음</li> <li>- 학계의 경우 관련 대학 교육과정은 다수 개설되는데 비해, 전문화된 연구소나 학회 등에 대한 투자 부족</li> <li>-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 기반 민간 싱크탱크들의 경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수와 규모, 영향력 면에서 한계를 나타내면서 성장이 둔화됨(김병권, 2017: 30)</li> </ul> </li> <li>◦ 연구주체들이 겪는 한계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관련 연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투자부족은 연구주체들의 운영·연구역량 약화문제로 악순환을 이룸</li> <li>- 대학과 공립연구소는 시민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고, 전문적인 시민사회 연구에 나선 민간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태에 놓여 있음</li> <li>- 특히 민간 싱크탱크들의 경우 대부분 '재정 불안'과 '연구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책연구원이나 기업 싱크탱크에 비해 정책·연구 과정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홍일표, 2011: 48)</li> <li>- 연구기관의 무관심과 민간 싱크탱크의 영세성으로 시민사회 연구자들 역시 연구와 성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고, 이는 다시 관련 전공자 부족으로 이어짐</li> </ul> </li> <li>◦ 단절된 시민사회 연구주체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연구주체들이 겪는 한계와 함께,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상호교류와 협력이 부족한 상황임</li> <li>-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발주·투자기관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연구자간 연결을 통해 지식 생태계의 단초 마련 필요</li> <li>- 아울러 시민사회에 관한 정보와 담론 역시 영역과 지역별로 단절돼 있어 상호 연결이 요청됨</li> </ul> </li> <li>◦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생태계 조성은 개별 연구주체들의 노력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임</li> <li>- 적절한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주체들의 연구활동 지원과 상호 연결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을 통한 관련 지식 생태계 조성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지원</li>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네트워크 형성 지원</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활동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구기관·연구자 지원제도 활용방안 모색</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sup>112</sup> 중 유관항목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li> </ul> </div>

- (비전임연구자)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 (전임연구자)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지원
- (대학) 지속가능한 연구 거점 구축
- (대학 밖)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관련 실태·지원수요 조사

**사례: 외국의 민간 싱크탱크 현황조사**

미국의 경우 민간 싱크탱크 실태조사·연구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 종합연구개발기구가 매년 일본 싱크탱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홍일표, 2011: 35)

- 기존의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지원 사업 사례 검토

**사례: 관련 연구지원 사업 사례**

- 기부문화 석·박사 연구지원사업(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활동가 연구활동지원 사업 '활력향연'(서울시NPO지원센터)
- 마을살이 작은연구 지원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활동가 연구지원사업(충남연구원)

- 검토·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지원 사업계획 수립

- 민간 연구주체들의 정부 연구용역 참여 활성화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중앙·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다양한 민간 연구·활동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이론·정책·실천의 융합 도모.
  - 정부 발주 관련 연구용역 참여주체 자격요건 완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지원사업 주관 연구기관 및 협력연구기관에 민간주체 참여 확대 등.
- (가)시민사회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간헐적으로 개최되던 기존의 '시민사회단체연찬회' 개편: 연례 개최, 행사규모 확대 등

**사례: 시민사회 관련 컨퍼런스**

- 미국 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연합체인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는 지난 40여년간 시민사회 관련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해옴. 특히 2018년 부터는 '증진'(Upwell)이라는 표제로 전국의 지역사회 조직가, 자선가, 비영리 지도자,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시민사회 관련 현안논의와 담론형성을 진행하는 2박 3일 일정의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sup>113)</sup>

- 시민사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현안을 논의, 발전방향 공동모색, 사회적 담론 생산을 위한 공론장으로 활용
- 그 밖에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공론장 개최 및 지원
-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책연구소 시민사회 관련 부서·연구자 네트워크, 민간 연구기관·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촉진
-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공동연구, 연구방법·성과 공유, 지식생태계 조성

	위한 협업 등 다양한 협력활동 추진 ※ 추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정 연구기관을 통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이행과제3 연계)	
추진 일정	<b>연도</b>	<b>추진 내용</b>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지원 방안 마련</li> <li>-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원사업 계획수립</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지원 시범사업 추진</li> <li>- 연구주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가)시민사컨퍼런스 등</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li> <li>- 차기 기본계획에 지속적 연구지원 방안 반영</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지원을 통한 시민사회·공익활동 연구역량 증대</li> <li>◦ 시민사회·공익활동 연구활성화를 통한 관련 정책 및 실천현장에 유용한 지식·정보 생산 활성화</li> </ul>	

112) 교육부. (2019.04.05.).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  
 (검색일: 2020.12.20.)

113) Upswell. “A VIRTUAL EXPERIENCE OCT 14-16, 2020”. (<http://upswell.org>). (검색일: 2021.01.07.)

### 이행과제 3: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과제명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관리 부처, 광역자치단체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 중심주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식생산은 민관의 다양한 연구주체들에 의해 실행돼야 할 과제임</li> <li>- 그럼에도 지속성, 책임성, 공공성에 기반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를 추진할 중심주체가 필요함</li> <li>-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다양한 국책연구소들이 운영 중에 있지만 정부·시장과 함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는 시민사회 관련 연구소 부재</li> </ul> </li> <li>◦ 관련 규정에 따른 조속한 연구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제정된 관련 규정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2020)</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법령에 명시된 연구기관 지정 지체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지정 연구기관에 관한 충분한 지원과 계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규정은 지정 연구기관의 과업을 폭넓게 명시하고 있음</li> <li>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li> <li>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li> <li>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li> <li>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li> <li>5.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li> <li>6.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li> <li>- 정부는 지정 연구기관에 연구활동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li> <li>- 지정 연구기관에 관한 충분한 지원과 효과적인 운영계획수립이 추진돼야 함</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지정·지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지식생산 허브 구축</li>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마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연구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의 연구기관 지정권자 지명: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부처 지명</li> <li>- 지정권자 부처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 지정 추진</li> </ul> </li> <li>◦ 연구기관 운영·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을 단순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 지정권자 부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등의 협의를 통한 지원예산 규모와 조달계획 수립</li> <li>- 지정 연구기관이 폭넓은 연구 관련 과업을 단독 수행하는 싱크탱크 보다 관련 국책연구소, 지방연구소, 민간 싱크탱크 등과 협업하는 싱크넷(Think-net) 방식의 운영모델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크넷: 그 자신이 싱크탱크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기존의 싱크탱크와 관련 현장조직을 연결하는 연구 조직 모델</li> </ul> </li> <li>- 지정 연구기관 운영과 연구활동의 자율성·독립성과 시민사회 관련 주체들과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운영방안 수립</li> <li>◦ 지역별 연구기관 지정 제도 도입</li> <li>- 전국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부응하는 지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 지정 제도 도입</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연구기관 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권자 부처 지명, 연구기관 지정 추진</li> <li>- 지정 연구기관 지원 및 운영방안 수립</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연구 및 네트워크 관련 과업 설정</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발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발전 및 지역 연구기관 지정 방안 마련 및 제2기 기본계획 반영</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연구기관 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권자 부처 지명, 연구기관 지정 추진</li> <li>- 지정 연구기관 지원 및 운영방안 수립</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연구 및 네트워크 관련 과업 설정</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발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발전 및 지역 연구기관 지정 방안 마련 및 제2기 기본계획 반영</li> </ul> </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연구기관 지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권자 부처 지명, 연구기관 지정 추진</li> <li>- 지정 연구기관 지원 및 운영방안 수립</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연구 및 네트워크 관련 과업 설정</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발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연구기관 발전 및 지역 연구기관 지정 방안 마련 및 제2기 기본계획 반영</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관한 지속성, 체계성, 공공성을 갖춘 연구 기반 구축</li> <li>◦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활성화를 통한 관련 정책 및 실천현장에 유용한 지식·정보 생산 활성화</li> </ul>								

## 제3절

#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 1.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

- 최근 지역 시민사회는 생태계 형성과 함께 단체별·영역별 경계 구분도 뚜렷해지고 있음
  - 한국 시민사회는 운동의 주제별로 분화·전문화되면서 단체별, 영역별로 성장해 왔고, 최근 10년 동안은 전통적인 시민사회 조직뿐 만 아니라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구성 방식으로도 확장해오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생태계가 형성됨(홍일표, 2009: 302-303).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역별 경계도 선명해짐
- 정책 칸막이로 인한 민간 칸막이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생태계 형성을 시민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인 중 하나
  - 다양한 주민참여형, 민관협력형 정책들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생태계가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추진됨으로써 시민사회 활동이 이슈별, 영역별로 나뉘게 됨
  - 또한 각 단체들이 자기완결구조를 갖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분산되고 지역사회 전체 발전을 위한 연대활동·협력활동·공동활동이 약화되어 지역 시민사회의 시민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이은주·이유리, 2020)
  - 조직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시민사회 생태계에 등장하였지만(박영선·정병순, 2019), 지역 시민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있어 개인 활동가들의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민사회의 과제가 노정되어 있음(김병권, 2019: 95)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협치의 본격 단계로의 진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민사회의 역량과 협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정부나 지자체들의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sup>114)</sup> 흐름은 그동안의 정책영역별, 사안별

114)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7개의 광역시도와 34개 기초시군구가 제정하였음

민관협력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이나 발전계획을 민간과 행정의 협력이 함께 하는 협치의 본격 단계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협치의 본격 단계에서는 협치 파트너인 시민사회의 확장과 재구성이 핵심 과제임. 즉 영역별, 단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기반을 확대하여야 함. 이는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지역시민사회의 성장 비전과 전략의 토대에서만 가능함(김일영·김민수 외, 2020: 2)

## 2.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

- 협치정책 영역의 확대에 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부족 문제 심각
  - 지역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풍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치정책 영역으로 지역 활동가들이 이동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은주, 2019: 140-141). 그러나 지속가능한 협치정책은 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과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영역별 시민사회의 격차 문제도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지역별 시민사회의 역량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현황과 지원 수준에서도 격차가 존재함
    - 시민사회활성화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나 등록단체의 증가 현황도 지역별 격차가 심함
    -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의 법적 기반인 지역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함
  - 같은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조직이나 시민참여형·민관협치형 정책으로 설립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기존 시민사회조직들 간의 격차 존재
    - 전통적 시민사회조직의 대표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운동형 조직들은 취약한 재정 여건, 활동가 부족, 아젠다 위축 등으로 고사 직전. 이는 전체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인 마을/자치/협치 정책들의 협력과 연계도 과제
  -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sup>115)</sup>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정책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반 정책들로 상호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조례에 명시된 마을공동체 정책의 목적은 주민자치실현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민관협치 활성화도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들 정책들은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로 볼 수 있음.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의 긍정적 상관관계도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음<sup>115)</sup>
- 지역 시민사회가 고루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공익활동·시민활동의 일상화가 중요함.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맥락에서 생활권 정책들을 통합적·연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의 이행과제

-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 이행과제2: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 이행과제3: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115) 2020.12. 기준 마을공동체 분야 조례는 충북과 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와 173개 기초시군구가 제정함

116) 김소연 외(2020a)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조례가 있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의 코로나 대응활동이 좀 더 활발한 경향을 보임

## 이행과제 1: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과제명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발전과 공익증진에 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양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확장으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지역 현장은 다양한 영역과 단체를 포괄하는 시민사회 내 논의구조·참여구조·협력구조가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생태계 형성이 시민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li> <li>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역점분야로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를 과제화 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핵심 문제인 민간 칸막이와 지역 시민사회 내 격차 문제는 의제화되지 않고 있음</li> <li>최근 정부가 지역마다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행정 칸막이만이 아닌 민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민간 간 협업과 협력문화 조성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사회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시민사회 성장 비전과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전환적 재구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사회의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li> <li>- 지역 시민사회자산화를 위한 기반 활동 지원</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시민사회의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단위·기초단위·읍면동단위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모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시민사회 내 사회경제적, 지역복지, 혁신교육,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분야 등의 네트워크와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구조 조건화.</li> <li>* 공동·협력·연대 활동 진행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 연대 활동의 특성 상 전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지원사업 사례 참조)</li> </ul> </li> </ul> </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지자체의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과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과 분야들의 공동활동, 협력활동,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시민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연대조직 설립을 지원하였음. 그 결과 '관악공동행동',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광진시민허브', 마포 NPO네트워크 등 지역시민사회 연대조직들이 설립되고 개방형 지역사회공론장(마포로컬리스트컨퍼런스, 은평상상컨퍼런스 등), 시민거점공간자산화, 공동체경제구축, 지역활동가 통합교육, 공동체기금조성 등 다양한 민민 협력/연대 활동과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li> </ul> </li> <li>- 광주시 서구의 '마을네트워크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간 정보 교류 및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마을정책을 직접 생산하여 제안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있어서 주민주도성 배양을 위한 조직 구성을 지원함</li> </ul> </li> </ul> </div>

〈지역 시민사회의 민민 협력 네트워크 조직 구축 사례〉

- 경북 상주시의 민간 자치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상주다움’
  - \* 먹거리 지역농업, 주민자치주민복지, 주민교육지역문화, 청년귀촌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공동체들이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 지역민들이 함께 만든 민민협력 조직임. 2018년 창립
-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 2003년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결성하여 2020년 현재 40개의 조직과 개인이 참여. 지역 내 시민사회, 노동, 종교단체 등과 교류하고 연대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주도 및 지방정부와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가능한 기반 조성 시도

-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민간네트워크 구축 의무화
  - \* 읍면동 단위 자치기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확산 사업 추진 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단위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무화
  - \*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선정 시 민민협력 네트워크 분야 추가
- 지역 시민사회자산화를 위한 기반 활동 지원
  - 시민활동 거점공간 공동체자산화, 지역공동체경제구축, 지역공동체기금 조성, 지역재단 설립 등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립 전략에 따른 기반 활동 지원
    - \* 자산화 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한 분야별(법률, 세무, 부동산, 정책기금 및 민간금융 투융자, 크라우드펀딩, 모금, 온·오프라인 유통, 비즈니스모델 등) 전문 컨설팅, 교육, 워크숍, 지역자원조사 연구, 지역사회 공론장(내부 숙의공론장, 주민설명회 등) 운영,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전담활동가 인건비 편성 지원)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행과제3과 연계해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활동가 지원
    - \* 초기 인력 확보를 위해 이행과제2의 영역특화형 공익활동가 지원과 연계하여 중견활동가 한시 지원

※ 시민거점공간 시민자산화 사례협동조합 해빛투게더의 ‘시민공유공간 자산화 프로젝트’

- 2015년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상권을 넘어 주거지역까지 확장됨으로써 임대료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는 지역 내 커뮤니티거점공간들이 동지 내몰림을 당하게 됨. 이 문제는 시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방형 지역사회공론장(‘마포로컬리스트 컨퍼런스’)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슈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주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됨. 조합원 출자금과 시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건물 매입을 위한 씨드머니를 확보한 후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최근(2020.9.) 시민공유공간(지하1층 지상4층. 매입가 33억원)을 매입하였음.
- 초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론장 운영 및 조합원 조직 단계에서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자산화 계획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공동체공간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었음.

※ 지역공동체기금 조성 사례 ‘관악부리기금’과 ‘광진협동기금’

- 관악부리기금: 2018년 3월 창립한 관악시민사회의 연대조직인 ‘관악공동행동’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활동가들을 위해 배분하는 ‘관악부리기금’을 운영. 관악 활동가들의 소통과 성장을 위한 모임 지원같이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후원기관 등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품앗이 기금에서 지역기금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금조직 설립에 대한 시민사회 동의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됨. 이 사례는 서울시 시민협

	<p>력플랫폼 지원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역시민사회의 숙원사업을 추진해 추진동력을 얻었음(이은주·이유리, 2020: 61)</p> <p>- 광진협동기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기금으로, 광진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 조직들의 상호거래 매출액 중 2%와 회원 조직들의 회비, 후원금으로 조성된 4천5백만원에 한국사회혁신금융 7천만원이 보태져 2019년 12월 기준 총 1억1천5백만원의 기금 규모로 회원조직들의 긴급자금 융통, 전세자금 등 부동산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음<sup>117)</sup></p>								
추진 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9 570 457 620">연도</th> <th data-bbox="457 570 1265 620">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9 620 457 792">2022년</td> <td data-bbox="457 620 1265 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사업 계획 수립</li>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원사업 유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역시민사회자산화를 위한 기반 활동 지원사업)</li> <l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업지침 수정 및 업무교육 실시</li> </ul> </td> </tr> <tr> <td data-bbox="339 792 457 872">2023년</td> <td data-bbox="457 792 1265 8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확대</li> <li>◦ 동단위 민간네트워크 분야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li> </ul> </td> </tr> <tr> <td data-bbox="339 872 457 933">2024년</td> <td data-bbox="457 872 1265 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사업 계획 수립</li>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원사업 유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역시민사회자산화를 위한 기반 활동 지원사업)</li> <l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업지침 수정 및 업무교육 실시</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확대</li> <li>◦ 동단위 민간네트워크 분야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사업 계획 수립</li>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원사업 유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역시민사회자산화를 위한 기반 활동 지원사업)</li> <l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업지침 수정 및 업무교육 실시</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확대</li> <li>◦ 동단위 민간네트워크 분야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민 협력 및 자립성 강화로 지역사회의 시민력 강화</li> <li>◦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로 민관협력 정책 추진 시 협력 수준 고도화</li> </ul>								

117)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법인. 2020. “2020년 총회 자료집”.

## 이행과제 2: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과제명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발전과 공익증진에 관한 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고용보험법 제20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시민사회의 규모와 활동에서의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활성화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분포에 있어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li> <li>*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현황(2020.11.30. 시·도 등록현황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2,342), 서울(2,295), 전북(976) 순으로 높으며, 강원(360), 울산(393), 제주(401) 순으로 낮고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 간의 단체 수 차이가 1,982개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li> <li>* 서울지역 내에서도 권역별로 비정부단체 분포의 차이가 나타남. 가장 많은 권역이 854개, 가장 적은 권역이 155개로 699개의 차이가 나타남(조철민, 2015a: 191)</li> </ul> </li> <li>◦ 영역별 시민사회단체 간 재정 규모나 상근인력의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시민사회조직들과 서비스 분야 조직들 간의 재정 여건, 상근활동가 수 등에 있어서 격차 존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 직면 예상됨</li> <li>* 서울시 서남권 시민사회단체 현황 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 2019: 61)에 따르면 단체 상근자 수가 없는 곳이 상당하며, 상당한 상근자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전통적인 시민사회조직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생협, 자활, 사회복지단체 등인 것으로 파악됨. 단체 상근자가 없는 곳이 23%, 1~2명인 단체가 57%로 2인 이하 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이며 활동가의 근무 형태로 비상근인 경우가 많아 단체가 일상적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li> </ul> </li> <li>◦ 다양성 보존은 전체 시민사회의 건강성에 필수적(조효제, 2004: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시민사회가 전통적인 시민사회조직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시민사회의 외연은 확장되었지만 운동형 단체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li> </ul> </li> <li>◦ 2019년부터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영리분야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의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상층이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 일자리 정책의 대상인 사실상 취업취약계층인 열악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사실상 취업취약계층인 약한 시민사회단체의 중견 활동가와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별·영역별 시민사회 격차 해소와 시민사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자가 소수이거나 비상근·반상근 활동가로 운영되는 열악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를 지원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성 보존</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를 지원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li> <li>- 청년들을 지역 공익활동가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지원</li> <li>- 중앙정부의 예산 종료 이후에도 지자체들의 비영리분야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유도</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지원 확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영리분야로 확대·활성화</li> <li>* 2018년 행안부 사업지침에 NGO참여를 명시화하여 2019년부터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더욱 활성화</li> <li>-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홍보 확대</li> <li>* 대전시, 서울시, 대구시 등 지역청년들에게 NGO 활동 공익적 일자리(풀타임)를 제공하여 지역</li> </ul> </li> </ul>

	<p>공익활동가로 육성, 지역 시민사회와 청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한 지역·영역 시민사회단체 중견 공익활동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비영리분야 사업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실업상태인 자임. 근무조건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생활형 임금 및 식비를 지급하며,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공동 의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사업을 진행함</li> <li>- 지역별/영역별로 나누어 사업장의 조건과 지원 자격을 특성화하여 진행</li> </ul> </li> </ul> </li> <li><b>【지역특화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형의 사업장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을 우선적 추진</li> <li>*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중견 공익활동가 지원</li> <li>* 상위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NPO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및 지역 시민사회 연합조직에 공익활동가 모집, 교육, 관리 업무 위탁</li> </ul> </li> <li><b>【영역특화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자 1인 이하<sup>118)</sup>인 NGO(개별단체 또는 이행과제1의 연합조직)를 대상으로 취업취약계층인 비상근·반상근 활동가 지원</li> <li>*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일반적인 NGO 활동 확산이라기보다는 약한 시민사회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지원 (*현재 서울시, 3개월 지원)</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조직(단체), 정당을 포함한 정치조직(단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조직 제외</li> <li>* 정부보조금 또는 시보조금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조직 제외</li> </ul> </li> <li>◦ 지자체의 비영리분야 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사업 지침 및 업무매뉴얼에 지자체의 전담/담당 부서 및 구체적 지원 업무 등 전달체계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지자체의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종료 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의 이관(담당부서, 재원확보방안 등) 계획에 대한 로드맵 작성 의무화. 이를 평가지표화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시 주요하게 반영</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계획 수립</li>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시범 추진</li> </ul> </td> </tr> <tr> <td>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확대 추진</li> <li>◦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포상 (사례 확산)</li> </ul> </td> </tr> <tr> <td>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계획 수립</li>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시범 추진</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확대 추진</li> <li>◦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포상 (사례 확산)</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계획 수립</li>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시범 추진</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확대 추진</li> <li>◦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포상 (사례 확산)</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강화로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li> <li>◦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마련</li> <li>◦ 생활권단위, 과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형성</li> </ul>								

118) 단체 자격으로 상근자 수는 지역 시민사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함

이행과제 3: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과제명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발전과 공익증진에 관한 규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2.13.)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주요내용 중 하나로 마을자치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민관협치 활성화·민주시민교육 정책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반 정책으로 상호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 추진과 확산에 한계가 있음</li> <li>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현재 충북/대전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와 173개 기초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 추진과 조례가 미제정된 시군구의 확산에 제한이 있음</li> </ul>			
	「마을공동체 분야 <sup>119)</sup>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광역조례	전제 시군수	조례제정 시군구
	서울특별시	2012	25	25
	부산광역시	2012	16	10
	대구광역시	2013	8	7
	인천광역시	2013	10	9
	광주광역시	2010	5	4
	대전광역시	미제정	5	4
	울산광역시	2017	5	4
세종특별자치시	2013	-	-	
경기도	2012	31	28	
강원도	2014	18	13	
충청북도	미제정	11	8	
충청남도	2012	15	15	
전라북도	2009	14	10	
전라남도	2015	22	20	
경상북도	2018	23	6	
경상남도	2019	18	10	
제주특별자치도	2009	-	-	
합계	15개소	226	173	
출처: 김소연 외(2020a: 80)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자치 활성화 정책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실시로 주민이 스스로 세우는 자치계획, 주민총회,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 권한을 확대하여, 현재 626개 읍면동, 118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sup>12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지만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이 개정안에서</li> </ul> </li> </ul>				

- 제외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확산에 제한이 있음
-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은 현재 7개 광역시도와 3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단위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행정구역단위	조례 제정 현황(제정연월일)
광역(7)	서울(2019.5.16.)/부산(2019.7.10.)/인천(2019.7.17.)/광주(2020.7.6.)/세종(2012.7.2.)/경기(2017.11.13.)/충남(2018.10.1.)
기초(34)	서울(24) 종로(2018.10.5.)/용산(2019.7.26.)/성동(2017.7.13.)/광진(2019.4.1.)/동대문(2017.4.27.)/중랑(2019.2.14.)/성북(2018.3.29.)/강북(2019.2.15.)/도봉(2016.12.29.)/노원(2018.9.10.)/은평(2017.3.16.)/서대문(2017.5.31.)/마포(2019.7.11.)/양천(2018.10.1.)/강서(2017.6.7.)/구로(2019.5.2.)/금천(2017.3.13.)/영등포(2017.6.1.)/동작(2018.3.2.)/관악(2018.10.25.)/송파(2019.11.14.)/강동(2018.2.14.)/중구(2020.11.6.) *강남(2020.10.16.~11.5.) 입법예고
	경기(9) 수원(2019.1.10.)/용인(2019.4.8.)/안산(2018.12.27.)/평택(2019.3.15.)/파주(2020.2.14.)/의정부(2020.7.15.)/광명(2018.12.21.)/군포(2019.7.9.)/양평(2019.4.17.)
	강원(1) 양구군(2018.11.23.)

출처: 저자 작성<sup>121)</sup>

-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정에 포함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기준 광역11곳, 기초 30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sup>122)</sup>

「민주시민교육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행정구역단위	조례 제정 지자체
광역(11)	서울/경기/세종/대전/전남/전북/부산/인천/광주/충남/충북
기초(30)	서울(5) 강서/광진/노원/도봉/서대문
	경기(19) 성남/의정부/안양/수원/광명/하남/고양/파주/양주/용인/화성/남양주/군포/안산/양평/연천/이천/포천/구리
	경남(1) 김해
	충남(2) 아산/천안
	울산(1) 울주
	인천(1) 서구
	전남(1) 목포
교육청(13)	경기/서울/광주/전남/전북/충북/충남/강원/부산/경북/세종/인천/제주

출처: 차명제 외(2020: 39)

- 또한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자체별 편차가 심함.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도 (기초수)	읍면동 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프로그램 운영수	시도 (기초수)	읍면동 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프로그램 운영수
서울(25)	424	423	1,420	강원(18)	193	123	67
부산(16)	206	206	694	충북(11)	153	153	70
대구(8)	139	132	144	충남(15)	207	200	74
인천(10)	154	152	357	전북(14)	243	207	100
광주(5)	95	95	24	전남(22)	297	182	62
대전(5)	79	79	77	경북(23)	332	216	163
울산(5)	56	56	82	경남(18)	308	301	187
세종	19	19	50	제주	43	43	117
경기(31)	543	532	2,638				

출처: 행정안전부. (2020.06.26.). “201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nttId=78190](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nttId=78190)). (검색일: 2020.11.30.)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정책들의 법제도 정비와 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관련 정책들의 법적 근거 마련</li> <li>기초단위(시군구)의 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관련 조례 제정 활성화 촉진</li> <li>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 사업 추진</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관련 정책들의 입법화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지역사회혁신활성화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한 입법화 활동을 다각화하여 관련 정책들의 체계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ul> </li> <li>기초단위(시군구)의 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관련 조례 제정 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공동체/민관협치활성화/민주시민교육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및 지자체 배포·확산</li> <li>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 우수사례 발굴 확산</li> <li>사업지침/업무매뉴얼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강화: 추첨제 및 공개모집제 도입, 성별/연령별/사회적 약자 구성 비율 제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li> <li>* 위원회의 시민 참여 기회 확대: 위원회 내 확대분과위원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li> <li>*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위원회 내 분과체계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위원회 활동을 일상화/실질화, 민관 공동 위원장제 도입·운영</li> </ul> </li> </ul> </li> <li>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안부-교육부 협력과제로 '활동 중심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친환경에너지 강좌, 치유프로그램, 활동가 역량강화와 같은 '활동'으로서의 시민교육이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이영제 외, 2016: 51)</li> <li>*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주도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주민이 스스로 세우는 자치 계획 수립과 의제사업 실행, 주민총회, 자치회관 운영 등은 과정 전체를 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음(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li> <li>* 때문에 행안부와 교육부, 시민사회가 마을공동체 기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협력과제화 하여 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물리적 접근성과 참여 기회</li> </ul> </li> </ul> </li> </ul>

	<p>를 확대하여 지역 시민사회가 고루 활성화되도록 함</p> <p><b>【도시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 활동 아카이빙 및 시민교육 콘텐츠화</li> <li>* 지역자원(시민사회단체, 마을지원센터, 교육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주민 자치회 내 ‘시민교육분과’ 설치·운영</li> </ul> </li> <li>- 주민자치회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사업 지침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매년 일정 정도 목표치 설정</li> <li>* 행안부 자료(2019년 기준)에 의하면,<sup>123)</sup>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제주, 대구의 경우만 시민교육 프로그램 수가 설치 읍면동 수를 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설치 읍면동 수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일정 정도 목표치 설정 필요함</li> <li>※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례: 중요 실적 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KPI)에 입각하여 연간 4천 회 교육실시, 10만 명 목표 달성 방식으로 진행</li> </ul> </li> </ul> <p><b>【과소지역 및 농촌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단체들의 ‘활동’중심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활동’중심 시민교육 사례 발굴 및 아카이빙, 조사연구 사업 지원</li> <li>* 지역 내 단체들의 ‘활동’중심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li> <li>* 지역 단체들의 주민자치회관 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결 지원</li> </ul> </li> </ul>								
<p>추진 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9 931 486 979">연도</th> <th data-bbox="486 931 1265 979">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9 979 486 1110">2022년</td> <td data-bbox="486 979 1265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교육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li>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추진</li> <li>◦ 관련 정책들의 입법화를 위한 추가적 공론화</li> <li>◦ 참고 자치법규안/사업지침/업무매뉴얼 마련 및 배포</li> </ul> </td> </tr> <tr> <td data-bbox="339 1110 486 1211">2023년</td> <td data-bbox="486 1110 1265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확대</li> <li>◦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li> <li>◦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li> </ul> </td> </tr> <tr> <td data-bbox="339 1211 486 1260">2024년</td> <td data-bbox="486 1211 1265 1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교육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li>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추진</li> <li>◦ 관련 정책들의 입법화를 위한 추가적 공론화</li> <li>◦ 참고 자치법규안/사업지침/업무매뉴얼 마련 및 배포</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확대</li> <li>◦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li> <li>◦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교육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li>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추진</li> <li>◦ 관련 정책들의 입법화를 위한 추가적 공론화</li> <li>◦ 참고 자치법규안/사업지침/업무매뉴얼 마련 및 배포</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과제 시범사업 확대</li> <li>◦ 지자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li> <li>◦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환류</li> </ul>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단위(시군구)의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정책 활성화로 생활권 시민사회 기반 구축</li> <li>◦ 시민교육의 주민 참여 기회 및 접근성 확대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li> <li>◦ 생활권(읍면동 단위)의 시민교육 운영 확대로 시민사회가 저활성화된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li> </ul>								

119) 마을공동체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지원) 조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이 있음

120) 행정안전부. (2020.06.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5](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5)). (검색일: 2020.11.30.)

12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20.12.31.)

122) 민주시민교육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1997.1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박명환 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2019.3.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관한 법률안>(소병훈 외 10인)까지 총 8차례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차명제 외, 2020: 39)

123) 행정안전부. (2020.6.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5](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55)). (검색일: 2020.11.30.)

## 제4절

##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1.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는 공공정책을 혁신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등 공익창출에 기여함.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에 상응하는 공적재원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
- 20세기 후반 정부 실패를 계기로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 운영도 전통적인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 이른바 ‘열린 정부’, ‘플랫폼 정부’ 등의 개방적 행정으로 전환 모색 중.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후반 영국의 신혼합경제와 사회투자국가, 그리고 사회협약(Compact) 등을 매개로 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 관계 회복, 오바마 정부의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등에서도 확인됨(정병순, 2018: 4)
- 변화된 행정환경에서 시민사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조직체계의 유연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통해 정부 부문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공공정책 혁신을 견인하게 됨. 또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유대와 신뢰 등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하며, 자치역량을 갖도록 지원함
- 이러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은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음(박영선 외, 2019: 9-12).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재원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상응하여 공공재원을 배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은 시민사회가 성장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경향임. Salamon 등이 세계 33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 시민사회의 회비의존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62%, 선진국의 경우 45%였고, 정부 지원의 비중은 각각 22%, 48%였음(Lester M. Salamon 외, 2003: 29-33). 정부 지원이 시민사회 재원의 주축이 된 국가들은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의 시민사회들이 전체 국가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했음

- 정상호(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Salamon의 연구가 이루어진 20년 전만 해도 회비나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회비-압도형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범주에 속했으나, 최근 회비와 보조금,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선진국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음(정상호, 2020: 18-19)

## 2. 시민사회의 안정적 재정구조 구축 필요

- 공공혁신의 공동행위자이자 감시자로서 시민사회가 자율성, 독립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요구되나 여전히 미흡함
-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은 상당한 전문성과 노동시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조직 구성원에게 그 자체로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활동의 지속과 전문적인 역량의 확보가 어렵고, 재정난으로 인해 시민사회 조직이 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될 경우 그 공익활동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최근 실시된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김소연 외, 2018: 128)’,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과 활동 실태조사보고서(이형진 외, 2020: 30)’, ‘코로나 19로 인한 공익활동가 현황(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2019)’ 등 시민사회 활동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시민사회의 재정문제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됨
  - (서울지역) 상근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4%가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1순위로 답함
  - (인천지역) 129명의 응답자 가운데 월 활동비(급여)액수와 관련하여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20.9%, 50만 원 이하 18.6%,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10.9%로 절반가량(50.4%)이 100만 원 이하의 활동비(급여)를 받는다고 답함
  - (인천지역) 활동가로서 소진된다고 느끼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31.8%)
  - (코로나 19) 설문에 응한 공익활동가의 절대 다수인 83%가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활동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3. 시민사회의 재정안정성을 위한 정책 수단

- 시민사회 운영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회발전기금의 설치, 정부보조금의 확대와 제도보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회확대와 수익구조개선 등을 검토함
- 사회발전기금은 재정구조가 열악한 소규모/신생 시민단체들을 육성하고 장기적이거나 시장성이 낮은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등 시민사회에 역동성과 자생적 성장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와 용자를 통해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때로는 보조금처럼 상환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단년도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에서 포괄하기 어려웠던 중장기적 지원이 특히 용이해짐
- 정부 보조금은 시민사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 수단임. 시혜적 지원수단이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역할을 보조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임. 보조금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예산관리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규제 및 관리기준의 경직성을 개선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제도를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과관리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김소담 외, 2019: 7-9)
-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공공성을 발휘하기에 매우 적합한 협치적 정책수단임(이영재 외, 2020: 77). 보다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협치형 민간위탁사무 확대를 위한 수평적 협약체결 방안,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하에서는 시민사회발전기금의 경제적 기반은 어떻게 형성할지, 정부 보조금제도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민간위탁의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함

#### 4.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의 이행과제

-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 이행과제2: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 이행과제3: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 이행과제 1: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과제명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금법(안), 시민사회발전기금법(제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발전기금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조성이 논의됨</li> <li>• 20대 국회에 제출된 2건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 가운데 2018년 3월 발의된 진 선미 의원 안에 ‘시민사회발전기금 신설’이 조문화되어 포함됨<sup>124)</sup></li> <li>• 단년도 회계에 따라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등으로는 집행되기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나,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신생 시민단체의 사업수행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요</li> <li>• 시민사회활성화사업을 통해 달성하게 될 성과는 비용을 부담하는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전체의 공익이라는 점에서 부담금 등 원인자와 수익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재원의 활용은 부적절함. 그보다는 일반재원 및 기부금 등이 재원으로 고려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용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단체를 지원하 되, 때로는 보조금처럼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 자본의 기능을 수행할 기금이 필요</li> <li>• 시민사회 활성화 촉진과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li> <li>• 기금의 재원과 운용구조가 지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에 맞춰 설계되어야 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 조성 방안1. 주민세의 1%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치카와 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시민세액의 1%를 주민들이 선택한 지역 시민사회에 기부하는 ‘1% 지원제도’ 운영. 이치카와시의 경우 ‘1% 지원제도’는 2015년 종료되었으나 2016년부터 시작된 ‘이치카와 시민활동 서포트’ 제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이치카와 시민활동 서포트 제도’는 이치카와 시민활동 단체사업 보조금과 시민활동 종합지원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그중 시민 활동 종합지원기금(이치카와 하트기금)은 재원으로 시민의 ‘개인시민세(우리나라 주민세와 유사) 지정납세’<sup>125)</sup></li> <li>- 현 오이타 시의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개인시민세의 1% 상당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1% 응원사업(당신이 지원하는 시민활동응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19년 해당사업에는 26,087명이 참여했으며, 19,286,961엔이 교부될 예정임<sup>126)</sup></li> <li>- 따르면 이 같은 제도는 헝가리의 ‘1%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음(안신숙, 2015)</li> <li>- 1%법은 헝가리에 거주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이 소득세의 1%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NPO 및 기타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27)</sup></li> <li>- 2019년부터 주민세 중 균등분(4800원)을 주민자치회 시행 3년 차 등을 대상으로 주민 자치회 재원으로 지원(추진 근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li> <li>- 1% 지원제도의 근간이 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후루사토)’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임. 이 가운데 일부 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에서 지방세 납부 세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지정 타 지자체 세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음.<sup>128)</sup> 해당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일본처럼 기부처의 하나로 시민사회가 추가될 수 있음</li> </ul> </li> <li>• 법령을 통해 설치근거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방기금법상의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광역단위로 기금 설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 주민세에 관한 특례에, 주민세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li> <li>- '시민사회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li> <li>◦ 자원 조성 방안2. 법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공모금 대상 배분 대상에 시민사회발전기금 포함, 또는 시민사회 대상 배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배분기준)에 따라 매년 8월31일까지 공동 모금 자원 배분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배분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제한되어 있음</li> <li>- 2020년 진행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경우 79개소가 공모에 지원했으나 6개 팀만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li> <li>- 법정기부금단체인 '바보의 나눔'에서는 공모배분과 지정기탁의 방식을 통해 '비영리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비영리단체 실무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li> </ul> </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과 같은 주제공모형태의 신청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획사업에 시민사회지원을 확충하는 등 배분기준을 확대하고 배분규모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li> <li>◦ 이상의 방안 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신규 시민단체와 중장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취약 시민단체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인내자본으로 활용</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방안 마련</li> <li>◦ 필요시 법적근거 확충, 시민사회주도의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기금의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li> <li>◦ 기금의 지원 대상, 규모, 운용방식 등 확정</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인내자본으로 운용, 운용성과 공개</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방안 마련</li> <li>◦ 필요시 법적근거 확충, 시민사회주도의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기금의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li> <li>◦ 기금의 지원 대상, 규모, 운용방식 등 확정</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인내자본으로 운용, 운용성과 공개</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재원 확보방안 마련</li> <li>◦ 필요시 법적근거 확충, 시민사회주도의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기금의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li> <li>◦ 기금의 지원 대상, 규모, 운용방식 등 확정</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인내자본으로 운용, 운용성과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으로 장기적인 지원과 투융자 등 시민사회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능수행</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li> <li>◦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으로 장기적인 지원과 투융자 등 시민사회의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능수행</li> </ul>								

124) 한편 2019년 1월 발의된 권미혁의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공재원을 통해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안, 관리주체 등 세부사항의 법제화를 위해 기본법과 별개의 시민사회발전기금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우세

125) 이치가와시. "1%支援制度とは". (<https://www.city.ichikawa.lg.jp/pla06/1111000002.html>). (검색일: 2021.01.05.)

126) 오이타시. "1%応援事業(あなたが支える市民活動応援事業)「応援届出結果についておよび様式の掲載」". (<https://www.city.oita.oita.jp/o040/siminkyodo.html>). (검색일: 2021.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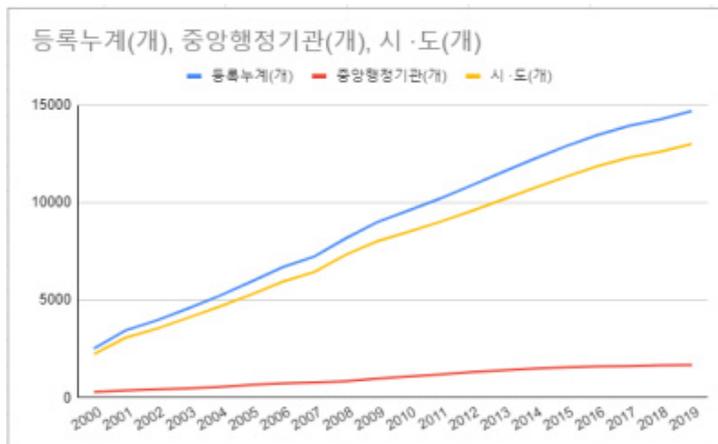
127) Council on Foundation. "Nonprofit Law in Hungary". (<https://www.cof.org/content/nonprofit-law-hungary>). (검색일: 2021.01.06.)

12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V0A0B7G0W2F1K3R5F6F5D4Q9V9R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V0A0B7G0W2F1K3R5F6F5D4Q9V9R2)). (검색일: 2021.01.05.)

이행과제2: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과제명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단체의 양적 성장과 대비되는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관변 단체에 편중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999) 제정을 계기로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경쟁을 통해 지원됨</li> <li>지원 첫해인 1999년 지원총액 규모는 15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75억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나머지 75억 원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주성수, 2017: 6-7)</li> <li>지원이 시작된 직후인 2000년 기준 2,524개이던 등록 비영리단체 수는 2019년 14,699개로 늘어나, 연평균 9.21%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li> </ul> </li> </ul>						
	「비영리단체 등록 수 시계열 추이(2000~2019)」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등록누계(개)	2,524	3,451	3,972	4,588	5,232	
	구분	중앙(개)	292	372	428	480	555
		시·도(개)	2,232	3,079	3,544	4,108	4,677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2,524	927	521	616	644	
	증감비(%)	0.0	36.7	15.1	15.5	14.0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누계(개)	5,953	6,699	7,241	8,175	9,003	
	구분	중앙(개)	663	743	790	845	981
		시·도(개)	5,290	5,956	6,451	7,330	8,022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721	746	542	934	828	
	증감비(%)	13.8	12.5	8.1	12.9	10.1	
		2010	2011	2012	2013	2014	
	등록누계(개)	9,603	10,209	10,889	11,579	12,252	
	구분	중앙(개)	1,092	1,189	1,319	1,413	1,494
		시·도(개)	8,511	9,020	9,570	10,166	10,758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600	606	680	690	673	
증감비(%)	6.7	6.3	6.7	6.3	5.8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누계(개)	12,894	13,464	13,933	14,275	14,699		
구분	중앙(개)	1,561	1,599	1,624	1,662	1,685	
	시·도(개)	11,333	11,865	12,309	12,613	13,014	
전년대비 증감단체수	642	570	469	342	424		
증감비(%)	5.2	4.4	3.4	2.5	2.9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인용하여 재구성							

비영리단체 등록 수 시계열 추이(2000~2019)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액」

(단위: 천원)

2017		2018		2019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건수	교부액
198	6,328,400	210	6,783,000	219	6,877,000

출처: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연도별사업정보”  
 (https://npas.mois.go.kr/hmp/infoPblntf/yearSbsidyBsnsSitu/yearSbsidyBsnsSituList.do?). (검색일:2020.11.30.)

- 그러나,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보조금 규모는 68억 7천만 원으로 지원 첫째보다 오히려 감소
-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에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편성할 예산은 2018년 98억 3천6백만 원, 2019년 102억8천9백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교부액이나 지급 첫째 교부액에 비해 다소 많은 금액임<sup>129)</sup>
- 그러나 2000년 기준 2,232개이던 시·도 등록 비영리단체 수가 2019년 13,014개로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의 규모는 20년간 답보상태 혹은 감소추세였다고 해야 할 것임
- 지자체의 단체당 연간 지원액 과소
  - 지원사업 예산액이 집계된 13개 시·도에서 2019년 기준 한 단체당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평균은 931만 원 수준에 불과
  - 경상남도의 경우 채 500만 원이 안되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500만 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에는 과소한 지원 규모
  - 광역지자체의 전체 세출예산액에서 해당 지원사업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
- 공모방식과 낮은 선정율로 인한 지원의 불안정성
  - 공모방식으로 교부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2020년 기준 신청 건수는 305건이며 이 가운데 73.11%인 223건이 선정됨.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 금액 149억 원의 절반보다 적은 72억 원이 선정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통계」

년도	신청건수	선정건수	신청대비 선정비율	신청	선정	신청액대비 선정액
2014	460건	293건	63.70%	315억원	133억원	42.22%
2015	490건	223건	45.51%	396억원	90억원	22.73%
2016	472건	225건	47.67%	358억원	90억원	25.14%
2017	418건	200건	47.85%	270억원	64억원	23.70%
2018	364건	218건	59.89%	209억원	70억원	33.49%
2019	333건	225건	67.57%	166억원	71억원	42.77%
2020	305건	223건	73.11%	149억원	72억원	48.32%
7년 평균			57.90%			34.05%

출처: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npas.mois.go.kr) 인용하여 재구성

-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2014년 이후 7년간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는 평균 57.90%에 그쳤고, 금액 기준으로는 34.05%만이 선정됨
-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의 비율에 비해 신청 금액 대비 선정금액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청 사업 중 소액 사업의 선정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 가능
- 공모방식의 교부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이 같은 낮은 선정비율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공모방식의 운영과 낮은 선정비율은 확보 여부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해당 보조금의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조하는 안정적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함
- o 지원구조와 지원방식의 문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정부보조금(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서 확인한 지원액 규모의 정체가 과소 외에도 법정단체 중심의 선별적 지원구조, 공모기반 사업보조금 중심의 제한된 지원방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또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박영선, 2015: 140)
  - 이와 함께 단년도 예산체계 하에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공고로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e-나라도움 등에 의해 수급과 집행이 엄격히 관리되면서 보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제약이나 일정 준수, 정산절차에 대한 과도한 규정과 행정적 요구에 대한 피로가 누적됨(전대욱, 2017: 7)
  - 보조금 관리 강화는 국고보조금의 민간보조금 예산 및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결과임(조주복, 2020)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민간 보조	경상	107,632	113,612	122,778	114,969	152,142	8.4%
	자본	17,663	19,650	20,218	16,935	15,510	
	소계	125,295	133,262	142,996	131,903	167,65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에서 재구성

「지방보조금 결산액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민간경상	민간단체 법정	민간행사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민간자본	총액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사업보조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보조	사업보조	
2017	3361	363	627	5298	4829	2226	16705
2018	3722	423	669	5526	5299	1578	17218
2019	4387	498	705	6216	6070	1423	19298

출처: 행정안전부(2019c), 행정안전부(2020c)에서 재구성

◦ 기초 지자체의 특정 단체 편중지원 문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지원 사업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극히 일부의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새마을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 특별법을 근거로 한 일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훨씬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조금 규모의 양적 확대와 보조금 성과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적 책임 및 효과 제고  
 - 보조금 관리에서 야기되는 행정적 피로감 감축을 통해 공공혁신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의 장애 요소 제거.  
 - 보조금의 시민사회 활동의 공공성 지원 책무 명확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모 확대  
 -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과 공적 영역에서의 사업 범위 확대 등 사회적 기능 성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였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의 규모를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의 경우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액 대비 선정액 비율을 60%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를 확대  
 → 광역지자체의 경우 단체별 지원금액을 행정안전부 지원액(단체당 평균 지원액 3천만원 수준) 수준 혹은 근접한 수준까지 제고하게 해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광역 지자체별 세출예산액 대비 지원 규모 혹은 지방보조금 예산액 대비 지원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

◦ 법령 개정을 통한 보조금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 활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 명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  
 -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의 특성상 활동가들의 노동력이 전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특히 훈련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명목으로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여전히 자기희생적인 운동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  
 - 영국 사회협약(Compact)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지침에서는 제8조에서 재정지원신청서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됨

	<p>→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책정하고 이를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적 취약성과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혹은 대통령령에 인건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확률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 예산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지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교부 및 사업방식을 강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대상자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음</li> </ul> </li> <li>→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 다각화</li> <li>◦ 규제차원의 평가 및 관리의 경직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수급문제와 방지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현재의 과도한 규율보다 사업별 자율규제도입 등 보조금 관리법 및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경직성 완화 필요</li> </ul> </li> <li>◦ 지원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및 관리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비용통제 중심의 관리를 공익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정책파트너에 대한 지원의 효과 중심으로 전환</li> <li>- 신청 및 진행, 정산 시점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기재부 및 행안부 관리지침 개선</li> <li>→ 회계·비용 관리 중심의 계량적 성과 평가를 사회적 가치 증진, 공익 제고 등에 대한 질적 평가로 전환</li> <li>→ 나아가 정부 보조금 사업의 공적 책임성, 협치적 특성과 함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치친화적(협치지향적) 균형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li> <li>- 실적에 기반을 둔 경영성과(BSC성과평가)와 협치역량(협치성과평가)를 함께 평가(정병순, 2018: 15-17)</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8 1058 461 1120">연도</th> <th data-bbox="461 1058 1265 1120">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8 1120 461 1292">2022년</td> <td data-bbox="461 1120 1265 1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li>- 예산확대기준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li> <li>-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예산편성 관련 원칙 수립</li> <li>- 보조금 예산확충을 통한 선정 가능성 제고</li> </ul> </li> </ul> </td> </tr> <tr> <td data-bbox="338 1292 461 1366">2023년</td> <td data-bbox="461 1292 1265 1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보조금 운영비 활용근거 마련</li> <li>◦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의 입법례 참고 및 입법 필요성 설득 논리 개발</li> </ul> </td> </tr> <tr> <td data-bbox="338 1366 461 1493">2024년</td> <td data-bbox="461 1366 1265 1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방식 개선방안</li> <li>◦ 성과평가 등 보조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li>- 예산확대기준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li> <li>-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예산편성 관련 원칙 수립</li> <li>- 보조금 예산확충을 통한 선정 가능성 제고</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보조금 운영비 활용근거 마련</li> <li>◦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의 입법례 참고 및 입법 필요성 설득 논리 개발</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방식 개선방안</li> <li>◦ 성과평가 등 보조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li>- 예산확대기준 수립,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li> <li>-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예산편성 관련 원칙 수립</li> <li>- 보조금 예산확충을 통한 선정 가능성 제고</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보조금 운영비 활용근거 마련</li> <li>◦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의 입법례 참고 및 입법 필요성 설득 논리 개발</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방식 개선방안</li> <li>◦ 성과평가 등 보조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기능 및 정책목표 충족</li> <li>◦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정책목표 실질적 달성</li> </ul>								

129) 해당 예산은 전담부서의 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타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 등의 경우 누락 가능성이 있음

## 이행과제 3: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과제명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관련 법령 (근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계류 중)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 민간에게 맡기는 제도로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재정적 부담은 공공부문에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근거에 따라 운영됨</li> <li>◦ 민간위탁사무는 수행사무 분야별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과 내용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다양화, 세분화, 고도화되고 있음(배성기, 20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등 총 86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고용노동부, 2018: 51)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 수는 총 10,099개임</li> </ul> </li> <li>◦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공공성을 발휘하기에 매우 적합한 협치적 정책수단임(이영재 외, 2020: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의 제3섹터 민간위탁의 경우 각각의 전문성을 가짐과 동시에 제3섹터 분야의 고유가치를 중심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8: 121)</li> <li>- 시민사회가 그 고유한 공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사무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li> </ul> </li> <li>◦ 그러나, 민간위탁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수탁기관에 부담만 가중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절차와 인사 및 고용 관련 규정에 있어서 합리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영역에서 확보된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간위탁사무 담당</li> <li>- 시민사회의 공공서비스 생산주체로서의 역할 제고</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2020)'에서는 협치형 민간위탁사무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 등 내부규정 개정사항에 수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노동 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를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음</li> <li>-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의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힘</li> <li>- 또한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명시</li> <li>- 수탁기관 선정 시 이러한 기준이나 평가항목 등을 적용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사무 수행 기회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li> <li>-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본법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현</li> </ul> </li> </ul>

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률안에서는 제 11조 제6항에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을 선정기준 및 가산점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혹은 대통령령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항목이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에 실질적인 가점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시민사회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등에 근거해 지정위탁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탁구조를 모색
- 민간위탁사무의 사업계획 확정 사전단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 수립에 수탁자가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수탁기관(시민사회)·주민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협치모델 구현

○ 예산 및 회계 등 운영규정의 합리성 제고

- 기관의 중장기 유지관리, 재투자 등에 총당하는 '민간위탁수수료'를 총지출대비 합리적 비율 기준을 정하고 협약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제도의 예산 및 회계관련 규정 정비
- 행정환경과 사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탄력적인 예산계획 수립 가능하도록 위탁비용산정방식 개선(정병순 외, 2018: 147-150)

○ 민간위탁기관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료 등 관리수입이 제고된 경우 그 일정비율을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수탁기관이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정비, 협약 체결 시 반영(서울시, 2018: 9)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해 수탁기관에 예산을 추가지급하거나 위·수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의 직접투입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포괄적 예산집행 허용,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 수탁기관의 지정기부금 직접 수탁, 외부 사업기금 유치 등 자금유치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운영역량 제고-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위탁사무의 수익구조 악화·정책변화(이용료 인하 등)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지원 근거 마련

○ 민간위탁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제도를 협치지향적 평가제도로 재정립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재의 평가방식은 관리·통제적 시각에서 결과 및 효율 중심으로 평가. 민간위탁사무의 협치적 성격 반영한 평가제도로 개선할 필요
- 참여형 평가프로세스에 기반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건설당하고 경영성과와 협치역량을 균형적으로 종합평가하는 협치지향형 평가체계 구축 필요(정병순 외, 2018: 17-19)

○ 사회성과보상(SIB)사업 확대

- SIB는 개인,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등 민간부문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임(행정안전부, 2017b)
- 교육·복지·주거·고용·환경·문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민간단체나 민간조직, 민간기업 등에서 조달하고, 사업목표 달성, 즉 사업성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의 부족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정책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기존 정책사업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집행(김정욱 외, 2019)과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
- 시민사회로서는 수익발생이 제한되는 기존의 보조금사업과 달리 새롭고 다양한 공익적 활동의 사업적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도적인 사업성과를 통해 재원을 확보

→ 시민사회의 공공사무 참여를 통한 사회적 성과 창출 및, 수익 실현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사회성과보상(SIB)사업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연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치형 민간위탁사무의 범위 확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항목에 공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등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사무 참여기회 확대 위한 다각적 개선방안 논의</li> <li>◦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령에 논의내용 반영</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수탁 시 가산점 부여 등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사무수탁기회 확대 조치 마련</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무의 개발</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실행과정에서 공공혁신의 과제 수행하는 민관협치의 사업기회를 실현하면서 활동 및 운영비용 확보</li> <li>◦ 공공정책에서의 창의적 전문성 발휘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사회 전체의 공익제고에 기여</li> </ul>	

## 제5절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김유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1. 새로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과 당면과제

### □ 새로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sup>130)</sup>

- 기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201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출범하였고,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경우,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 성장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책 사항 심의, 국무총리 자문 역할을 이행하였음
  - 4개 분과위원회는 시민사회 발전 기반조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소통 및 협력 분과위원회로 구성
- 1~2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기부터 차관급 정부위원 5명(기재부 차관, 행안부 차관, 문체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포함됨
- 2020년 6월 기준 총 574개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는 59개 위원회<sup>131)</sup>가 있으며(행정안전부e, 2020e: 1),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20년 출범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정부위원의 장관급 격상, 참여 정부 부처의 수 역시 9개로 확대되고 소비자, 인권, 국제협력,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됨

### □ 총괄기구로서의 방향성 확립 필요성 증대

- 위원회 위상의 제고와 사회적 다양성 반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기준 마련과 운영 활성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130)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7.11.20.)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8093>) (검색일: 2021.01.14.)

- 이와 관련한 당면과제로 예상되는 것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방안, 지표 논의, 환류와 적용 및 개선을 담당할 수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존 광화문 1번가와 지자체의 플랫폼 운영에서의 시행착오와 미흡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시민사회 통통' 플랫폼의 기능고도화와 운영 활성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로 사무국 신설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와 보상의 방안으로 시민활동가에 대한 시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 가.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감독 기능의 필요성

-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 제기
  - 기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보다 그 위상이 격상되고 참여 분야가 확대되었으나, 새로이 출범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현재 제도개선분과와 소통 및 협력 분과 2개로만 구분
  - 참여 분야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의 분과위원회만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방안, 지표 논의, 결과 환류와 활용 및 과제 개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이 수반되어야 함
    -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안전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정,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나 성과평가위원회(가칭)에서 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 환류, 점검 등의 기능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성과평가 기능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평가와 계획 수립 결정이 요구됨
  - 평가 심의 기준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특혜성 지원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신설 사업 혹은 시행계획 이행 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나.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 □ 기존 하향식 정책모형에서 상향식 정책모형의 플랫폼으로의 변화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을 기획하여 전달하는 하향식 정책모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현안/수요 파악과 반영이 어렵고, 해결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국민 생각함,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경기도의 소리 등의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플랫폼들이 신설되었고, 2017년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하여 67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있어, 시민참여 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 설치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
- 영국은 의견수렴에 있어 공론화 과정을 중요시하여, 폴리시랩을 통해 정책형성 매뉴얼인 툴키트를 공개하고, 24시간 이내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 제안을 위한 패스트 트랙도 운영함
- 영국은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 주도하에 주택·지방정부·커뮤니티 부와 각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민주포럼(Area Democracy Forums)<sup>132)</sup>을 지방 협치와 정책개발을 위한 공론장으로 활용하며, 공개 세미나 운영 및 시민단체 참여를 권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 시민사회 관련 플랫폼의 운영, 2020년 12월 30일 ‘시민사회 통통’ 개통<sup>133)</sup>

- 시민 누구나 정책 제언,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공간들을 지원함
-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보(제도, 법령) 등을 확인하고, 정보 수집 및 공유, 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들을 제공함
- 개통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문의 글이 없으며, 기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각종 매뉴얼과 정보의 나열식 구조로 정보 검색에 있어 한계가 있음
- 홈페이지 통합 담당자와의 연락 한계 발생: 플랫폼 이용 문의와 불만 사항 접수는 메일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 통합 담당자 파악 어려움

132) Area Democracy Forum. “About us”. (<https://www.thedemocracyforumltd.com/about-us/>). (검색일: 2020.08.22.)

133)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0.12.28.). “총리실, 시민사회와의 온라인 소통협력 플랫폼 ‘시민통통’ 개통”.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23>). (검색일: 2021.01.14.)

- 여전히 지역 및 기관별로 분절화된 플랫폼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 또는 시도-시도 간 협업의 한계 발생
  -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 홈페이지에서의 배너 등을 통한 연계방안 및 플랫폼의 홍보, 정보 공유 방안, 중앙-시도 연계를 위한 상호협업체 논의 등이 수반되어야 함
- 플랫폼 활성화 추구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플랫폼 개발은 협업에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한 인력충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필요
  - '경기도의 소리'의 경우, 경기 넷,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개별적 운영 되던 제안 및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합하여 2019년 1월 개통<sup>134)</sup> 하였으나 국민청원의 경우 803건 중의 1건만이 답변 기준인 5만 명 동의에 성공했으며, 도민 발안의 경우, 31건 중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없고, 도민 일반 제안도 0건임<sup>135)</sup>
  -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기능고도화, 홍보를 통한 참여 촉진 및 활성화가 플랫폼의 개발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운영
  - 온라인 플랫폼이 편리하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오프라인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은 시민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자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면대면 논의와 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고령화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시민 혹은 시민단체 구성원이 정보화 기기 부족 혹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져, 담당 공무원과의 온라인 소통이 불가하거나, 물리적 이유로 면대면 만남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정보화 기기를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적절히 살리는 플랫폼 개발과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134) 경기도 뉴스 포털. (2019.01.02.). "도민 참여 쉽고 빠르게! ...'경기도의 소리' 2일 서비스 개시".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51DB79DD62A024B49630783738A4D456.ajp13?number=201901021648367055C048&s\\_code=C048](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51DB79DD62A024B49630783738A4D456.ajp13?number=201901021648367055C048&s_code=C048)). (검색일: 2021.01.02.)

135) 경기도의 소리. "도민 발언". (<https://vog.gg.go.kr/>). (검색일: 2021.01.17.)

- 이를 위해, 시도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계획과 중앙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상호협의체 운영, 온-오프라인 균형발전 및 기능고도화,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구조 세분화 및 본격적 활동에 앞서 이를 지원할 사무국 설치 필요
  - 관련 업무 및 행정지원의 필요
  - 사회보장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에서 사무기구,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전담 부서(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집행 및 사무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 앞서 플랫폼 운영의 미흡과 더불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무국에서도 시민제언에 대한 응답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소통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이 필요함
- 시민사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시민활동가에게 동기부여 제공 필요
  - 시민사회 활동가에 의한 사회 변화와 사회공헌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 필요
  - 시상을 통해, 노력에 대한 심리적 보상 및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 또한 관련된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Point of Light 제도를 통해 총리실이 직접 지역 발전과 사회 변화에 기여한 이들을 지명하여 홈페이지에 그들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의제 발굴과 관련 시민활동가들의 참여와 연대가 커지고 있음

### 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 이행과제2: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 이행과제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이행과제 1: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과제명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관련 부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조, 제12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부위원의 장관급 격상과 참여 부처 확대, 여성 및 청년 위원 참여 등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 가능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6월 말 기준 대통령령과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85개로 이 중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526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는 59개임(행정안전부, 2020e: 1)</li> </ul> </li> <li>◦ 2020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제도개선 분과와 소통 및 협력 분과 2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2017년(국무총리훈령)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sup>136)</sup>의 경우, 분과위원회가 4개로 더욱 세분화 되어 있었음: 시민사회 발전 기반조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소통 및 협력 분과위원회</li> </ul> </li> <li>◦ 대통령령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고 역할의 중요도가 커진 상황에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분화 및 역할 수행에 대한 기준 마련(운영세칙 마련)으로 총괄기구로서의 방향성 확립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경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구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 중임</li> </ul> </li> <li>◦ 특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점검과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가칭) 또는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관련 사업의 심의, (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 수립 필요</li> </ul> </li> <li>◦ 성과평가위원회(가칭)마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또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논의와 조정·협의를 사전에 담당하고, 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총괄함에 따라 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평가·환류 및 점검을 담당하게 됨</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례 1: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평가 전문위원회<sup>137)</su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와 평가 전문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로 나누어 운영세칙을 두고 있음</li> <li>- 만족도 조사, 국민 인식조사, 시행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운영방안, 평가결과 공개 및 차기 사업 반영을 위한 환류 시스템, 현장 의견 반영방안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위원회 신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시행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혜성 지원 가능성 농후함</li> <li>- 평가 심의 기준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신설 사업 혹은 시행계획 이행 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li> <li>- 평가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제도의 개선점을 환류 작업을 통해 보완해감으로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화 가능</li> <li>- 평가계획 수립, 서면 자료와 현장점검 결과 바탕으로 한 평가 방식의 다양화, 시행계획의 체계성, 성과지표 적절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활동의 계획 수립과 결정, 성과평가위원회(가칭)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가와 계획 수립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이행과제3과 연계)</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것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그 위상이 제고되고,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됨. 이에 총괄기구로서의 방향성 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필요</li> </ul> </li> <li>◦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과 아울러 운영세칙과 시민사회 관련 사업 평가지침 및 환류 방안 마련의 필요</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li> <li>◦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운영세칙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과정 및 방식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논의</li> <li>- 시민사회 관련 시행계획의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집행과정 및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 심의, 계획 수립 및 결정에 환류하기 위한 지침 마련</li> <li>-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권한 부여</li> <li>-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참여 필요</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 성과평가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평가 과정·방식·평가결과 반영 매뉴얼(평가지표 포함) 및 평가기획 수립</td> </tr> <tr> <td>2023년</td> <td>◦ 전년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 환류 및 수정/ 평가위원회 추후 계획 수정 및 운영에 반영</td> </tr> <tr> <td>2024년</td> <td>◦ 2개년 간의 성공/실패사례를 통한 기본계획 수정과 평가위원회와 전문성 고려 및 평가/환류 방안 재정비</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성과평가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평가 과정·방식·평가결과 반영 매뉴얼(평가지표 포함) 및 평가기획 수립	2023년	◦ 전년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 환류 및 수정/ 평가위원회 추후 계획 수정 및 운영에 반영	2024년	◦ 2개년 간의 성공/실패사례를 통한 기본계획 수정과 평가위원회와 전문성 고려 및 평가/환류 방안 재정비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성과평가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평가 과정·방식·평가결과 반영 매뉴얼(평가지표 포함) 및 평가기획 수립							
	2023년	◦ 전년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 환류 및 수정/ 평가위원회 추후 계획 수정 및 운영에 반영							
2024년	◦ 2개년 간의 성공/실패사례를 통한 기본계획 수정과 평가위원회와 전문성 고려 및 평가/환류 방안 재정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점검에 대한 성과평가 매뉴얼과 평가기획 수립</li> <li>◦ 평가에 따른 결과 반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에 있어 실효성 제고 기대</li> <li>◦ 성과평가실시를 통해 개선사항 제시 가능, 관련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 도입 및 연계 가능</li> </ul>								

136) 연합뉴스. (2017.11.20.). “3기 시민사회발전위 출범…이총리 “난제에 의견 모아주길””.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0164400001>). (검색일: 2021.01.10.)

137) 대한민국 ODA. “평가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tn2.EvCmtRsltSIPL2.do?brd\\_seq=25&bltn\\_div=oda](http://www.odakorea.go.kr/hz.bltn2.EvCmtRsltSIPL2.do?brd_seq=25&bltn_div=oda)).  
 (검색일: 2021.01.14.)

## 이행과제 2: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과제명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부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2항, 제13조, 제15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중 제2조에 근거하여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라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li> <li>◦ 시민사회의 요구와 현안을 적시에 파악하고, 공익증진과 시민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함</li> <li>◦ 영국시민사회전략집(2018)<sup>138)</sup>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번영에서 나오며, 사회 각 영역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커진다고 믿기에 플랫폼을 하나의 사회혁신 공간으로 볼 수 있음</li> <li>◦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시·도 주도로 정책이 기획되어 주민에게 전달되는 하향식 정책 모형(top-down)이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현안/수요 파악 혹은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li> <li>- 이에 주민의 자발적 제안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도 혹은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책모형(bottom-up)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짐</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례 1: 국민 생각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참여를 높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혁신을 하고자 '국민생각함<sup>139)</sup>' 사업을 실시함</li> <li>- 국민들이 직접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계-집행-평가' 하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국민 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2019)<sup>140)</sup>'를 통해 정책자문과 정책으로서의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도가 있었음</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례 2: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sup>141)</su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에서는 민선 7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됨(최준규, 2019), 마을의 정책적 수요를 주민이 의제화하고 이를 경기도 전체 자원의 정책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제안함</li> <li>- 그 결과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경우 20개의 정책제안을 경기도에 전하고 정책 부스를 만들어 논할 수 있었음</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국민참여 정책제안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배경을 통해,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온·오프라인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설치하게 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례 1: 광화문 1번가 내 혁신제안톡<sup>142)</sup></b></p> <p>제안토론-숙성-정책화 과정을 거쳐 3,784건 중 67건의 정책반영을 이루었음(2020년 12월 29일 기준). 공개와 댓글을 통한 숙성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정부 혁신 국민포럼과 정부 혁신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책화에 이르게 됨</p> </div>

사례 2: 광화문 1번가 내 협업이음터<sup>143)</sup>

민간·공공 모두가 접속하여, 개방형 플랫폼에서 함께 일하고픈 협업 파트너를 찾아 이어주는 정책

- 그러나 여전히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 분산·분리 운영되는 플랫폼과 플랫폼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관련 시민단체 혹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누락 혹은 중복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임

◦ 한국 지자체 공론화 과정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례

사례 1: 서울시의 경우, 갈등관리의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추진단 구성, 공론화 사업추진 관련 의제 발굴하여 숙의 과정을 진행함<sup>144)</sup>

사례 2: 인천시의 경우, 소통을 위한 양방향 시민 온라인 토론장을 만들어 상호정책제안과 토론을 위한 의사소통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sup>145)</sup>

- 지난 3개년 간 300~500명의 시민이 모이는 원탁토론회로서 “인천 시민 시장 대토론회”를 진행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7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토론을 진행
-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통해 PPPP(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 즉, 공공-민간-시민 협력체계에 기초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sup>146)</sup>

사례 3: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5개 분과로 2019년부터 운영 중<sup>147)</sup>임

사례 4: 공주시 경우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2019년부터 운영 중임<sup>148)</sup>

- 지자체의 시민소통위원회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능동적인 시민참여 행정을 위하여 정책제안과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지자체 시민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장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관련 현안 및 정보파 악을 위한 협의와 논의의 창구 마련 필요.

- 영국의 공론화 과정 및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플랫폼 사례

사례 1: 폴리시랩<sup>149)</sup>을 통한 정책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운영

: 정책형성을 위한 매뉴얼인 툴키트를 공개하고 ‘정책 문제 발견-사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아이디어 창출-아이디어 발전과 전달’의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자와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론의 과정 마련

: 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 제언이나 제안의 경우, Policy lab in a day라는 매뉴얼을 별도로 두고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음

사례 2: 영국은 지역민주포럼(Area Democracy Forums)<sup>150)</sup>을 통해 지방 협치 및 정책개발에 있어 공론화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함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면대면 참여를 대체하고,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주포럼이라는 비영리 NGO가 3~4회 공개 세미나를 운영하고, 사회-정치적 이슈 및 민주적 가치들에 관한 토론과 공론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
-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의 주도하에 주택, 지방정부와 커뮤니티(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MHCLG)부와 각 시민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NPAS)<sup>151)</sup>과 시민사회 통통(2020년 12월 30일)<sup>152)</sup>을 들 수 있음</li> <li>• 현재 시민사회 통통 시행(2020년 12월 30일 개통)중이나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비영리단체 등록 및 허가과 관련한 매뉴얼, 관련 정보, 시민단체 목록 등이 나열식 구조로 게시되어 있어 관련 시민단체 혹은 중앙-시도 연계사업을 위한 정보를 찾는 데 한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에 있어 지역별, 분야별 도식화 작업으로 정보 검색의 용이성 증대가 필요할 것</li> </ul> </li> <li>• 플랫폼의 개발과 신설은 이루어졌으나, 운영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경기도의 소리'의 경우, 플랫폼의 운영과 활성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만 1년이 지나도록 활용도가 낮음(국민신문고와 중첩)<sup>153)</sup></li> <li>- 지역별로 분절화 된 플랫폼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중앙-시도 또는 시도 간 협업의 한계 발생</li> <li>- 유사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개선점과 관련 사업의 발굴, 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 도모가 현실적 어려움</li> </ul> </li> <li>• 플랫폼의 개발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활성화 추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및 예산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li> <li>- 시민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과 해결에 있어 선(先) 경험을 지닌 지자체의 노하우, 경험치 공유 및 협업사업을 위한 플랫폼의 연계 운영방안 필요</li> <li>- 영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플랫폼 내 패스트 트랙 설치해 두었으나, 한국의 광화문 1번가의 경우, 답변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됨</li> </ul> </li> <li>•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시민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적합한 의제 발굴과 공론화 과정을 위한 연계 및 협업 방안 마련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화문 1번가의 경우 공개형 댓글을 통해 찬반을 표현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의견 교환 및 보완과 같이 숙의를 위한 공론을 위한 과정 및 방안 마련 필요</li> </ul> </li> <li>•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균형 있는 개발과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면대면 논의와 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많음</li> <li>- 고령화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정보화 기기 부족 혹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져 소속 공무원과의 온라인 소통이 불가하거나, 물리적 이유로 면대면 만남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li> <li>-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고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적절히 살려 전화문의 및 담당 공무원 '리' 혹은 '군' 단위 파견 고려</li> </ul> </li> <li>• 사랑의 그린 PC 사업 또는 온라인 플랫폼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 병행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론화 및 공개 세미나,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 방안도 마련해야 함</li> </ul> </li> <li>• 이를 위해, 시도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계획과 중앙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상호협의체 마련, 온-오프라인 균형발전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역별로 분절화된 플랫폼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중앙-시도 또는 시도 간 협업의 어려움: '시민사회 통통'으로의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상호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제기)</li> <li>• 시민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사례에 대한 중앙-시도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 공유 및 성공/실패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통합적인 연계 및 협력 추구 필요</li> <li>• 플랫폼 개발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거둘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플랫폼 장점을 살려 균형적 발전방안 구상</li> <li>- 플랫폼 운영 활성화로 실효성 확보</li> </ul> </li> <li>• 상시적인 시민사회 발전 관련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을 위한 플랫폼 형성으로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안전 심의의 효율성 및 적시성 확보 필요</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기능과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형성 및 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익증진에 대한 제언, 공유, 토론 활성화 도모</li> <li>- 소통협력분과위원회를 통한 시민통통 플랫폼 기능 고도화, 홍보 및 사용 활성화</li> <li>- 차후, 사무국 설치 후 소통과 홍보를 위한 접수 데스크 신설 고려(홈페이지상 메일과 전화로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으나, 메일 문의만 가능하며 플랫폼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와 같은 관련 내용 없음)</li> </ul> </li> <li>◦ 담당자 상시 대기, 홍보 및 시민 피드백 활성화 시 포인트 부여, 봉사시간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통통 사이트 검색에 있어 지역별, 분야별 도식화 작업으로 용이성 증대</li> <li>- 온-오프라인 플랫폼 장점을 살린 균형적 발전 및 운영방안 마련</li> </ul> </li> <li>◦ 시·도시민사회발전위원회(제13조) 운영 세칙(제15조)을 통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 연계를 위한 상호협약체 마련,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지자체의 현안 및 협업 논의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별/분위별 거버넌스 기구 구성 및 운영 필요</li> <li>- 지자체 시민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장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관련 현안 및 정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의와 논의 창구 마련</li> </ul> </li> <li>◦ 필요에 따라 시도 시민발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의 파견(제11조) 및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한 협력 방안 마련(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통통 플랫폼 운영에 있어 중앙-시도 시민발전위원회에 대응 담당자를 두어 신속한 응답을 통해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협의의 중심점이 되도록 할 것</li> </ul> </li> </ul>								
<p>추진 일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2 975 501 1024">연도</th> <th data-bbox="501 975 1270 1024">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1024 501 1124">2022년</td> <td data-bbox="501 1024 1270 1124">◦ 지자체별 시민사회 관련 플랫폼 현황조사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안정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상호협약체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시민사회 통통 기능과 구조 변경</td> </tr> <tr> <td data-bbox="342 1124 501 1195">2023년</td> <td data-bbox="501 1124 1270 1195">◦ 통합 플랫폼/상호협약체 안정화와 활성화/홍보, 운영을 통한 피드백, 현지 실정 파악 및 반영</td> </tr> <tr> <td data-bbox="342 1195 501 1276">2024년</td> <td data-bbox="501 1195 1270 1276">◦ 2개년 간 경험을 통한 플랫폼/상호협약체 운영방안 수정 및 보완, 부처 및 지자체 현지 실정 반영하여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활성화</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자체별 시민사회 관련 플랫폼 현황조사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안정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상호협약체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시민사회 통통 기능과 구조 변경	2023년	◦ 통합 플랫폼/상호협약체 안정화와 활성화/홍보, 운영을 통한 피드백, 현지 실정 파악 및 반영	2024년	◦ 2개년 간 경험을 통한 플랫폼/상호협약체 운영방안 수정 및 보완, 부처 및 지자체 현지 실정 반영하여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활성화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지자체별 시민사회 관련 플랫폼 현황조사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안정적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상호협약체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시민사회 통통 기능과 구조 변경								
2023년	◦ 통합 플랫폼/상호협약체 안정화와 활성화/홍보, 운영을 통한 피드백, 현지 실정 파악 및 반영								
2024년	◦ 2개년 간 경험을 통한 플랫폼/상호협약체 운영방안 수정 및 보완, 부처 및 지자체 현지 실정 반영하여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활성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익증진 정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사회 자립성 증대 및 관련 정보 축적 및 공유 가능</li> </ul> </li> <li>◦ 성숙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적절한 안건 선정과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성숙화에 기여 가능</li> <li>◦ 시도계획 수립과 지원과 협업을 위한 중앙과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자체 현지 실정 반영 가능</li> <li>◦ 지속적인 운영으로 환류를 통해 플랫폼의 한계 발견 및 개선 가능</li> </ul>								

138) 영국 시민청. “시민사회전략집”.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2765/Civil\\_Society\\_Strategy\\_-\\_building\\_a\\_future\\_that\\_works\\_for\\_everyon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2765/Civil_Society_Strategy_-_building_a_future_that_works_for_everyone.pdf)). (검색일: 2020.08.07.)

13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검색일: 2020.12.24.)

140)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2019.10.04.). “상상이 정책이 되는 시간, 제 1회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 (<https://blog.naver.com/loveacrc/221668274372>). (검색일: 2020.11.08.)

141) 경기도 정책 네이버 블로그. (2018.10.02.).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펼쳐지는 2018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만나야 보이는 것들’”.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368868646](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368868646)). (검색일: 2020.10.20.)

- 142) 광화문 1번가. “혁신제한독”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ListPage.do?menu\\_id=399](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ListPage.do?menu_id=399)).  
(검색일: 2020.12.03.)
- 143) 광화문 1번가. “협업이음터”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tching/matchingListPage.do>).  
(검색일: 2020.12.29.)
- 144) 서울정보소통광장. (2018.03.08). “서울시 공론화 사업추진 관련 의제 발굴 제출 요청”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790454>). (검색일: 2020.12.15.)
- 145)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소개” . (<https://www.incheon.go.kr/IC020401>). (검색일: 2021.01.15.)
- 146) 인천뉴스. (2020.07.01.). “「인천 시민 시장 대토론회」, 온라인 토론 첫 시험대”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95>). (검색일: 2020.12.03.)
- 147) 노컷 뉴스. (2020.01.10.).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원 100명 공개 모집”  
(<https://www.nocutnews.co.kr/news/5087661>). (검색일: 2020.11.20.)
- 148) 뉴스스토리. (2020.07.02.). “공주시 100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본격 출범”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9>). (검색일: 2020.12.14.)
- 149) 영국 폴리시랩 . “툴 키트 홈페이지” . (<https://www.gov.uk/guidance/open-policy-making-toolkit>). (검색일: 2020.09.05.)
- 150) Area Democracy Forum. “About us” .(<https://www.thedemocracyforumltd.com/about-us/>). (검색일: 2020.08.22.)
- 151)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정보시스템(NPAS). (<https://npas.mois.go.kr/main.do>). (검색일: 2020.09.17.)
- 152) 시민사회통통. (<https://civil.opm.go.kr/site/index.do>). (검색일: 2021.01.10.)
- 153) 경기도의 소리. “일반제안” .([https://vog.gg.go.kr/?page\\_id=162](https://vog.gg.go.kr/?page_id=162)). (검색일: 2021.01.03.)

### 이행과제 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과제명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관련 부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4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구조 확대 및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원활한 지원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사무기구를 두어 세부 분과위원회 및 조직구조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사례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8항에 사무국장 1인, 사회보장총괄과 10명, 사회보장조정과 20명, 사회보장평가과에 11명을 두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sup>154)</sup></p> <p>사례2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사무국: 2010년 개발 협력정책관실을 국무조정실 내 신설하였고, 개발 협력정책관(국장) 이하 개발 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 협력지원과로 구성되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업무처리를 지원함<sup>155)</sup></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경우, 기존 특정 분야에 집중된 위원회들과는 달리 시민사회 참여와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 전범위적 활동이 예상되며, 현재 2개 분과로 나뉘어 있으나 추후 조직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활동에 있어 현재의 구조로는 안정적인 지원과 사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비서실 내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 내 사무관 1인, 비서관 1인 총 11명 근무(2021년 1월 기준)</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사례 3 금융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 하 행정인사과,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금융안정지원단이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 18개 과 기획조정단(3 담당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을 신설하여, 시민사회비서관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관련 정책적용과 지원에 있어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함</li> <li>• 분과 신설 및 조직 구성의 세분화에 대한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보다 분과 구분이 단순하여 현재의 구조로는 추후 다양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함</li> <li>- 현재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2개 분과로 활동이 시작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활동의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가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li> <li>- 이 외에도 현재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인 '시민통통'의 경우, 문의를 위해서는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상 총괄할 담당전화번호가 고지되어 있지 않고, 현재 관리자에 의한 글 외에는 시민에 의한 활동이 전무한 상황임(2021년 1월 15일 기준)</li> <li>-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플랫폼 활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응답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활동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담당할 홍보 및 대응부서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ul> </li> <li>• 사무국 신설 시 인력 수급 및 관련 예산 조달방안 마련 필요</li> <li>•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상시적인 시민활동가 활동 내용 파악과 시민활동가에게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수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수상자에게는 그동안 활동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경우, Point of Light 제도가 총리실과 시민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의제 발굴의 또 다른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영국 Point of Light<sup>156)</sup> : 1990년 미국 George H.W. Bush 대통령이 시작하여, 2014년 영국 총리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 총리에 의해 지역 발전과 사회 변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의인, 어떠한 아이디어를 현실(정책)로 지역에 실현한 개인을 지명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제 해결, (특정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제고, 모금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수상이 지명하여 사진과 이름, 활동 소개를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와 연대가 커지게 됨</li> <li>-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명함에 따라 본인의 활동에 큰 동기부여와 일종의 보상이 되고 있음</li> <li>-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지명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개인이 총리실에 활동에 대한 설명과 정책제안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의제들이 발굴되기도 함</li> </ul> </div>								
<p><b>추진 필요성 및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의 기능 활성화 및 운영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조직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사무국 신설의 필요</li> </ul> </li> <li>◦ 시민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상 및 동기부여 방안으로 총리실에서의 수상자 지정 필요</li> </ul>								
<p><b>주요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지원과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으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업무 분담</li> <li>- 전담부서 세분화 및 인력충원 방안</li> <li>- 관련 예산 조달방안</li> <li>- 홍보 및 소통을 위한 담당 부서 신설</li> </ul> </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모델/공익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위원/지자체/개인에 대한 시상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제도의 선정 기준 마련 및 보상 수준 방안 마련</li> </ul> </li> </ul>								
<p><b>추진 일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 사무국과 홍보담당 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배치 및 총원방안 마련/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 수립/시상제도 기준 및 수상자 선정 방안 마련</td> </tr> <tr> <td>2023년</td> <td>◦ 2개년 활동을 통해 사무국 내 인력배치 변동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조직도 수정/시상제도 확립 및 시상</td> </tr> <tr> <td>2024년</td> <td>◦ 상기 이행과제 활성화 및 안정화</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사무국과 홍보담당 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배치 및 총원방안 마련/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 수립/시상제도 기준 및 수상자 선정 방안 마련	2023년	◦ 2개년 활동을 통해 사무국 내 인력배치 변동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조직도 수정/시상제도 확립 및 시상	2024년	◦ 상기 이행과제 활성화 및 안정화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 사무국과 홍보담당 부서 신설로 인한 인력배치 및 총원방안 마련/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 수립/시상제도 기준 및 수상자 선정 방안 마련								
2023년	◦ 2개년 활동을 통해 사무국 내 인력배치 변동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조직도 수정/시상제도 확립 및 시상								
2024년	◦ 상기 이행과제 활성화 및 안정화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동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사무 처리 및 인력지원을 통해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활성화 기대 가능</li> </ul> </li> <li>◦ 시민활동가 수상으로 인한 시민 활동/시민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보상</li>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가능</li> </ul>								

154)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안내”. (<https://www.ssc.go.kr/menu/intro/intro010600.do>). (검색일: 2020.11.19.)155) 대한민국 OD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 (검색일: 2021.01.08.)156) 영국 포인트 오브 라이트, “Points of Light”. (<https://www.pointsoflight.gov.uk/about-points-of-light/>). (검색일: 2020.08.16.). (검색일: 2020.08.16.)





##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제1절

#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 1.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의 필요성과 의미

-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이자 사회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인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요구됨
  - 사회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직면한 오늘날, 개인·집단의 이익을 조정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의식과 협력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
  - 이처럼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이자, 직면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수혜적 접근의 '수동적 시민'이 아닌 '적극적인 시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역할의 변화 필요
  - 최근 들어 과거 당위적인 성격의 '의무적 시민성'에서 점차 시민들의 참여와 사회변화를 위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현적 시민성'이 주목을 받고 있고(이선미, 2016: 53-55; 서종희 외, 2019: 58) 사회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주체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
  -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제2)으로, 국가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 참여로 확장되고 있음
  - 공익활동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정신적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오준범·이준협, 2014: 8)

- 따라서 '좋은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의 참여 양상을 면밀히 파악, 변화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 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공익활동 참여로 확장될 수 있게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성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덕성과 자질, 민주시민의식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임. 지식을 전달하고 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와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커리큘럼 필요
  - 아울러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의 경쟁을 넘어 능동적 삶, 협력적 가치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교과와 학습 과정에 '시민성'의 함의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2. 정책동향과 추진방향

### 가. 시민교육과 공익활동 촉진 관련 현황 및 정책동향

- 초·중·고의 진로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고 지역사회 또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시민교육 활성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교육부는 2018년 12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교육부, 2018: 5). 민주시민교육을 범 교과 학습 주제로 정하여 다른 교과 간의 연계·결합을 통해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진로교육 등 핵심 교과와의 연계가 미흡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포함 한 10개 주제의 학습과 안전교육·성교육·통일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시수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교육부, 2018: 5)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초등학교는 교과와 창의활동 간 연계를 통한 주제별 통합학습 실시, 중학생은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과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 고등학교는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교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민주시민교육을 범 교과로 안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교과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모든 교과의 시민성을 내재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와 다른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과 직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진로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결합에 관한 계획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제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법적 마련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지역별로 시민교육 진행
-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현재 11개 광역시도와 교육청은 14곳에 제정되어 있음.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사무위탁으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김소연 외, 2020b: 109)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등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지 못함. 그나마 시민교육과의 연계가 가능한 평생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시민교육이 범 교과적 성격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한 개의 주제로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이 또한 다른 교육 주제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음
  -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의 정책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교육 확산이 요원한 상황임(김소연 외, 2019: 175)
- 정부와 지자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익활동 참여 기회 확대 노력이 불충분함
-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2020년 5월에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0월에 전면 개정하였음. 이 외에도 많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익활

- 동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낮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참여를 통한 시민적 효능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 또한 취약한 상황에서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 현재 정부는 자원봉사포털 등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조직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참여 방법을 몰라 다양한 참여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김소연 외, 2019: 177)
    -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포털인 자원봉사 포털인 경우 시간 및 현장 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공익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새롭게 사회참여의 주체로 진입하는 청소년과 잠재적 공익활동 희망자들의 참여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미흡
    - 시민들의 당위적 참여를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공익활동의 확대는 삶의 만족도 제고, 민주주의 문화의 정착, 공동체성 회복,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본적인 조건임. 공익활동은 결과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나와 공익활동 참여과정을 통해 시민적 효능감과 자긍심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공동의 책무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나.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 초·중·고와 지역사회의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기본법<sup>157)</sup>에 따른 교육이념 실현
  - 장기적으로 초·중·고 교과목에 시민교육을 기본과정으로 연계·결합하는 목표로 하나 본 이행과제에서는 일차적으로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춰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함. 지역사회인 경우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학습 과정에 시민교육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지식 전달, 초청 강연 중심의 비효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성 기반의 생각하고 토론하

157)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발하여 공익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과정으로 편성

- 시민교육을 개발, 확대함에 있어서 학생에게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성인에게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대상자가 아닌 지역문제 해결자로서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함

-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인식 제고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설계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존중과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인정체계 확립
  -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바쁜 현대인의 생활양식,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따른 공익활동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3.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의 이행과제

-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이행과제2: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이행과제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이행과제 1: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과제명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관련 부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 (근거)	교육기본법 제2조, 진로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와 48조의2, 평생교육법 제2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진로교육과 시민교육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학생에게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진로 개척, 개인의 소질과 적성, 직업에 대한 체험, 지역사회의 인프라 활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li> <li>- 그러나 초등학교는 교과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시민교육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진로 교육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음</li> <li>- 자유학년·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중. 그 가운데 진로탐색인 경우 자신의 적성과 소질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제공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진로상담·검사, 진로 연계 교과융합수업,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 활동, 직업탐방, 모의 창업 등 운영</li> <li>• 진로체험 활동인 경우 교육부가 전국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을 구축, 학교와 학생이 체험처를 선택하여 오프라인에서 진로체험 진행</li> <li>• 하지만 주제선택과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으로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진로교육에는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2020년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 운영 자료를 분석해보면, 진로교육의 방향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진로들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 토론, 체험, 실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li> </ul> </li> <li>- 학생 대상 진로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따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 진로교육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음</li> <li>- 단순히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명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거나, 형식적 직업 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li> <li>- 진로보다 진학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고 있고 여전히 과거 산업사회에 기반 한 맞춤형 인재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li> <li>- 프로그램 다양성 미흡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체험처 발굴 직종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체험처 발굴 필요성 제기(이혜숙, 201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나 관공서, 기업체, 자영업 사업장 등에서 희망분야의 직업을 체험하는 경우가 대다수</li> </ul> </li> </ul> </li> <li>◦ 평생교육의 시민성 기반 학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가지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 「주제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2016-2019)」</li> </ul>				
		구분	2016	2017	2018
학력 보완	프로그램 수	20,348 (12.58)	21,117 (12.86)	20,653 (12.62)	20,789 (11.29)
	학습자 수	1,898,313 (16.75)	1,954,123 (16.43)	2,278,216 (13.94)	2,533,959 (15.50)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	682 (0.42)	634 (0.39)	708 (0.43)	696 (0.38)
	학습자 수	51,335 (0.45)	48,768 (0.41)	21,858 (0.13)	27,006 (0.17)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수	57,718 (35.68)	67,320 (41.01)	65,040 (39.75)	75,955 (41.23)
	학습자 수	4,745,635 (41.86)	5,612,746 (47.18)	7,370,030 (45.09)	8,828,647 (54.00)
인문 교양	프로그램 수	29,825 (18.43)	22,593 (13.76)	23,153 (14.15)	30,125 (16.35)
	학습자 수	2,580,494 (22.76)	2,246,129 (18.88)	4,618,008 (28.25)	2,571,028 (15.73)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수	53,093 (32.82)	52,297 (31.86)	53,822 (32.89)	56,448 (30.64)
	학습자 수	2,047,052 (18.06)	2,017,166 (16.95)	2,031,469 (12.43)	2,367,113 (14.48)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수	122 (0.08)	199 (0.12)	255 (0.16)	201 (0.11)
	학습자 수	13,735 (0.12)	18,304 (0.15)	25,077 (0.15)	21,089 (0.13)
계	프로그램 수	161,788 (100.00)	164,160 (100.00)	163,631 (100.00)	184,214 (100.00)
	학습자 수	11,336,564 (100.00)	11,897,236 (100.00)	16,344,658 (100.00)	16,348,842 (100.00)

출처: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74-75) 재구성

- 2019년 평생교육백서에 따르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총 프로그램 수는 184,214개이고 학습자 수는 16,348,842명으로 확인됨
-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수는 직업능력향상이 75,955개( 41.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시민참여는 201개(0.11%)로 다른 5개 분야보다 큰 폭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냄. 주제영역별 학습자 수인 경우도 직업능력향상 8,828,647(54%), 인문교양 2,571,028(15.73%), 학력보완 2,533,959(15.5%), 문화예술스포츠 2,367,113(14.48%), 성인기초/문자해득 27,006명(0.17%), 시민참여 21,089명(0.13%) 순으로 시민참여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관된 프로그램 없이 의제영역별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단발성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다른 주제영역 교육과정에서도 직업 준비 및 기술 전수, 지식전달, 등 교육복지적 차원의 시혜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고영상, 2019: 18), 교육 전반의 민주시민의식과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내용 부족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와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직업관에 대한 인식 전환, 시민적 자질과 역량 함양,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 필요
- 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익활동의 기회 확대
- 지역사회의 공익활동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과 연계한 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직업관이 아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로교육 인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직업 등 삶의 목표와 가치가 점차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삶과 직업관의 정립과 기존의 성공 척도에 따른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인생의 편집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필요</li> <li>• 부가가치를 통한 이윤창출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역할을 강조</li> </ul> </li> <li>- 어떤 일이 내게 유리하고 좋은 평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사회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에 기반한 학습과 실천과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은 개인의 이익과 성취감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이전에 왜 그 일을 선택해야 하고, 그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윤리적 고민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li> <li>• 시민교육은 관심 있는 학생에 국한하거나 특별한 과목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관계 속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자세와 역량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전반의 필수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li> </ul> </li> </ul> </li> <li>① 시민교육과 연계한 융합형 프로그램과 교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같은 관점과 방향에 따라 시민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학습하고 토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 프로그램과 교안 개발</li> <li>※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자기결정권, ▲나-사회의 유기적 관계,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원리, ▲시민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력적 사회문제해결 역량, ▲ 다양성, 연대, 협력 등 민주적인 생활원리, ▲대의제, 정당, 언론, 시민사회, 이익집단, 기업의 성격과 역할 ▲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적 가치(인권, 생태, 평화, 노동, 다양성 존중, 나눔, 디지털리터러시 등)</li> </ul> </li> </ul> </li> <li>② 전문 인력 양성·확충, 교육운영기관과의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 확충</li> <li>▶ 지자체, 교육청의 시민교육 담당 부서와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연계, 협력</li> </ul> </li> <li>③ 배제·소외되지 않게 학교 교육과의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에 비해 매우 부실한 상황이므로 배제·소외되지 않게 학교 교육과 일관성 있게 추진</li> </ul> </li> <li>◦ 지역사회의 공익활동과 연계한 초·중고 진로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 상담, 창업체험 가운데 초·중고 모두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진로활동으로 '진로체험'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이는 다양한 체험처 발굴을 통해 진로체험 기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sup>158)</sup></li> <li>- 다양한 진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는 학생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확장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음</li> </ul> </li> <li>① 지역사회 간의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사회의 공익활동단체(NGO·NPO·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 등) 간의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②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시민교육·공익활동과 연계 연계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li> </ul> </li> <li>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처 발굴, 프로그램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처 발굴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li> </ul> </li> </ul>
--------------	--

〈참고사례〉

- 관악진로나눔커뮤니티(교육부 진로체험 우수 사례)<sup>159)</sup>
  -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을 통한 진로교육공동체 실현 모델
  - 2019년 2월~12월까지 진행. 신림중 99명, 봉원중 175명이 참여
  - 사회적 경제센터, 전통시장, 대학생단체, 마을현장 등 학교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영국의 전국시민봉사신탁: National Citizen Service Trust(김소연 외, 2019: 51)
  - 15~17세 청소년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전국시민봉사신탁 설립
  - 시민사회조직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 및 진로지원

- 시민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평생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교양을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으로 관점의 확장 필요
    - 전국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시민교육과의 연계 교육은 주민의 시민교육 참여기회를 높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한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①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개발
    - ▶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시민교육과 연계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지역사회 공헌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
    - ▶ 직업능력 향상교육인 경우 기술, 훈련 외에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
    - ▶ 평생교육 또한 학생 진로교육과 마찬가지로 NGO·NPO·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 등 공익활동 단체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교육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③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융합적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 시민교육(지역시민단체)-평생교육(평생교육원)-마을공동체(마을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 융합적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
- ※ 추진과제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의 이행과제3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

〈참고사례〉

- 일본의 생애학습 이념 실현을 위한 종합교육정책국 신설(2018년)
  - 일본은 활력 있는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역에서의 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사회에서 주체적인 사회참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습 등을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학교협동 활동과 사회교육·청소년교육·가정교육 지원 등에 관한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하였음(문보현, 2019: 38-39)

158) 교육부 보도자료. (2019.12.11).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2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0.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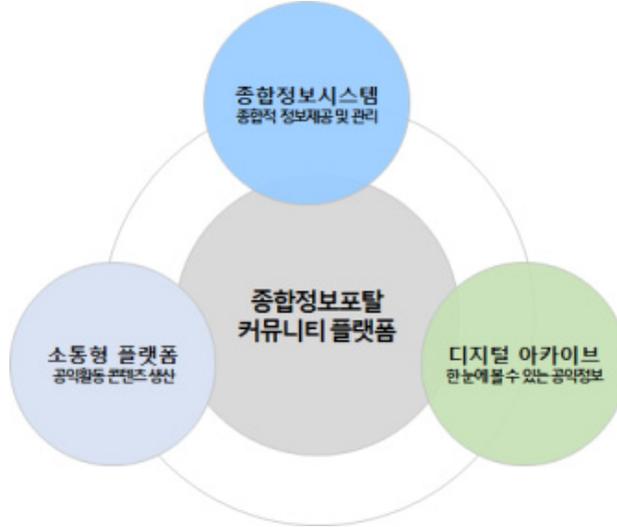
159) 꿈길. (<https://www.ggoomgil.go.kr/index.do>). (검색일: 2020.12.10.)

	연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 중심의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평가,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초중고 진로교육, 중학생 자유학년·학기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전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li> </ul> </li> <li>◦ 시민교육 확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 및 공익활동과 연계한 진로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 주민자치회 교육 커리큘럼 및 교안 개발</li> <li>◦ 관할 지자체, 교육청, 공익활동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운영 지원 체계 마련</li> <li>◦ 다양한 공익활동 체험처 발굴</li> <li>◦ 진로교육, 평생교육, 주민자치회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 교사 양성 및 확충</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과 연계한 교육 시범 추진</li> <li>◦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1차 평가 및 모니터링 진행</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화된 노동과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 자율성, 다양성에 기반한 가치추구와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능력 함양</li> <li>◦ 시민적 역량과 자질 함양, 연대와 협력의 가치 인식 제고, 협력적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li> <li>◦ 자기 이해를 넘어 공공성에 대한 관심 증진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li> </ul>	

## 이행과제 2: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과제명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이전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진시켜 왔음. 이는 공공서비스 정책이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점차 시민 지향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함</li> <li>○ 그 가운데 자원봉사포털 1365, VMS, DoVol, 문화포맷-e, 농촌재능나눔 스마일뱅크 등 정부 부서별 자원봉사 포털에 대한 지원은 시민의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교단체, 교육기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에 참여율이 여전히 높으며,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확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조직화 확산으로 시민참여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이원규 외, 2020: 48)</li> <li>○ 참여 형태인 경우, 현장활동이 아닌 온라인(집, 카페, 직장 등)을 통한 참여가 10.2%를 차지할 정도로 SNS 등 디지털 환경은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방식도 기부, 모금, 상담, 조사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해지고 있음(이원규 외, 2020: 48)</li> <li>○ 이러한 활동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는 현장, 봉사시간, 실적 중심의 경직된 자원봉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서종희 외, 2019: 7)</li> <li>○ 비공식적인 봉사활동, 자율적인 소규모의 사회참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 정책참여활동,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활동 등을 반영하는 데 소극적이고 사회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li> <li>○ 특히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은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되는 활동처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점차 참여자 스스로 공익활동을 창조하고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한편 참여자의 이용접근성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정부 부서별,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선택의 폭은 다양화되었으나 분절화 된 정보관리로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에 불편을 초래하여 효율성과 대응성을 저하시키고 있음</li> <li>○ 자원봉사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 가운데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3.7%로 미루어보아 포털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원규 외, 2020: 7)</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공익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내용과 방식의 다양성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한 공익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li> <li>○ 시민의 온라인 생활양식에 기반한 '소통형 플랫폼'을 통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시급</li> <li>○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록·수집·분류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공익활동의 공공성, 다양성, 접근성, 소통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공익활동 포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종합정보포털 및 프로슈머 방식의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li> </ul>
주요 내용	※ 본 이행과제는 아래의 3가지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다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존 <자원봉사포털 1365>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제안

-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성」



출처: 저자 작성

- 공익활동 정보,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공익활동 종합정보시스템(e공익)' 구축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시민참여제도와 자원봉사 관련 정보, 그리고 시민사회조직,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정보들을 연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 종합정보시스템(e공익) : 온 나라 시스템 + 정부24 + SNS 기반
    - 공익활동 전수 조사 및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시스템화
    -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의 통합적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기관·단체·기업이 제공하는 하향식 공익활동 정보 외에 개별 시민, 소규모 모임의 정보도 참여자가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함
    -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정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의사결정 지원,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도 등의 정보 수집 공유,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사업 관련 주요 현황지표의 실시간 표출 및 공익활동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제시 기능도 결합
    - SNS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수요에 맞춘 SNS 기반 공익활동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익활동 인정 및 보상, 이력관리체계 구축
    - ※ <이행과제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과 연계
- 시민의 온라인 참여 확대에 따른 소통형 플랫폼 기능 결합
  - 프로슈머 방식의 소통형 플랫폼 기능 결합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보 제공자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소통형 콘텐츠를 마련
  - ※ <이행과제3>과 연계 또는 크라우드 소싱 개념 도입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모색
    - 다양한 정책적 실험(policy lab)을 통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참여자 간의 연대, 협력, 상호작용을 위하여 청소년, 청년에서부터 시민사회조직과 활동가 간 구인구직, 공익활동가 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
    - 다만 기존의 소통형 플랫폼 기능의 비활성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공익단체 활동 홍보와 회의 지원 코너 등을 마련하고, 이 외에도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자체·기관·민간 등의 통합적 공간(대관) 정보 및 예약서비스 제공</li> <li>※ 지역커뮤니티 및 교육시설(구별 다목적실, 주민센터, 중간지원센터, 교육기관), 복지·교육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그 외 병원, 대학, 민간단체 등 민간시설</li> <li>◦ 누구나 쉽게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 사례들을 기록하여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게 견인하는 역할</li> <li>- 이를 위해 단순한 활동자료가 아닌 공익활동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 주는 '인큐베이션 데이터(Incubation data)' 구축</li> <li>- 특히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적 효능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익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공</li> </ul> </li> <li>※ 2020 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활동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해 알려줌'이 70.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 구축을 위한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시민사회조직, 관련 기술전문가 등 참여</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 운영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시스템(표준) 기획</li> <li>- 사업별 표준 마련</li> <li>- 기초 데이터조사 구축 기반 구축</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구축(PC, 모바일) 및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기획 및 아웃소싱 선정</li> <li>- 콘텐츠 제작</li> <li>- 시스템 TEST 후 본격 운영</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 구축을 위한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시민사회조직, 관련 기술전문가 등 참여</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 운영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시스템(표준) 기획</li> <li>- 사업별 표준 마련</li> <li>- 기초 데이터조사 구축 기반 구축</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구축(PC, 모바일) 및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기획 및 아웃소싱 선정</li> <li>- 콘텐츠 제작</li> <li>- 시스템 TEST 후 본격 운영</li> </ul> </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 구축을 위한 TF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자원봉사포털 운영기관, 시민사회조직, 관련 기술전문가 등 참여</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 운영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시스템(표준) 기획</li> <li>- 사업별 표준 마련</li> <li>- 기초 데이터조사 구축 기반 구축</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구축(PC, 모바일) 및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트 기획 및 아웃소싱 선정</li> <li>- 콘텐츠 제작</li> <li>- 시스템 TEST 후 본격 운영</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의 정보에 대한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li> <li>◦ 공익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li> <li>◦ 시민의 온라인 기반한 '소통형 플랫폼'을 통해 개방성, 참여의 평등성 등을 제고하고 전자민주주의 실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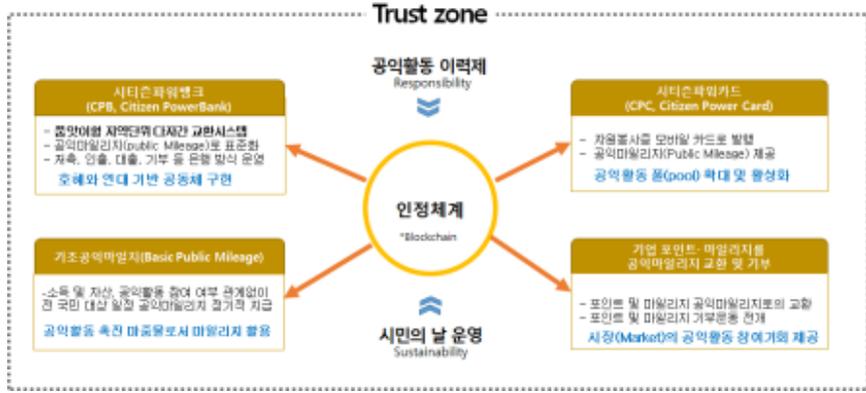
### 이행과제 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과제명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원규 외(2020)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07-2020.06)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33.9%에 그치고 있고, 활동 수행 기간은 1년 미만(28.9%)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li> <li>같은 조사에서 자원봉사 인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해 알려줌'(70.9%), '봉사자 모임, 교육기회 제공'(64.1%),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할인쿠폰, 공공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62.7%) 등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이원규 외, 2020: 122)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데 위의 응답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li> <li>※ "봉사활동 결과에 대해 알려줌"에 대한 방안은 이행과제2에서 제시</li> <li>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자원봉사 활동은 진학과 취업, 정부 포상 등을 권장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인증이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 시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문제 초래(서종희 외, 2019: 66). 이를테면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인 경우 시간 인증의 모호성 문제 발생</li> <li>공익활동의 범위, 성격, 주제 등 새로운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은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li> <li>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 중심,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비공식적 형식의 소규모의 모임의 공익활동 등 직 간접적인 지원에서 배제(박영선·정병순, 2019; 정병순·황원실, 2019: 123에서 재인용)</li> <li>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47.5%)가 두 번째 응답률인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을 몰라서'(14.8%)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현장 중심, 강도 높은 봉사활동 등 전통적인 참여 방식 외에도 공익활동이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춰 쉽고 넓은 참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전무 한 시민들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참여 기회의 확대와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li> <li>공익활동과 사회적 참여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평가하고 호혜 관계망 회복과 활성화에 중점</li> <li>기존의 지자체, 기관별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인정 외에도 참여의 자발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li> <li>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의 아이디어 도용 및 무단 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li> <li>공익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인정 방안의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인정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인 인정체계 도입</li> <li>•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예우(감사표시, 상장 부여 등)확대와 경력인정 등 도입</li> <li>• 아래 제시된 사례와 같이 현재 외국에서 운영 중에 있거나 일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인정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도 확립</li> </ul> </li> </ul>

### 〈참고사례〉

- 타임뱅크(서울시 NPO지원센터 시민, 2019: 14)
    -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적립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단위 교환시스템
    - 1986년 미국에서 Edgar Cahn이 시작
    -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제공 1시간은 1타임달러(Coproduction 원칙)
    -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 1,000건 이상 운영 중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NMF(서울시 NPO지원센터 시민, 2019: 14)
    - 마을활동에 쓰인 주민 시간, 재능, 현물, 현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1989년 시애틀시에서 시작, 현재 미네소타, 벤쿠버 등 북미 주요 도시로 확대
    - 지원 결과 매년 보조금보다 주민자원이 더 많아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1999년 케네디스쿨 혁신상 수상)
  - 노원구 디지털 지역화폐: NW(서울시 NPO지원센터 시민, 2019: 14)
    - 2017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역화폐(1NW=1원)
    - 시간, 재능, 현물에 디지털화폐를 제공해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을 촉진
    - 지역 공공시설, 일반 가게에서 이용 가능
    - 2019년 6월 기준 가입자 5,403명, 발행액 6,500만NW, 가맹점 수 309개소 등
  - 공동체주택화폐 '공동'160)
    - 공동체주택 임시지원허브에서 회원가입, 다양한 물품 및 재능 기부, 문화행사 참여,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 공동체주택 간의 물품대여, 놀이방·동네주방 등의 공간 사용 및 대여, 원데이클래스 및 전문가 컨설팅 참여시 사용 가능
    - 화폐가치는 1장당 1,000원 기준
  -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sup>161)</sup>
    - 교육·보육·돌봄·자원봉사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제공할 경우 개인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의 기본 소득 모형
    - 정부나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도모에 긍정적 역할
    - 참여소득의 유사 사례로 미국의 아메리코(Americorps)
- 기존 체계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인 인정체계 도입
- 아래 제시한 4가지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 공익활동의 지역별, 성격별, 기능별 분류와 검증 가능. 인증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표준화, 저축, 인출, 대출, 양도(기부) 등 관리의 용이
  - 정부, 시민사회조직,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하여 실현가능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축 여부 결정

○ 「신뢰·호혜·연대 기반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 구축도」



자료: 저자 작성

- ①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품앗이형 지역단위 다자간 교환시스템, 시티즌파워뱅크(CPB, Citizen Power Bank)(가칭) 구축'
    - ▶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기간, 재능, 현물, 현금 등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익활동 기여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기반의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로 표준화하고, 저축, 인출, 대출, 기부 등의 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 ▶ 공익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와 공익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기부할 수 있게 함
  - ② 공익활동 풀(pool) 확대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티즌파워카드(CPC, Citizen Power Card)(가칭) 발행'
    - ▶ 공익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등을 모바일 카드로 발행,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 제공 및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역할 부여
  - ③ 공익활동 촉진 마중물로서 '전 국민 대상 사회참여형 기초공익마일리지(Basic Public Mileage)(가칭) 발행'
    - ▶ 개인의 소득, 자산, 공익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공익마일리지를 정기적으로 지급
    - ▶ 기존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타임뱅크, 참여소득의 방식과 반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건 없이 마일리지 지급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유도. 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로 인해 우연히 공익활동을 접하게 되고 그 경험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공익활동 촉진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
  - ④ 시장의 공익활동 제공을 위한 기업 포인트·마일리지와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와 교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공익활동 기부제 도입
    - ▶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 혹은 기업(은행 및 항공사, 철도회사, 유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마일리지를 공익마일리지로 교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하고, 공익활동에 기부할 수 있는 공익활동 기부제 도입
- 공익활동의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위한 공익활동 이력제 도입
- 공익활동의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위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 관리,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 및 민간단체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의 문제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와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의 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 환경, 사회공헌 등 부문별 기념식과 포상 실시 중. 전반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기념식 필요</li> <li>- 매년 12월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여 한 해 동안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참여자의 포상을 실시하여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li> <li>- 정부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실시하고 있는 '문화의 날'과 같이 공익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세 번째 주요 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음</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인정 체계 검토를 위한 TF 구성 및 사회적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 경력인정, 사회적 보상 방안(타임뱅크,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지역화폐, 공돈, 참여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적절한 수준과 방식 논의</li> <li>- 새롭게 제시한 시티즌파워뱅크, 시티즌파워카드, 포인트·마일리지로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로 교환 및 기부, 사회참여형 기초공익마일리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li> <li>- 공익활동 이력제와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사회적 인정 체계 시범 추진 및 평가</li> <li>◦ 시민의 날 제정, 홍보</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후 본격 도입</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인정 체계 검토를 위한 TF 구성 및 사회적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 경력인정, 사회적 보상 방안(타임뱅크,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지역화폐, 공돈, 참여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적절한 수준과 방식 논의</li> <li>- 새롭게 제시한 시티즌파워뱅크, 시티즌파워카드, 포인트·마일리지로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로 교환 및 기부, 사회참여형 기초공익마일리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li> <li>- 공익활동 이력제와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사회적 인정 체계 시범 추진 및 평가</li> <li>◦ 시민의 날 제정, 홍보</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후 본격 도입</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인정 체계 검토를 위한 TF 구성 및 사회적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 경력인정, 사회적 보상 방안(타임뱅크,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지역화폐, 공돈, 참여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적절한 수준과 방식 논의</li> <li>- 새롭게 제시한 시티즌파워뱅크, 시티즌파워카드, 포인트·마일리지로 공익마일리지(Public Mileage)로 교환 및 기부, 사회참여형 기초공익마일리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li> <li>- 공익활동 이력제와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사회적 인정 체계 시범 추진 및 평가</li> <li>◦ 시민의 날 제정, 홍보</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후 본격 도입</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지속성 확보</li> <li>◦ 공익활동을 통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li> <li>◦ 사회적 인정을 통한 시민적 효능감과 자긍심 제고</li> <li>◦ 호혜와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li> </ul>								

16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8.07.09.). "면목동 임시지원허브에서 2차 전문가컨설팅의 날을 개최합니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community/read.asp?idx=1270&sigungu=&category=&searchVal=&pageno=2>). (검색일: 2021.01.03.)

161) 김을식(2018).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267836126&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90%EC%9B%90%EB%B4%89%EC%82%AC](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267836126&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90%EC%9B%90%EB%B4%89%EC%82%AC)). (검색일: 2021.01.03.)

## 제2절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1. 시민사회조직의 의미와 현실

#### □ 시민사회조직이 지닌 의미

- 시민사회조직은 때로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Association)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통로임
- 아울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주요 단위로서 의미를 지님

#### 사례: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조직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18, 진선미 의원 등 10인)  
제2조(정의) 3.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19, 권미혁 의원 등 19인)  
제2조(정의) 4.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0)  
제3조(정의)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 시민사회조직은 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 참여하는 시민들에 비해 직업적 전망에 기반해 공식성·지속성·책임성이 요청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임
- 한국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이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와 관련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 시민사회조직이 처한 어려움

- 시민들은 대체로 사회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조직의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시민사회조직들이 지속가능성에 있어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리서치,

2019: 16, 65)

- 대부분의 시민사회조직들이 재정, 인력, 공간 등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남섭 외, 2016)
- 최근 수행된 서울 지역 시민사회조직 현황조사 결과, 많은 경우 재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음(김소연 외, 2018: 95-100)
  - 연간 조직재정 5천만원 미만인 조직이 30.5%, 절반 이상이 2억원 이하
  -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운영비(사무 공간 임대료 등)
  - 시민사회조직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부족(68.4%), 활동가 충원(54.5%), 사무공간 마련(47.8%) 순으로 나타남

#### □ 어려움의 또 다른 측면, 활동가

- 시민사회조직이 겪는 어려움과 연관되면서도, 조직 안팎에서 공익활동을 실행하는 활동가 들은 조직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을 오랜 시간 겪고 있음(강선미·이기호, 1997; 신명호·이근형, 2000; 윤상철, 2005; 이현희, 2006; 김동춘 외, 2013; 조경숙·강지형, 2015; 충청북도NGO센터, 2015; 남구현 외, 2016; 이기호 외, 2017)
- 최근 수행된 전국적 조사결과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노동과 생활여건에 있어 불안하고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서울시NPO지원센터 & 공익조합동행, 2019)
  - 공익활동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스트레스, 우울, 근골격계 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은 부족함
  - 공익활동가들의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 급여 외 소득 합산)은 231.9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연간 약 3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임
  - 공익활동가들이 소속된 시민사회조직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큰 복리후생(학비, 주택마련비용자) 등의 혜택이 부재·부족한 경우가 많음
  - 향후 공익활동의 주요 주축이 될 30대와 경력 4~5년 차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만족도나 미래전망이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남

## 2. 시민사회조직 정책적 지원 과제

#### □ 시민사회 자원부족과 정책적 지원 필요

- 공익활동도 효과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는 정부·시장

영역에 비해 늘 자원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조직들의 전통적인 자원기반으로 여겨지는 기부·후원 관련 여건과 문화의 발전속도는 더딘 상황임
  - 최근의 전 세계적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경제 규모(GDP)는 10위인 반면, 나눔지수(Giving Index)는 143개국 중 57위(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23-25)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사례: 시민사회 재정의 세계적 경향(Wang Shaoguang, 2006: 5)**

- 전 세계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 시민사회조직의 재정적 원천은 기부·후원 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구 선진국들일수록 정부 재정지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의 재정자립’은 신화”(myth of civil society self-sufficiency)에 가까움.
- 결국 이들 정부는 비영리 부문에 대한 기부금을 (세금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서 대신 걷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시민사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종속되지 않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음.
- 반대로 사적 기부(private giving)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기부문화가 발달했다기 보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 있음.

- 외국에 비교해 한국 시민사회조직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는 낮은 편임(주성수, 2017: 6)
  - 국제조사 결과 34개국 시민사회조직의 재정출처 중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4% 가량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24% 가량으로 나타남
- 한편 최근 수행된 조사결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찬성여론(44%)이 반대여론(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리서치, 2019: 96)
-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문제 해결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시민참여 협치기반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조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시민사회조직 운영과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3.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의 이행과제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행과제1: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 이행과제2: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이행과제3: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이행과제 1: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과제명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유관 법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시간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동원'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 왔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음(김소연 외, 2018: 24-29)</li> <li>○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 발달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999) 제정을 비롯한 시민사회조직 지원 제도·정책이 나타남</li> <li>○ 이후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NGO 센터 설치' 등의 의제를 설정하고 (국무총리실, 2004;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 2012),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사회 조직 지원 관련 조례제정과 관련 정책이 추진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광역자치단체 시민사회조직 지원 관련 조례(2020년 12월 현재)</p> <p>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2015)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0)</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법정단체 중심의 선별적 지원구조, 공모기반 사업보조금 중심의 제한된 지원방식 등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조철민, 2015b)</li> <li>○ 향후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보조금 이외에도 공익활동 추진과 조직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컨설팅, 교육·훈련, 정보제공,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li> <li>○ 아울러 시민사회조직은 시민들의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잠재력을 지닌 비영리 일자리로서의 의미도 지님. 시민사회조직이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획일화된 지원내용의 다양화</li> <li>- 비영리 일자리로서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포괄적 지원</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 외 '행정지원' 내용 마련</li> </ul> </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의 근거 명시(제5조)</li> <li>○ 주로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이해되는 '재정지원' 외에 교육훈련, 조직적 컨설팅 및 운영지원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정책수단의 적극적 개발 및 명시적인 지침마련 필요</li> </ul>

**사례: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시민사회조직의 한 유형인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는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명시

- 경영지원(제10조) 및 교육훈련 지원(제10조의 2)
- 시설비 지원(제11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12조)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13조)
-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한시적 인건비 포함 재정지원(제14조)
- 사회적 기업의 날 지정(제16조의 2)

-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시민사회조직 지원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어 참조할 필요가 있음

**사례: 민간부문 시민사회조직 지원사업**

-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조직가 지원(아름다운재단)
- 공모사업 보조금에 활동가 인건비 포함(다음세대재단).

- 기존 지원제도와 시민사회조직 연계
  - 법률상 중소기업·중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시민사회조직이 포함되지만 일선 행정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제외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정책 소외·차별 방지 대책 필요

**사례: 시민사회조직 연계가능 기업 지원정책**

- (고용노동부)청년추가고용장려금
- (보건복지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박준 외, 2020: 106)
- (서울시)공익활동 맞춤형 고용장려금제(정병순 외, 2017: 274).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비영리단체 고용안정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고용협약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고용노동부)

-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활성화
  - 기존의 다양한 공익활동 일자리 정책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발전·연계 방안 모색
  - ※ 전략과제 '지역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지원' 연계

**사례: 공익활동 일자리 정책사업**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시민사회수석실, 2019: 15)
- (서울시) 뉴딜일자리지원사업·50+공익활동기양성사업(서울시).
- (대구시) NGO활동 확산사업(대구시).
- (청년재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년일경험사업(청년재단)
- (시티은행·경희대)공익활동 인턴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위기 시민사회조직 지원: 소규모 조직이나 운영상 위기에 처한 단체들을 위한 지원방안 우선 마련.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 현황조사 및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 피해 현황 및 지원수요 파악 필요</li> <li>- 시민사회조직 역량강화 지원: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 설립추진, 공익활동가 교육지원 방안 검토, 해외 정책연수 확대 등(시민사회수석실, 2019: 15)</li> <li>- 공익단체 맞춤형 성장지원: 사무공간 활용 컨설팅, 활동성과 아카이빙 지원, 신규조직 인큐베이팅, 미등록단체 등록절차 상담 등(김소연 외, 2019: 191)</li> <li>- 공익단체 맞춤형 성장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비영리 스타트업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 스타트업의 공공입찰 참여 문턱 낮추기 등(김소연 외, 2019: 108)</li> <li>-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원(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0인·김정호의원 등 11인) 추진 등</li> <li>-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지원(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산하 비영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비영리 영역 일자리 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캠페인 지원, 한국잡월드 내 청소년 체험관에 비영리 분야 신설 등(박준 외, 2020: 108)</li> </ul> </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85%;">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연구 추진</li>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가)지원정책개선 분과 설치</li> <li>- (가)지원정책개선 워킹그룹 구성: 시민운동,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영역 참여</li> <li>- 분과와 워킹그룹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촉진·점검활동 수행</li> </ul> </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4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성과 평가</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후 20여 년 간의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가)지원정책 2.0’방향도출</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연구 추진</li>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가)지원정책개선 분과 설치</li> <li>- (가)지원정책개선 워킹그룹 구성: 시민운동,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영역 참여</li> <li>- 분과와 워킹그룹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촉진·점검활동 수행</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성과 평가</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후 20여 년 간의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가)지원정책 2.0’방향도출</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연구 추진</li> <li>- 공론화·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li> </ul> </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산하 (가)지원정책개선 분과 설치</li> <li>- (가)지원정책개선 워킹그룹 구성: 시민운동, 자원봉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영역 참여</li> <li>- 분과와 워킹그룹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촉진·점검활동 수행</li> </ul> </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 성과 평가</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후 20여 년 간의 지원정책을 넘어서는 ‘(가)지원정책 2.0’방향도출</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도출된 방향 반영</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정책개선으로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기반 강화</li> <li>◦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기반 정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시민사회조직 역할 강화</li> <li>◦ 시장(기업), 국가(정부) 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주체로서 시민사회조직의 정책적 위상 재설정</li> </ul>								

## 이행과제 2: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과제명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들의 생활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안팎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생계와 정신적·육체적 건강 등 생활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li> <li>- 특히 젊은 활동가들의 경우 생활과 활동, 그리고 조직문화 전반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여건에 놓여있음(이영룡·명수민, 2016)</li> <li>-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원 부족 문제와 연관이 있어, 활동가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임</li> <li>- 급여 등 공익활동에 기반한 수입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안 모색 필요</li> <li>- 아울러 근로자의 생계난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활동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li> </ul> </li> <li>◦ 활동역량과 전문성 축적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논의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적 중 하나는 활동가들의 역량·전문성 부족 문제임</li> <li>- 국가와 시장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회사원에 비해 활동가 역량에 관한 연구와 투자, 실천은 빈약한 것이 현실임</li> <li>-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조사결과 활동가 3명 중 2명은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치 않으며, 교육·훈련에 관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느낌(조철민 외, 2014: 70)</li> <li>-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민간재단 등을 통한 활동가 교육·훈련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활동가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 마련 필요</li> </ul> </li> <li>◦ 활동가의 직업적 전망과 사회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자리'로서 공익활동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이명신·김운호, 2018: 2)</li> <li>-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진로에 관한 우려로 공익활동의 직업적 전망에 관한 인식은 밝지 않음</li> <li>- 이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공익활동을 활용할 뿐, 이를 육성하는 관점이 부재함</li> <li>- 이에 따라 직업으로서 공익활동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됨</li> </ul> </li> <li>◦ 공익활동가 지원의 관점과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부처·정책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조직과 함께 공익활동가에 대한 지원 필요</li> <li>- 그간 공익활동가 상호부조 제도 마련, 민간재단의 활동가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임</li> <li>- 시민사회조직 지원과 연관돼 있지만, 고유한 정책영역으로써 공익활동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li> </ul> </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및 생활여건, 사회적 위상 제고를 통해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의 활동·생활여건 개선 지원</li> <li>- 공익활동가의 직업적 전망과 사회적 위상 제고</li> </ul> </li> </ul>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처우 관련 조항 신설</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시민사회조직에서 근무하는 공익활동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사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2)</b></p> <p>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하략)</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근로자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방안 적극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근로자 지원제도 중 관행적으로 시민사회조직은 포함되지 않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시민사회조직의 활용이 미비한 제도 활성화</li> <l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재부 소득세제과)</li> <li>- 근로장려세 지원(기재부 소득세제과)</li> <li>- 비영리단체 채용관 운영(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비영리단체 채용정보 워크넷 연계 및 (가)비영리단체 채용관 신설</li> <li>- 민간 비영리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방안 모색(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li> </ul> </li> <li>◦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부조 기구인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출범했지만(2013),<sup>162)</sup> 근거법령의 미비로 본격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제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정에는 실패함: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2013, 김현미의원 등 42인),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2016, 유재중의원 등 29인)</li> <li>- 관련 법률 제정 관련 다양한 장애요인 검토 필요: 자원, 복수공제회 여부, 가입대상 특정, 소관부처 지정 등(시민사회수석실, 2019: 16)</li> </ul> </li> <li>◦ 다양한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미등록단체 활동가 개인 활동가 맞춤형 지원</li> <li>- 공익활동가 주택지원: 공공주택, 공동체 주택 등(김소연 외, 2019: 185)</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사례: 민간·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가 지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지원사업: 활동가 건강 지원, 활동가 재충전 지원, 교육·해외연수 지원, 소액대출, 상호부조, 주거복지, 상조서비스, 활동가 응원사업 등.</li> <li>■ 서울공익활동가 경제안전망 사업(2020):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비영리 영역 특별용자사업(동행-노사사회공헌기금재단-서울시).</li> <li>■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아름다운재단).</li> <li>■ 청년 공익활동가 안전망기금(재)공공상행연대기금.</li> <li>■ 공익 활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충남시민재단).</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으로서 공익활동가 사회적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진로 정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된 '시민단체활동가'에 관한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빠르게 분화·발전하는 우리 시민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익활동가 직업개념과 분류, 소개정보 작성 필요</li> </ul> </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개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진로교육, 구직자 진로정보 제공에 공익활동가 관련 안내자료 개발</li> <li>- 공익활동가 전문성·경력 인정 방안 마련(박준 외, 2020: 107)</li> <li>•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공익활동가 직무분석 자료축적을 통해 직무가치 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이를 참조해 정부와 시민사회과 공동으로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직무조사·분석을 통한 공익활동가 직무가치 인정근거 마련</li> <li>• 일자리로서 시민사회조직 개념이 미비한 시기의 활동경력, 4대 보험 적용이 안되는 임의단체 활동경력,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활동경력 미인정으로 활동가 급여나 수당에서 불이익 발생</li> <li>•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경력 산정 기준 마련</li> </ul>								
추진 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42 626 457 681">연도</th> <th data-bbox="457 626 1262 681">추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2 681 457 762">2022년</td> <td data-bbox="457 681 1262 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안)마련</li> <li>- 공론화·연구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이행과제1 연계)</li> </ul> </td> </tr> <tr> <td data-bbox="342 762 457 842">2023년</td> <td data-bbox="457 762 1262 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li> <li>- 관련 분과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이행과제1 연계)</li> </ul> </td> </tr> <tr> <td data-bbox="342 842 457 949">2024년</td> <td data-bbox="457 842 1262 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li> <li>-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성과 평가, 새로운지원방향 도출,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이행과제1 연계)</li> </ul> </td> </tr> </tbody> </table>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안)마련</li> <li>- 공론화·연구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이행과제1 연계)</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li> <li>- 관련 분과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이행과제1 연계)</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li> <li>-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성과 평가, 새로운지원방향 도출,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이행과제1 연계)</li> </ul>
	연도	추진 내용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안)마련</li> <li>- 공론화·연구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이행과제1 연계)</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정책 개선(안) 추진 촉진·점검</li> <li>- 관련 분과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이행과제1 연계)</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조직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도출</li> <li>- 지원정책 개선계획 추진성과 평가, 새로운지원방향 도출,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이행과제1 연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생활여건 개선</li> <li>◦ 여건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와 활동성과 향상의 여력 확보</li> <li>◦ 직업으로서 공익활동가의 인식과 전망 개선으로 우수 인력의 시민사회 영역 진출 확대</li> </ul>								

### 이행과제 3: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과제명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관련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근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경우 시민사회(비영리 부문)이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경제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li> <li>○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 영역과 활동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고유한 자원과 경제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li> <li>○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고유한 자원과 경제적 기반을 갖춰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li> <li>○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나 '나눔문화(기부·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본격적인 추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04;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전문위원회, 2012)</li> <li>○ 시민사회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지원 필요</li> </ul>
추진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공익활동 자원개발 및 경제적 기반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li> <li>- 시민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경제적 기반조성 활동 지원</li> </ul> </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 관련 제도개선: 비영리 단체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소득세법) 등(박준 외, 2020: 107).</li> <li>- 기부문화 촉진방안 모색: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 성과에 관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 캠페인 등 정부와 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추진</li> <li>※ 전략과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연계</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사례: 기부문화 및 공익활동 활성화 촉진 지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NPO지원센터 '퍼스트 펭귄 캠페인': "펭귄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검은 바다로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에게 용기를 주는 '퍼스트 펭귄'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처음 목소리를 낸 시민들과 '공익단체'들을 알리는" 캠페인. 현재 NGO 응원 캠페인 '액션 도미노'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음<sup>163)</sup></li> <li>■ 해외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 북(Face Book)의 비영리 단체 온라인 기부캠페인 지원 사업</li> <li>■ 한국 자원봉사의 해(2016~2018):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공동으로 자원봉사의 재활성화와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3년간 다양한 캠페인, 연구, 공론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음.</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마련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크라우드 펀딩(Civic Crowd F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우드 펀딩은 보통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주체가 기부요청을 올리면 특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기부를 하는 방식을 의미함</li> <li>• 크라우드 펀딩은 영리 목적의 지분투자형과 대출형, 비영리 목적의 기부형, 후원형 등으로 갈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중 후자가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li> </ul> </li> </ul> </li> </ul>

- 특히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 크라우드 펀딩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이효원·김상민, 2020: 121)
- 시민자산화(Civic Commons)
  - 시민자산화는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임(최준규·윤소은, 2018: 2). 특히 공공·민간 협력형 자산화는 주목할 만한 모델임
  -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공동체 발전의 목적으로 설립되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산은 개인수익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재투자 되는 것(asset lock)을 조건으로 회사설립의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영국에서 창안된 제도(김종호, 2014: 141)
  -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지역주민의 기부금을 모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김미현, 2015: 244). 국내에는 부천희망재단,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부산창조재단이 설립·운영 중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 사회적 투자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의 중요한 발전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로, 민간 자금이나 금융 기법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와 적정 금융수익을 동시에 추구함(김형균, 2013: 2). 사회적 투자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함
  -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특정한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 수탁자가 재산의 관리운영 및 공익사업 지원을 수행하는 제도(황신애, 2015: 18). 20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됨
  - 사회적영향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사회적 투자에 의한 공익활동사업이 거둔 성과에 기반해 사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도 배당되는 방식으로 사회성과연계 채권(Social Impact Bond)이 대표적인 사례임(박종원·이우백, 2018: 270-271)
  -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벤처투자 기법을 기부에 적용한 방식. 장기적으로 지원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관의 자체 역량을 키우며, 금전적 지원 외에 다양한 비(非)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전략적 기부’.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조선일보, 2018)

#### 사례: 시민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2020~2022, 행정안전부)
- 시민자산화 시범사업(2018, 경기도 시흥시)

#### - 사무·활동 공간지원

- 사무·활동공간 운영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와 함께 시민사회조직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민사회조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기반 조성은 요긴한 지원이 될 수 있음

#### 사례: 공익활동 공간지원 사업

- (서울시)NPO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에 기반한 시민자산화 방식의 공간지원 사업(쉐어원, 2020).
- (서울시)NPO공간 네트워크 지원사업(정병순 외, 2017: 272).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프로젝트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맵’ 개설·운영(서울시)

	연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자원개발 방안 관련 연구 추진</li> <li>-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다양한 자원개발 방안 현황파악, 시민사회조직 활용방안,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자원개발 방안 홍보·시범사업 추진</li> <li>- 기존 법령·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의 경우 활용방법 안내자료 제작·배포</li> <li>-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생소한 방안의 경우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지원 전략 수립</li> <li>-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지원 전략 수립</li> <li>- 제2기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에 반영</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 자원개발을 통한 시민사회조직 운영여건 개선 및 공익활동 활성화</li> <li>◦ 시민사회의 고유한 경제적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율적 자원개발의 균형 발전</li> <li>◦ 시민사회 경제부문 활성화, 경기불황 시 충격을 흡수하는 경기조정자 역할 등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에 기여(노대명 외, 2010: 82)</li> </ul>	



##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 제1절 시민사회 발전 정책 추진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백재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조원

-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한 이행과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주관부처가 상이하며, 모두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과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대부분의 과제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 집중되어 있음
-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이행과제는 총 31개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가 23개 이행과제, 국무총리실이 19개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로 나타남. 이 외에도 교육부가 3개 이행과제, 외교부가 2개 이행과제,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1개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로 나타남
-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강화]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로 분류되며 각각 2~3개의 이행과제가 도출되었음. 행정안전부는 6개 이행과제, 외교부는 2개 이행과제,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은 각 1개의 이행과제의 주관부처임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로 분류되며 각각 1~5개의 이행과제가 도출되었음. 국무총리실은 12개 이행과제, 행정안전부는 11개 이행과제, 교육부는 2개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계청 등이 각 1개의 이행과제의 주관부처임
-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은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으로 분류되며 각각 3개의 이행과제가 도출되었음.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각 6개의 이행과제의 주관부처로 나타났으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1개의 이행과제의 주관부처임

- 이행과제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이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이행과제 검토 과정에서 주관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추진주체가 될 이행과제들이 다수 나타난 것을 감안해도 두 곳의 중앙행정기관에 이행과제가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업해야 할 경우 주관부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8-1〉 이행과제별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과제	주관부처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참여의 다양화 속 정책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강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열린정부 본격 추진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제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국가인재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범정부적 위기소통협력 대응체계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지역협치 활성화 조례 확산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민관협력 평가지표 반영 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외교부, KOICA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무총리실·법무부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지원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관리 부처, 광역자치단체
			국무총리실, 연구기관 지정·관리 부처, 광역자치단체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과제	주관부처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가능성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격차 해소와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협력 강화 및 지역조례 제정 촉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정부보조금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재정지원의 정책효과 실질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기회 확대와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시민사회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기능 신설	국무총리실
		중앙-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계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 활동 참여 촉진	시민교육과 연계한 진로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시민사회조직의 지속 가능성 촉진	다양하고 소외됨 없는 시민사회조직 지원 사업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익활동가 활동·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유관부처
		공익활동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자료: 저자 작성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기대효과	°			
소요 예산(천원) 및 재원조달 방안	연도	2022년	2023년	2014년
	예산(천원)			
	°			

자료: 저자 작성

-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31개 이행과제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는 분기별 이행상황을 국무총리실에 제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상 이행과제의 이행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상정
  - 이행과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행과제를 보완 또는 수정할 사항을 논의. 보완 또는 수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공개
- 정부업무평가를 활용한 성과관리방안 검토
  - 10개 추진과제와 31개 이행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를 활용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이 경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자체 평가결과를 특정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민관협치와 관련한 성과평가를 지표화해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확산을 유도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선미·이기호,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개마고원, 1997년
- 최준규, 2019,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이슈&진단, No.372. 경기연구원.
- 고경훈·이병기, 2017, 부산시 협치제도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협치행정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경훈·안영훈, 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고영상,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교육정책포럼. 306. pp. 14-18.
- 고용노동부, 2018,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위탁경영연구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공익조합동행, 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
- 관계부처 합동, 2019,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 관계부처 합동, 2020a, 자원봉사활동 진흥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b,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2018년 9월.
- 김찬규, 2018,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사단법인 지역사회 연구원.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년 총회자료집".
- 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2019 평생교육백서.
-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백서.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04, 한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2020, 제1회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9, 32차 의결안건 '국제개발 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018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 김동춘·김정훈·김형철, 2013,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 김동춘·조효제·이대훈, 2014,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김미현, 2015, “국내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유형 및 정책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pp. 239-265.
- 김민경·윤여창, 2018,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국정관리연구, 제13권 2호, pp. 221-251.
- 김병권, 2017,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OPEN 기념 세미나 자료집, pp. 25-36.
- 김병권, 2019,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조직 발전 전망: 지역 커뮤니티 기반 시민사회 활성화 가능성,”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년 상반기호(통권34호), pp. 69-98.
- 김소담·강황선, 2019, “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31, pp. 453-473.
- 김소연·오현순·조철민·김문주, 2019,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 김소연·강세진·류홍변·신권화정·김승순, 2020a,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소연·신권화정·류홍변·김승순, 2020b,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연구용역 보고서.
- 김소연·오현순·옥미애·이강준·조철민, 2018,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개발 연구: 시민사회단체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연구원.
- 김영미·정성화, 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김일영·김민수·박호림·조민희·백정훈, 2020, 평택시 시민사회 협력모델개발 연구, 사회혁신교육원협동조합·평택시.
- 김정욱·진성만·여관현, 201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국내·외 SIB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12, pp. 45-80.
- 김종호, 2014,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이익 회사법에 관한 법적 고찰”, 강원법학, 제43권, pp. 113-165.
- 김형균, 2013, “사회적 가치와 적정수익의 접점, 사회적 투자”, BDI 정책포커스, Vol. 228, pp. 1-12.

- 김혜련·임경민, 2012,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201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I, pp. 158~224.
- 김희연·유영성·고재경, 2014,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이슈&진단 No157, 경기개발연구원, pp. 1-26.
- 남구현·우승명·장효안·유찬종·정라영, 2016,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경기도의회.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2010, 한국 제 3 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지성, 2016,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문보현, 2019, “일본 ‘생애학습 추진방안’을 통해 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교육정책포럼, 306, pp. 35-39.
- 박근영, 2019,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학습 참여율”, 교육정책포럼. 306, pp. 40-43.
- 박상필, 2013,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 기억과 전망, 통권 29호, pp. 465-505.
- 박상필, NGO학:자율·참여·연대의동학(개정판), 서울:아르케, 2011년
- 박영선, 20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NGO연구, 제10권 제1호, pp. 139-169.
- 박영선·정병순, 2019,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박영선·이재현·조철민, 2015, NPO지원의 중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 연구용역 보고서.
- 박종원·이우백, 2018, “사회적 금융에서 임팩트투자를 위한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의 활용”, 한국증권학회지, 제47권2호, pp. 267-294.
- 박준·공석기·조철민·채종현·조훈·이영라,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진희, 2015,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한국환경철학회, pp. 91-118.
- 박태규, 2000, “한국의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규모 추계,” 한국비영리학회 창립총회 발표논문.
- 박태규·정구현·김인춘·황창순, 2016, 한국의 제3섹터: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길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 배성기, 2020, 중간지원 조직형 민간위탁 정의 및 판단 기준 검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서영복, 2015, “정부와 시민사회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편”, 국무총리비서실주최토론회
- 서울시, 2017a,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서울, 아름다운 동행.
- 서울시, 2017b,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계획.
- 서울시, 2018,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시NPO지원센터 & 시민, 2019,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 자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로 본 민주시민교육과 마을공동체의 접점,” 서울마을주간 46호(2016.10.).
-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2016,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종희·석현수·조철민·이지은·권오현, 2019, 자원봉사 민관협력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 송용훈·정문기, 2018,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논집, 제30권3호, pp. 553-576.
- 쉐어원, 2020, NPO입주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자산화 모델 개발 및 사업 적정성 검토 컨설팅 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백서.
- 시민사회수석실, 2019, 시민사회 소통협력 강화 방안: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조정. 내부자료.
- 신명호·이근행, 2000,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의식과 생활”, 도시와 빈곤, 제43권, pp. 97-121.
-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 메디치미디어. 2020년.
- 오관영, 2015,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익활동 지원 제도 모색, 서울시NPO지원센터.
- 오준범·이준협, 2014,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Vol(34), pp. 1-14.
- 오현순·송주영, 2018, 5%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서울시 연구보고서.
- 윤상철, 2005,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분립과 중앙집중성”, 경제와 사회, 제66권, pp. 39-71.
- 이광희·김정해·정지점·조세현·서재호·이화진, 2012,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기호·이재경·안영신·김소희, 2018,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
- 이남섭·공석기·김도균·김정희·노진철·이민창·이정옥·이창언·조철민·차명제·박으뜸, 한국시민행동지수 종합조사 I: 전국DB·MAP, 학예사, 2016년
- 이남섭·공석기·김도균·김정희·노진철·이정옥·이창언·조철민·차명제, 시민행동지수로 본 한국 시민사회역량, 유나기획, 2020년

- 이남주·권혁태·박상필·박윤철·박은홍·손혁재·조경란·조효제·차명제, 아시아의 시민사회(II): 현재와 전망, 아르케, 2005년
- 이명신·김운호, 2018, “비영리 영역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탐색”. 취업진로연구, 제8권2호, pp. 1-22.
- 이선미, 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제11권1호, pp. 57-83.
- 이순태, 2013, 민간단체의 공익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영룡·명수민,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교육공동체넷, 2016년
- 이영재·주성수·박영선·정호기·김성진, 2020, 강남구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진단과 기본계획 수립.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영제·김윤철·윤종희, 2016,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보고서: 시민교육의 원칙과 현재적 과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이원규·정희선·서종희, 2020, 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 행정안전부.
- 이은주, 2019,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 구성에 관한 실천 사례 연구: 서울시 3개 자치구의 협력적 대항력 형태와 그 힘의 원천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박사학위 논문.
- 이은주·이유리, 2020,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성과분석 연구, 서울특별시·로컬+협치연구소.
- 이현희, 2006, 한국 NGO의 인적자원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진·이상기·김남희·정일관, 2020,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과 활동 실태조사, 서울시 NPO지원센터.
- 이혜숙, 20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43), pp. 1-23.
- 이효원·김상민, 2020, “시민적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 비영리조직의 ‘와디즈’ 이용 사례 분석”, 시민사회와 NGO, 제18권2호, pp. 119-150.
- 인천광역시, 2020,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 임승빈, 2009,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7권1호, pp. 35-55.
- 장수찬·박영선·김제선, 2015, 지방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전국하나센터협회, 201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10년사.

- 전대욱, 2017, “한국형주민자치회의의 재정력 제고를 위한 제언: 재정책보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월간주민자치 70, pp. 33-39.
- 정란아, 2020, “대통령령과 서울시조례(안)로 본 공익활동 지원 환경의 변화 그리고 NPO지원센터”, 관악공동행동워크샵 PPT자료, 2020.9.3.
- 정병순 이성호 김성아, 2017, 서울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 정병순, 2018,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 서울연구원.
- 정병순, 2019,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자료집, pp. 43-46.
- 정병순, 황원실, 양세종, 2018,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정병순·황원실, 2019,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1단계. 서울연구원.
- 정병순·이성호·김성아, 2017,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정상호, 2020, “불평등 시대의 한국 시민사회 연구: 조직과 가치, 그리고 공론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8권1호, pp. 3-47.
- 정정화·은재호·남재걸, 2014, “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2호, pp. 161-185.
- 정진경·이란희·최유미·송인주·조철민·송정안, 2017,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 제38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제576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년7월.
- 제38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제313호)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0년7월.
- 제382회 국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0, 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조경숙·강지형, 2015, 서울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 복지수요조사연구, 서울연구원.
- 조성호·최준규·문영훈, 2018,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 조세현·정미나·정서화·윤영근·이화진·한숙현·김기현·최성진, 2018, 시민참여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실험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영재, 한국시민사회의 ‘환경’. 주성수 편, 한국시민사회지표, 아르케, 2006년
- 조주복, 2020,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14권4호. pp. 99-127.

- 조철민, 2015a, “비정부단체(NGO)의 활동 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사회 2, 제25권1호, pp. 179-211.
- 조철민, 2017,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KDF REPORT. 10호, pp. 1-20.
- 조철민, 2015b,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NGO연구, 제10권1호, pp. 1-34
- 조철민·박영선·김유리, 2014, NPO 활동가 교육수요 및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 조효제, 2004,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과 현실,” 창작과비평 제32권 제1호, pp. 93-107.
- (사)더브릿지컨설팅, 2020, 2019년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및 교육사업, 정책연구 보고서.
- 주성수, 2017, “정부와 시민사회의 재정적 관계: 지원에서 공조로 패러다임 전환,” 시민사회와 NGO 제15권2호, pp. 1-32.
- 주성수, 2020, “정부와 시민사회 협약(중앙 및 지역)”,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백서.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지표: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아르케, 2006년
- 차명제·박민서·서원희·김민정, 202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광명시.
- 최준규·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FOCUS. Vol. 8. pp. 1-4.
- 충청북도NGO센터, 2015, 충북지역NGO활동가 직무환경 및 활동 만족도 조사.
- 통일부, 2014a, 제 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
- 통일부, 2014b, 하나센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 통일부, 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 2012,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 한국NGO학회, 2014, 공공인재 육성을 위한 NGO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특별시.
- 한국리서치, 2019,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일반 시민,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관련 기초자료 조사.
- 한재광·손혁상·김성규·심재은·김민영·이하늬·라수정, 2019,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행정안전부 &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0,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통계편.
- 행정안전부, 2017a, 2017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및 혁신 및 협업 우수사례집.
- 행정안전부, 2017b,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추진 안내서.
- 행정안전부, 2018,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 행정안전부, 2019a, 2019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 포럼.
- 행정안전부, 2019b, 2019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 사례집,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행정안전부, 2019c, FY2018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0,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20a, 2020년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 행정안전부, 2020b,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0c, FY2019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0d, 정부종합혁신계획.
- 행정안전부, 2020e,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 홍일표, 2009, "네트워크 코디네이터(network coordinator)의 등장: 2008년 미국 대선과 진보 싱크 탱크의 역할 확장," *경제와 사회*, pp. 284-312
- 홍일표, 201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생산과 싱크탱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황신애, 2015, "공익신탁법의 도입과 활용사례". 서울시NPO지원센터 2015년 제7차 정책포럼 자료집, pp. 15-24.

##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약칭:비영리단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 17374호, 2020. 06. 09., 일부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외문헌

- Charities Aid Foundation, 2019, “CAF World Giving Index”.
- CoE(Council of Europe), 2020, “Government Structures Promoting Civi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th NGOs in Policy Making : Comparative analysis”, pp.1-21.
- Community Fund, 2019, 「The National Lottery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8-19」
- EC(European Commission), 2020, “The Roadmap a Support Facility The EU Roadmap for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2018-2020 : Key lessons learnt from the process so far and regional perspectives”, pp. 1-72.
- Heinrich and Shea, Assessing the Legal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Heinrich and Fioramonti (eds) CIVICUS Global Survey of the State of Civil Society volume 2, *Kumarian Press*, 2008.
- Lester M. Salamon, S. Wojciech Sokolowski, and Regina List, “GLOBAL CIVIL SOCIETY: AN OVERVIEW”,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3.
- Rachel Cooper, 2018, “What is Civil Society, its role and value in 2018?”, *Helpdest Report*, pp. 1-25.
- UK Cabinet Office,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영국시민사회전략집, 2018
- Wang Shaoguang, 2006, “Money and Autonomy: Patterns of Civil Society Finance and Their Implications”, 40(4),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pp. 3-29.

## 기타

- Area Democracy Forum. “About us”.(<https://www.thedemocracyforumltd.com/about-us/>).  
(검색일: 2020.08.22.)
- CIVICUS <https://www.civicus.org>
- CIVICUS. 2003. “The CIVICUS 2013 Enabling Environment Index(EEI)”.  
([https://www.civicus.org/eei/downloads/Civicus\\_EEI%20REPORT%202013\\_WE\\_B\\_FINAL.pdf](https://www.civicus.org/eei/downloads/Civicus_EEI%20REPORT%202013_WE_B_FINAL.pdf)). (검색일: 2020.10.23.)
- CIVICUS. 2017. “CIVICUS STRATEGIC PLAN 2017-2022”.

- ([https://www.civicus.org/documents/strategic-plan/civicus-strategic-plan-2017-2022\\_en.pdf](https://www.civicus.org/documents/strategic-plan/civicus-strategic-plan-2017-2022_en.pdf)). (검색일: 2020.10.28.)
- CIVICUS. 2019. “State of Civil Society Report 2019”.  
(<https://www.civicus.org/index.php/state-of-civil-society-report-2019>).  
(검색일: 2020.10.21)
- CIVICUS. 2020. “State of Civil Society Report 2020”.  
(<https://www.civicus.org/index.php/state-of-civil-society-report-2020>).  
(검색일: 2020.09.11.)
- Council on Foundation. “Nonprofit Law in Hungary”.  
(<https://www.cof.org/content/nonprofit-law-hungary>). (검색일: 2021.01.06.)
- EC(European Commission). 2012. “The Roots of Democra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s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in External Relations”.  
(<https://europa.eu/capacity4dev/policy-forum-development/wiki/eu-communications>). (검색일: 2020.11.04)
- EKAK 홈페이지. (<https://heakodanik.ee/en/estonian-civil-society-development-concept/>).  
(검색일: 2020.12.01.)
-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검색일: 2020.08.10.)
-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HM Government. 2018. “Civil Society Strategy: Building a Future that works for everyon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ociety-strategy-building-a-future-that-works-for-everyone>). (검색일:2020.08.23.)
- U-LEX.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405567-2189437-%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B%AF%BC%EA%B4%80%ED%98%91%EC%B9%98%20%ED%99%9C%EC%84%B1%ED%99%94%20%EA%B8%B0%EB%B3%B8%20%EC%A1%B0%EB%A1%80>). (검색일: 2020.12.30)
- Upwell. “A VIRTUAL EXPERIENCE OCT 14-16, 2020”.  
(<http://upswell.org>). (검색일: 2021.01.07.)
- 경기도 뉴스 포털. (2019.01.02.). “도민 참여 쉽고 빠르게! …‘경기도의 소리’ 2일 서비스 개시”.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51DB79DD62A024B49630783738A4D456.ajp13?number=201901021648367055C048&s\\_code=C048](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jsessionid=51DB79DD62A024B49630783738A4D456.ajp13?number=201901021648367055C048&s_code=C048)). (검색일: 2021.01.02.)
- 경기도 정책 네이버 블로그. (2018.10.02.).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펼쳐지는 2018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만나야 보이는 것들’”.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368868646](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368868646)). (검색일: 2020.10.20.)
- 경기도의 소리. “일반제안”. ([https://vog.gg.go.kr/?page\\_id=162](https://vog.gg.go.kr/?page_id=162)). (검색일: 2021.01.03.)
- 경기도의 소리. “도민발언”. (<https://vog.gg.go.kr>). (검색일: 2021.01.17.)
- 경인부. (2020.10.22.).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인천”. (<http://www.giview.co.kr/news/article.html?no=42345>). (검색일: 2020.11.02.)
- 공공문화외교국 보도자료. (2020.07.1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지원 네트워크”.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715051325111.hwp&rs=viewer/result/202101>). (검색일: 2020.12.19.)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https://www.activistcoop.org>). (검색일: 2021.01.07.)
- 관악사회적경제. (2019.05.02.).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공고”. (<http://gase.kr/web/notice/6492>). (검색일: 2020.08.24.)
- 광화문 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협업이음터”.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tching/matchingListPage.do>). (검색일: 2020.12.29.). (검색일: 2020.10.16.)
- “국민신청 정책 실명제”.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olicyRn/policyRnMainPage.do?menu\\_id=458](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olicyRn/policyRnMainPage.do?menu_id=458)). (검색일: 2020.10.16.)
- “국민참여 일정”.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gram/activeCal.do?menu\\_id=313](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gram/activeCal.do?menu_id=313)). (검색일: 2020.10.18.)
- “도전. 한국”.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4d3b72d0209481e80050b34d7269ee7&menu\\_id=408](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4d3b72d0209481e80050b34d7269ee7&menu_id=408)). (검색일: 2020.10.18.)
- “소통공간 신청”.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forumSpce/forumSpcePage.do?me>

nu\_id=425). (검색일: 2020.10.18.)

“참여창구 모음”.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submain/submainA.do?menu\\_id=394](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submain/submainA.do?menu_id=394)). (검색일: 2020.10.18.)

“혁신제안톡”.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ListPage.do?menu\\_id=399](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ListPage.do?menu_id=399)). (검색일: 2020.12.03.). (검색일: 2020.10.16.)

교육부 보도자료. (2019.12.11).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2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0.12.01.)

교육부. (2019.04.05.).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 (검색일: 2020.12.2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 2020.12.31.)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6386,20170105\)](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6386,20170105))).

(검색일:2020.11.11.)

([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20설립%20운영에%20관한%20법률/\(15149,20171212\)](https://www.law.go.kr/법령/공익법인의%20설립%20운영에%20관한%20법률/(15149,20171212))).

(검색일: 2020.08.12.)

([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7374,20200609\)](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7374,20200609))).

(검색일: 2020.08.12.)

([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14839,20170726\)](http://www.law.go.kr/법령/정부업무평가기본법/(14839,20170726))). (검색일: 2020.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자치법규 등록 기준).

(검색일: 2020.12.31.)

국가지표체계 사회단체참여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0>).

(검색일: 2020.08.1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01.15.).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4119>).

(검색일: 2021.01.1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08.07.).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56>).

(검색일: 2020.10.07.)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치단체 평가”,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4.jsp)). (검색일: 2021.01.14.)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7.11.20.).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8093>)  
(검색일: 2021.01.1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1002>).  
(검색일: 2021.01.15.)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검색일: 2020.12.24.)
-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2019.10.04.). “상상이 정책이 되는 시간, 제 1회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 (<https://blog.naver.com/loveacrc/221668274372>).  
(검색일: 2020.11.0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표준조례 및 운영가이드”.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1002>).  
(검색일: 2021.01.15.)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7094>). (검색일: 2020.11.03)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V0A0B7G0W2F1K3R5F6F5D4Q9V9R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V0A0B7G0W2F1K3R5F6F5D4Q9V9R2)). (검색일: 2021. 01.05)
- 국회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0.12.10.) (검색일: 2021.01.05.)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systemIntrcn/systemIntrcnMain>).  
(검색일: 2020.10.28.).
- 김을식(2018).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267836126&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90%EC%9B%90%EB%B4%89%EC%82%AC](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267836126&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90%EC%9B%90%EB%B4%89%EC%82%AC)).  
(검색일: 2021.01.03.)
- 꿈길. (<https://www.ggoomgil.go.kr/index.do>). (검색일: 2020.12.10.)
- 노컷 뉴스. (2020.01.10.).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원 100명 공개 모집”.  
(<https://www.nocutnews.co.kr/news/5087661>). (검색일: 2020.11.20.)

- 뉴스로. (2019.11.29.). “인천시 소통행정, 시민과 함께 행정장벽 극복하는 ‘민관동행위원회’ 출범”.  
(<https://www.newsro.kr/%EC%9D%B8%EC%B2%9C%EC%8B%9C-%EC%86%8C%ED%86%B5%ED%96%89%EC%A0%95-%EC%8B%9C%EB%AF%BC%EA%B3%BC-%ED%95%A8%EA%BB%98-%ED%96%89%EC%A0%95%EC%9E%A5%EB%B2%BD-%EA%B7%B9%EB%B3%B5%ED%95%98%EB%8A%94-%EB%AF%BC%EA%B4%80%EB%8F%99%ED%96%89%EC%9C%84%EC%9B%90%ED%9A%8C-%EC%B6%9C%EB%B2%94/>). (검색일: 2020.11.03.)
- 뉴스스토리. (2020.07.02.). “공주시 100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본격 출범”.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9>).  
(검색일: 2020.12.14.)
- 뉴스임팩트. (2019.03.22.). “국방부, 청렴 국방 민관협의회 출범”.  
(<http://newsimpact.co.kr/View.aspx?No=1059296>). (검색일: 2020.10.02.)
- 뉴스스. (2020.06.19). “과기부-NIA, 디지털 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본격 추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9\\_0001066230&cid=13001](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9_0001066230&cid=13001)).  
(검색일: 2020.09.18.)
- 대한민국 ODA. “평가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결과”.  
([http://www.odakorea.go.kr/hz.blltn2.EvCmtRsltSlPL2.do?brd\\_seq=25&blltn\\_div=oda](http://www.odakorea.go.kr/hz.blltn2.EvCmtRsltSlPL2.do?brd_seq=25&blltn_div=oda)). (검색일: 2021.01.14.)
- 대한민국 OD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  
(검색일: 2021.01.08.)
-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하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 국제화상토론회 개최”. (검색일: 2020.12.09.)
-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2020.04.2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https://blog.naver.com/kcc1335/221926156268>). (검색일: 2020.11.01.)
- 법무부공고. (2020.10.2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1140>). (검색일: 2020. 11.20)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등록단체 현황”.  
(<https://npas.mois.go.kr/nsbms/hmp/nfvnzBsisStat/nfvnzRegSituFnd/nfvnzRegSituFnd.do>). (검색일: 2020.08.18)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업소개”.  
(<https://npas.mois.go.kr/nsbms/hmp/comn/cntsMng/14/845/none/cntsMngR.do>).

- (검색일: 2020.08.12)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사업유형 및 분야별 예시”.  
(<https://npas.mois.go.kr/nsbms/hmp/bsnsInfo/sotBsnsTyRamEx/sotBsnsTyRamExR.do>). (검색일: 2020.08.14.)
-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연도별 사업정보”.  
(<https://npas.mois.go.kr/hmp/infoPblntf/yearSbsidyBsnsSitu/yearSbsidyBsnsSituList.do>). (검색일: 2020.08.13.). (검색일: 2020.08.14.). (검색일: 2020.09.17.). (검색일: 2020.11.30.)
-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정보시스템(NPAS). (<https://npas.mois.go.kr/main.do>).  
(검색일: 2020.09.17.)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안내”. (<https://www.ssc.go.kr/menu/intro/intro010600.do>).  
(검색일: 2020.11.19.)
- 서대문사람들. (2017.06.02.). “민관 협치 기본 조례안 상정 세번만에 통과”.  
(<http://www.esdmnews.com>). (검색일: 2021.01.10.)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8.07.09.). “면목동 임시지원허브에서 2차 전문가컨설팅의 날을 개최합니다”.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community/read.asp?idx=1270&sigungu=&category=&searchVal=&pageno=2>). (검색일: 2021.01.0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2차 전문가 컨설팅의 날”.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community/read.asp?idx=1270&sigungu=&category=&searchVal=&pageno=2>). (검색일: 2020.01.03.)
-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임팩트 스토리”.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story](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story)). (검색일: 2020.11.11.)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8.03.08). “서울시 공론화 사업추진 관련 의제 발굴 제출 요청”.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790454>). (검색일: 2020.12.15.)
- 세르비아 시민협력청. “Informator o radu”.  
(<http://www.civilnodrustvo.gov.rs/home/home.1.html>). (검색일: 2020.12.01.)
-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https://mayor.suwon.go.kr/sw-mayor/sw-mayor-04/sw-mayor-04-03/sw-mayor-04-03-03/sw-mayor-04-03-03-01.jsp>). (검색일 : 2021.01.04.)
- 시민사회통통. (<https://civil.opm.go.kr/site/index.do>). (검색일: 2021.01.10.)

- 안신숙. (2015.08.25.).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 볼까? 희망제작소 기획연재,”.  
(<https://www.makehope.org/%EA%B8%B0%ED%9A%8D%EC%97%B0%EC%9E%AC-%EB%82%B4%EA%B0%80-%EB%82%B8-%EC%A3%BC%EB%AF%BC%EC%84%B8%EC%9D%98-1-%EC%8B%9C%EB%AF%BC%EB%8B%A8%EC%B2%B4%EC%97%90-%EA%B8%B0%EB%B6%80%ED%95%B4%EB%B3%BC%EA%B9%8C/>). (검색일: 2020.10.18.)
- 에스토니아 시민. “ESTONIAN CIVIL SOCIETY DEVELOPMENT CONCEPT”.  
(<https://heakodanik.ee/en/estonian-civil-society-development-concept/>).  
(검색일: 2020.12.01.)
- 여성가족부 네이버 블로그. (2020.08.12.). “성 평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협의회’”.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gefkorea&logNo=222058504191>). (검색일: 2020.10.23.)
- 여성가족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 시민협력 사업 공모”.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jsessionid=684Khrdm4KAjUfrGhHEdgvT.mogef21?mid=news400&div1=16&bbtSn=707212](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jsessionid=684Khrdm4KAjUfrGhHEdgvT.mogef21?mid=news400&div1=16&bbtSn=707212)). (검색일: 2020.09.01.)
- 여성가족부.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2020.08.1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  
(검색일: 2020.08.24.)
- 여성인권운동 아카이브. “ARCHIVE MOON”. (<http://herstory.xyz/>). (검색일: 2020.10.28.)
- 연합뉴스. (2017.11.20.). “3기 시민사회발전위 출범…이총리 “난제에 의견 모아주길””.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0164400001>). (검색일: 2021.01.10.)
- 열린 정부 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검색일: 2020.08.17.)
- 열린소통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 우리지금만나”.  
(<https://www.openforum2020.com/>). (검색일: 2020.10.18.)
- 열린정책신문. (2020.06.22.).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속의 시작한다”.  
([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0](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0)).  
(검색일: 2020.08.24)
- 영국 NCS. “Do More With NCS”.  
(<https://wearencs.com/after-programme>). (검색일: 2020.09.23.)
- 영국 시민청. (2018). “시민사회전략집”.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

chment\_data/file/732765/Civil\_Society\_Strategy\_-\_building\_a\_future\_that\_works\_for\_everyone.pdf). (검색일: 2020.08.07.)

영국 정부. “National Citizen Service”.

(<https://www.gov.uk/government/get-involved/take-part/national-citizen-service>).

(검색일: 2020.09.23.)

영국 포인트 오브 라이트. “Points of Light”.

(<https://www.pointsoflight.gov.uk/about-points-of-light/>). (검색일: 2020.08.16.)

(검색일: 2020.09.23.)

영국 폴리시랩. “툴 키트 홈페이지”.

(<https://www.gov.uk/guidance/open-policy-making-toolkit>). (검색일: 2020.09.05.)

영국사회협약. 201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169/The\\_20Compac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169/The_20Compact.pdf)). (검색일: 2020.09.10.)

영국시민청. “Our Responsibiliti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civil-society/about#our-responsibilities>). (검색일: 2020.08.16.)

영국시민청. “About u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civil-society/about#our-responsibilities>). (검색일: 2020.08.16.)

영국정부. “복권기금 연간 보고서 2018-20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ational-lottery-community-fund-annual-report-2018-to-2019>). (검색일: 2020.09.23.)

오이타시. “1%応援事業(あなたが支える市民活動応援事業) 応援届出結果についておよび様式の掲載”. (<https://www.city.oita.oita.jp/o040/siminkyodo.html>). (검색일: 2021.01.05.)

외교부 보도자료. (2020.07.15).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47](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347)).

(검색일: 2020.08.27.)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01.22.)

유럽연합 Europe for Citizen. ([https://eacea.ec.europa.eu/europe-for-citizens\\_en](https://eacea.ec.europa.eu/europe-for-citizens_en)).

(검색일: 2020.12.01.)

윤상진(2019). '승강장에서 SNS까지,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27534>). (검색일: 2020.10.07.)

이로운넷. 박유진. (2019.08.24). "대학가로 스며든 사회적경제 ①: 나는야 사회적경제 전공생".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51>). (검색일: 2020.10.27.)

이치가와시. "1%支援制度とは". (<https://www.city.ichikawa.lg.jp/pla06/1111000002.html>).

(검색일: 2021.01.05.)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소개". (<https://www.incheon.go.kr/IC020401>).

(검색일: 2021.01.15.)

인천뉴스. (2020.07.01.). "「인천 시민 시장 대토론회」, 온라인 토론 첫 시험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95>).

(검색일: 2020.12.03.)

인천일보. (2020.06.02.). "인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의회문턱 못 넘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832>).

(검색일: 2021.01.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검색일: 2020.08.18.)

정부 24. (2020.05.01.). "2020년 방송 통신 국민 정책참여단 30명 출범".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005000000666174?policyType=G00301&srchTxt=%EB%B0%A9%EC%86%A1%20%EA%B5%AD%EB%AF%BC%EC%A0%95%EC%B1%85%EC%B0%B8%EC%97%AC%EB%8B%A8>). (검색일: 2020. 10.25.)

정부 24. (2020.05.15.).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혁신 정책협의회 출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djOkkr3Ot+qPp3m-it9iHhqB.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216&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djOkkr3Ot+qPp3m-it9iHhqB.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216&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검색일: 2020.11.03.)

정책브리핑. (2019.02.21.).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99>).

(검색일: 2020.08.24.)

정책브리핑. (2020.08.07.).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출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56>).

(검색일: 2020.08.10.)

- 정책브리핑. (2020.08.13.).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88&call\\_from=rsslink](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88&call_from=rsslink)). (검색일: 2020.08.24.)
- 정책브리핑. (2020.12.28.). “총리실,시민사회와의 온라인 소통협력 플랫폼 ‘시민통통’ 개통”.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23>).  
(검색일: 2021.01.14.)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 조선일보. (2018.05.29.). “더 나은 미래: 벤처 필란트로피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199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1994.html)).  
(검색일: 2020.12.14.)
-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검색일: 2020.12.01.)
- 통일뉴스. (2020.09.01.). “통일부 내년 예산, 일반회계 0.5%↓ 기금 3.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91>).  
(검색일: 2020.10.16.)
- 통일부 홈페이지. “조직과 기능”.  
([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organization/community\\_based/#org\\_tab4](https://www.unikorea.go.kr/unikorea/about/organization/community_based/#org_tab4)). (검색일: 2020.10.18.)
- 페이스 북 소셜 임팩트 사이트. (<https://socialimpact.facebook.com>). (검색일: 2021.01.07.)
-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검색일: 2020.11.13.)
- 한국국제교류재단. “KF 국민공공외교 사업”.  
(<http://www.kf.or.kr/?menuno=5084&kflnbindex=>). (검색일: 2020.12.30.)
- 한국어촌어항공단. (2020.08.31.). “한국어촌어항공단, 제2기 FiPA 시민참여혁신단 출범”.  
([https://www.fipa.or.kr/sub3/index.php?mode=view&number=5125&page=1&b\\_name=newsrelease&mn\\_idx=0003\\_0041\\_0043\\_&dp1=3&dp2=2&dp3=2](https://www.fipa.or.kr/sub3/index.php?mode=view&number=5125&page=1&b_name=newsrelease&mn_idx=0003_0041_0043_&dp1=3&dp2=2&dp3=2)).  
(검색일: 2020.09.02.)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특별사업”. ([http://www.kfvc.or.kr/contents/sub03/sub03\\_05.html](http://www.kfvc.or.kr/contents/sub03/sub03_05.html)).  
(검색일: 2020.11.30.)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인사말”. ([http://www.vkorea.or.kr/contents/company.html?sm=1\\_1](http://www.vkorea.or.kr/contents/company.html?sm=1_1)).  
(검색일: 2020.11.30.)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기관소개”. (<http://www.v1365.or.kr/new/introduce/02.php>).  
(검색일: 2020.11.30.)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문화와 확산”. (<http://www.v1365.or.kr/new/business/01.php>).  
(검색일: 2020.11.30.)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연구와 평가”. (<http://www.v1365.or.kr/new/business/03.php>).  
(검색일: 2020.11.30.)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인프라와 관리”. (<http://www.v1365.or.kr/new/business/02.php>).  
(검색일: 2020.11.30.)
- 한국직업교육개발원. (<http://www.k-job.co.kr/>). (검색일: 2020.11.10.)
- 해양환경공단. (2020.07.29.).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https://www.koem.or.kr/site/koem/ex/board/View.do?cbIdx=236&bcIdx=29486>).  
(검색일: 2020.08.24.)
-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합동평가”.  
(<https://laiis.go.kr/lips/uev/eis/unionSummaryView.do>). (검색일: 2020.01.04.)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6.21.).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 계획 만드는 속의 시작한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8034](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8034)). (검색일: 2020.08.22.)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7.02.).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8269](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8269)). (검색일: 2020.12.30.)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10.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UoiOaodEmyQ5asyo0Dxn8oXxGPTOJEwvU0PrWuh2n7yElITd9SekHOUDchd8iJaY.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5987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UoiOaodEmyQ5asyo0Dxn8oXxGPTOJEwvU0PrWuh2n7yElITd9SekHOUDchd8iJaY.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5987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검색일: 2020.10.1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09.17.). “지역별 현안 해결 위한 민관 핵심인재 키운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9990](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79990)). (검색일: 2020.10.2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추진과제. “지역혁신 선도사업 추진”.

([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

(검색일: 2020.11.01.)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2018.12.28.).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15&nttId=68067](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15&nttId=68067)). (검색일: 2020.11.0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19년 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8&nttId=78390](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8&nttId=78390)). (검색일: 2020.07.3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추진과제. “지역혁신 선도사업 추진”.

([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https://www.mois.go.kr/frt/sub/a06/b06/socialinnovationTask_2/screen.do)).

(검색일: 2020.11.01.)

행정안전부. (2020.06.2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 (검색일: 2020.11.30.)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 자원봉사\)\)](https://www.mois.go.kr/((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 자원봉사)))).

(검색일: 2020.11.01.)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nttId=78190](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55&nttId=78190)). (검색일: 2020. 11. 29). (검색일: 2020.11.30.)

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5(1998.5.2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https://search.court.go.kr/thr/pr/thr\\_pr0101\\_P1.do](https://search.court.go.kr/thr/pr/thr_pr0101_P1.do)). (검색일: 2020.11.01.)

협동연구총서 21-04-01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

발행 2021년 01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http://www.nrc.re.kr)  
ISBN 979-11-5567-403-1

---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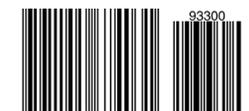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 791155 674031  
ISBN 979-11-5567-403-1

비매품/무료

93300